

2003통일기획요원 연수결과

통 일 부

목 차

I. 독일지역	3
II. 일본지역	271
III. 중국지역	287
IV. 러시아지역	331
V. 영국지역	343
VI. 벨기에지역	365

I. 독일지역 연수결과

◆ 일 시 : 2003. 3. 10 ~ 6. 30

◆ 연 수 자

통 일 부 : 사 무 관	박 철
재정경제부 : 사 무 관	나 상 식(러시아)
국 방 부 : 소 령	강 인 순
국 방 부 : 소 령	변 원 섭
농 립 부 : 사 무 관	백 철 우(벨기에)
해양수산부 : 사 무 관	강 정 구
경 찰 청 : 경 감	남 제 현(영 국)
국 회 : 사 무 관	송 수 환

제1단계(에버트재단) 단체연수결과

- 2003. 3. 10 ~ 3. 28 -

I. 개 요

1. 연수일정

- 2003. 3. 10 ~ 3. 14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및 방문기관 (본)
- 2003. 3. 17 ~ 3. 28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및 방문기관 (베를린)

2. 연수활동 경과

가. 주제 : 독일통일과 독일경험의 활용

나. 연수프로그램 : 총 16개 세부주제
(연수일정 소개 및 평가 부분은 제외)

- 독일 통일 및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 : 4개 주제
 - 1950년대 내독관계의 발전 및 독일의 통일과정
 - 구 동독 붕괴의 원인 등
- 개별연구과제와 관련된 주제 : 8개 주제
 - 구동독 군대통합과 통일후의 연방군
 - 독일 연방의회 체계 등
- 기타 에버트 재단 소개 : 4개 주제
 - 신연방주 직업교육지원 현황 (연방직업교육연구소)
 - 통일전부터 1991년까지의 독일연구소의 임무와 역할 등

다. 프로그램 진행 : 총 48시간

- 초빙강연 및 토론 : 7회 21시간 (에버트재단)
- 기관방문 및 대담 : 9개 기관 27시간 (해당기관)

라. 주요 면담 인물 : 총 24명

- 독일통일 관련 정책 입안자
 - 전 연방수상칭 슈테른 박사 등
 - 전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법무부장관 브로이티검 박사 등
- 연방정부 및 신연방주의 각 부처 국장 및 실무자
 - 연방 재정부 카우어 박사,
 - 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로안전부 하트 국장 등
- 독일 통일관련 민간 전문가
 - 전 북한주재 동독 대사 마레쯔끼 교수
 - 전 전(全)독일연구소 소장 퀴 교수
- 구 동독 출신 인사
 - 연방하원의원 메켈 의원
 - 전 북한 주재 동독대사 마레쯔끼 박사
 - 연방 재정부 카우어 박사 등

II. 에버트 재단 (FES) 단체연수결과

일자	주 제	면담자
3.10	○ 인정기획 담당자 인사 및 소개, 독일통일관련 비디오 시청	Mrs. Georgen 등
3.11	○ 접근을 통한 변화 : 1950년대 이후 내독관계의 발전	Mr. Stern
3.12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병력감축 과정	소령 Pink
	○ 통일후 연방군 인적자인 전환	Mr. Mühlhaus
3.13	○ <u>인방직업교육연구소(BIBB)방문</u> - 직업훈련체계에서의 BIBB의 역할	Mrs. Welter
	- 구 및 신연방주에서 직업훈련소의 분석 및 관찰	Dr. Ulrich
	- 구 및 신연방주에서의 직업훈련소요 범위 및 구조	Mr. Berger
	○ 독일 연방의회 체계 및 하위-상위 관계	Prof. Decker
3.14	○ 일정에 대한 중간 평가 및 향후 일정 소개 / 토의	Mrs. Georgen 등
3.17	○ 구동독 붕괴의 원인과 북한붕괴 가능성 - 구동독 외교관의 시각	Dr. Maretzki
	○ 구동독 붕괴의 원인 - 구서독 정치인의 시각	Dr. Bräutigam
3.18	○ <u>연방 재정부 방문</u> - 신탁업무 종결 및 민영화 지원	Dr. Kauers
	- 구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시 노동조합의 역할	Mr. Senft
	- 독일통일과정에서 신연방주에서의 신탁청의 역할과 과제	Mr. Eulenburg
3.19	○ <u>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료안전부 방문</u> - 신연방주 생태계 복원 및 개발	Mr. Hart
	○ 베를린 경찰청 방문 - 1990년 베를린 경찰청의 통합과 현재 상황	Mr. Röder 총경 Gräfe 경정 Hardtke
3.20	○ <u>연방 경제노동부 방문</u> - 동독재건시 민영화 및 기업이전노력과 연방정부 지원정책	Mr. Brenner
	○ <u>독일경제연구소 방문</u> - 신연방주내 산업시설 이주	Mr. Brenke
3.21	○ 독일 연방하원(Bundestag) 방문	Mr. Mickel 의원
	○ 주독 한국대사 초청 면담 / 오찬	황원탁 대사 등
3.24	○ <u>연방 정치교육센터(BPB) 방문</u> - 신연방주에서의 정치교육	Dr. Hirschfeld
	○ 동독과정부터 1991년까지 전(全)독일연구소의 임무와 역할	Mr. Kühn
3.25	○ 구동독 국가보안처 기밀문서 처리국(GAUCK) 방문	Mr. May
	- GAUCK 활동 : SED유산 극복, Stasi 청산, 과거분석과 미래조망	Mr. Griesse
3.26	○ 한국에 대한 전망 - 정상화와 통일	Dr. Maretzki Prof. Pfennig
3.27	○ 연수 일정에 대한 종합 및 환송 오찬	Mrs Georgen 등 김영희 참사관

1. 일정기획 담당자 인사, 통독관련 비디오시청

가. 일시 · 장소 : 2003. 3. 10. 10:30~12:00, 14:00~17:00
에버트 재단(본) 001B실

나. 담당자 : Mrs. Brigitte Georgen
(에버트재단 국제개발협력국 아태지역과 담당)
Mrs. Claudia Schillinger

다. 주요 내용

(1) 인사 및 일정 소개

- 담당자 인사말 및 상호 소개
- 3주간의 단체연수 일정에 대한 설명
 - 연수기관으로의 이동방법 (개별 이동)
 - 의료보험 가입 통지 (응급상황에 한정된 보험)
-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 보완사항 토의
 - 독일통일 전반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강의와 함께 구체적인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 요망
- 개별연구 주제 관련 사항의 추가 반영 방법 논의
 - 단체연수 프로그램 중간의 여유시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자와의 개별 면담 주선 노력
 - 개별적 연구주제와 관련한 질문서의 사전 준비 등

(2) 에버트재단 초청 연수단 환영오찬

- 주관 : 에버트재단 국제개발협력국장 Dr. Ernst J. KERBUSCH

(3) 독일통일 관련 비디오 시청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소개” 비디오

- 에버트 재단 창립 및 주요활동사항
- 재단의 장학사업과 국제협력 및 지원 활동 소개

- “1989년 가을” 비디오

- 독일 통일 직전 동독의 주민이탈 및 동독 내부의 시민운동 등 동독 지역에서의 변화 현장을 영상으로 담은 내용

2. 접근을 통한 변화 : 1950년대 이후 내독관계발전

가. 일시 · 장소 : 2003. 3. 11. 09:00 ~ 17:00

에버트 재단(본) 001B실

나. 면담자 : Mr. Ernst Günter STERN

(전 연방수상청 신연방주 조정국 국장)

다. 주요 내용

1. 독일 분단 및 통일의 역사

o 1945년 2차대전 이후 알타회담으로 분단(4개 지역)

- 영, 불, 미, 소가 각각 분할통치

- 1949년 5월 23일, 영·불·미 지역에 서독이 수립되고, 1949년 10월 7일 소련령에 동독 수립

- 소련 점령지역 안에 있는 베를린의 경우, 영·프·미·소가 관할하는 4개 지역으로 분할되었다가 동·서베를린으로 다시 분리

o 1949년 동독·서독 정부수립 이후 내독관계 및 내독정책이 시작되었고 1990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연혁을 4개의 시기로 분할하여 살펴보기로 함.

- 1949년부터 1969년까지의 시기 : 동서독 관계 냉각시기

- 1969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 : 동방정책의 추진시기

- 1989년에서 1990년까지의 시기 : 통일시기

2. 1949년부터 1969년까지의 시기(독일정책 1차시기)

: 서독이 자유를 통일보다는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동, 서독간의 관계가 냉각되었고, 동독주민의 상황이 악화되어감.

o 서독의 입장

- 아데나워 정부 : “자유가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우선시하면서 동독정부보다는 서방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둠.
- 1951년 석탄과 철강을 위한 유럽연맹(EGE)에 가입, 1955년 나토(NATO) 가입
- 영, 불, 미 : 서독정부가 통일을 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베를린을 제외한 서독의 내정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협정이 수립됨

o 동독의 입장

- 동독은 동구권과의 관계를 확립하게 되는데, 1955년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

o 동, 서독간 체제의 차이

- 서독정책의 기본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선거임. 이러한 원칙하에 기본법 체제, 기본권보호,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이지만,
- 동독은 법치적 기반이 없고 99.9%의 지지를 얻는 형식적인 선거, SED 독재체제, 통행의 제한, 언론의 자유 금지, 집회 통제 등을 하고 자결권이 없는 소련의 꼭두각시 체제임.
* 1959년 소련 탱크에 의해 데모가 진압된 이후 더욱 경직화

○ 동, 서독간의 상호관계

- 서독의 對동독정책 원칙
 - 합슈타인 독트린에 따라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독일은 하나의 국가임을 강조
 - 동독의 무조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독간의 다양한 인적접촉을 통한 주민간의 교류를 강조

- 동독의 對서독정책 원칙
 - 동독이 하나의 국가임을 인정받는데 중점을 두고 서독과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인 관계로 정립하려고 노력함.
 - 동독주민의 여행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서독주민과의 교류는 완전히 제한 (소포, 전화 등도 점점 감소)
 - 이러한 결과로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고, 국경지대에 철조망, 지뢰, 기관총 등을 설치
 - * 이는 외부인의 동독으로의 유입차단 목적이 아니라 내부의 동독인들의 탈주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음.

○ 서독의 對동독 접촉유지 노력 : 비공식이면서 공식적인 정책

- 동독국가 불인정 정책으로 공식적인 양국정부간의 접촉은 제한
 - * 접촉 관련 공식문서가 없음.

- 동독주민 여행자유 조치를 위해 동독내 철로노선 보수, 운행시간 협조
 - * 이에 대해 동독은 “먼저 국가를 인정하라”면서 관련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토록 요구
 - * 협상간에도 동독 외무성 직원과 서독 수상청 직원은 철도청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고 회의 참석

- 협상이 실패하면서 서독은 이런 식의 對동독접근은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고 동·서독 국민간의 평화유지를 위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3. 1969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독일정책 2차 시기)

서독정부가 동독에 대한 그간의 입장을 변화시킴.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접근을 통한 변화”를 시도함. 76번의 對동독 협상을 주도한 ‘에곤 바’가 그 주역임.

(1) 역사적 전개과정

- 1969년 10월 사민당(SPD) · 자유민주당(FDP)이 집권하여 연정을 구성한 후 본격적인 對동독정책(Ost-Politik)을 시작(빌리 브란트 수상)
- 서독정부의 기본방침
 - 통일보다는 자유가 우선이라는 이념은 고수
 - 분단된 상황이지만 동독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등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당의 입장
 - 서베를린 주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 추구
- ※ 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독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동독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1970년 동독과의 정식외교가 시작됨(정상회담).
- 1970년 서독의 브란트와 동독의 슈토프간 정상회담 이후(70.3.19에는 동독 지역인 Erfurt에서 만나고, 70.5.21에는 서독지역인 Kassel에서 만남)
 - 협상이 아닌 형식적인 회의수준이었으나 6개월 후 협상이 시작됨.
 - 최초의 협정은 동서독간의 통행협정, 그 후 교통협정을 비롯한 현안 문제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됨(철도, 도로, 수로)

- 그 결과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한 바, 동독은 서독과의 대화를 계속하기로 함
- o 1972년 통일기본조약 체결
 - 이후에 문화,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됨.
- o 1981년 서독의 슈미트와 동독의 호네커 정상회담 (동독지역인 Werbellinsee에서 만남)
- o 1982년 서독의 정권 교체와 동방정책의 진행
 - 기민당이 재집권한 후에도 사민당의 동방정책은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 서베를린 문제 등을 이유로 동서독간 협상의 진행이 지지부진하였음.
- o 1987년 동독의 호네커가 서독의 본(Bonn)을 방문
 - 서독의 콜 수상과 정상회담
 - 호네커의 서독 방문 이후 동독의 개방이 많이 진행되었음.
- o 국민들의 반응
 - 서독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었음.
 - CDU/CSU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그중 CSU는 헌법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 그러나, 조직적인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일반국민들사이에서는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 동독의 경우 정치집단에서는 반대하였고, 국민들은 찬성

(2) 통일정책의 내용

○ 통일정책

- 서독의 경우, 여당인 시민당에서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관계개선을 통한 통일정책을 진행하였으나, 야당인 기민당에서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 그러나, 정권교체 후에도 과거정권의 동방정책 기조가 유지됨.
 - 동독의 경우 통일이 아니라 독립적인 2개의 국가간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
- 동서독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독정부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임.
- 동독을 국가로 인정
 - OSZ(국제협력연맹)의 지원
 -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대화
- 동독에 대한 서독의 경제지원 사례
- 1972년 동독은 국제 자금시장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었을 만큼 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었음.
 - CSU의 슈트라우스가 100억DM을 동독에 융자지원(서독정부가 보증)한 후 동서독간의 냉전이 종식(지뢰제거 등)
- 1987년 호네커의 서독방문
- 서독 주민들 사이에는 반대도 있었으나, 이는 동독의 국가적 위상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동독과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동독주민의 서독방문허가도 확대됨.

(3) 통일정책의 성과

- 성공적인 정책이었음.
- 동·서독 주민간의 왕래가 쉬워진 점이 가장 큰 성과
(베를린의 경우 연간 100만명이 왕래)
 - 직업을 가진 젊은층이 서로 쉽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 동독의 경우 연금생활자가 많이 이주해 왔으나, 직장인은 거의 왕래가 없음
 - 1972년 기본조약의 체결 이후에는 직장인의 이주가 시작됨
(1972년 10만, 86년 50만, 88년 150만명 서독으로 이주)
 - 이는 동독 주민들이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언론의 자유 등 서독의 자유를 체험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게 되었고 이것이 통일의 근간이 됨.
- 재정적 지원이 통일의 또 하나의 계기
 - 도시간의 자매결연, 청소년간의 교류, 스포츠를 통한 교류, 통신수단을 통한 교류, 경제적 문화적 교류 등이 확대
 - 기본조약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학문교류,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교류 등이 이루어짐.
 - 동독정부가 서독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으로 해서 서독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도록 한 것임.
- 이러한 정책으로 통일과 관련된 동독정부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동독주민의 경제적 생활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서베를린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음.

(4) 서독정부의 특별정책

: 동독 정치범의 이주 및 동독 출신 이주민 문제의 해결

o 동독 정치범의 석방 및 서독 이주 문제

- 1963년에 시작
- 동독에 수감되었던 연간 1,000~2,000명의 정치범을 석방시켜서 서독으로 이주시켰고, 그 대가로 서독정부가 정치범 석방비로 20년간 1,700만 마르크(DM)를 동독정부에 지불
- 이것은 동독주민들의 서독 탈출시도를 더욱 증가시켰음.

o 동독주민의 이주 문제

- 초기에는 동독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서독 이주민이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음. 후기에는 서독에 가족이 있는 동독주민들을 동독정부가 내보내기 시작함.
- 서독 탈출자를 찾아서 나오거나,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나오거나, 무작정 나오는 부류의 3부류가 있었음. (61년 이전)
- 이주규모는 장벽설치 이전에 340만명, 설치이후 60만명(84년 40만명), 89년 60만명이었음.

o 동독주민의 이주비용

- 초기 이주자는 1인당 2만 마르크, 협상 체결후에는 2,000 마르크를 지급하였으며, 후에 5,000 마르크로 인상함.

- 정치범에게는 1인당 10만 마르크
- 서독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10만 마르크
- 총 지급비용은 340억 마르크이었으며 그중 80%는 정치범에게 지급함.
- 지불방법은 동독에서 구할 수 없는 물자나, 국제시장에 팔 수 있는 물자들을 기독교단체 등을 통하여 동독으로 수송(동독정부로서는 외환확보가 목적이었음)
- 기독교단체간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그 경로를 활용한 것임.
- o 이주정책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동방정책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극비
- o 이주정책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서독정부로서는 인신매매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동독주민들을 서독으로 이주시킬 수밖에 없었음.

4. 1989년에서 1990년까지의 상황

: 독일의 경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의 상황이 도래하였음.

(1) 베를린장벽 붕괴직전의 상황

- o 동독주재 서독대사관을 찾는 동독인의 증가(89년 8월 8일 폐쇄)
 - 프라하에서는 더욱 많았음(8월 20일 폐쇄). 바르샤바도 같음.
- o 9월 11일 헝가리 정부의 국경개방을 통해 오스트리아, 독일로 가는 길을 열어버림으로써, 동독이 주민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짐.

- 9월 말 동독정부가 헝가리나 체코에 체류중인 동독인들의 서독여행을 허용
 - 그러나, 동독 정부는 동독인들이 외국에서 바로 서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라하에서 동독 지역인 드레스덴을 거쳐 서독으로 가도록 함.
- o 10월 7일 동독정부창립일 동독주민들의 데모가 있었으나, 경찰이 저지
- 10월 9일 라이프찌히 데모에서는 경찰의 저지가 없었으며, 이는 정부측의 저지가 없었던 최초의 시위였음. 이로부터 9일 후 호네커가 사임함.
- o 11월 9일 SED 중앙위 공보담당 서기(샤뵉스키)의 TV연설
- “(앞으로는) 개인적인 여행을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신청만 하면 신속하게 여행허가를 받아 외국(서독을 포함)을 여행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함
 - 이를 들은 동독의 주민들은 이것을 곧 자유여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가져옴.
- o 베를린장벽의 붕괴(동일의 달성)원인
- ① 1989년도 말에 고르바초프가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철폐
 - ※ 브레즈네프 독트린
 - : 소련중심의 사회주의체제는 무력을 동원하더라도 지켜야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독트린 하에서 일어난 사건이 1953년 동독사태, 1956년 헝가리 사태, 1968년 프라하 사태 등이었음.
 - ② 소련에서도 고르바초프에 의해 사회개혁운동을 진행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동독주민들의 사회체제개혁운동을 소련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활용했음(폴란드 및 헝가리의 사례를 참고하였음)
 - ③ 서독의 對동독 「대화와 협력정책」의 성과

○ 누가 통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문제

- 서독이 동방정책 등을 통하여 통일을 위한 배경을 조성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통일을 이루어낸 것은 국내의 여건을 잘 활용하여 자유와 개방을 선택한 동독주민들임.

(2) 장벽붕괴이후

○ 서독정부의 입장은 동독정부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으나,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 11.28 서독의 콜 수상이 동독과의 교류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전승4개국을 비롯한 사회전체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킴.
- 12.19 동서공동협약체결 이후 6주 정도 동독과의 공동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 1990년 2월 13일 서독의 콜 수상이 동독에 화폐통합을 제안

- 동독의 사회조직의 신속한 정비, 동독경제체제의 복구, 외국(소련의 고르바초프의 지위불안 등)의 정치적 압력이 화폐통합을 서두르게 된 원인.
- 90년 1월에는 매주 동독주민중 노동인력 14,000명이 서독으로 나올 정도로 동독사회가 불안해지고 있었음.
-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준비가 안되었음에도 동독을 사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정치적인 결단으로 화폐통합을 하게 됨(1990. 7. 1).
- 1:1의 환율로 환전

○ 화폐통합이후 서독의 예산제도, 세무관계법, 사회보험제도 등 서독의 체계를 그대로 동독에 도입.

5. 통일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

o 통일의 합법화 방법

- 독일 기본법상 통일로 가는 2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결국 기본법 제 23조에 의한 신속한 방법을 선택함.
 - ①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방법으로 별도의 헌법개정 없이 동독이 서독의 연방으로 편입하는 방법
 - ② 기본법 제146조에 의하여 동서독이 합의한 후 헌법개정을 거쳐 통합하는 방법
- 동독정부는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편입방식을 선호함.
- 서독정부도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방법을 권했는데, 이는
 - ① 헌법개정과 같은 복잡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빠른 시기에 통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② 서독이 그간 유지해온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동독이 편입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유리하며,
 - ③ 전승4개국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방식이었기 때문임.

o 통일평화협상의 문제점

- 재검토해야할 대상이 되는 동독의 법이 5천여개였으므로, 그 존폐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음.
- 동독의 법체계정비를 위한 협상결과는 사실상 이행하기가 불가능했으며, EU 정부에서도 동독에 적용되는 법체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결국 서독의 법체계가 그대로 동독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림(EU 커미셔너가 협상과정 계속 참관).

o 통일 협상과정 및 연혁의 정리

- 90. 7. 6. 통일협상 시작
- 90. 8. 31 서명
- 90. 9. 20 의회비준
- 90. 10. 3 독일통일 완료

o 2+4회담

- 전승4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아직도 동·서독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통일독일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웠음.
- 서독의 법률 등이 바뀔 경우는 각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했는데, 각국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함.
- 2+4 회담에서 각국 의회의 비준을 얻을 때까지 그 조항을 유보하기로 함.
- 결국 1990. 9. 12 합의문에 서약하고, 1990. 10. 1 주변 4강의 기득권 포기 선언에 이어 총 6개국의 의회인준을 거쳐 1991. 3. 15에 합의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o 독일통일에 대한 재정리

- 40년간의 분단상황에도 불구하고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관계국의 환영을 받으면서 통일을 이룩한 것은 동방정책의 성과라고 보며,
- 아데나워정부(CDU)가 행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이 그 기반이 되었고, SPD의 동방정책으로 동서독 주민의 교류와 대화가 가능했으며, 다시 CDU가 그 정책을 이어감으로써 독일통일은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결론

6.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

- 양국이 모두 2차대전 이후 알타회담으로 분단되었음.
-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점
- 무력 통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 문화·언어적 배경 등이 비슷함.

○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

- 독일이 가지고 있던 국제여건상 외세의 간섭이 한국보다 훨씬 강했다고 생각됨. 즉, 한국의 통일을 주변국가들이 반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됨.
- 독일의 경우 통일에 따른 정치적, 법률적 제약이 더 많았으며, 통일을 추진할 강력한 내부 세력도 부재했었음.
- 서독의 경우 베를린 문제가 항상 약한 고리였고, 동독은 주로 베를린 문제로 동서독 협상의 발목을 잡았음.

※ 위와 같은 서독의 핸디캡이 한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됨.

○ 반면, 독일은 한국과 달리 과거부터 통신교류, 민간교류, 교회간 교류가 끊이지 않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이 쉬웠다고 봄.

○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독일의 동방정책과 같은 교류협력 정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주민간의 교류를 이루어 나간다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남한과 북한간의 끊임없는 대화, 남북주민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통일에 매우 중요함.
-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원해야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서 남한의 생활상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남한내 정당간의 통일에 대한 의견대립은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될 것임.
- 북한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장애가 됨.
- o 통일은 단시간내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통일을 이룰 수 있음. 통일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인다면 남한 체제(자유민주주의, 경제력의 우위)의 우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o 對북한 햇볕정책의 지속적 추진은 전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임.
 - 독일의 경우에도 동방정책의 추진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1972년 선거에서 사민당의 브란트(Brandt)가 동방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에서 승리하여 다수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이후 지속적 추진.
- o 햇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민간 등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함.
- o 북한과의 협상전술에 대한 조언
 - Give and Take 식의 조건부 협상(철저한 상호주의 고수)
 - 자금지원을 통한 협상의 경우 가능한 한 상대방의 위상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 협상 당사자 사이에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함.
- 한 건의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협상 관련자(특사 등)를 교체해서는 안됨.
- 협상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함. 만나는 것 자체를 우선 비밀로 유지하고 협상후 어떤 공동성명서 등이 채택시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하고 만약 성과가 없었다면 만난 사실자체를 없던 것으로 처리해야 함.
- o “독일 통일의 경험은 참고는 하되, 그대로 복사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 o “남북한간에 평화통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질문과 답변

- o 매수에 의한 정치범 석방 과정에서 보안유지와 공개시기는
 - 독일통일시까지 보안이 유지됨. 진행과정에서 언론 등에서 낚새는 알았으나 질문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음.
 - 관련예산은 정식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나 항목 등을 위장하여 관계자들 외에는 거의 알 수가 없었음.
- o 1982년 집권한 기민당(CDU)이 과거 사민당(SPD)의 정책에 대해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내부적 이유는

- 사민당(SPD) 집권시절 CDU내부에서도 점차적으로 동방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당을 비판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음.
- 국민들의 지지도 정당(CDU)과 같이 점차적으로 동방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
- o 서독내 친 동독세력의 존재 여부 및 그들에 대한 서독 정부의 대응정책
 - 서독내 공산당이 존재하였으나 허황된 주장 등을 하여 초기에는 공산당의 활동을 금지하였음. 그러나 서독 정부가 통일정책에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들의 활동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대응하였음.
- o 1989. 10. 9. 라이프찌히(Leipzig)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 대하여 동독 정부가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 당시 동독 정부는 급작스러운 상황변화 때문에 대규모 시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에 빠져있었고 지휘부에서 미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태가 계속 진행되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상황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며, 경찰이 강제진압을 하지 않은 것이 서독 정부의 영향력 때문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함.
- o 통일전 對동독정책 추진시 협상과정의 숨김과 국민지지 획득을 위한 공개의 상충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이러한 상충문제 해결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
 - 독일은 어느 정도 교류가 진척되어서 성과를 어느 정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제 교류협력 초기로 성과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임.

- 독일은 정책의 추진목적과 최종상태는 반드시 공개함. 독일이 제시한 핵심제시 목표는 항상 동독국민들의 편안한 삶의 질 개선이었음. 따라서 동독내 친척에게 편지를 쓸 때도 너희들(동독인)을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설득하였고, 당시에는 공개할 수 없었으나 “국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통일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명함. (지금은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음)

o 경제적 통합정책 추진시의 문제는

- 독일의 통일과정을 볼 때 정치적 통합과정은 훌륭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은 많은 과실이 있었음. 특히 정치적 목적이 강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화폐통합정책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었음.
- 무엇보다도 서독 국민들에 대한 세금부담에 대한 설득논리가 중요하였음. 통일당시 서독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지 및 환영하였음. 따라서 통일당시에는 모든 재정적 부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콜 수상은 1990년 총선을 의식해서 서독 국민들에게는 절대 부담을 안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이것이 결정적 실수였음. 오히려 통일초기에 많은 세금을 거두었으면 불만해소가 가능했을 것임.
- 두 번째 실수는 화폐통합 비율임. 화폐통합 자체는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1:1로의 통합은 오히려 동독주민들에게 생활수준은 저하되고 생산비 향상으로 산업침체의 원인이 되었음.

o EU공동체의 발전과 독일통일간의 상관관계는 있었는지

-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며, 당시 EU입장에서도 독일통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됨. 하지만 EU국가들이 통일독일의 성장에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는 당시에도 계속되었음.

- 한국은 동족간 전쟁인 6·25전쟁을 겪어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극우세력이 존재하는데 반해, 독일은 상호간 전쟁을 겪지 않았는데 통일에 반대하는 주요세력이 있었다면 어떤 세력이었는지
 - 과거 사민당이 동방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야당인 기민당(CDU)이 반대세력이었음. 그러나 향후 1982년 집권후에는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계승함.
- 새로이 탄생한 한국의 참여정부가 향후 5년간 통일의 토대를 다지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과제를 3가지만 제시한다면
 - 첫 번째가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 두 번째가 '북한의 자극에 말려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며,
 - 세 번째가 '이웃국가들의 질투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통일에 유리하도록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독일이 분단후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4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현재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지
 - 개인적 의견으로는 1969년 정도 독일이 동방정책의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됨.(독일의 경우 그 이후 20년이 더 걸려 통일을 이루었음)
- 서독이 동독에 자금을 지원할 때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자금을 지원한 방식과 그 조건은
 - 불법적으로 몰래 한 것은 없었음.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뒷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임. 하지만 뒷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 관련위원회 및 주요 보직자는 알고 있었고, 또한 사후에 언론에도 공개하였음.

- 자금지원은 동독정부가 서독의 바이에른(Bayern) 주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한 후 1983년 10억 마르크 정도의 규모로 동독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이는 서독정부가 재정보증을 서는 민간차원의 융자 형식이었음.
 - 서독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자금 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조건을 붙일 수는 없었으며, 협상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했다면 동독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
- o 1972년 통일기본조약 체결시 동독에 대한 국가인정에 있어 그 문구 및 국가인정과 관련한 대외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 기본조약 제1조에는 “동독과 서독은 각각 상호간에 협력을 하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양자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각각 유엔 가입을 할 수 있었음.

3. 통독과정에서의 병력감축과 인적 전환

가. 일시 · 장소 : 2003. 3. 12. 09:00 ~ 14:00

에버트 제단(본)

나. 면담자 : 소령 Leo Fink (독일 국방성 인사국 진급/보직 담당)

Mr. Rolf Mühlhaus (독일 국방성 인사국 직업훈련담당)

다. 주요 내용

1.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병력감축 과정

(1) 개 요

o 1990. 10. 3일은 독일의 통일과 동시에 궤동독군(NVA)의 해체가 이루어진 날임.

- 갑작스럽게 다가온 통일이지만 평화적 통일이었음.

- 그러나 NVA 병력에 대한 인간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음.

- 10. 3일 이전에 NVA의 장군 및 제독, 55세 이상의 직업군인은 전원 전역조치 되었으며, 여군은 민간보직으로 전환되어 통독시 독일군이 인수한 NVA 병력은 9만여명이었음.

- 당시 서독군의 병력이 49만 5천명이었는데 소련과의 합의에 의해 94년말까지 37만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했으므로 통상적인 인사원칙이나 복지대책을 그래도 적용했을 경우에는 계획된 감축을 이룰 수가 없었음.

o NVA 병력의 인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통일조약이었음.

- 당시 4만명의 의무복무자와 5만명의 장기복무자는 1,500개의 부대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감축은 우선 연방군 동부사령부에서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국방성(각군본부)로 지휘체계와 업무가 이관됨.
- 이들에 대한 인수 및 감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 문제와 병행하여 정치적/사회적 통합 분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그러한 조치의 하나로 동독군이 패잔병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장비 조작병과 기술병 등은 기존의 업무를 하던 그 곳에 그대로 일하게 하였음.

(2) NVA 인수병력의 선발 및 감축

- NVA 인수병력의 선발의 감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짐.
- 1단계 선발 / 감축
 - 인수병력 9만명중 자발적인 전역자를 제외하고 독일연방군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장병은 5만명이었음.
 - 대기병력 1,000명은 계급장도 없이 근무도 하지 않는 병력으로 집에서 선발여부를 대기하는 병력으로 6개월간 허용하였으며 봉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함.
 - 계속 근무병력은 49,000명으로 일단 계속 현 보직에서 근무토록 하면서 세부적인 신상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舊서독군과 연령 등 균형유지를 위해 임시계급을 부여함.(예 : 15년이상 근무한 소령은 소령으로, 15년 이하로 근무한 소령은 대위로 조정함)
 - 이 5만명 중에서 자발적인 전역자와 정치장교, 슈타지 동조장병, 군사 재판 등 관련된 법무장교 등을 강제 전역조치함으로써 2만 5천명(장교 11,700, 부사관 12,300, 병 1,000명)이 잔류하였는데, 이들에게는 시한부로 2년간 근무할 기회를 부여함.

○ 2단계 선발 / 감축

- 시한부 근무장병에 대한 선발 평가 / 판단은 신상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매우 제한됨.
- 2만 5천명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18,000명을 선발함. (장교 6,000, 부사관 11,200, 병 800명)
- 이때 이들에게 최종적인 계급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인수단계의 계급과 비교해서 평균 2계급정도 하향조정된 계급이었음. 이는 강등차원이 아니라 꺾동독군의 계급구조가 장교가 약 30%로 지나치게 많아서 보직도 서독군의 부사관이 수행한 업무를 장교로 보직되었고 진급도 서독보다 훨씬 빨랐음. 따라서 평등을 위해 서독군의 기준 적용이 불가피하였음.
- 이 18,000명중 장기복무 지원자는 15,000명이었음.

○ 3단계 선발 / 감축

- 최종선발은 지금까지 해당부대에서 실시한 선발/감축과는 달리 장교는 국방성에서, 부사관은 각군본부에서 전반적 병력충원계획에 입각하여 실시
- 최종선발을 위한 기준은 ① 상관이 판단한 근무평정, ② 적성 및 신원조회(금전문제여부, 개인신상 및 가족관계 등), ③ 과거 슈타지(Stasi)등의 활동경력여부 등이었으며, 신상관련 자료는 과거 동독시절 보안관련 자료를 관리/분석하는 기관(Gauck Behörde)에서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짐.
- 장기복무자중 직업군인(장교만 해당)은 연방군차원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29명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Ausschuß)의 심사를 통해서 선발여부를 결정함.
* 주요 선발기준 : 민주주의 정치이념 및 체제 적응가능 여부

- 심사대상자 2,650명중 2,000명은 1차 심사인 서류심사만 실시하여 통과하고 650명은 2차 심사인 면접까지 실시함. 이 중 35명은 탈락하여 직업군인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1993년 9월, 최종적으로 10,800명(장교 3,000, 부사관 7,600, 병 200명)의 장기복무자를 인수하였으며, 이때부터 이들에게는 舊서독군과 동등한 보직 및 인사조치를 부여하여 지휘관 보직(현재 인수병력중 최고 계급은 대령), UNO등 해외병력 투사에 참여, 홍수피해 복구지원 등 대민지원 참가 등으로 “하나의 군대”라는 의식을 견지토록 하고 있음.
- o 이러한 선발/인수 이후로 별도의 출신에 따른 동·서독군 구분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동·서독군 통합은 독일 연방대통령도 인정하였듯이 성공적인 과정이었고, “타 분야에서의 통합의 본보기”로 인정받고 평가됨.

2. 전역병력에 대한 사회화 지원

- o 독일 연방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 직업훈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후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거 직업훈련에 더욱 관심을 경주하고 있음.
- o 舊서독의 사회보장체계는 크게 연금보험, 의료보험, 사회보험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舊동독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통일후 일정부분의 변경이 불가피하였음.
- o 인수되지 않은 병력에 대한 지원
 - 대상 : 통일후 바로 전역자, 대기기간후 전역자
 - 동독장교 출신들은 많은 인원을 군속으로 재고용하였으며, 동독지역 군속인원의 90%까지 과거 NVA 장교 출신으로 인수

- 상기 미인수병력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회보장체제로 흡수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노동청에서 자격기준 수준평가를 실시하였고 군인으로서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사전보험기간과 보험료 납부없이 보험혜택을 부여함.(이러한 조치는 1996년 종결)
- o 2년 복무후 전역한 병력은 노동청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복무중에는 연방군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2년후 전역하도록 지시된 인원에게는 하루라도 더 근무하더라도 보험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감축을 유도하기도 함.
- o 2년후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인원에게는 연방군 차원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 o 현재 연방군에서는 37개소의 직업훈련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직업훈련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군 복무기간중에도 복무연한에 따라 전역전 일정기간 동안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예 : 12년 복무군인은 10년간 군 복무후 2년간 직업훈련준비기간으로 활용 가능)

라. 질문과 답변

- o 전역장병들에 대한 직업교육시 어떤 분야의 직업선택을 선호하였는지
 - 초기에는 건설업종, 건축업종, 개인경영 등에 관심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IT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교육을 위해서 외부의 전문인력들의 지원이 불가피함. 그래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방성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000명이 복무기간중 직업훈련 혜택을 받았음.

- 복무기간 후에도 직업훈련기간에는 복무연한에 따라 일정기간(12년 복무자 : 3년) 연방군에서 가족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응을 위한 비용이면서 동시에 병역기피자에 대한 홍보효과도 병행하여 고려한 것임.
 - 연방군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군내 직업훈련 수준이 일반사회의 직업훈련 수준보다 더 높으며, 사회에서도 군 출신 기술자에 대한 선호도가 좋음. 또한 복무기간중 학위취득 장교들은 경영자 등으로 높은 지위에 취직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는 직업훈련 사무소별 상호정보교환체계가 잘 발전되어 사회의 소요기능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이러한 군 직업교육 체계에 대해서는 6~7개 국가에서 모범사례로 배워가고 있으며, 연방군 자체적으로도 노동청과 연계하여 직업알선/교육/소개를 계속하여 군 복무기간중 습득한 기술, 기능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도록 협조하여 추진중에 있음.
- **舊동독군 인수병력 심사시 어떤 인원이 준비하고 결정하였는지**
- 초기 선발에는 자료의 부족으로 상관의 근무평정을 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에 신원조사 등에는 연방 방첩대(MAD)와 舊동독 문서보관청(Gauck-Behörde)의 지원을 받음. 그리고 직업군인 선발에는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을 거침.
 - 구체적으로 5만명에서 2만5천명으로 감축시는 단지 상관의 평가에 의해서만 판단하였으며, 2만5천명에서 1만8천명으로 감축시는 9개월의 시간만이 부여되어 상관의 평가에 의존하였고, 1만5천명으로 감축시 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연방군 방첩대(MAD), 슈타지 문서관리청(Gauck-Behörde), 심사위원회 등의 지원과 조치를 받음.

○ 10,800명으로 최종인수후 舊동독군에 대한 대우 및 진급 등에 대한 차별적용은 없었는지

- 이후부터는 모든 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음.
- 단지 예외적으로 봉급에서의 차별적용이 있었고, 보직문제도 93년 최종인수후 1~2년 동안만 제한하였음. 이는 헬기조종, 기술, 법적문제 등의 기능에 대해서 각종 서독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추진 능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음.

○ 舊동독군에 대한 연차별 봉급수준 상황은

- 연차별 舊서독군 대비 舊동독군 출신 장병의 봉급수준은 다음과 같음.

적용일시	91.7.1	92.5.1	92.12.1	93.7.1	94.10.1	95.10.1
수준(%)	60	70	74	80	82	84
적용일시	97.9.1	98.9.1	00.8.1	01.1.1	02.1.1	03.1.1
수준(%)	85	86.5	87	88.5	90	92

- 이는 군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연방 전 공무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이며, 이후의 계획은 예산 편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미정 상태이며, 100% 목표년도는 2007년임.

○ 봉급체계 상이에 따른 불만은 없는지

- 이러한 불만은 항시 있음. 그러나 물가 및 생활소요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음.
- 참고로 서독출신 동독지역 근무자는 기존 서독지역 근무 군인과 동등하게 봉급을 받고 있음.

- 통일전 NVA 자체감축시 서독군의 지원은 없었는지
 - 서독의 지원은 없었음.
 - 이때는 양독간 군 통합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동독에서는 기존의 연방군의 일부분이 되어 2개군이 존재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서독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 NVA 자체감축시 제시한 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은 실제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음.

- 94년말까지 37만명으로 감축을 위해서 서독군 자체감축 노력은
 - 강제적 전역조치는 전혀 없었음.
 - 구체적인 조치로 단기복무자의 전역시 추가로 보충을 하지 않은 것이 라든지,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을 실시하였고, 군 구조개편시 전반적 보직수를 축소하여 장교 및 부사관의 자발적 전역을 유도하였음.

- 동·서독군 통합간 동독군내에서 반란 등 통합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없었는지
 -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음. 슈타지(Stasi)는 오히려 군이 민중에 동조할까봐 걱정하는 상황이었으며, 젊은 군인들은 총을 놓고 다 떠나고 나이가 많은 군인들이 총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 다만, 통일이후에 동독출신 군인들이 만일 그 당시에 반란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소문이 났다고 생각됨.

4.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 방문

가. 일시 · 장소 : 2003. 3. 13. 10:00~13:00 / 연방 직업훈련연구소(본)

나. 면담자 : Mrs. Monika WELTER (BIBB 공보실)
Dr. Joachim ULRICH (BIBB 경제분야 연구원)
Mr. Klaus BERGER (BIBB 연구원)

다. 주요 내용

1.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의 개요 - Mrs. Monika WELTER

o BIBB의 조직 및 연혁

- 1969년 직업훈련법에 따라 1970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총 490명이 근무하면서 직업훈련을 위한 연구, 개발, 조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직업을 알선하는 곳이 아님”)
 - 1981년 직업훈련촉진법에서 350개의 훈련 직종을 규정
 - 교육과학부의 감독을 받으며, 노동부와는 별개의 조직임
 - 재정은 정부재정으로 조달됨.
- ※ BIBB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국회”라는 별칭을 가짐.
- 연방정부, 주정부, 노동계, 경영자의 4그룹별로 16개 연방주마다 선발된 인원이 BIBB의 회의체를 구성하며(64명의 인원), 세부규정의 개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만장일치의 찬성이 필요
- ※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체계(Dual system)
- 직업교육은 사업장(Training company)과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서 실시됨.

○ 주요 업무

- 직업 목록, 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대한 세부규정의 정립
- BIBB 백서발간 : 전 독일의 직업교육에 관한 통계 발간
- 직업훈련모델 개발 등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 수행(1,500만 마르크 투입)
- 직장인의 사업장의 재교육 알선 연결(연 1억1,000만마르크 투입)
- 직업훈련 연구 및 미디어를 통한 원격강의 연구
- 훈련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 국제적인 교류 · 협력

2. 독일의 직업훈련 현황 - Dr. Joachim ULRICH

- 독일에서 새로운 훈련 계약 및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 · 공급
 - 직업훈련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BIBB의 위상도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간에 직업교육의 편차가 심함.
- 2000년 9월 현재에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신연방주에 집중되고 있음.
 - 통독당시는 95년에 양 지역이 평준화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
 - 동독의 국영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던 청년층의 실직문제가 큰 문제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통독 초기에는 직업훈련을 담당할 기업체가 없었으므로, 정부에서 그에 대신할 직업훈련학교를 설치 · 운영.

- 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자가 됨. → 정식직업훈련수료자에 비해 실업률이 3배 이상
-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음.

o 신연방주의 청소년 실업

- 25세 이하 청소년의 실업률은 서독의 경우 8%에 불과한데, 동독의 경우 16%, 심하면 30%
- 주민 수에 비하여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업체의 수를 비교해 보면 동독이 결코 적지 않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장래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지 않음.

o 동독지역 직업훈련정책의 실패사례

-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연수생 1인당 2만 마르크의 돈이 든다면 5천마르크를 재정지원)
 - 직업훈련신청을 하는 기업은 증가하였는데도, 실제로 직업훈련생수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정부의 보조금이 너무 적었기 때문임.
 - 현재는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는데도, 직업훈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보다 기업체의 훈련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2000년 현재 청소년층이 가장 많은데, 이들의 직업훈련이 문제되고, 2012년에는 직업훈련수요가 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동자의 수가 부족해진다는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 * 현재 의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EU에서도 노동에 관한 국경철폐를 논의 중임

- 현재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무직종의 인기가 높는데, 이러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는 출생을 감소에 따라 동독지역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는 측면을 본다면 몇 년 후에는 동독지역의 실업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신연방주의 직업교육 - Mr. Klaus BERGER

- 신연방주의 실업문제
 - 동독의 경우 직업학교가 따로 없고 작업현장인 기업에서 곧바로 직업 훈련을 실시
 - 통일후에는 이 기업체들이 모두 도산함으로써 직업훈련을 받던 청소년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자격증 소지자들도 실업당하였으므로, 한동안 직업훈련에 대한 의욕을 상실함
 - 또한 80년대초 동독의 출산장려 정책의 결과도 현재의 청년층 실업 증가의 한 원인임
- 2001년 신연방주에서는 7,000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는데 비해, 구연방주는 훈련생이 부족함
- 신연방주를 위한 특별훈련프로그램
 -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재정부담으로 행하는 프로그램
 -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직종에 대해서도 훈련을 실시함
 - 이 후 차츰 훈련직종을 조정
 - 직업훈련교사 육성프로그램
 - 가능한 기업체 자체부담으로 육성하되, 설립허가시 교사육성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지원이 있음.
 - 신연방주에서 기업체가 유지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실패함.

o 긴급 프로그램

-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직업연수프로그램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전독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신연방주를 대상으로 활용됨.
(2004년부터는 사회보장법상의 프로그램으로 편입)
- 4,000명 정도가 직업훈련을 받았으며, 1년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음.
- 주요 내용
 - 직업의 종류 및 자격
 - 기업체 내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 직업연수를 위한 기초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
 - 직업연수를 중단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
 - 직업연수가 종료된 사람들에 대한 직업보수교육
 - 직업연수기간 중에 취업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임금보조
 -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업자 대상프로그램
 - 동독 청소년의 서독 직업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정부보조
 - 동독 청소년 중 사회부적응자에 대한 인터넷 연수 등의 직업훈련프로그램 등

라. 질문과 답변

- o 독일경제가 좋지 않아 실업자가 4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독일경제가 안 좋은 이유중의 하나가 대학에 가는 학생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독일 내부에서 직업교육보다는 대학교육을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는
 - 현재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은 충분하고 직업교육의 수준도 꽤 높아 기업체에서도 직업교육원 출신들이 인기가 좋은 점 등을 들어 직업교육의 비중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음.
 - 현재 7명중 1명이 직업훈련을 선택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수준 높은 직업훈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임.

5. 독일연방의회 체계

가. 일시 · 장소 : 2003. 3. 13. 15:00 ~ 17:00 / 에버트 재단(본)

나. 면담자 : Prof. Franke DECKER (본 대학 정치학과 교수)

다. 주요 내용

- 독일의 국가기구에 대한 개괄사항을 아래의 순서로 설명
 - 국가의 형태
 - 의회중심주의와 정부체계
 - 중앙정부의 권력분산 : 지방자치
 - 사법체계 :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 권한

1. 국가의 형태

- 독일은 연방공화국임.
 - 독일은 공화정이며, 정점에 연방수상과 연방대통령이 있음.
 - 독일의 대통령은 의전상 서열이 1위이지만, 사실상 모든 권한의 행사
는 연방수상에 주어져 있음.

2. 의회중심의 정치 체계

- 독일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
 - 국가 주요 정책 결정이 국회의 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짐.

- 의회 의석의 다수당이 권력을 유지하며 내각에 입각하여 정부를 구성
 - 정부는 항시 다른 정당에 의해 실각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
- 민주주의의 질은 정권교체가 가능하나와 안정에 있음.
- 독일의 경우 54년의 민주주의 역사중 2번의 새로운 선거를 통한 강제 수상교체가 있었으며(1972년 브란트, 1982년 콜),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3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음.(1969, 1982, 1998년)
 - 이처럼 안정된 정부, 최소화된 정권교체가 달성가능한 이유는 바로 안정된 정당체계에 있음.
- 독일의 정당 체제
- 독일 민주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기본바탕은 뿌리깊은 독일의 정당 시스템 덕분임
 - 80년대 초에는 3개의 정당(CDU, SPD, FDP)이 있었으며 FDP가 있어서 대규모의 정당출현을 방지하였고 당시 die Grünen(녹색당)은 소규모였음.(지금은 FDP보다 더 큰 3번째 정당임)
 - 90년대초에 PDS라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바로 옛동독의 SED 정당의 후신임. 옛서독지역에서는 거의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역할을 전혀 하고있지 못함.
 - 2002년 선거로 현재는 'CDU/CSU/FDP 연합의 정치그룹'과 'SPD/녹색당 연합의 정치그룹'이라는 2개의 큰 정치세력이 존재함.
 - 독일에는 많은 정당이 난립하기가 곤란한데, 그 이유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연방의회 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의 차이 때문임.

o 연방의회(Bundestag=하원)의 의원 정수 및 구성

- 국민은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의원 후보자 개인에게 한 표, 지지정당에 한 표를 투표하는 방식임.
- 연방의회의 의석 정수 656석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함이 기본 원칙이며, 주(州) 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과 인물위주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가미한 독특한 선거 형태임.
- 656석중 일단 절반인 328석씩은 지역구에서 인물본위의 선거로서 선출하고, 나머지 328석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정당별 전체 득표율에 따라 전체 연방의회 의원의 정당별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함.
- 독일 선거의 기본은 국회의원 개인을 뽑는 것보다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

3. 연방제 :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의 2차원적 국가체제

o 연방공화국인 독일에서의 주 정부의 위상

- 오랜 자치행정의 역사속에서 주 정부는 하나의 완벽한 정부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함께 정책 집행의 양대축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완벽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음. 그런데, 세금, 법적 규정 등은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연방정부에 의한 간섭이나 개입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짐. 이는 법률 등에 대해서까지 주별로 완벽하게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o 연방상원(Bunderat)의 역할 및 구성

- 주 정부의 대표 69명으로 구성되는 연방상원이 존재하며, 법안 등에 대하여 연방의회 통과 이후에 주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법안의 유형에 따라 연방상원의 통과 절차가 필수인 것(60%정도)과 필수가 아닌 것(40% 정도)으로 나누어짐.
 - * 60%의 법안은 세계 등 주 정부에도 중요한 법안들임.
- 연방상원이 거부하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 따라서 야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확보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안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 정치학자 : “독일은 다수당 민주주의가 아니라 합의식·민주주의 체제임”

<2002년 현재의 상원, 하원 의석 현황>

- 연방하원의 경우, 의원 정수 603명 중 사민당/녹색당 연합이 306석으로 다수당 차지
- 연방상원의 경우, 의원 정수 69명중 야당인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합이 41석을 차지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다르다는 문제는 30여년간 계속되어 온 문제인데, 오히려 이것이 여·야간 균형과 합의를 존중하는 독일 정치체제를 이끌어 온 동력이 되었음.

라. 질문과 답변

- o 통일과정에서 옛동독 신연방주(구동독지역)에 대한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의 의원 정수 배분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동독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의석수 배려가 있었는지 여부
-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동독의 주들이 서독의 연방으로 편입되는 방식의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전 서독의 시스템이 거의 그대로 적용됨.

- 하원의 경우 신연방주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비례하여 의원정수를 배분하도록 하고, 상원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주정부별 대표자 배분 기준에 따라 의원 정수를 배분.
 - 통일 이후 상원의 경우 5개의 주에 대하여 24개의 의석이 늘어났는데, 신연방주의 의석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구연방주 중에서 일부는 그 정수가 1명 정도 늘어난 경우도 있음.
- 연방의회 또는 연방상원에 진출한 舊동독 출신 의원들이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재건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례가 있는지
- 동독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일부 국회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첫째, 수의 역부족이라는 한계와 함께, 둘째로 정당 중심의 독일 정치체제라는 한계로 인하여 의원 개개인의 활동은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
 - 특히, 동독 지역의 이해관계를 직접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은 PDS(舊동독의 SED가 전신)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의 지지도가 높지 않고 의석수도 적어서 역량 부족임.
-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재건 또는 동서독 지역갈등 해소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 연방정부에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최근 슈뢰더 총리가 측근인사인 장관 1명을 신연방주에 대한 배려·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하였음.
 - 행정부의 기관설치에 따라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그에 관한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통일이후 편입한 신연방주를 5개로 나누게 된 이유는
- 1950년대 동독 정부 초기에 5개 주로 나누었던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임. 그런데 그 구분은 바이마르 공화국시절 이후부터 지속되어 오던 주별 경계선임.

6. 연수 프로그램 중간평가 및 향후 일정 안내

가. 일시·장소 : 2003. 3. 14. 10:00~12:00 / 에버트 재단(본)

나. 담당자 : Mrs. Brigitte Goergen

(에버트재단 국제개발협력국 아태지역과 담당)

Mrs. Claudia Schillinger

다. 주요 내용

o 아태지역 담당과장 인사말

- 재단의 입장에서 중간평가는 중요함. 이를 통해 앞으로 보다 나은 프로그램 계획 가능
- 많은 사람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이를 다 충족할 수는 없음. 단체연수기간의 면담은 주로 일반적인 내용이 많지만 개별과제 연구를 위한 사전정보로서의 가치는 있음.
- 한국에서의 상황이 독일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지 참고로서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o 연수단 강평 및 주요 애로/건의사항 제시

- 강사의 강의내용을 사전에 배포하여 강의의 대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질문 내용 및 자료요청도 사전에 전달하여 미리 강의나 토론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으로 한정시키면 효율적인 토론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강의노트의 사전 배포가 어렵다면 최소한 강의 시에 강의내용에 관하여 1-2장 분량으로 영어로 된 요약본을 나누어주면 강의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강의 내용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도 많고, 독일통일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는 형식의 강의를 되었던 것 같음.
- 일반적인 내용은 연수단이 한국에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단체연수시 개인별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 강의시간을 대폭 줄이고 토의시간을 늘려서 개인별 관심사항을 질의/토의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에버트 재단측 답변

- 초청강사의 성향에 따라 강의 노트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은 채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에는 강사들에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전달하겠음.
- 질문의 경우 강의 도중 즉석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사전 질문내용으로만 그 토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겠지만, 시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강의를 있기 며칠 전에 질문지를 제출해주면 강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강사에게 다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향후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강사들에게 요청을 하겠음.
- 연수시기 초반에 본(Bonn)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대개 개론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향후 베를린(Berlin)에서의 일정은 주로 개별 연구과제별로 방문기관을 배치하였으니,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활용하기 바람.
-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강의내용을 전달하고 질문과 토론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강사들에게 전달하겠음.

7. 舊동독 외교관의 입장에서 본 동독붕괴 원인

가. 일시·장소 : 2002. 3. 17. 09:15~12:00 / 에버트 재단(베를린)

나. 면담자 : Prof. Hans Maretzki (전 북한주재 동독대사)

다. 주요 내용

○ 舊동독 몰락의 원인분석 및 북한과의 비교중점

- | | |
|------------|-----------|
| - 동독의 건립배경 | - 경제문제 |
| - 민족문제 | - 정치성의 문제 |
| - 반체제 증후군 | |

1. 동독의 건립배경과 붕괴요인

○ 동독과 북한은 공히 소련에 의해 분단 / 건립

- 내부적 혁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에 의해 형성
- 1955년 당시 동독에는 공산당은 거의 없었으며, 일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 따라서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립은 불가능하였음.
- * 통일이후에도 舊동독의 건립 책임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음. 서독인들에게 동독체제 유지 이유를 질문시 "SED"라고 답변
- 따라서 실제의 분단 원인제공자는 점령국이면서 혁명사업을 추진한 소련이라고 할 수 있음.

o 북한과 마찬가지로 소련은 동독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사업을 추진

① 사유제 폐지, 토지개혁으로 농지 분배

- 동독 : 동독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1946년 소련 점령군에 의해 실시 (10% 농민소유, 20% 지주소유, 70% 국가소유)
 - * 통일이 된 현재에도 토지반환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북한 : 소련이 직접하지 않고 김일성에게 위임하여 정부차원에서 실시 (86% 남한인 소유, 10% 일본인 소유)
 - * 한반도 통일시 토지문제만 가지고도 큰 문제가 될 것임.

② 산업의 사유제 폐지, 국유화

- 동독 : 95% 독일인 소유 → 동독정부가 몰수 (통일후 반환가능)
- 북한 : 95% 산업체가 일본인 소유 → 해방후 몰수 (한국인에 피해는 없음)

③ 사회적 권리 확보 : 남녀평등, 1일 8시간 노동

o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특징

- 모든 권력은 공산당이 소유, 유일정당으로 타정당 건립은 불가
- 1949년 동독에는 공산당과 사민당이 존재하였다가 통합되어 SED 라는 정당이 형성됨
- 그 외의 다른 정당은 일명 '블럭정당'으로 CDU, SPD, NDP(Nationale Demokratie Partei, 국가민주당) 등이 존재하였으나 민주주의 흉내를 내기 위한 정당으로 실제 권력은 전무함. (CDU는 실제로 1989년 까지 존재하였음)
- 북한도 마찬가지로 해방후 중국 연안파와 합동으로 노동당을 창건함.

- * 북한대사로 역임시 실제 투표소에 간 적이 있음. 1946년 당시 유리투표함으로 공개투표를 한 것을 자랑하였으며 지금도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 당시에 흑백투표함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지지율은 100%임 (흑백투표함을 미사용하는 동독도 지지율이 98~99%였음.)

o 건립배경 측면에서의 동독과 북한의 차이점

-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은 존재하고 있고 동독은 소멸되었다는 것임.
- 동독의 사회주의 혁명은 국제적 성향을 띠고, 북한의 혁명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띰.
 - 독일은 1933년~1945까지 나찌(National Sozialismus)를 경험함에 따라 패전후 포츠담 선언에서 “독일의 정권은 반민족주의가 되어야”, 즉 국제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이후 1948년 동독 건립당시 동독내에서는 독일식과 소련식의 체제적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소련식의 성향을 추종함. 이후 소련 사회주의의 복사판으로 1989년까지 100% 소련의 위성국가였음.
 - * 이러한 점은 동독붕괴의 원인중 하나로, 공산혁명이 내부육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소련)의 수입에 의존하였으므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권으로 인식하지 않음.
 - 독일통일 : “외부에서 강요한 혁명적 체제에 대한 내부적인 수정/수리”
 - 북한은 1945년 공산혁명시 반일제 민족주의 성향을 띤 많은 노동자, 농민 등 하부로부터의 지지가 있었음. 동독과는 달리 일본인 축출 등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자기들 손으로 실시
 - * 소련의 태도도 상이함. 동독에는 혁명을 강요하였으나 북한에는 혁명을 자극하면서 지원함.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도자를 임명함. 당시 북한에는 공산당 지도부 역할을 할 인물이 없었음. 김일성은 실제 공산당은 아니었으나 소련의 입장에서 내세우기 쉬운 사람이었음.

- 따라서 북한은 형식은 공산혁명이면서 내용은 민족적 혁명이었음.
김일성은 공산주의 성향보다 민족주의 성향이 더 많았으며, 그는 북한식 스탈린주의자로 모든 아이디어는 스탈린, 레닌의 흉내를 내거나 모방하였음.
- 동독은 민간인이 정치권력을 소유한 반면, 북한은 군인이 정치권력을 소유 (김일성은 소련군 장교로 군내 정치장교 교육을 받음)
- * 동독총리와 김일성 방문시 언변이 좋다는 것을 느꼈음. 그는 유일한 효율적인 정치권력유지 수단은 군사식 명령체계라고 강조

o 소결론

- 북한의 혁명은 민족적인 것이었고 처음부터 군사정권을 추구함. (현재 김정일이 군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님)
- “정치”에는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에 갔을 때 사회주의의 가장 올바르지 않은 형태가 북한이라고 생각했음.
- 현재 북한은 가장 가난하고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낙후되었지만 내부적으로 강한 요소(민족주의, 군사주의)가 있음. 이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됨.
- * 이러한 요소는 동독처럼 사회주의 논리로 주민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결속력이 강함.
- 사회주의는 실험임. 이 실험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음. 자본주의도 꼭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기능’을 발휘함. 동독과 북한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실험장이었고 둘 다 실패하였음.

2. 경제문제와 붕괴요인

○ 동독은 전후 보상을 3중으로 함. 1차로 1945년, 2차로 1945~50까지 소련에 대한 배상, 3차로 1950~1970의 재산업화

- 전후 각종 산업기반 / 생산품을 소련이 가져감. 반면, 서독은 미국의 마셜플랜으로 많은 지원을 받음.

- 경제적으로 소련에 예속 : 45% 수출이 소련과 교역하는 것이며 소련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판매가격은 동독의 수익율을 최소화하도록 책정

○ 1989년 당시의 동독 경제상황

- COMECON 국가내에서는 가장 선진국가

- 서독과 비교시 낙후된 산업시설과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산업선진국과 산업후진국의 통합

○ 동독경제 붕괴요인

- 자본의 부족으로 산업체 혁신이 불가능

- 질 좋은, 시장경쟁력이 높은 생필품 생산이 제한

- 최신기술의 빈약 (전자분야 : 서독과 비교시 10년정도 뒤처짐)

* 상대적으로 북한에는 동독에서 전자분야를 지원함. 이는 동독제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었음.

- 비효율적인 소련경제와의 접촉

* 북한이 COMECON 가입을 거부한 것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임.

o 북한경제의 붕괴요인

- 주된 요인은 주체사상으로 인한 폐쇄적, 고립적 경제활동임.
- 1950년전까지는 북한이 재건노력과 일본 잔재의 영향으로 남한보다 산업발전에 있어서는 앞섰음. 이후 한국전쟁시 파괴와 경제재건비용을 군사비에 투자함으로써 산업발전 약화 초래
- 김일성은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모든 것을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이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불가능한 일임.
 - * 1960~70년대 북한공장 방문시 모든 기업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있는 것을 확인함. 예를들어 “자전거를 주체식으로 발명”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존재하는 것을 다시 발명하고 있었음. 이는 당연히 기본적인이고 최초의 형태로서 세계시장에 팔 수가 없음. 이는 스스로 경제력을 파괴하는 조치였음.

3. 민족문제와 붕괴요인

- o 동독은 1957년까지 “연합”형태의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2개국가 유지를 추구하였던 반면, 북한은 연합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연방제를 주장함.
- o 동독이 통일에 반대한 이유는 연방체제로 통합시 동독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임.
 - * 마찬가지로 북한 정치가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질문할 경우 답은 명확함. 따라서 남한의 일방적인 화해협력 정책이 실제로 화해협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임.

4. 정체성과 붕괴요인

- 분단은 경제, 문화 등 상이한 체제의 형성으로 기인함. 따라서 이러한 체제간의 통일은 한 체제가 소멸되고 다른 체제가 이를 접수할 경우에 만 가능함.(주체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한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음)
 - * 이런 요지를 한국의 통일부에도 기고한 바 있는데,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음.
- 과거 동독의 지도부는 연방 또는 연합제로는 통일이 불가하며, 한 쪽이 없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
 - 따라서 동독은 1972년 기본조약을 인정함으로써 2개국가로의 유지를 추가하였고, 동독학자들은 분단국가로서의 수용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하였음.
- 북한의 경우 처음부터 민족주의적으로 한 민족임을 선전하고 홍보함. 그 이면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일단 이런 점은 통일이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임.
 -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남한정부의 “화해”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정체성의 차이로 쉽게 화해할 수는 없을 것임. “화해”는 하나의 체제가 될 때(통일)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것임.

5. 반체제 증후군

- 동독과 북한은 반체제 운동을 위한 여건이 상이함.
 - 동독은 타 체제에 대한 별도의 거부감은 없었으나, 국가독트린은 항상 서독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항상 모든 분야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었음. (이런 영향으로 통일후에도 학교/교육체계, 보육체계, 대학문제 등에서 이견이 상존)

- 북한은 남한의 지속적인 개방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고 폐쇄성을 추구함.

* 김일성 : “동독이 서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계속 행동하는 것은 지속성이 의심스러움.”

- o 동독은 동독 및 서독의 TV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었음. 또한 1950년부터 1985년까지 375만명이 동독을 이탈하였고 가족간 및 업무상 여행도 허용되었음.

* 동독 및 북한 장성간의 회담시 TV 시청에 관한 일화

- 동독장군 : “우리는 모든 장교들이 서독 TV를 시청한다.”
- 북한장군 : “너희는 그러면 행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북한은 개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 o 이러한 동독의 개방성이 통일의 주된 요인중의 하나임.

6. 동독의 붕괴요인 (개인적인 견해)

- o 동독주민의 대다수가 실존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거부
- o 80년대 이후 동독내부의 저항세력에 대한 통제능력 약화
- o 안정의 3지주(정당, 국가기구, 보안기구)의 기능발휘 제한
- o 엘리트 계층의 자체적인 체제유지 및 보호의지 결여
- o 서독에 대한 적대감 상실
- o 소련의 붕괴

라. 질문과 답변

- 사회주의는 실험이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는데 ‘기능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 첫째, 경제적·기술적으로 현대화하는 기능,
 - 둘째로 정치적으로는 혁신할 가능성,
 - 세째로 긍정적인 미래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능,
 - 네째로 개혁이 가능한 시스템
 -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음
- 김일성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 내용은
 - 공산주의보다 민족주의 성향이 더 강했음. 사회주의의 개념적 특징은 만인의 평등인데 김일성이는 모든 권력을 개인이 다 소유하고 주민은 권력이 전혀 없음.
 - 과거 북한방문시 그의 왕궁(?)을 보았는데 예전의 “왕”의 모습이었음.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라는 북한에서는 모든 재산을 공산주의자들이 소유하고 있었음.
 - 김정일 생일시 고기선물은 하는데 인민재산의 재분배가 아니라 김일성 개인재산의 분배였음. 따라서 북한의 공산주의는 픽션(Fiction)임.
 - 북한은 구조상으로는 공산주의이나 내용적으로는 민족주의적·봉건주의적·유교적 체제임.
 - 남한의 각종 저술에서는 김일성주의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없음. 동독의 경우는 물론 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동독 공산주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8. 舊서독 정치인의 시각에서 본 동독붕괴의 원인

가. 일시 · 장소 : 2003. 3. 17(월) 14:00~17:00 / 에버트 재단(베를린)

나. 면담자 : Dr. Hans-Otto BRÄUTIGAM

(전 브란덴부르크주 법무장관, 전 駐동독 서독 상주대표부 대사)

다. 주요 내용

- 붕괴요인을 분석하려면 큰 틀을 먼저 이해해야 함. 동구 및 소련의 붕괴는 큰 틀이며 동독은 그 틀 속에서 하나의 과정임.
- 독일의 통일은 소련 붕괴라는 체제이행 과정의 한 특수한 과정이었으며, 소련의 붕괴가 없었다면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임.
- 따라서 동독의 붕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독정권을 유지시키는 4지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명확해 질 수 있음.

※ 4지주 : ①소련 해계모니의 보호, ② 공산주의 이념, ③ 경제능력 - 주민의 생활수준 ④ 통제 및 감시체제

1. 소련 해계모니의 보호

- 동 · 서독의 국경 = NATO와 WTO의 경계
 - 독일은 미국 주도의 서방세계 동맹과 소련 주도의 동구권세계 동맹의 사이에 존재
 - 양 동맹체제는 동 · 서독지역에 높은 무장력을 보유
 - 소련은 동독에 40만명의 소련군을 보유 (동독군 20만명의 2배)

* 동독주둔 소련군의 임무

- ㉠ 대외적으로 동·서독의 경계와 더불어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서방 세계와의 경계 유지
- ㉡ 내부적으로 지도층과 주민과의 관계유지, 필요시 무력개입 (예 : 1953년 노동자 봉기시 소련군에 의한 무력진압)

○ 따라서 소련의 입장에서 동독정권 유지 포기는 생각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음. 왜냐하면 소련으로서는 독일문제가 곧 유럽문제이며 가장 핵심문제였으며, 동독을 통해서 동구권에 영향력 발휘가 가능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1989년 가을, 동독내에서 소련입장에 회의(懷疑)가 발생

- 고르바초프가 WTO내 문제에 소련군의 불개입을 선언(브레즈네프 독트린 포기)함에 따라 동독은 소련이 더 이상 국내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 결국 동독은 소련의 보호를 상실하였고 동시에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소외됨으로써 세계와 격리됨으로써 정권유지가 곤란하였음.

2. 공산주의 이념

- 마르크스는 독일인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발전시켰고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소련의 이념이 됨. 그러나 1989년 변혁기는 이러한 이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선전문구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 실제 동독 사회주의는 사회복지차원의 제도로 정착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임.
 - 일명 이러한 “소비공산주의”는 1980년대 들어서 더 이상 국가재정으로 충족이 곤란하였고 서독에서 돈을 꾸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음
 - 더 이상 정권지탱이 곤란

3. 경제적 능력

- 동독의 국민생활 수준은 소련을 포함해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높았음.
- 그러나 서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음. 동독 주민들도 서독 TV 시청 등을 통해서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소비에 대한 수준상향을 요구함.
 - 동독은 소비재 경쟁에서 충족이 불가능함. 지는 싸움을 한 것임. 서독은 1980년대 고도성장으로 유럽에서 최고수준의 경제상황을 보여주었으나, 동독은 소련과 더불어 경제성장이 감소함.
- 동독의 경제성장 감소 이유
 - 에너지 비용의 증가 : 소련은 동맹국에게 원유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요구하였고 동독은 석탄 외에는 원자재가 없었으므로 비싼 에너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었음.
 - 저조한 투자 및 잘못된 투자
 - 너무 많은 비용을 소비재에 투자하였고 또한 석탄 등에 투자
 - 가장 큰 투자실책 : 자체적인 PC 및 컴퓨터 칩 생산 시도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나 서구보다 100배나 비싸서 시장경쟁력이 전혀 없었음.)
 - ※ 이는 동독이 세계시장에 종속을 거부한데서 기인함. 경제적 종속의 심화는 타 국가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음.
 - ※ 자립경제 시도 → 엄청난 비용 소요 → 외화 부족 → 외채 증가 → 국가부도 위기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원가능 국가는 서독이었음.)

- 결론적으로 동독이 피하고자 하는 정책(종속 반대)의 결과가 오히려 서독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게 됨.
 - 이러한 종속은 서독과의 여러 분야(교통합의, 전화연결 합의, 서독 방문 여행자유 등)에서의 정치적 합의를 도달하게 한 원인이 됨.
 - 특히 동독인의 서독방문 증가로 서독의 경제적 부유성을 체험하게 됨에 따라 탈국주민의 압력이 급증하여 1989년 여름에 최고조에 달함.
 - 이러한 탈국주민들 중에는 전문가, 기술자 등 엘리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경제발전에 타격을 가하였고 1989년 10월에 동독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을 즈음에는 동독은 경제적으로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4. 통제 및 감시체제

- 동독정권은 건국 이래 강력한 보안체제를 유지함.
 - 공식요원 뿐만 아니라 비공식 지원요원들이 사회 전체를 감시
 - 주민감시는 당시 공산국가중의 최고수준이었음.
- 주민억압체제는 80년대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함.
 - 이는 주위 다른 국가들을 포함하여 세계의 눈을 의식함에 기인
 - 1989년말 변화조짐기간에 슈타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이 기구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태도가 변경됨. 따라서 대규모의 평화적 시위가 보편화되었고 슈타지는 거의 대응을 못함.
 - 소련군의 보호를 기대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소련군의 명령체계하에 있었던 자체 동독인민군(NVA)에 대한 확신도 없었음.

-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감시/통제기구 활용과 병행하여 독일 공동의 역사 등을 강조하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시작
 - 1983년 루터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 실시 (루터를 동독국가의 선조인 것처럼 기념하여 동독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함.)
 - 1986년 프리드리히 대왕 2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 1988년 비스마르크 수상에 대한 평전 출간
- 1989년 들어서 수십만명의 인원이 데모에 나섬. 초기에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였으나 슈타지 등이 개입하지 않음에 따라 평화적 시위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화되어 장기간 굶었던 상처가 터진 계기가 됨.
- 1989년 11월 9일 동독은 내부의 압력에 지탱하기 곤란함에 따라 여행자유 등을 선포함에 따라 동독정권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음.
- 이후 1990년 3월 동독내 민주선거를 통해 공산주의 정권유지에 실패함에 따라 공산정권이 자발적으로 정권을 포기하게 됨

라. 질문과 답변

- 슈타지나 동독군이 데모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보안기구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이 없어서인지
 - 초기 데모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여서 국가차원에서는 위협이 되지 않았음. 데모 참가자들은 당시 천안문사태와 연계하여 무력진압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였으나 NVA 등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제 아무 일도 없자 데모가 증가하였고 이 때는 이미 시위규모가 너무 커져서 손을 쓸 수가 없었음.

- 지도부가 명령을 내릴 수도 없었음. NVA의 의무복무자에 대해 발표 명령을 하달시 그들은 자기 동료 및 친척들에게 충질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것임. 또한 명령체계상 바르샤바 조약기 구하에 있어서 소련이 불개입을 선언한 이상 군 조직을 통한 진압은 거의 불가능하였음.
- 통일이후 신연방주의 브란덴부르크주의 법무장관으로서 동독지역의 체제전환 업무를 담당했을 것인데, 서독의 법질서를 동독지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 동독 주민들의 적응속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 전체적인 적응은 잘 이뤄졌음. 가족법이나 법원조직법 등은 동독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쉬움. 아쉬운 점은 동서독 거주자간의 분배 불평등임
- 통일후 주 법무장관 등의 경험을 기초로 볼 때,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 부동산 처리와 병행하여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동독지역의 산업설비는 매우 낙후되어 국가에서 낙후시설만을 유지/가동시키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은 불가함. 따라서 동독지역의 40% 공장이 문을 닫음.
 - 서독 기업체는 우선 동독지역을 시장으로 보고 생필품 등을 판매했지만 시설 등 투자지역으로 보지는 못함. 또는 기존 서독시설을 확장하여 소비재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 동독인에 대한 일자리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었음. (실제 손실된 일자리의 50% 정도만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
 -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20~30%의 일자리 손실이 있었고, 현재 동독지역 실업율은 서독지역의 2배로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노인들은 현지에 머물게 됨에 따라 실업율 증가 및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됨.

- 따라서 한반도 통일시 가능한 최대한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민영화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민영화와 복구사업을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이 좋음. 또한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경우는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북한지역의 탈산업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너무 빨리 진행해서는 안됨. 그리고 제조산업분야는 유지하면서 천천히 체제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임.

다음은 가난한 북한에서 부유한 남한으로의 대규모 탈북자를 최소화하는 것임.

- 통일은 결코 순식간에 동등한 생활수준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임. 따라서 북한지역에 생활여건을 너무 빨리 변화시키지 말아야 함.
- 따라서 장기적 과도기를 두고 격차해소 노력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탈산업화 방지 정책은 필수적임. 물론 이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통일은 자체가 비경제적임. 그러나 경제적 문제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사항임. 장기간 분단후의 실질적인 통일은 1~2세대가 지나가야 가능한 일임.
-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과도기적 과정을 도입해야 함.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북한지역에 머물도록 해야 함. 물론 이는 남한의 모든 비용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외부의 차관 등 재정지원을 받으면 우선 조치가 가능할 것임.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북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임.

- 처벌 일변도의 정책은 좋지 않음. 공무원들을 신속하게 통합시켜야 함. 이를 위해 소규모의 경미한 체제상의 비인권행위나 부당한 과거에 대해서는 사면조치를 해야 함. 물론 대규모의 비인간적 행위는 마땅히 형사처벌을 해야 함.

- 신연방주 법무장관으로서 통일후 동독지역에서 이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성공을 못함. 오히려 PDS(구동독 SED의 후신)가 성장함. 따라서 모든 민주정당은 공산주의 정당에 대해서도 개방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공산주의 정당이 형성되기 때문임.

실패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음. 그리고 통일은 계획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님. 갑자기 일어나는 일임. 통일은 합리적·이성적으로만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비합리적인 과정임. 감정은 이성보다 강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피할 수는 없을 것임.

9. 통일과정에서 국영기업 민영화 및 노조의 역할

가. 일시 · 장소 : 2003. 3. 18(화) 10:00 ~ 17:00 / 연방재정부

나. 면담자 : Mrs. Brigitta KAUSERS (재정부 민영화/특수사업과)

Mr. Richard Graf zu EULENBURG

(통일과 연관된 연방특임청 청장실 참모)

Mr. Peter SENFT

(베를린-브란텐부르크-작센주 금속노조위원장)

다. 주요 내용

1. 신탁업무 종결 및 민영화 지원

- 동독은 1972년에 그전까지 일부 남아있던 민영 및 공공기업을 몰수하여 국유화함. 그러나 이러한 사유화 경험은 통일후 민영화에 큰 도움을 줌.
- 통일후 초기에 민영화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음.
 - 동독은 500명이상 종업원 사업장이 40.9%(1,401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서독은 19명이하 사업장이 459,572개소로 88.2%)
 - 과거 중앙계획경제체제하에서 통제가 용이하도록 대규모 사업장을 묶어서 관리함에 따라 이런 시설들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민영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
 - 시설이나 기술수준도 낙후되어 10년이상된 기계설비의 비중이 50.6%였으며, 5년이하 최신설비는 27%에 불과하였음. (서독은 10년이상 30.1%, 5년이하는 40.2%임)
 - 1990년 가을기준 신탁청이 관리한 업체는 8,500개의 기업, 20,000개의 개인사업체, 900개의 서점, 2,000개의 약국, 250억 평방미터의 부동산 등이었음.

o 1990년 6월 7일, 통일전 동독은 신탁관련법을 제정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함.

- 동법 전문에는 법 제정 목적이 “가능한 신속하게 국영기업의 민영화”임을 명시

- 이는 동독 민주정부가 시장경제 진출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제정당시 서독의 전문가들 조언을 받음.

- 인민재산 매각시 일부를 인민에게 돌려준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나 실제로 매각후 남은 재산은 없었음.

o 신탁청의 역할

- 투자자에 대한 지원작업, 경영합리화,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매입사 아이디어 실현 작업지원

- 박람회 지원, 동독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MBO/MBI 지원, 낮은 근로자 임금의 제시, 매각 금액보다는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최신기술이 동독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

o 신탁청의 구조

- 초기는 50~10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4,000여명으로 확장 구성

- 15개의 지역별 지부 구성 (근무자 비율 : 36% 3,826명 중앙청 근무, 64% 6,718명이 지부 근무)

* 지부 구성의 장점은 매입희망자를 현장에서 직접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임.

- 감독기구 : 집행이사, 연방정부(관련부처), EU 위원회, 연방하원, 연방 회계감사원, 독점감시청, 기타 언론매체

○ 신탁청 업무 평가

- 실제 사업장의 가치가 상충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업무추진 구도 및 개념을 유지할 유지하고 판단기준으로 함.
 - 일정한 숫자의 일자리 보장
 - 일정기간 동안의 투자규모 보장
 - 사업전략 : 장기적 안목, 최신기술 유입 등
 - 판매수익금
- 당시의 아이디어는 신탁청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었으나 신탁청 자체를 기업으로 인식, 그러나 재정이 빈약
- 낙후된 시설 + 민영화 경험부족에 의해 신탁청의 한계.
- 향후 동일업무를 추진한다면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장기구상을 먼저 하고 목표지향적 매각 등을 실시해야 함.

2. 동일과정에서, 특히 꺾동독 국영기업 민영화과정에서 노조의 역할

○ 1989년 상황

- 동·서독 노조의 접촉이 없었던 상황에서 전환기를 맞게됨.
- 동독기업가들은 통일시 시장확대에 포커스를 맞춤. 동독투자에는 관심이 없었음. 서독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독인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라고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음.

○ 동일과정에서 노조가 제시한 민영화 원칙

- 임금협상 자율성 인정 : 노사간 협력을 통해 결정, 국가 불개입
- 정부가 최소임금 미설정

- 경영조직에 대한 동등한 적용
- 공동결정권 부여 : 중요사안 결정에 대해 노조 개입허용
- 민영화시 노조의 참여 허용
- 정치성향을 띤 노조(과거 SED하의 단일노조) 반대, 서독식 노조구조 적용
 - * 실제 최종결정안 : 동독노조 해체('91.1.1부)후 서독노조의 조직을
 옛동독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동독인 가입을 유도

○ 민영화 과정

- 민영화 결정 준비, 자료 확인
- 투자자 물색
- 개념작업, 구조조정 및 과정 판단, 생산/판매 분석
- 고용구조 결정 : 경쟁, 교육, 보수교육, 해고 등
- 고용회사에 의한 고용 / 교육 실시
- 1, 2, 3차 민영화 (일시적 과정은 불가)
- 국가의 재정 지원

○ 전환과정에서 노조의 결정과정에 참가방법

- 제도적 참가 : 신탁청, 통일관련 연방특임청(BvS)
- 경영적 참가 : 경영조직 또는 경영협의체, 회원구조, 임금협약

○ 경험에 따른 분석 / 평가

-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노조의 참여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
 - 경영협약체 없이는 성공하지 못함.
 - 조기퇴직제의 사회적 보장이 필수 (50세이상에 대해 적용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
 - 경영협약회와 노조간 긴밀한 경영협조
 - 투자자들이 국가의 지원없이는 투자를 기피
 - 고용인에게 임금/노동시간 단축 등에 요구시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함.
- ※ 동일준비시간 및 준비 부족으로 “learning by doing” 불가피하며, 민족의 특성이 바로 민족의 해결책이었음.

라. 질문과 답변

- o 신탁청 업무가 종결(15,000개 기업을 민영화)후 현재 어떤 분야의 기업이 생존하고 있는지
 -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탁청에 의한 민영화 기업이 일반 민영화 기업보다 생존률이 더 높았으며, 그 비율은 일반 민간기업의 시장경제에서의 생존비율과 유사함.
 - 분야별로는 수요 특성상 초기에는 건설업이 붐을 조성했으나 현재는 위기상황이며, MBO 업체들이 노하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상 자본이 튼튼할수록 생존이 더 용이하였는데, 에너지산업이 생존율이 높았고 화학산업은 보통수준임.
- o 민영화시 바우처와 주식시장에 의한 민영화가 있었는지, 만약 없었다면 그 이유는
 - 러시아와 체코의 경우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바우처나 주식시장에 의한 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법은 사용하지 않음.

- 그 이유는 한마디로 바우처는 자본이 아님. 독일에서는 자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자할 사람을 찾았음. 체코의 경우 바우처방식의 민영화로 약 7~8년 정도 민영화가 지연됨. 자금도 계획보다는 3배나 더 소요됨. 체코의 경우를 보더라도 바우처 시스템 사용시 재매각으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음. 따라서 바우처 방식은 현실적이지 못한 방법이며, 특히 동독이나 북한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한 방법임.
- 학자들이 MBO 모델을 훌륭한 모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을 사용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 ‘Rotkäppchen’이라는 샴페인(Sekt)회사는 동독 경영인이 매입하여 사업을 하다가 서독 경영자가 추가로 출자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구서독 관련회사까지 매입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Florena’라는 화장품회사는 동독인이 매입/경영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대기업에 매각됨.
 - ‘Multicar’라는 운송관련회사는 동독인이 매입하여 현재 서독기업과 합병하여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청산위기의 기업을 인수한 경영자가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생 민영기업보다 신탁청에 의한 민영화 기업이 성공률이 높음.
- 신탁청 활동에 어려움을 준 사항이 있다면
- 먼저, 신탁청 업무를 위한 동독내 사업체 현황 등이 없었으며, 둘째,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화폐의 1:1 교환을 함에 따라 동독기업의 생산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 없었음. 반영하면 너무 비싸져서 아무도 구매하지 않을 것임. 다음은 시설의 낙후성을 들 수 있음.

또 동독인들이 동독내 생산품보다 서독의 생산품을 더 선호하는 것도 기업생존을 위해 어려움 중의 하나였음. 예를들어 과거 동독내 가장 인기가 있던 트라비 자동차의 경우 최소한 8~10년은 기다려야 차를 인수할 수 있었는데 통일후 서독자동차만 구매하니까 수요가 급감함. 일반적으로 모든 동독상품에 대한 수요는 30~40% 수준이었음. 이러한 수요감소로 생산업체의 재정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신탁청의 지원이 불가피 하였음. 동독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기업체의 2% 정도만이 생산성 유지가 가능하고 50%는 지원이 있으면 유지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청산해야 할 기업체였음. 제품도 동독제품의 1/3정도만이 서독제품 수준이고 나머지 1/3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나머지 1/3은 시장성이 거의 없었음. 따라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으며,

또한 과거 콤비나트 형태의 자체조달 방식이 해체됨에 따라 원자재 구입 및 조달문제도 과제중의 하나였음.

생산측면에서는 동독인들도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경영측면, 특히 판매전략이나 자금조달 등에서는 미숙한 점이 많았음. 신탁청에서 지원하기에는 인력이 제한되어 외부의 전문가들(법률가, 변호사, 경제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투입하는 조치를 취함.

민영화 우선순위 책정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였음. 자금유동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민영화하였음. 1990~1991년에 많은 자본가가 동독기업체에 관심을 보였으나 93년 이후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신탁청에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였음. 조기 민영화에 대한 신탁청에 대한 압력도 점증하였고, 자생력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기업체, 은행 등에서 공동자금 지원으로 자생력을 지원함. 그러나 EU정책에 의해 2000년 이후에는 동독지역 기업체에 대한 별도의 자금지원은 불가함.

결론적으로 신탁청 활동 초기에는 약 5,000억 DM 정도의 이익을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2,300억 DM의 적자가 났으며, 이익을 동독인들에게 재분배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제로는 서독인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요구하게 되었음.

- 1993년 노조의 대규모 파업의 원인과 이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 1993년 파업의 원인은 동독출신 노동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금을 올려 주기로 한 협약을 사용자단체에서 파기했기 때문임. 사용자단체에서는 동독출신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이 너무 늦기 때문에 최초 약정대로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노조에서 이에 반발하여 파업을 하게된 것임.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4~5년이 넘게 걸리게 되므로 파업의 방법을 택한 것임. 파업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대립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었음

- 통일과정에서 추진된 정부의 정책이 노조와의 이해관계가 달라 정부와 노조가 서로 갈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
 - 1989년 ~ 1990년대 서독정부에서 사용자와 노조간의 단체임금협약을 개별 사업장별로 협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려했음. 그러나 이는 독일 노조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으므로 노조에서 크게 반발. 또 통일이후 신탁청과 노조간에 노조측 대표자 선임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신탁청이 주장을 철회하고 노조에서 선임한 대표자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음

10. 신연방주 생태계 개선과 발전

가. 일시 · 장소 : 2003. 3. 19(수) 09:30 ~ 11:30

연방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로안전부

나. 면담자 : Mr. Peter HART (생태계 개선국 국장)

Mr. Michael RÖDER (신연방주 생태계 개선과 직원)

다. 주요 내용

- 신탁청의 상당한 재산이 매각되지 못해 동독지역에 탈산업화 현상이 나타났음. (생산활동 중지 및 방치)
 - 경제가 우선이고 환경은 후순위였음
 - 동독의 인민소유 재산처리과제, 환경보호 빈약 → 감독기구 필요
 - 독일법의 확대적용, 행정공무원 동독 파견 → 신탁청에서 처리
- 서독의 모든 환경관련 규정이 동독에 적용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음(탄광, 우라늄광산, 원자력발전소, 산업시설 등)
 - 6개의 원자력발전소 → 환경안전기준 미달
 - 사회기반시설이 환경친화적이지 않아 환경에 부담 (폐수처리, 원자력 폐기물 처리시설 등)
 - 비용문제는 연방과 주정부간 대립 :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부담
 - 사업장 일자리를 유지하고 국가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국 국가가 환경에 투자.
- 통일이 급격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일처음 했던 작업이 정보수집 및 자료수집이었음.
 - 3개의 큰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 및 정책을 추진함 : ① 환경관련 사회기반시설, ② 수자원/대기/토양오염, ③ 노후시설

o 환경관련 사회기반시설

- 동독의 상수도는 90%이상이 중앙시설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총 6,527개소의 공공 상수도 시설이 있었음. 수질도 서독기준 적용시 저질이였으며 살충제 등이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상수도를 오염시키고 있었음. 우선조치로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일정기간(6개월~1년 6개월) 이동식 식수공급을 실시하였고, 이후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음.
- 오폐수의 경우는 생활오수가 14억m³였는데, 80% 이상이 처리없이 방출한 것임.

o 수자원/대기/토양오염

- 42%의 하천, 24%의 호수가 심하게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사용이 불가하였는데, 주된 원인은 중금속이 오염된 폐수의 방출과 농업시설에서의 농약사용이었음. 특히 동독의 해안들은 오염으로 인해 수영금지구역으로 설정해야 했음.
- 동독은 유럽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나라중 하나였음. 1989년 기준으로 이산화황은 서독기준의 11.5배, 먼지는 10배가 많았음. 이는 공업시설에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o 노후 시설 : 산업시설, 광산시설, 군 시설

- 산업분야에서는 폐기물창고, 산업시설 등 102,543개소를 오염의혹 및 관리시설로 판단하고 산업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주에서 40%, 연방에서 60%의 비용을 분담하여 총 100억 마르크(DM) 예산책정으로 정화하고 있음.
- 갈탄 광산시설은 주에서 25%, 연방에서 75%의 부담을 가지고 130억 DM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110억 마르크를 기지출하였는데, 총 12만ha에서 현재까지 6만ha를 환경개선 함.

- 우라늄 탄광은 연방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130억 DM을 계획하여 총 3,698ha를 처리하고 있음.
- 군 시설, 특히 소련군 주둔시설은 연방재산관리청(Bundes -vermögensamt)에서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연방예산을 투입하여 정화하고 있음. 군 시설은 우선 무기고, 불발탄 방치/매몰지역 확인등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폐유오염, 특수폐기물, 탄약 등 다른 오염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舊동독군의 시설은 자체규정의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저조하였음.
- o 독일은 지자체의 실업구제를 위해 공단을 조성하였으나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우선함
- o 해양 투기는 유럽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음. 3년이상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저장 불가. 밀폐된 폐기물의 저장소로 해양투기는 하지 않고 육상 저장

라. 질문과 답변

- o 소련군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복구 방법과 그 비용은
 - 조사/분석결과에 대한 처리 모두 용역으로 해결되었음. 이 모든 과정을 연방자산회사에서 수행했으므로 환경부는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 환경부는 복구기준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함.
- o 통일후 공무원 파견시 파견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있었는지
 - 32,000명의 서독공무원을 동독지역에 파견. 처음에는 3년정도 기한으로 파견하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 동독지역에 가서 3년 활동하면 승진에 혜택이 있었고 수당도 많아 지원자가 많았음.
- o 한반도 통일시를 가정하여 환경분야 조치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환경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협조하는 것임.

통일이 되자마자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은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임. 독일에서도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환경정책 추진시는 과도기적 경과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야 함. 문제를 인식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추진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

11. 베를린 경찰청 방문

가. 일시 · 장소 : 2003. 3. 19(수) 14:00~17:00

베를린 경찰청 경찰역사박물관 내 도서관

나. 면담자 : Mr. Polizeidirektor Karsten GRÄFE (홍보국장, 총경급)
Mr. 1. Polizeihauptkommissar Hans-Joachim HARDTKE

다. 주요 내용

1. 경찰역사박물관 견학 및 인사 (Mr. Karsten Gräfe)

○ 경찰역사박물관 견학

- 프로이센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찰의 제도 및 복장, 장비 등의 변화상에 대한 전시물 견학
-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시기에 있었던 각종 역사적 사건과 범죄에 관련된 유물 등 전시

○ 환영 인사 및 소개

- 1980년대만 하더라도 전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통일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닥쳐왔고 그로 인해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오가면서 양쪽의 경찰관이 함께 근무를 하게 됨.
- 동독지역에 새로운 체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범죄의 다양한 유형변화와 사회적인 불안도 경험
- 13년이 지난 지금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벽이 남아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없어질 것이고 그 동안 많은 긍정적 반전이 있었음.
- 독일 통일의 경험이 한국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램

2. 동·서 베를린 경찰의 통합 (Mr. Hans-Joachim Hardtke)

○ 관할구역 및 기구의 통합

- 분단이전 베를린의 경찰은 20개(서독 12, 동독 8)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경찰 관할구역이 존재하였으나 1974년 이후 서베를린은 5개의 관할구역으로 재편되어 동베를린과는 다른 관할체제를 갖게 됨
- 또한 임무와 기구면에 있어서도 동베를린의 경우 경찰이 소방업무, 철도경찰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는 등 서베를린과 많은 차이가 있었음.
- 결국 장벽이 무너지고 동베를린과 통합하게 되자 서베를린 경찰의 5개 관할구역을 동베를린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기구와 관할구역을 통합하게 됨
 - * 동베를린 경찰에서는 통일협상 당시 동베를린을 3개의 관할구역으로 재편하여 동베를린 경찰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서베를린에 의해서 거부당함.
- 1993년경 5개의 경찰 관할구역을 7개로 재편하여 동베를린 경찰과 완전히 통합되었고 현재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인력의 통합

- 통일이전의 계속된 협의 결과에 의해 1990.10.1. 정식 통일이 되기 3일전에 이미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경찰이 합동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동베를린 경찰관 2,700명이 서베를린에서, 서베를린 경찰관 2,323명이 동베를린에서 교환근무를 하였음.
 - * 당시 서베를린 경찰은 20,466명, 동베를린 경찰은 11,797명
- 통합과 함께 우선 동베를린 경찰의 고위 간부급 100여명 정도가 자진 사퇴하거나 면직되었고, 나머지 경찰관들도 경력과 나이 등에 따라 몇 계급씩 강등되었으며 동베를린 경찰의 지휘부를 서베를린 출신의 경찰관으로 충원함.

- 1990. 3월 총선에 의해 새로 구성된 동독 정부에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를 확인해서 삭제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를 확인한 후 동일이후 경찰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사람들은 미리 자진하여 사퇴를 하거나 전직하였음.
 - 동베를린의 잔여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각자 75개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 이력을 진술하게 하였고 경찰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임용여부를 심사하였는데 심사 대상자 9,600여명 중 454명이 면직되거나 자진 사퇴함.
- 동베를린 출신 경찰관에 대한 재교육
- 통일 이전 동·서 베를린 경찰관들의 교육체계가 많이 달랐으며 통일 이후에 동베를린 출신 경찰관들이 계속 경찰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동베를린 출신 경찰관들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생김
 - 동베를린 출신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4주간 기초교육을 받게 하였고 기초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1년 동안은 업무시간외에 별도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교육기간이 끝난 후 시험을 통해서 정식 공무원으로의 임용여부를 결정하였음.
 - 기초교육과 그 이후의 1년간의 교육이 모두에게 동시에 행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세미나를 통한 재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는 "learning by doing"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게 됨.
 - 교육과정중에서 전직을 하거나 시험에 떨어져 재임용에 탈락한 자도 있었고 정년퇴직자도 있어 총 교육수료자는 8,000여명 가량 되었음
 - 동·서 베를린 경찰관들이 서로 많은 이질감 속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며 처음 통합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은 많이 해소되었고, 계속 새로운 세대들이 경찰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

라. 질문과 답변

- 동베를린 주민들과 서베를린 출신 경찰관들간의 갈등이 있었는지
 - 동독은 철저한 감시체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동베를린 주민들에게 서베를린의 경찰관들은 자유의 상징으로 보여졌고 따라서 갈등은 없었음.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동베를린 주민들의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경찰관의 법 집행에 대해 때로는 무력으로 대항하기도 함. 기본적으로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경찰과 갈등관계에 있을 이유는 없음.
-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경찰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와 통일과정 및 그 이후에 동베를린 경찰관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는지
 - 서독경찰과 동독경찰은 서로 직업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달랐기 때문에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음. 서베를린 출신 경찰관들은 동베를린 출신의 경찰관들이 업무에 익숙하고 장비도 잘 다루지 못했으며 심지어 운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업무를 가르치면서 해야 한다고 불만이 많았고, 동베를린 출신 경찰관들도 서베를린 출신 경찰관들이 동베를린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고 불만이 있었으며 보수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음.
 - 승진에 대한 불만은 교육시간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통일당시 강등되었던 사람들이 일정 교육을 마치고 재능과 성실성을 보여주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불만을 해소시켰음.
 - 동베를린 출신의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한 사례는 없음. 이미 양쪽 정부간에 법률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에 저항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임.
- 베를린의 예비경찰(Polizei Reserve)은 어떠한 제도였는지

- 서베를린은 동독 내에 고립된 섬과 같이 존재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동원할 인력이 필요했음. 따라서 장벽이 설치되었던 1961년에 비상사태시 무보수로 동원되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예비경찰이 창설되었음. 서베를린의 예비경찰은 1,500여명 가량 되었는데 통일 이후 그 필요성이 감소되어 2001년에 없어져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
- o 1989년 있었던 동베를린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동베를린 치안당국이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와 동독의 시위에 호응하여 서베를린에서 있었던 시위에 대한 서베를린 경찰의 대응은
 - 동독에서는 1980년 이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클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음. 독일은 기독교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교회내의 활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었음. 처음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서클 활동이 점점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었고 대규모 시위로 변화해 나갔음. 동독 지도층은 동독주민들이 두려움 없이 주장을 표출하는 대규모 시위를 처음 경험하게 되자 당황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었고,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점차 언론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게 되자 무력으로 진압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으며 결국 동독 전역으로 시위가 번지게 되자 더 이상 무력으로 진압할 수 없게 된 것임.
 - 반면 서베를린의 경우에는 시위가 국민의 권리였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되어 있었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교통 통제 등의 간단한 업무만 수행하면 되었고 위기상황으로 인식할 정도는 아니었음.

12. 연방정부의 동독재건 지원정책과 민영화 노력

가. 일시·장소 : 2003. 3. 20(목) 09:30 ~ 12:00 / 연방경제노동부

나. 면담자 : Mr. Rolf BRENNER (신연방주 경제정책과)

다. 주요 내용

- 통일당시 동독의 경제상황은 72년 국유화 정책으로 기존의 일부 사유재산까지 국유화 된 상태에서 판매루트를 코메콘내로 한정하였고 규모도 소규모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후 경제복구의 목표는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기존의 자원/기업을 복구하여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음.

1. 대규모 콤비나트 처리

- 처리원칙은 원소유자 반환이었으나 쉽지는 않았음. 왜냐하면 일부는 원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기업인이 활동이 부적합하거나 원소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콤비나트 특성상 여러사업이 복합되어 있는 등의 이유가 있었음.
 - 추진방법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하는 방법과 원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
- 콤비나트 처리는 신탁청에 일괄 인수되어 처리됨. 신탁청은 콤비나트를 분할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부채가 많은 기업체는 청산하거나 폐쇄조치하고 환경친화적인 복구작업 등을 추진함.
 - 이러한 조치로 15,000여개의 사업체를 매각하는 성과를 달성

2. 민영화 조치

- 민영화 방법에는 2가지의 구상(idea)이 있었음.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Sharehold Deal)과 기존의 시설/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임.
 - 동독인들은 일부 주식분배방식을 구상하거나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음.
 - 서독은 폭스바겐지분을 국민들에게 매각한 경우가 있음. 하지만 sharehold deal의 경우 이익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방법임.
- 많은 콤비나트를 경쟁력 있는 사업체로 매각. 신탁관리청의 매각원칙은 수익성보다는 투자성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업적 측면에서 접근되었음
 - 실제로 25,000개 사업만 구동독인 소유로 넘어갔음
 - 규모가 크고 중요한 기업은 MBI 방식으로 거의 서독인이나 외국인에게 매각되었음
 - 그리고 실제로 원소유자에게 돌려준 경우도 많았음
- 민영화 성과 (1997년 기준)
 - 민영화 동독기업중 50% 정도가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살아남았음.
 - 동독의 전통적인 핵심산업은 유지할 수 있었음.
(화학공업, 기계공업, 해안의 조선산업, 반도체산업, 포츠담의 영화산업, 아이젠낙의 자동차산업 등)

3. 투자자 지원

o 자금 지원

-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중요했음. 그 의미는 지자체에 재원을 마련해주고 지자체에서 투자가 유치에 노력하는 형태였음. 재원의 일부는 기반시설확충에 사용되었음.
- 독일에서는 연방분배기금이 있어서 부유한 주가 가난한 주에 돈을 제공해 주는 형태가 있음
- 투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일체 통제를 하지 않고 시장경제 기능에 맡김. 실제 연간 약 20억 유로가 지역에 지원되었으며 동일 금액의 EU 기금이 또 지원되었음.

o 세제 혜택

-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의 12~25%정도를 세제혜택으로 보상
- 초창기에는 투자금액의 70%가 지원금으로 충당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더 이상 이행이 곤란함.

o 투자가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o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창업지원이었음

- 그 형태는 재정지원이었고 방법은 초저금리 대출이며, 10년간 1천억 유로가 이 분야에 지원됨
- 이러한 지원으로 55만 기업체가 창업하였으며 이로 인해 35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음.

o 일자리 창출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음.

5. 기타분야 지원

- 사회기반시설 지원 : 철도, 도로, 통신, 병원, 교육시설 등의 신축
 - 현재 5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는 통일후 초현대식 시설의 구축으로 舊서독지역보다 나은 시설을 보유한 곳도 많음.

6. 평 가

- 통일후 舊동독지역의 발전상 수준을 舊서독 수준으로 비교하면 안 됨. 서독을 과거에도 선진국의 선두그룹이라 여기와 비교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부적절함. 오히려 폴란드와 비교시 적합함.
- 폴란드의 경우는 아직도 기존 콤비나트가 상당부분 민영화가 안되었으며, 기반시설도 거의 50년 전의 상태 그대로임. 임금은 동독보다 낮으나 실업률은 19%로 동독과 같이 높은 수준임. 중소기업 창출은 동독과 같이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업체의 외국인 유치는 동독지역만큼 성공하지는 못함.

7. 한국에의 시사점

- 중앙정부의 규제 간소화 및 통제 최소화
 - 국가에서 너무 엄격한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음.
 -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규제 및 국가개입이 부정적임.
- 투자여건 조성
 - 자금유동성 등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독일의 경우 EU의 규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재건사업에 일부 장애요인이 되기도 함.

- 재정지원시 가능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 신용대출 비중은 최소화. 신용대출지원은 부채증가 때문에 부정적 측면이 있음.
 -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기업에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주장과 균등분배 입장이 대립하는 등 지원방법, 지원 우선순위 등에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은 시장에 맡기기로 함.
- o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 : 직업전환교육, 직업교육, 재교육 등
- 동독의 경우는 고급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동구권 국가중에서는 재건시 가장 유리하였음.
- o 충분한 재건기간 산정
- 통일후 체제전환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수준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함. 최초 10년 정도면 재건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는 판단착오였음.
 - 물론 미국의 경우도 낙후된 주가 있듯이 지역별로 발전수준에서는 항상 차이가 날 수 있음. 일례로 라이프찌히(Leipzig)의 경우는 서독수준에 도달하였고 해안지역은 아직도 저수준임.
 - 미래는 아무도 모름.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가장 가난한 주의 하나였지만 실리콘밸리의 유치로 급성장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결국 동독지역의 재건문제는 세대가 이어가면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며,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가 동독지역의 핵심산업 육성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이행되었다는 것임.
 - 앞으로 남은 과제는 초창기보다 더 어려운 과제일수도 있는 혁신네트워크 구성임. 산학협력체제 구축,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임.

라. 질문과 답변

- 독일에서는 국영기업 민영화시 러시아 및 동구지역에서 널리 사용한 바우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 舊 동독 국유재산 사유화의 기본원칙은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는 원상회복이 되었음. 이미 통일 이전인 1990년에 동서독 정부간의 통일조약에서 경제통합의 기반이 서독의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임을 확인하였고 이 조약의 41조 1항은 동독정부가 불법적으로 몰수한 인민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이 원칙에 따라 동독건설이후 직·간접적으로 강제로 몰수되었던 모든 재산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했음. (예외 : 연합군이 1945년과 1949년 동안 점령하면서 몰수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환 원칙)
 - 따라서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바우처 방식은 법적기반이 없어 실시할 수가 없었음. 그러나 법적기반이 있더라도 소유권만 있고 재산가치가 없는 바우처의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동독기업들은 대부분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서독정부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함. 이러한 부실기업을 바우처의 배분으로 소유권이 넓게 퍼짐으로서 소액 주주들은 기업경영진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워짐. 바우처를 배분받는 동독주민들로서도 기업이 경영정상화되고 기업이 기업으로서 가치를 낼 수 있을 때 배당받은 바우처가 가치가 있을 것임. 따라서 바우처 배분방식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방법이며 사회주의의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통일과정에서 국영기업 사유화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되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하면 더 많은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다음 소유자가 직접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다고 생각함. 자기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으려 할 것임.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싸게 매각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그러나 가장 큰 오류는 서독정부에서 동독의 제조업 기반시설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일 것임. 또한 동독정부에서는 통일비용을 국영기업 매각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임. 원소유자에게 더 많이 돌려주었다면 금전적 손실이 훨씬 감소했을 것임.

13. 신연방주내 산업시설 이주

가. 일시 · 장소 : 2003. 3. 20(목) 14:30 ~ 17:00 / 독일경제연구소

나. 면담자 : Mr. Karl BRENKE (국내경기 담당과장)

다. 주요 내용

- 1925년 연구소 창립. 경제구조 개편업무를 담당. 독립적인 연구소이고 운영비는 연구수주를 받아 운영 (사기업체 연구 등)
 - * 한국정부의 위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험도 있음

- 경제적 몰락 과정으로서 통일을 이해. 동독은 외채에 대한 부담이 커서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었음.
 - 생산성에서는 많은 정보를 갖지 못했고 수출시의 교역을 보면 동서독의 화폐가치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했음.
 - 동독주민들의 기대를 반영 1997년 임금을 10%정도 인상해 준 적이 있음. 화폐통합으로 시장경제에 노출되어 더더욱 어려움을 갖게되는 현상을 초래함. 통화가치가 400% 올라갔음. 이런 사업체들을 서독에서 지원해 줘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1990년 말 동독주민들의 임금인상요구가 있었음. 지원들이 줄어들면서 거주비용도 증가되었고 서독의 2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
 - 많은 일자리가 감축되어 생산성이 높아짐. 경쟁력에 있어서는 비교할 만한 발전이 있었으나 생산성에서는 아직도 서독의 2/3수준. 동독의 실업률은 20% 수준 (460만명). 서독의 실업률 9%보다 높은 편임.

- 낮은 생산성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장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됨
- 농업분야 및 건설분야에 너무 많은 과잉노동력이 있음. 그리고 동부지역은 통일이후 산업화가 안됐기 때문에 기계 등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음. 고급인력도 부족함.
- 그리고 산업에서 생산지와 시장의 근접성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infra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음 (예, 시멘트 산업 등)
- o 동독주민들이 축적한 자본이 적어 운영할 수 있는 기업규모도 작음.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나 서독 투자가들을 구했어야 했음.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투자유치가 어려웠음. 일자리 1개당 100만 마르크를 사용했음
- o 결론적으로 소비/투자면에서 신연방주는 2/3정도만이 자체조달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오늘날 체제전환 비용은 연간 700억 유로가 소요되고 있으며,
- 동독주민이 한국과는 달리 독일전체 국민의 20% 정도임을 감안하면 한반도 통일시 인구수만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임.

라. 질문과 답변

- o 동독지역 제조업 상황과 통일이후 제조업중 문을 닫은 부문, 잘되는 부문, 새로 시작된 산업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면
- 노동집약적인 신발산업 및 방직산업은 통일이후 발전하지 못했고, 자동차 산업(GM, 폭스바겐) 및 반도체 산업은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며 새로 육성된 산업은 별로 없었음.
- 성장률만 본다면 동독산업을 서독산업에 비해 훨씬 빨리 성장했음.

- 동독지역 산업제건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육성한 산업이 있는지
 - 동독이나 서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만 생각함.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음. 국가개입은 불가했고 시장에 맡김.
 - 만약 국가에서 지원책을 강구한다면 너무 많은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말아야 함. 너무 복잡하면 투명성이 저하됨.
- 농업분야 과잉인력 해소를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수출지원, 품질향상 등의 정책을 쓰지는 않았는지
 - 농업분야는 여전히 과잉인력이 있음. 협동조합체제도 해체되었음
 - 해체시 조합중 협력체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개인적으로 탈퇴한 경우가 있음. 개인적으로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본인에게 농토를 주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협동체제내에서 유지되고 있음.
 - 현재 동독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농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동독의 농업생산성은 서독보다 높음. 독일내에서의 농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유지되므로 정보로서는 개별 영농규모가 클수록 전체적인 정부 지원 규모를 줄일 수 있음.
 -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농지규모가 작은 남부지방이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생산품가공 등으로 일자리 감소 문제는 해결되었음. 동독지역 영농인구 문제는 젊은 층이 서독으로 이동하여 통일이후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민영화 작업시 바우처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임. 원소유자 반환원칙에 따라 개인 재산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음.

14. 통일과정에서의 독일 의회 및 정당의 역할

가. 일시·장소 : 2003. 3. 21(금). 10:00 ~ 10:45

독일 연방의회 (메켈 의원 사무실)

나. 면담자 : Mr. Markus MECKEL

(하원의원, 앙케트위원회 사민당 대변인, 구동독 외무장관)

다. 주요 내용

○ 인사 및 경력 소개

※ 45분이라는 시간 제약 때문에, MECKEL 의원의 설명은 자제하고 관심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만 시간을 사용함.

라. 질문과 답변

○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양원제 의회제도내에서 연방상원(Bundesrat)과 연방하원(Bundestag)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 내부 민주세력의 투쟁이 승리했기 때문임. 독일 통일은 서독정부와 1990년 3월 동독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동독 정부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성을 가진 2개의 정부간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
-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분야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의회에서의 정치활동은 각 정당의 선거전략에 의하여 대부분 좌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통일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총체적 역할이 있었다기보다는 각 정당의 선거전략에 의한 정치적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통일전후의 과정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서독 의원이 참여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서독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활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음. (예를 들어 앙케트위원회).

- 통일후 동독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의석배분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동독에 대한 의석 배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 연방의회(Bundestag)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은 '선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1990년 3월 동독 지역에서의 선거는 '정당식 명부제'에 의한 것이었음.
 - 1990년 12월 전체 통일독일 의회 선거에서 최초로 동독지역에 대하여 지역별로 연방하원 선거구를 배분하였음(동독 지역의 주민수에 따른 의석 배분).
 - 사실 선거구의 배분보다 더욱 어려웠던 문제는 신연방주의 구성문제였는데, 이는 행정구역의 분할 문제라고 볼 수 있음. 당시 지역주민들간의 정체성이 비슷한 지역을 기준으로 신연방주를 분할하였음.
 - 연방상원(Bundesrat)의 의석배분과 관련하여, 구 동독지역인 신연방주에 대하여 상원 의석을 배분하면서 기존의 서독지역 중 일부 주의 경우에도 의석을 증가시킴으로써 상원 의석구조를 변화시켰음.
 - 특히 연방상원의 경우, 舊동독 지역인 신연방주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하여 새로 참여시키더라도 실제 의결의 주도권은 구 서독의 연방주들이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의석 구성을 조정하였음. (경제력이 강한 바이에른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이 서독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의석구성 변화를 주도함).
 - 따라서, 지금도 상원에서는 구 동독 지역의 신연방주의 대표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민당(SPD)의 동독지역에서의 지지율 변화 추이와 그 변화원인은
 - 동독 주민들은 1930년대 히틀러의 나찌 독재와 1950년대 이후 SED의 일당독재에 의한 지배를 경험한 바 있어, 정당을 통제기구로 생각하며 불신의 눈으로 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

- 그래서 구 동독 지역인 신연방주에서는 정당 당원 모집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음. 민주주의 정치와 선거에 있어서 주민의 정당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동독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참여가 부족함.
 -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는 콜 수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존에 동독에서 정당조직을 갖고 있었던 선점 이익으로 인하여 CDU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음. 1998년 이후부터는 CDU의 정책에 실망한 유권자가 SPD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동독지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서독 정당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동독지역 유권자들의 지지가 PDS(구 SED의 후신)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경향도 있음.
- 과거청산과 동독 재건 및 동서독 지역갈등의 조정을 위한 '앙케트위원회' 및 '새로운 주 관련 위원회'의 활동 성과는
- '앙케트위원회'의 경우, MECKEL 의원 본인이 제안해서 만든 위원회로서, 동·서독간 상호 이해를 위하여 동·서독 사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임. 그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동독 1당 체제 해체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시민권의 복원 문제, 교육시스템의 문제, 보험·연금 등의 적용 문제 및 1당 독재하에서의 인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활발히 연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음.
 - '새로운 주 관련 위원회'의 경우,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연방수상청산하 기구의 각종 정책 추진에 관한 의회 차원의 대응위원회로서 활동해오고 있음.
 - 동독 지역의 재건이나 지역 갈등의 조정을 위한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통일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동독과 서독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음.

※ MECKEL 의원 개인의견 추가 언급

- 동독의 재건 및 구조조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위원회 활동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참고로 MECKEL 의원은 동독 출신임).
- 특히,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임금비용'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비임금비용'이 발생하여 독일산업의 비용이 상당히 높아짐으로써 독일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한 문제가 있음. 독일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개혁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동독 지역의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하여 연방정부의 노력 또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함.

15. 주독 한국대사관 관계자 면담 / 오찬

가. 일시·장소 : 2002. 3. 21(금) 11:20 - 13:30 / 주독 한국대사관

나. 면담자 : 황원탁 주독 한국대사의 5명

다. 주요 내용

- 연수단 개인소개 및 연구과제 설명
- 현재까지 연수진행 과정 및 향후 연수일정 소개
- 주독 한국대사 인사말
 - 해외의 불비한 여건에서의 연수활동에 대한 연수단 노고 치하
 - 중요과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자부심 견지
 - 연구간 대사관 지원사항 있을 시 항시 연락
- 대사관 관계자 요청사항
 - 연수단의 연수결과, 해외사례연구집 등 관련 보고서를 독일 대사관에 도 배부선에 포함하여 발송 요청 (통일부)
 - 가능시 과거 연구자료도 발송 요망 (자료 공유차원)
- 대사 초청 오찬

16. 신연방주 정치교육

가. 일시 : 2003. 3. 24(월) 10:00 ~ 12:00 / 연방정치교육센터

나. 면담자 : Dr. Roland HIRSCHFELD (통일후 신연방주 담당과)

다. 주요 내용

- 연방정치교육센터(BPB) 연혁
 - 1952년 연방정부에 의하여 설립
 - 설립 당시에 냉전 시대라는 정치적 배경
- 연방정치교육센터 정치교육의 3가지 과제
 - 민주적 정치 질서에 대한 재교육
 -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의식교육
 - 통합유럽에 대한 독일 국민의 수용능력을 높이는 교육
-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성격과 정치교육의 다양성
 - 연방정부에서 설립하였지만, 정부의 선전기구는 아님.
 - 당시 정치교육센터와 함께 서독에서는 다른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들이 다양하게 설립되어 존재하였음. 예를 들어, 아데나워재단, 에버트 재단 등 각종 재단, 기독교 분야에서의 기독교아카데미센터, 노조·사용자단체에 의한 교육기구, 일반국민을 위한 국민교육학교 등이 설립되어 정치교육 활동을 수행하였음. 이들 정치교육 관련 단체가 약 850여개 존재하였음.

- 또한 연방국가의 각 주마다 주 차원의 정치교육 담당센터가 존재하여, 각 주별로 자율적인 정치교육을 담당함.

- 이러한 다양한 정치교육의 장을 통해서, 세력 균형이 도모되어 왔음.

o 연방정치교육센터(BPB)의 활동 내용

- BPB의 활동은 자체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자체활동의 내용

- 사회적 변화에 대한 독일 국민의 적응 정도를 고찰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유도하는 역할 수행.

- 교육기능 제고를 위한 전시회, 세미나 등 활동 지원

- 정치교육 기능을 가진 영화 지원 등을 통한 문화적 지원

- CD 등 각종 전자적 매체의 활용을 통한 교육·홍보 기능 강화

- 독일 통일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교육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도 교육 실시

- 이해관계의 상충 및 갈등관계의 조정 등에 관하여도 교육 실시

- 특히, 동독 출신 청소년에 대하여 '동독 역사의 소멸·증발'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중요한 문제였음.

- 또한 독일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신나찌즘, 폭력의 문제 등에 대한 연구 활동도 수행

- 동독 지역에 대하여 과거 역사의 청산 및 재조명과 함께 민주적 체제를 이입하여 동독 지역 주민들에게 민주주의 정치구조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2) 지원활동의 내용

- 다른 정치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활동 수행
- 재정 지원도 포함되며 그 규모는 2,250만불 정도 됨.
- 연방정치교육센터와 지원을 받는 기관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중점과제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40%정도의 교육과정이 그 중점과제에 할당됨(2002년의 경우 국제테러와 유럽통합이 중점과제였음).
-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선정과 예산지원시 교육프로그램, 전문가의 확보 정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o 신연방주에서의 정치교육 활동 내용

- 참여 의식 고양, 역사 인식 능력 제고, 정치교육 전문화 도모라는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
 -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역발전 계획 등에 대하여 젊은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적 정치질서 이해 및 시민의식의 배양을 도모함.
 - 역사 인식능력 제고를 위하여, 동·서독의 과거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식을 유도하고, 각종 경연 대회 등을 통하여 신속한 적응을 도모함.
- ※ 정치교육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동·서독 지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라. 질문과 답변

- o 민주정치 교육에 대한 동독 주민의 수용 정도는 어떠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므로 그에 대한 수용 거부 발생하는 경우는 적을 것임.

- 독일의 경우 각종 매체를 통해 동독이 서독의 제도와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민주정치질서에 대한 적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음.
 - 다만, 서독 지역의 경우 신연방주에 대한 각종 지원에 대하여 냉소주의적 시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주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연방국가의 성격을 가진 것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면서도 하나된 독일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남북한 통일시 북한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조언을 한다면
- 일단, 남북한 주민들간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통일 과정에서 양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호간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과거에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2개의 국가가 존재했었다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통일 이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동서독 주민간의 경제적·사회적 편차와 이로 인한 갈등에 대하여, 정치교육 차원에서 이를 설명하는 논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서 지역 갈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
- 정치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지역갈등 해소를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을 지역발전계획에 참여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사회'라는 시민 의식을 고양시키고 참정의 경험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지역갈등을 완화하는 정치적 기초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함.
 - 특히, 청소년의 민주정치 적응에 관한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주변여건을 조성하고, 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정치교육이 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7. 통일전후 '쑤 독일연구소'의 임무와 역할

가. 일시 : 2003. 3. 24(월) 15:00 ~ 17:00 / 에버트재단 (베를린)

나. 면담자 : Mr. Detlef KÜHN (前 쑤독일연구소 소장)

다. 주요 내용

1. 독일연구소 연혁 및 개요

- 1969년 설립되어 통일 이후 1991년에 해산
- 서독 연방정부의 내독성 산하 연구 기관
(한국에서의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과 유사한 기능 수행)
- 분단 상황 및 동독 지역에 대한 과제연구 활동
- 독일의 경우 분단 상황에서도 동·서독간 정보교류가 비교적 용이하였으므로, 독일연구소의 활동도 원만하게 이루어졌음.

2. 전독일 연구소의 업무 및 활동

- 분단상황 및 동독에 대한 일반적 자료 수집 및 분석
 - 주로 공개된 자료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일반적 연구활동 수행 (비공개 첩보 자료 등의 경우 정보기관의 역할).
 - 분단된 기간 동안 동독지역의 출판물, 신문, 방송 등을 정보원천으로 활용하였음.
- 동독 이탈자에 대한 자료 수집 활동

- 동독 이탈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동독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정보 획득 활동 수행

- 수집한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

○ 통일과 동독 관련 정치 교육 및 홍보의 실시

-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서독인들에게 동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함.

- 250여명의 연구소 직원으로 6천만 서독 국민 전체를 상대하기는 곤란하므로 주로 정당이나 노조 등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함.

○ 일반인에 대하여 통일 및 동독 관련 자문 역할 수행

- 1972년 기본조약 이후 자유화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안전한 여행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역할 수행

- 동독과의 서신 교환 등 우편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 동독 주민과 관련된 재산법, 가족법, 상속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담 실시

3. 통일과정에서 독일연구소의 활동

○ 동독에 관한 연구자료 등을 제공

-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1990년의 동서독 통일에 이르기까지 독일연구소에 대한 방문과 문의가 쇄도함.

- 동독인들의 경우 자기 자신의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하여 연구자료를 찾는 경우도 많았음. 교사나 언론기관 종사자들의 방문이 많았으며, 특히 법률적 자문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

- 서독인들의 경우 정치권 등에서는 동독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기업인들의 경우 동독 지역에서의 돈벌이 정보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
-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동독으로 파견되는 서독 공무원들의 동독에 관한 정보 문의 요구도 많았음.
- o 연구소 해체(1991.12.31)후 연구소에서 경험과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독 지역에 진출하여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통합 작업에 참여
 - Mr. KÜHN의 경우에도 동독지역, 특히 작센(독일의 주)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체계의 전환 및 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

라. 질문과 답변

- o 통일이 아무런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전독일연구소 등에서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예측을 할 수는 없었는지
 - 대부분의 서독 사람들은 아무도 갑작스런 동독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을 기대하거나 예견하지 않았으나, 자신을 포함한 일부 인사들을 동독의 붕괴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 서독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서독이 소련에게서 동독을 구매한다”는 것이었음. 당시 동독을 지배하는 것은 동독정부가 아니라 소련이었기 때문임. 따라서 소련의 개혁/개방정책과 연계하여 통일가능성을 연구소에서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콜 수상을 비롯하여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독붕괴의 징후로 통일전에 동독의 수입대 지출의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지하였으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 분석이었음.

- 일례로 동독주민의 탈주가 최고조에 달했을 1989년 8~9월에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본인이 BBC 등 외국언론으로부터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서독 언론매체는 관심이 경미하였음. 또한 인터뷰시 통일가능성에 대해 내비치자 정부에서 소련 등과의 관계개선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를 당부함. 이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연구소의 이러한 분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함.
 - 정치는 “중력의 성질”과 같음. “떨어지지 말아라”라고 주문해도 실제로는 다 떨어짐. 안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님. 독일의 통일은 그렇게 다가 옴. 한국의 경우도 독일의 경우와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중력의 원리가 작용하듯이 통일이 이루어질 것임.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임.
- 통일 이전에 농업 부문에서 동·서독간의 교류현황은 어떠했는지
- 동독 지역은 타 산업에 비해 농업이 발전된 지역이므로 농산물을 서독 쪽으로 공급해 주기도 함. 이 경우 감자, 설탕, 육류 등을 서독측에 공급하고 세계시장 가격의 금액을 받았음. 서독에 대한 농산물 교역이 동독으로서는 주요한 외화획득 수단이었으며, 이로 인해 동독에서 최상품의 육류가 수출됨으로써 동독내 공급 부족 현상이 초래되기도 하였음.
 - 농산물의 경우는 서독이 동독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었으나 서독 측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배려를 해 준 측면이 있음. 하지만 교역 자체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실제 서독 기업가는 이익을 남겼음.
- 서독 정부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수산물 교역을 할 수 있음에도 동독과 교류를 한 것은 동독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동·서독간 수산물 교류는 기본적으로 동독 정부와 서독의 민간기업간에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양자 모두 이익이 존재해야 교역이 가능한 것임. 다만,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교역 촉진을 위해 품질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필요 없는 여분의 수산물도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촉진한 바 있음.

- 통일 상황에 대비하는 실무를 준비하는 한국의 공무원에 대하여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 한반도와 독일의 상황은 서로 다른 점이 상당히 많지만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한다고 전제함.
 - 한반도에서 개연성 높은 통일과정은 '국가간 계약에 의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북한 지역에서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분단의 댐이 파괴시 그 물결을 지연시키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실무를 준비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 대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심리적 준비'를 시키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즉,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따른 범람의 상황이 불안이 아닌 '미래를 위한 기대'라는 사고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통일 이전에도 북한에 대한 일상적 정보를 계속 남한의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향후에 상호간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탈북 난민들을 잘 교육시켜 조기에 북한정보의 전달매체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임.

18. 舊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의 활동

- 독일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유산 극복, 국가비밀경찰(Stasi)청산, 과거에 대한 회고 및 미래에 대한 전망

가. 일시 : 2003. 3. 25(화) 10:30 ~ 12:30 / 舊동독 슈타지 문서관리국

나. 면담자 : Mr. Martin GRIESE (안내과장)

Mr. Michael MAY (교육 및 연구 담당)

다. 주요 내용

o Gauck 관청

- 'Gauck'은 동독의 재야 운동가이며 동독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으로 슈타지 문서관리국 초대국장으로 통독후 2000년까지 근무하였음
- 이 관청은 동독정보기관이 갖고 있던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독재정권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전달한다는 책임감으로 작업하고 있음
- 슈타지 문서는 구 동독의 독재기능에 대한 증거자료임.

o 슈타지 관련 통계

- 슈타지의 공식요원은 10만명, 비공식요원은 20만명 정도.
- 슈타지는 SED의 정보기구이자 행정기구로 존재하였으며 군사적 조직체제로 구성되어 있었음.
- 슈타지 문서서류철은 약 180km 길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며 이 안에 동독 국민들이 운명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약 2,500명 정도의 인원이 문서정리를 위해 활동중임.

- 1990. 10. 3. 통일과 동시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200만여건의 개인열람 처리, 300만여건의 신원조회 검증, 7천여건의 연구 및 취재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음.

- 현재 예산은 연방예산 약 1억유로를 재정으로 쓰고 있음.

○ 슈타지 문서처리법에 의한 Gauck 관청의 기능

- 개인은 열람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자신에 관한 문건 열람 가능

- 위법행위 재판간 슈타지 문서 제공 (국경에서의 사살행위 등)

- 공공업무를 수행할 사람에 대한 검증시 자료 제공 (군사기구, 국가공무원, 지방 및 연방의회 의원 등)

- 연구목적 및 보도목적의 경우 열람 가능함.

○ 예상되는 미래의 Gauck 관청의 활동

- 자료요구는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치교육 수요가 증가 예상

- 통일후 15년이 지난 시점인 2006년부터는 개인검증을 위한 자료 사용이 금지되며 그 이후에도 개인열람은 지속 가능함.

라. 질문과 답변

○ 슈타지 전체 문서중 얼마정도가 유실 또는 고의 파괴되었는지

- 유실, 파괴, 도난, 고의적 망실 등이 약 10%정도라고 판단함.

- 파괴를 시도했던 자료 약 1만6천 포대를 확보하였는데 1개 포대를 복구하는데 한 사람이 꼬박 6개월이 소요됨.

○ 현재 슈타지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방법은

- 이제 겨우 10~20%정도의 분류작업을 완료한 상태임.

- 마이크로필름이나 컴퓨터 D/B화할 향후계획은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슈타지 요원은 공식요원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 요원도 포함되는지
 - 두 가지 모두가 해당. 슈타지에 협조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요원 모두가 문제가 됨.
- 슈타지가 작성한 정보파일의 양은
 - 동독주민 1,700만명중 서류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400만명이며 서독주민에 대한 신상파일도 200만 건에 이르렀음.
 - 동독주민의 경우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시가 시작되었으며 주요인사의 경우는 많은 공식, 비공식 요원이 감시하였음.
 - 심지어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감시요원인 경우도 있었음.
 - 서독주민의 경우는 서독연방군, 정치가, 정당의 요직에 있는 사람, 경제계 인물, 하이테크 분야 종사자 등이 그 대상자였음.
- 군사분야에서 발견된 슈타지의 간첩사례는
 - 슈타지의 대외 정보활동 분야에 대한 자료는 상당부분 파기되었음.
 - 동독의 변혁기에 시민세력은 슈타지의 대외정보활동은 시민들의 인권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서독에 의해 오히려 남용될 것을 우려하여 동독 민주정부의 자료 파기에 합의하였음.
 - 미국 CIA요원이 자료파기 이전에 입수한 자료를 미국으로부터 통보 받아 내부의 간첩을 색출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현실적으로 통일이전에 연방군과 MAD내에서 활동한 간첩을 색출할 방법이 없음.

19. 한국에 대한 전망

- 정상화(Normalization)와 통일(Reunification)

가. 일시 · 장소 : 2003. 3. 26(수) 09:30 ~ 12:30

에버트 재단 (베를린)

나. 면담자 : Prof. Dr. Hans MARETZKI (전 북한주재 동독대사)

Dr. Werner PFENNIG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교수)

다. 주요 내용

<Dr. MARETZKI>

-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 존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하여, 체제붕괴 가능요소 4가지와 체제유지 가능요소 4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두 요소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체제유지든 붕괴든 한 방향으로 이행될 것임.
- 또한 한반도 통일시 복잡한 상황속에서도 미리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4가지를 언급하겠음.

1. 북한체제의 붕괴가능 요소

(1) 산업생산, 에너지, 자원 등의 총체적 위기 존재

- 구체적으로 생산성의 낙후성, 과학기술의 약화, 원자재의 부족 등이 그 위기의 본질임.
- 한국에서는 북한이 자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잘못된 인식임.
- 북한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100억~200억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도 없음.

(2) 과도한 군사비 지출

- 북한의 경제력은 군사력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는 상황임.
- 북한 경제 그 자체로는 경쟁력이 없는 상태이며, 군사력이 무너지면 경제 체제의 유지가 곤란함.

(3) 독자적 자립경제 유지 곤란

- 북한의 체제는 주민들을 자립적으로 먹여 살릴 능력이 없음.
- 농업기술의 수준도 미약하고 산출량도 너무 적음. 수확이 좋은 해에는 2/3정도의 배급능력 보유

(4) 국민 동원능력의 고갈

-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의 각종 동원에 육체적·심리적으로 탈진해 있는 상태로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
- 따라서 북한에서의 인력동원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북한보다 경제적 여건이 훨씬 좋았는데도 결국 붕괴되었음. 상황이 이들보다 훨씬 나쁜 북한이 아직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예상외의 결과이며 경제적 측면을 고려시 붕괴가 불가피함.

2. 북한체제의 유지가능 요소

(1) 군사력의 권력우위 및 전 국가의 군사화

- 북한은 현재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군사력이 와해시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임.

(2) 국민 감시·통제장치의 효과적인 작동

- 북한의 권력층은 국민에 대한 억압·감시 기제를 잘 활용함.
- 아주 원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국민 감시 체제를 작동시키고 있음.
- 동독의 슈타지(Stasi)에 의한 국민감시 활동은 북한의 감시 활동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수준임.

(3) 국민 저항능력의 파괴

- 북한의 경우 아주 친밀한 사람들간에도 체제 비판이 불가능한 현실이며, 이를 통해 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음.
- 동독의 경우에도 반체제 운동을 억압하기는 했지만, 반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틈새가 있었고, 그것이 점차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는데 반해, 북한은 그렇지 못함.
 - * 80년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이 동구권에 확산될 즈음에 북한을 방문한 동독 호네커 서기장의 부인(교육부 장관)은 “변화의 바람속에서 북한체제만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언급
- 통일 과정에서 사고와 행동이 병든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총체적으로 재교육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임무가 될 것임.

(4) 고립체제 유지 및 체제의 불변

- 북한 권력층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하여 국제적인 교류 및 정보를 차단하는 폐쇄적인 경제 사회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므로 위로부터의 개혁은 절대 기대할 수 없음.

- 또한 북한의 엄격한 주민감시 체제 하에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평화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함.
- 북한의 경우 전쟁 또는 유혈사태가 아니라면 내부로부터의 혁명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함.
- 남한 정보부의 책자를 보면 “북한은 개방, 개혁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서구논리로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북한논리로 보면 개혁, 개방할 수가 없음.
- 햇볕정책 수호자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주체체제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하나 너무 낙관적인 판단임. 그것은 정권차원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필요성의 부분이지 실제의 모습이 아님.

3. 소결론 : 북한 체제 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

- o 북한 체제 유지의 전망에 대하여는, 붕괴요인 4가지와 유지요인 4가지의 정도 및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o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확실한 것은 붕괴로 향하는 요소들이 지난 몇 년간 계속 강화되어 왔다는 것임.

4.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 o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며, 독일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할 것임.

(1) 소유권 및 재산권 문제

-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최악의 공산주의 형태로서, 전체 주민을 프롤레타리아트로 만들었고, 사적 소유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 북한 농민, 노동자는 자신만의 생산 시설 및 도구를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무소유 사회에서는 자본 축적을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임.

- 또한 현재 북한의 화폐는 사실상 전혀 무가치하다고 할 것이므로, 북한 주민은 화폐적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임.
- 통일 후 생산 도구, 주택 등 개인 소유가 아닌 재산을 북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해 주어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조성될 것임. 통일 후 남한 사람과 외국인이 북한의 재산을 다 차지한다면 북한주민들은 그들의 삶의 근거지에서 황폐화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2) 현재 북한의 생산력과 기반시설의 문제

- 북한의 경우 전체 산업 시설의 90~95%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할 것임. 또한, 북한은 군수산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들 시설을 민간의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산업시설에 대하여 불도저로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
- 철도의 경우에도 남북한 연결부분에 논의가 집중되고 이를 통해 만주, 시베리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상 북한 지역 내부에서의 철도 기간시설이 가지는 여객 운송 능력 및 화물수송 능력은 상당히 취약하여, 이것 역시 통일이 된다면 완전히 새로 건설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임.
- 한편, 과거 동독의 시설과 재산에 대하여는 서독 측에서의 구체적인 실사자료가 부족하여 기존에 시설 활용 정도가 다소 미흡했지만, 동독 재산에 대해 일부 활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함.

(3) 북한의 농업 문제

- 북한의 농업수준은 남한과 25~30년의 격차가 존재함.
-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비교해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생산기반과 기술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통일이 된다면 북한지역 농업부문에의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4) 통일후 북한 지역에서의 실업 문제

- 1995년 통계에 의하면, 북한지역의 인구는 2,250만명이며, 이중 산업 노동자는 820만명, 농업종사자는 190만명인데 반해 무장인력의 수는 150만명에 이룸.
- 독일 통일에 있어 과거에 통일 후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12~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실에서의 실업률은 통계상 18% 정도이고 실제로는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임.
- 북한의 경우 약 700만 정도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며,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경우에는 사전에 실업문제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결 론

- o 한국이 통일 독일의 경험을 보고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 가지 점만 빼고는 한국 통일은 독일식이 아닌 한국식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o 독일 경험과 공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임.
 - 즉,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의 통일'인데, 이것은 한 체제가 완전히 붕괴됨으로써 다른 체제가 이를 완전히 인수받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흡수통일'만이 가능한 통일방법일 것임.

<Dr. Werner Pfennig>

- o 북한의 변화 전망을 체제유지 잠재력, 북한의 자화상, 중국과의 관계 및 개혁·정상화 가능성이라는 4개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함.

- 이는 주로 북한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며, 앞서 이야기한 마레쓰끼 교수(전 북한주재 동독대사)의 경우 주로 북한 내부에서 바라본 관점에서의 전망이라고 할 것임.

1. 체제유지 잠재력

- 체제유지 잠재력(potential)이란 한 국가가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는 정치력, 군사력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총괄적 개념임.
- 체제유지 잠재력 속에는 긍정적 잠재력과 함께 부정적 잠재력까지도 포함되는데, 북한의 경우 대량살상무기의 생산·사용 가능성이나 붕괴 시 대규모 난민의 발생가능성 등은 외부에서 바라볼 때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잠재력 측면이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는 북한체제를 그대로 유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음.

2. 북한의 자화상

- 북한의 권력층은 스스로 성공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신념으로 가지고 있음.
 - 특히 소련, 중국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다른 국가들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북한은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북한의 자화상을 강화시킨 사건들
 - 한국전쟁시 미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굴복을 시키지 못한 것을 북한의 승리로 평가
 -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소국으로서 대국인 미국에 승리하였다고 평가하며, 북한을 모델로 미국을 상대로 승리하였다고 하며 자화상을 강화

- 기타 푸에블로호 납치, 미군 비행기 사고 등은 북한 정권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 및 기회가 됨.
 - 특히 이인모 노인 석방/복송전은 이념/신념을 유지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계기를 제공
- 실제로 경수로, 중유제공, 식량원조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하니까 받을 것을 다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강조함.
- o 북한이 조금씩 대외적 개방을 하려고 하자 미국이 다시 대북강화정책을 펴자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 승리한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에서는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움.
- o 작년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부산(아시안 게임)에 갔었는데, 그 때 한국정부에서는 “북한에 변화가 오고있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언급하였는데 본인도 변화는 보고 있지만 그것은 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는 없음. 그 이유는
 - 첫째, 엘리트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며,
 - 둘째, 국민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저항하도록 하는 압력이 존재하지 않음.
- o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는 2가지 분야 즉 △체제내부에서의 변화욕구, △외부에서 주는 압력의 경감에서의 진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 소련, 중국의 경우는 내부적 변화욕구가 있었고, 탈냉전 등으로 외부의 압력이 경감되어서 개혁·개방이 가능하였음.
 - 소련은 브레즈네프 이후 내부적 경제정체, 아프간 전쟁 패배, 외부적 위협 감소 등으로 변화욕구 집중
 - 중국은 10년간의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이렇게는 안된다. 변화가 필

요하다”는 인식이 등소평 등 지도부에 만연

- 북한에는 이러한 개혁의 욕구가 지도층이나 국민들 모두에게 없는 상태이고 외부에서의 압력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변화욕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인적 소견으로 점진적 변화과정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이면 좋겠는데, 북한이 더 이상 체제유지가 곤란해지고 있기 때문에 동독처럼 갑작스런 통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음.

3. 중국과의 관계

- 현재 북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국가는 중국일 것임.
 - 일례로 베트남 전쟁시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에게 중국은 통일전쟁은 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했으며, 박정희 대통령 시해시 이 기회를 이용한 행동자세를 등소평, 조자양 등이 북한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함.
 -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임.
- 중국내 한국 전문가의 전망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은 “남한체제의 승리”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함.
 -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인 남한이 승리하는 형태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 형태라고 할 것임.
 - 이는 미국주도의 MD체제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
-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중국은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 통일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남북통일을 통해 대만에 대한 통일을 촉구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임.

4. 개혁 및 정상화의 가능성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남북한간의 경계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세계화, 정상화라는 것은 공산정권과의 교류/협력을 의미하는 것임.
 - 과거 동독의 경우 동·서독이 서로에게 비교적 개방된 상태에서 통일에까지 이르게 됨. 이 상태에서 소련 및 주변국가의 체제변화와 함께 내부의 변화 요구 목소리가 힘을 얻어 체제 붕괴 및 통일을 이루어 냈음.
 - 이 과정에서 동독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체제가 아닌, 서독의 자본주의라는 '代案의 체제'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방향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임.
 - 그런데, 북한의 경우 동독과는 달리 내부적·외부적 여건에서 차이가 나고, 주민들은 代案體制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됨.
- 북한의 경우 동독에서와 같은 국내외 여건이 조성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갑작스런 체제붕괴가 일어나고 남한이 이를 사후 정리하는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됨.
- 그런데, 북한도 동독의 몰락 과정을 철저히 조사했을 것이고 가능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그 예로서 1990년 동독의 소멸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후 그 때부터 핵무기를 통해 외부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함.
- 중국의 발전과정을 보면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북한은 중국과 같이 체제의 일부 수정을 하면서도 공산당이라는 기존의 지도권력층은 유지되는 형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정권에게 통일 이후에도 자신이 위치가 유지되면서, 통일 이

후에 형성될 더 강한 통일한국의 위상을 인식시킨다면, 북한이 중국식의 체제변화 접근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북한의 체제 및 남·북한의 관계가 정상화(Normalization) 단계로 진전되고, 향후 장기적 공생관계 및 통일(Reunification) 단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그런데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정상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것임.

라. 질문과 답변

- o 남한의 내부에 존재하는 북한 동조 세력 등에 의하여 거꾸로 남한이 북한에 흡수당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남한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현재 남한내 북한 동조세력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남한이 통일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북한주민의 대량 유입, 실업의 발생 및 각종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준비'라고 할 것임.
 - 남한 및 주변국이 원하는 북한의 변화는 체제의 변화를 통한 '정상화'라고 할 것인데, 현재의 북한 상황으로는 갑작스런 붕괴의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비하여 남한 주민들의 심리적 준비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o 북한이 채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중국식의 변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여건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 중국식의 변화는 위에서 개혁하고 밑에서 수용하는 변화를 거치면서 현 체제의 권력층이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정치적 변화와 함께 경제적인 개방을 포함하는 개념임.

- 중국과 북한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전망임. 하지만 김정일의 중국방문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북한이 중국을 배우려고 해도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문화혁명의 실패, 하부에서의 변화욕구 등)이 충족되지 않고 있음.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진, 선봉 등의 특구는 바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는 파산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함.
- 북한의 식량문제를 체제위협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통일 이후 남북한 농업 교류에 참고하기 위하여 동·서독간 농업교류 사례가 있다면
-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 그 자체만으로는 체제 위협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며 국제사회가 식량문제로 인한 북한의 붕괴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임.
 - 보다 중요한 문제는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의 주민이 식량부족의 원인이 권위적 지도층에 있는 것으로 보는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 하는 것임.
 - 동·서독의 농업 교류에 있어서는 농작물의 교역, 금전대출 및 노동분배 등 상호 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음. 반면, 남·북한의 경우는 그러한 기반이 없다고 생각됨.
- 북한의 산업기반은 모두 무용지물이라서 싹 쓸어버리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 현지에서 방문해 본 60~70개의 공장 중 그래도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었는지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건물,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된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가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북한의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주로 북한 내부에서 소비되기 위해서 생산되는 것이며,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없음. 특히, 북한의 생산품은 세계시장에서 판매해서 낼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임.

20. 연수 일정에 대한 종합 평가

가. 일시 · 장소 : 2003. 3. 27(목) 11:00~12:00 / 에버트재단(베를린)

나. 담당자 : Mr. Axel SCHMIDT-GODELITZ
(에버트재단 베를린 사무소)
Mrs. Brigitte Goergen
(에버트재단 본 사무소)

다. 주요 내용

○ 한국 연수단측의 연수결과 평가 / 의견

- 다양한 독일의 통일관련 내용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어서 매우 유익
 - 특히, 통일후 경제재건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확실히 실감할 수 있었음.
-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내용을 사전 발송하였는데, 단체연구기간에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이 안된 점은 아쉬움(해양분야)
- 개별연수기간중 관련기관이나 주요인사에 대한 접촉에 애로사항이 있을시 재단 도움 요청
- 프로그램 작성시 초안을 사전에 연수단이 한국에 있을 때 받아보고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함.
- 프로그램 작성시 1주일에 2회 정도는 오후에 여유시간을 반영해서 대담내용 정리, 복습, 향후 일정 준비 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함. 매일 오전/오후 대담으로 언어구사능력 등의 차이로 대담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음.

o 에버트 재단 연수결과 평가 / 의견

- 단체연수기간의 교육중점은 개별연구과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의 전달에 있었음.
- 사전 프로그램 초안 사전 조율의 경우, 금년에는 2주전에 초안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연수단이 받지 못한 것은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앞으로 연구계획서가 적정한 시간에 전달이 되고 연구계획서상에 필요한 면담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면 개별의사도 일부 반영이 가능할 것임.
- 차후 프로그램 수립시 중간중간에 여유시간 반영은 가능하나 나중에 내용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향후 개별연수기간에도 필요한 협조사항이 있어서 연락시 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o 이어서 연수단 환송 오찬(한국대사관 김영희 참사관 배석)

제2단계 개별연수결과

- 2003. 3. 29 ~ 6. 30 -

1. 개 요

1.1. 일반사항

- o 활동기간 : 2003 4. 1 ~ 6. 30
- o 연구과제명
 - 통독 과정에서 공업재건정책 추진 사례
- o 연수기관 : 독일경제연구소
- o 주요 활동사항
 - 독일통일 후 동독공업 재건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정리
 - 구 동독기업 경영자 및 경제정책 관계자, 경제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방문 및 인터뷰 실시

1.2. 연수기관 소개

- o 기관명 : 독일경제연구소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asearch)
- 담당연구원 : Dr Rudolf Zwiener
 - * 거시경제분석 및 전망 부문 선임연구원
- o 주소 : Koenigin-Luise-Strasse 5. 14195 Berlin Germany
- o 전화번호 : +49-30-897 89-234(Fax +49-30-897 89-102)

○ 현황

- 1925년 창립된 독일내 가장 큰 연구소 중의 하나로 현재 약 200명이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100여명이 박사급 연구원
- 독일 최고의 연구두뇌를 가진 비영리 학술연구단체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조언. 경제활동 분석, 대안제시 등 독일을 대표하는 think tank 의 역할 수행
- 기관운영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외국 등의 연구수주를 통한 수입에 의존

2. 연구활동 경과

2.1. 해외사례 연구

- 해외사례 연구를 위해 관련자료 수집 정리
 - 통일전후 동독공업의 변화양상 및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점, 통일후 정책 시행사례 및 성과 등에 대한 자료 수집
- 구동독기업으로서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관계자 및 정부 경제정책관계자, 경제연구원들과의 면담 실시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과제 작성에 참고

2.2.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구동독기업 경영자, 정부정책 관계자, 독일경제연구소 관계자 등과의 면담시 동독공업 재건과정과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 향후 필요한 사항은 e-mail로 연락기로 함

3. 개별과제 추진현황

3.1. 해외사례: 통독과정에서의 공업재건정책 추진사례

○ 추진경과

- 연구중점 설정 및 연구계획 수립: 제1주차
- 연구활동: 제2주차부터
 - 현지자료 확보 및 문헌조사 실시
 - 관계기관 방문 및 관계 전문가 면담 실시
-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외사례 최종작성: 6월 중 · 하순

○ 추진내용: 해외사례의 주요목차

- 통일 전 동독공업의 실태 및 통일 후 변화양상
- 통일후 동독지역 기업여건 변화
- 동독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
- 동독지역 기업의 재건실태 및 문제점
- 정책적 시사점

3.2. 정책과제: 통일이후 북한공업 복구를 위한 단계적 조치방안

○ 독일 통일사례에 따른 정책과제 검토

- 남북한 급변사태시 북한공업의 변화양상 전망
- 북한공업 재건을 위한 단계적 조치 방안

○ 해외사례연구결과를 정책과제에 반영: 2003. 7월

4. 활동내역

o 제1주차(4. 1 - 4. 5)

- 연구중점: 연수기관 현황파악 및 오리엔테이션
- 관계자 면담: 4. 2, Dr Rudolf Zwiener 선임연구원

o 제2-3주차(4. 6 - 4. 19)

- 연구중점: 독일 통일후 동독공업 변화양상 및 재건 노력
-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 4. 8, 브란덴부르크 주 경제개발부 국장 Herman E. Haber
- 세미나 참석: 제4차 세계한민족 포럼 참가(4.8~4.11)
-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 4. 16, SGW 사장 Gergard Dietzel 면담

o 제4-5주차(4. 20 - 5. 3)

- 연구중점: 독일 통일후 구동독기업들의 사유화과정 및 생산정상화 노력 파악
-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 DIW 선임연구원 Karl Brenke(4.22)
MGB 사장 Helmut Rüder(4.30)

o 제6-7주차(5. 4 - 5. 17)

- 연구중점: 독일 통일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의 생존요인 분석
- 관계자 면담: SCD(SAMSUNG CORNING DEUTSCHLAND) Volker Henzel 공장장

o 제8-9주차(5. 18 - 5. 31)

- 연구중점: DIW의 보고서 "'Economic Consequences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에 대한 코멘트 자료 작성
- 기관방문 : 독일자유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병섭 교수, 숭실대 독문과 김홍진 교수 면담)

o 제10-11주차(6. 1 - 6. 15)

- 연구중점: 독일 통일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의 생존요인 분석
- 관계자 면담: SDIG 김승철 차장 및 조성태 부장

o 제12-13주차(6. 16 - 6. 28)

- 수집 자료 정리, 보완 및 보고서 작성

5.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 주요내용

5.1. 브란덴부르크 주 경제개발부 국장 Herman E. Haber

- o 일시: 4. 8. 14:00 - 17:00
- o 장소 :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개발국장실(포츠담)
- o 주요내용
 - 브란덴부르크주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주(州) 안에 포함하고 있어 유럽 각 지역으로의 교통이 편리하고 사회기반시설 역시 매우 잘 갖춰진 지역임.

- 특히 근로자들의 기술수준, 임금수준, 연구개발, 세제혜택 등의 측면에서 다른 후보다 매우 유리한 투자조건을 갖추고 있어 구동독지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브란덴부르크주의 GDP 성장 현황 >

(단위:10억 유로)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1	24.0	29.4	33.9	36.7	38.4	39.5	40.6	41.8	41.8	42.3

- 산업별로는 정보기술 매체, 생명과학, 수송, 에너지 및 환경공학, 기계, 화학, 강철부문 등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음.

※ 면담 종료 후 브란덴부르크 주(州)의 기업체 8곳을 소개받음.

5.2. 제4차 세계한민족포럼 참가

- o 일시 : 4. 8 - 4.11
- o 장소 : 베를린 Hotel Hamack-Haus
- o 주요내용
 - “분단 한반도와 독일통일”과 “21세기 한반도·EU의 협력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한민족재단(KGF. 회장-권영호, 상임의장-이창주)이 주최
 - 동 대회는 독일통일과 EU통합의 역사적 현장인 베를린에서 상징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독일 및 유럽 각계 인사들과 한국의 주요 전문가 등 14개국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
 - 동 대회에서는 독일통일과 EU의 통합경험을 심층 분석, 격동기 우리 민족의 통합, 민족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모색되었음.

※ 주독 황원탁 대사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이질성 극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독일통일 교훈에서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사회·문화·종교·학제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것임은 물론 분단상황에서 남북한의 평화적·안정적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

- 주요 발표 주제

- 독일통일 및 EU통합의 평가와 한반도
- 한반도와 EU의 협력과 발전
- 대한민국 신정부출범과 남북관계
- 해외동포의 정체성 및 민족공동체와 국제경쟁력

5.3. SGW 사장 Gergard Dietzel 면담

- 일시 : 4. 16(수) 14:00 - 17:30
- 장소 : SGW 본사 회의실
- 면담자: Gergard Dietzel 사장
- 주요내용

<회사현황>

- 위 치 : 브란덴부르크 주 Weder(Havel) 14542
- 종업원수 : 100명
- 생산품목 : 전동차의 운전석 및 공기청정기 등 전동차 관련 부품
- 판 매 : 세계 30여개 국에 제품 수출

<사유화 과정>

- 통일이전 동 회사는 종업원 수 500명으로 통일 이후 3개 회사로 분할되어 매각됨.
- 회사의 Dietzel 사장은 구동독 시절 동 기업의 경영책임자였으며 생산제품의 수출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1992.2.1 동 기업 인수(인수가격: 600만 달러)
- 인수당시 신탁청에서는 ①종업원수 100명을 5년 동안 유지(임의 해고 시 1인당 3,000마르크 벌금) ②투자 및 기업합리화 자금 300만 달러 5년내 투자 ③주변 환경 보호 및 청결한 작업장 유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

<생산정상화 노력>

- 통일이전 SGW는 생산조건 및 근로자의 질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으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수익금을 낼 수는 있는 회사였음.
- 기업인수 당시 ①전문기술자들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문인력 부재 ②판매망 미비 ③거래하고 있던 동독 회사들의 부도로 인한 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
- 인수 이후 '93년경 용접관련 기술혁신을 통해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회사정상화 기반 마련(현재는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제품의 질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
- '92년 기업인수 이후 2-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생산이 정상화되고 회사에 이윤 발생

<정부의 지원>

- 인수자금 600만 달러 마련시 250만 달러를 7년 거치 무이자 상환으로 대출 받았으며 기계·설비투자금 200만 달러 중 20%를 1년후 돌려받았고, 생산품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40%를 다시 돌려 받음.
- 판매망의 구축을 위한 박람회 출장시 제 비용의 15%를 지원받음.

<동독지역 제조업 현황>

- 동독지역의 제조업은 통일이후 중소기업은 80%, 대기업은 90%가 망해버린 상태이며
- 현재 실업률은 24~25%(400~450만)로 동독공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는 근로자 해고의 결과임.

5.4. DIW 선임연구원 Karl Brenke 면담

o 일시 : 4. 22(화) 14:00 - 16:00

o 장소 : DIW Brenke 연구원 연구실

o 면담자 : DIW 선임연구원 Karl Brenke

- 동서독 경제의 통합과정 및 동독공업 재건과정 연구 담당

o 주요내용

-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방안이 있는 바 독일식의 급진적인 통합방안(The Shock-Therapy Scenario)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방안(A Gradualist Scenario)이 있을 수 있음.
- 급진적 통합시에는 남북한간 1:1 화폐통합과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빠른 임금인상이 전제됨.
-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은 북한정부가 남한에 일시에 흡수되지 않고 어느 기간동안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경제 실정에 적합한 환율을 결정하고 임금 인상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
- 남북한간 급진적인 통합의 경우 북한 환율의 고평가와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북한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남한 정부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임.

- 점진적·단계적 통합의 경우 북한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환율과 임금수준의 유지를 통해 북한경제를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훨씬 경감될 것임.
- 독일의 경우에는 주변 정세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급진적인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독일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은 그러한 통일방식으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5.5. MGB 사장 Helmut Rüder 면담

- o 일시 : 4. 30(수) 13:00 - 16:30
- o 장소 : MGB 본사 회의실
- o 면담자 : Helmut Rüder 사장
- o 주요내용

<회사현황>

- 위 치 : 브란덴부르크주 Mittenwald 15749
- 종업원수 : 600명
- 생산품목 : 전동차 차체 수리 및 생산
- 판 매 : 독일 내수 및 해외 수출

<사유화 과정>

- MGB는 통일전 무기류(武器類)를 생산하는 Combinat(종업원수: 5,000명)에 소속된 14개 공장 중의 하나로 탱크, 중장비 등의 개·보수를 담당
- 현 Helmut Rüder 사장은 동 공장에 36년간 재직하고, 통독당시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

- 신탁청에서는 콤비나트(14개 기업소)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8개로 분할·매각
- 1992.1. "BLUE"社(미국계)가 대가없이 MGB 인수
 - * 신탁청의 매각 조건 : ① 고용인원 3년간 유지, ② 기존의 부채 인수, ③ 3년간 5,500만 마르크 투자

<생산정상화 노력>

- MGB는 통일 전 탱크 등 중장비를 수리·정비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슷한 분야인 전동차, 기차, 지하철 등의 제작·개보수를 자신들의 사업영역으로 선정
- '92년 회사인수 이후 3년 동안 8,000만 마르크를 투자하여 공장의 기본 인프라시설, 생산설비 등 제반시설 교체
- '93년 이후 흑자 발생, '98~'00년간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었으나 현재는 매우 안정적인 경영 상태

< MGB의 매출 상황 >

(단위: 백만 마르크, '01년 이후는 유로)

년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매출	13	17	34	55	60	60	60	30	23	25	30	25	30

※ 2001년 이후 유로의 가치는 마르크화의 2배

- 판매의 경우 내수부문은 동독 및 서독지역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으므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해외 수출을 위한 판매망은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척

<정부의 지원>

- 기존 부채의 인수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회사를 인수
-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2%, 신규투자의 경우 50%를 투자 장려금으로 지원 받음.
- 상품판매를 위한 박람회 등 참가시 정부의 지원

<동독지역 제조업에 대한 전망>

- 통독이후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품질, 판매망 등의 문제로 문을 닫은 것이 사실이나 그 동안 이루어진 투자로 앞으로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5.6. SCD(SAMSUNG CORNING DEUTSCHLAND) 방문

- o 일시 : 5. 6(화) 10:00 - 16:00
- o 장소 : SCD 회의실
- o 면담자 : 공장장 Volker Henzel, 최인호 관리부장
- o 주요내용

<회사현황>

- 위치 : 브란덴부르크주 Cottibus Spremberger Stras 4
- 직원 : 493명('03.3월 말 현재)
- 생산 : TV브라운관 및 컴퓨터 모니터
- 판매 : 서독지역 및 해외에 판매
- 면적 : 부지 8.1만평, 건평 2.5만평

<사유화 과정>

- 통일전 동 회사는 일본과 미국의 지원으로 1984년에 건립되어 비교적 최신 설비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흑자를 시현하는 공장이었음.
- 통일전 생산된 제품의 80%는 동독지역의 내수, 20%는 동구권 지역 등으로 수출
- 그러나 1990년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내수가 거의 "0"으로 떨어지고 동구권으로의 수출도 급감
- 결국 1994.3 삼성에서 유럽지역 생산 및 판매 거점 확보를 목적으로 인수(인수가액 : EURO 4.3백만)
- 신탁청은 매각 당시 ① 인수 후 6년간('94.3~'00.3) 제조업 유지 ② 613명 이상 직원 고용 ③ 보조금으로 구매한 자산 3년간 보유 등을 조건으로 제시

<생산정상화 노력>

- 동 기업을 인수한 삼성은 기존의 설비를 완전히 현대적인 설비로 교체함으로써('95~'96년 중 약 5,000만 마르크 투자)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제품도 다양화
- 제품의 판로를 위해 기존 삼성의 판매망을 최대한 활용,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현재는 생산되는 제품의 거의 대부분을 독일지역 외에 판매
-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대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및 현지에서 재교육 실시
- 기업인수 후 3년이 지난 '97년부터 흑자 시현, 2003년 현재 인수당시(1994)에 비해 매출 5배 증가

< 매출현황 >

(단위 :백만유로)

연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매출	30.3	35.1	51.3	108.1	113.1	139.1	142.7	128.9	145.0	149.3

<정부 지원>

- 정부의 구 동독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세제지원 형태의 ①연방 GRANT(투자금액의 10%내에서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 ②특별상각('99년 까지 구입한 자산에 대해 50% 한도내 특별상각 인정)이 있었으며
- 투자보조금(주정부에서 지역 및 산업특성에 따라 최고 20%까지 지원)이 있었음.
- 삼성은 투자보조금으로 총 155백만 EURO(당시 1,516억원)을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지원 받음.

<동독지역에 대한 외부투자 유입을 저해했던 요인>

- 지나치게 높은 임금수준 : 통일이후 독일정부는 서독과 유사한 수준으로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임금 수준을 기업들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빠르게 인상함으로써 주변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 됨.
- 경직된 근로조건 : 통일이후 서독의 노동조건 기준을 그대로 동독에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된 측면은 있으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을 초래(현재 슈레더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개혁 추진 중)

<Cottbus 주변지역 경제현황>

- 통일 이전 동 지역에서는 발전용 갈탄을 많이 생산하였으며 20여개의 유리 및 크리스탈 관련 공장(12,000여명 고용)들이 있었으나,

- 현재 탄광은 폐쇄되었으며 유리 및 크리스탈 관련 공장들은 삼성코닝 공장을 포함 3개의 공장만이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 약 1,000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는 데 불과

5.7. SDIG(SAMSUNG SDI GERMANY GMBH) 방문

- o 일시 : 6. 10(화) 16:00 - 19:00
- o 장소 : SDIG 회의실
- o 면담자 : 김성철 차장, 조성태 부장
- o 주요내용

<회사현황>

- 위치 : 베를린시 Schöneweide
- 직원 : 1,120명('03.4월 말 현재)
- 생산 : TV용 컬러브라운관(3.3백만개/년)
- 판매 : 유럽, 러시아, 터키, 헝가리 등 해외에 주로 판매
- 면적 : 부지 3만평, 연건평 6.3만평
- 총자산 : 268백만 EURO(약 3,350억원)
- 자본금 : 21.2백만 EURO

<사유화 과정>

- 통일전 동 회사는 구동독의 최대 전자회사(WF社)로 고용인원은 10,000여명에 달하였으며 생산제품은 주로 구 동구권지역에 수출되었으나 통일 이후 국제경쟁력 상실로 거의 도산 상태
- 기업상황의 악화에 따라 컬러브라운관부문 종사 인력은 2,700명에서 1,300명('92)으로 점차 감소(부채 6,500백만DM)

- 삼성측은 EU 통합대비 및 동구시장 교두보 확보, 구주(歐洲) 전자공장에 대한 안정적인 컬러브라운관 공급 등을 목적으로 WF社 인수
- 부지 및 건물, CPT 관련 설비 등(총자산 97백만 유로)을 무상으로 인수
- 삼성의 인수 당시('92.9) 1,300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삼성측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500명을 구조조정하고 800명만을 인수
- 신탁청의 매각 조건 : ①최소 6년간 컬러브라운관 사업 유지('93~'98), ②'98년까지 73.4백만 유로 투자, ③750명('93~'95), 850명('96), 1,100명 이상('97~'98) 고용 유지

<생산정상화 노력>

- 기존 일본 도시바社의 시설을 삼성의 설비/생산라인으로 교체하는 합리화공사 실시(생산라인을 10km → 3.4km로 축소)
- 제품 구조의 고도화(중형 → 대형 컬러브라운관) 및 품질 개선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품질/생산 안정화 추진
- '92년 인수 이후 '01.5까지 1.6억 유로 투자
- 직원들에 대한 품질 및 의식 교육 실시 : 중간관리자급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직접 교육 실시(현재 간부·사무직에 종사하는 인력 208명 중 90% 이상이 구WF社에 근무하던 인력)
- 간부사원의 경우 주간회의 또는 주제별 회의 등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방침 및 전략을 반복하여 주지시키며 나아가 일반 종업원의 경우 집체교육을 통해 자본주의 경쟁원리의 인식, 독일 국민성에 기초한 책임감 있는 노동윤리 등을 교육시켜 나감.
- 기존의 동구중심 시장(7개)을 유럽, 러시아, 터키 등으로 해외시장을 대폭 확대·개척(35개)

- 인수('92.9) 이후 3년 후인 '95년 흑자 시현(120만 DM), 2003년 현재 4.23천만 유로의 누적흑자 기록, 매출은 인수당시 보다 8배 증가

< 최근 경영 상황 >

	1999	2000	2001	2002	2003
매출액(백만유로)	238.5	325.5	414.5	445.7	461.7
판매수량(천대)	3,436	3,925	3,828	3,389	3,077
평균인력(명)	884	1,003	1,126	1,124	1,080
투자금액(백만유로)	6.7	16.1	10.8	19.7	7.0

<정부 지원>

- WF社의 부지·건물, 생산설비 무상 이전
- 기업매각시 향후 적자보전용(20.9백만유로), 투자지원용(22.6백만유로)으로 43.5백만 유로를 현금으로 지원 받음
- 투자액의 31%를 투자보조금 형태로 계속 지원 받음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며, 법인세가 40%로 매우 높은 실정 (한국의 경우 28% 수준)
 - 기업인수 초기 근로자들의 책임의식은 부재한 상태에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일부 과격한 성향의 노조원들로 인해 노사간 협조에 문제가 있었음.
- ※ 삼성의 기업 인수 당시 독일의 AEG 그룹(전자부품)과 영국의 BICC 그룹(케이블)도 민영화한 동독기업을 인수하여 공단에 들어 왔으나 각기 2~3년 후 사업 폐쇄

1. 개 요

1.1. 일반사항

- 활동기간 : 2003. 4. 1 ~ 6. 28 (3개월)
- 연구과제명
 - 독일군 통합시 동·서독군 병력감축 추진사례
- 연수기관 및 일정
 - 4. 1 - 4. 4(1주) : 독일 연방군 군 역사 연구소
 - 4. 7 - 4. 11(1주) : 베를린 자유대학 (세계 한민족 포럼 참가)
 - 4. 14 - 6. 13(9주) : 독일 연방군 군 역사 연구소
 - 6. 16 - 6. 28(2주) : 독일 연방군 부대방문 및 통일현장 답사
- 주요 활동사항
 - 통독과정에서 舊동독군 및 통일독일군 병력감축 관련 문헌연구
 - 병력감축과 관련 주요 직위자 면담 및 토론, 관련자료 수집
 - 한반도 통일시 병력감축 관련 독일 주요인사 의견 수렴
 - 전역장병 정착지원 결과에 대한 舊동독군 출신 장교 면담
 - 舊동독군 부대 방문 및 통일현장 답사

1.2. 연수기관 소개

- 명칭: 연방군 군 역사 연구소(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
- 주소: Zeppelinstrasse 127/128, 14471 Potsdam, Germany
- 전화: 0049-331-9714-500, FAX: 0049-331-9714-507
- E- MAIL: mgfa@t-online. de, Internet; www. mgfa. de
- 연혁
 - '57년 울름市에서 창설, '58년 프라이부르크市로 이전
 - '67년, 프라이부르크 소재 연방군 군 기록물 보관소 통제
 - '94년, 연방군 예하 학교 및 연구기관의 동독지역 재배치에 의거 현 위치인 포츠담으로 이전
- 규모 및 편성
 - 연구소장은 대령 또는 준장 직위, 연구원은 軍·民 혼합 120여명
 - * 박사학위 소지, 동독군 역사 파트에 일부 구동독군 장교 포함
 - 연구부서는 ① 19-20세기의 독일군 역사 ② 양차 대전과 독일 영토
 - . ③ 양차 대전시 주요작전 ④ 독일 연방의 안보정책 ⑤ 구동독군 역사
- 기 능
 - 연구소는 군 역사 학술기구이며 국방군과 독일역사 연구기관
 - 군 역사 / 안보정책에 관한 학술포럼 및 간행물 발간
 - 드레스덴 / 베를린 소재 군 역사 박물관 관리

2. 연구활동 경과

2.1. 해외사례 연구

- 통일전 舊동독 민주정부하에서 장교단의 요구에 의해 단행된 자체 군 개혁과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병력감축 과정 파악
- 동독군 자체감축과정에서 전역장병들을 위한 사회화 지원내용 파악
- 통일후 舊동독군의 연방군에 편입과정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감축에 도달하는 과정 연구
- 동독군의 통일후 군 구조개혁과 병행하여 추진된 병력감축 추진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수집 / 정리
- 인력구조 조정을 통한 감축과정에서 자발적 전역유도를 위한 각종 조치와 전역장병들을 위한 직업교육 등 사회화 지원조치 확인
- 병력감축 분야 전문가 면담 등을 중심으로 연구활동 전개 및 현장체험

2.2. 국제네트워크 형성 노력

- 독일 국방 전문가와의 한반도 통일 및 안보문제 관련 의견 교환 및 친분 형성
 - 직접 / 전화 인터뷰, E-mail 교환 등
- '독일 연방군 군 역사 연구소'와 상호 우호, 협력관계 발전
 - 한국의 문화 소개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상호 공감대 확산
 - 상호 초청 만찬으로 양국군간 유대감 형성

3. 개별과제 추진현황

< 독일의 병력감축 추진 >

- 통일과정에서 시행한 병력감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즉, 통일전 동독민주정부에 의한 자체감축, 통일후 舊동독군 인수/편입과정에서의 감축, 통일독일군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감축이 그것임.
 - 통일후 舊동독정권과 더불어서 舊동독군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의 결과 통일전의 舊동독군 자체개혁과 병력감축, 舊동독군 인수병력 편입과정에 관한 문헌자료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으나,
 - 통일후 통독군의 병력감축과 관련된 내용은 장기간에 걸친 군 구조개혁과 연계되어 추진됨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한 국방성 내부자료가 많고 연구내용이 빈약하여 자료확보가 어려움.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와 면담한 결과, 독일은 통일전 1990년 7월 카우카셔스에서 서독의 콜 총리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통독군의 규모를 94년말까지 37만명으로 감축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데 통일후 국방정책의 우선순위를 둠.
 - 이를 위해 舊동독군의 인수규모 최소화, 의무복무 기간 단축, 장기복무자의 선발 감소, 직업군인의 자발적 전역 유도 등의 방침 및 방법을 적용하여 병력수준을 하향조정함.

4. 활동내역

기 간		내 용
4월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역사 연구소장 및 과장, 직원인사 : 4. 1 ○ 도서관 사용법, 컴퓨터 활용법 등 설명 청취 ○ 연구소 자료 검색/ 관련 자료 수집 ○ 독일 베를린 연수요원 국방무관 초청 간담회 : 4. 3 ○ 과제 관련 면담 희망자 계획수립 토의 / 접촉 (연방군 소령 Armin Wagner 박사 협조)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세계 한민족 포럼 참석 : 4. 8 ~ 11 - 주독 대사 황원탁, 국회의원 김근태, 베를린 자유대학 총장, 훔볼트 대학 교수 등 국내외 석학 참여
	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성 인사국 실무자 면담 준비 (전화 및 E-mail접촉) ○ 국방성 인사국 Burkhard Köster 박사 면담 : 4. 17
	2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동독전문가(연구부장) 면담 : 4. 22 ○ 연구소 초청 만찬 : 4. 30
5월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내 도서관 이용, 병력감축 관련 자료 수집 ○ 슈타지 문서관리청 주관 세미나 참석 : 5. 6 - 구 동독의 안보기구
	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중간점검 : 5. 12 ~ 13 - 통일부 중간 점검단 군사연구소 방문 : 5. 12
	1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독일무관 초청 한·독군 친선 만찬 : 5. 21 ○ 독일군 역사연구소 주관 세미나 참석 : 5. 22
	2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북한주재 동독대사 Hans Maretzki 박사 면담 : 5. 27 ○ 관련자료 해석 / 분석
6월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자료 번역 / 분석
	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동독군 출신 해군중령 Luckau 면담 : 6. 12 ○ 연수결과 정리 및 관계자 추가 질문자료 작성
	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연방군 부대방문 : 6. 19
	2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정리 및 귀국 준비 ○ 귀국 : 6.28. 19:45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 , 6.29. 13:15 한국 도착

5.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내용

5.1 독일연방군 군 역사 연구소장 인사 / 면담 (4. 1)

- 면담자 : 연구소장 해군대령 Jörg Duppler 박사
- 당 연구소에 통일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3번째 파견된 기획요원의 방문을 환영함.
-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 기획요원의 연구주제 및 연구방향 설명
 - 과거 연구한 자료를 읽어보았는가 질문
 - * 과거 연구자료를 전부 숙독하였으며, 그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연구를 위해 세부 연구과제를 부여받고 연구하러 왔음을 주지 시킴.
 - 방첩대(MAD) 관련자료를 제외하고는 연구에 충분한 자료가 있으니 자료를 안내하겠으며, 관련 세미나 등이 있을 시 같이 참석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 (방첩대에 연구협조 병행)
- 한반도 통합시는 독일의 군 통합과는 달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왜냐하면,
 - 독일은 통일전에 동독군 관련문서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자료를 참고해서 세부 통합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으나,
 - 한국의 경우는 사전에 북한군에 대한 자료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과정에 제한사항이 많을 수도 있음.

5.2. 독일 국방성 관계자 면담 (4. 17)

- 면담자 : 국방성 인사국 중령 Burkhard Köster 박사

- 독일의 통일은 전혀 무계획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진행되고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음. 만약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계획대로 하고 싶은 욕망때문에 더 잘 안되었을 수도 있음.
 -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쇼크는 ① 통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는 점과 ② 소련이 전혀 반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임.
 - NVA(구동독인민군)의 해체/통합은 소련과 의견교환없이 진행됨.

- 舊동독군 해체 및 인수과 관련
 - NVA 장교들은 현재 군 통합과 민중봉기시 군이 개입하지 않은 것을 무혈혁명이자 자신들의 공로라고 표현하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정보의 제한과 폐쇄적 사고/행동, 군 고위층 및 소련군 지휘부의 명령부재 등으로 조직적인 반발을 할 수 없었음.
 - 또한 통일전에도 자체 군 개혁 노력이 전혀 없다가 90년 1월 최초로 자 마지막으로 개혁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때는 너무 늦었음.
 - 舊동독군 인수후 자발적 전역유도를 위해 심리적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함. 즉, 평가를 통해서 인수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선발누락시 특별한 혜택없이 강제전역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활용

- 舊서독군 감축에는 인위적인 방법보다 제도적 장치내에서 감축 유도
 - 의무복무기간을 15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50세이상의 직업군인 및 장기복무자의 자발적인 전역유도, 하사관의 추가모집 축소, 초급장교 전역기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함.
 - 이러한 조치의 단점은 군내의 고급인력이 사회로 빠져나간다는데 있음.

- 현재 군 통합은 완료되어 병력이 어느 지역(구동독 지역 또는 구서독지역) 출신이냐는 이제 더 이상 군에 부여된 임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 다만 현재 남아있는 당면과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① 구동독군의 과거 계급 사용 문제

- * 구동독 출신이면서 전역한 장교들이 예)대령 등 과거 계급 사용금지에 불만 토로

② 구동독군의 훈장, 기장의 착용허용 범위 / 한계

- * 통일조약상에는 착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과거 구동독군 훈·기장에는 구동독 정권을 위한 정치적 활동 유공에 대한 공로표시가 많음.

③ 동·서독 출신 장병들의 봉급수준 차이

- 남·북한 병력통합시는 북한병력이 수적인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독일 병력통합시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것임.

5.3. 군 역사 연구소 연구부장 면담 (4. 22)

- 면담자 : 연구부장 Volkmann 박사

- 독일 군사연구소는 전술, 전략 등 과거의 구체적인 전쟁사를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지난 역사의 민군관계, 국방-경제 관계, 독일군의 역사 등 일반적인 군사(軍史)문제를 연구하는 곳임.

- 현재는 주로 1950~1960년대의 옛동독(DDR)의 군사(軍史)를 연구하고 있음.

- 따라서 독일통일과 관련된 각종 서류나 보고서는 아직도 연구소에 도착하지 않고 국방성에 주로 비치하고 있어서 연구소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음.

- 특히 방첩대(MAD) 관련서류는 대부분 기밀서류이고 통상 30년이 지나야 비밀이 해제되기 때문에 통일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획득하기는 쉽지 않음.
- 그렇지만 여러분이 연구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들이 있으며, 성과있는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 o 통일과 관련해서는 서독에서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음. 특히 軍통합과 관련해서는 1990년 7월에 서독의 콜 수상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통일후 군 병력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는 후에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전혀 계획수립이 불가능하였음.
- o 향후 한반도 통일은 독일의 통일보다 훨씬 어려울 수도 있음.
 -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일원으로서 소련에 상당부분 연계 또는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몰락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통일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또 통일과정에서 무력충돌 등의 부작용이 없었지만,
 - 북한의 경우는 어떤 외부국가의 영향을 받기에는 독립 또는 자립체제가 공고한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통일과정에서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음.

5.4. 슈타지 문서관리청 주관 세미나(5.6)

5.4.1. 개 요

- o 주최 : 슈타지 문서 관리청(Gauck 관청)
- o 장소 : Gauck 관청 대회의실 (베를린 시내)
- o 참석대상 : 주요대학/기관 학자, 언론기관, 구동독 주민 등 200여명

○ 발표 / 토론자

- Thomas Lindenberger 박사 (독일 역사연구 센터)
- Armin Wager 박사 (독일연방군 역사연구소 연구원, 소령)
- Jens Gieseke 박사 (Gauck 관청 舊동독 기밀분석 분석연구원)
- Siegfried Suckut 박사 (Gauck 관청 연구소장)

5.4.2 주요 발표 / 토의 내용

- 동독은 엄격한 감시체제를 구비한 독재국가 중의 하나였음.
- 동독의 주민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및 군사화를 점점 강화하게 된 계기는 과거에 알려진 것처럼 70년대가 아님.
 - 통일후 추가로 확보된 자료 등을 기초로 연구한 결과 70년대 이전부터라는 것이 확인되었음.
-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동독의 안보기구(Stasi, 군, 경찰)들은 재편성을 하고 단기간의 개혁을 한 후 국내정치적으로 강력한 통제체제를 구축하였음.
- 학교와 각종 조직들의 군사화와 “폭력”과의 전투 등을 통하여 동독공산당은 사회 곳곳의 주민생활을 통제하고 규율을 강요하였음.
- 또한 이후 안보기구들은 급격히 확장하였는데, 이는 호네커 서기장 시대의 국가사회주의체제 공고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었음.

- 70년대에 동독 안보기구들의 건설에는 어떠한 배경적 논리가 숨겨져 있는지, 공안정치의 강화를 누가 주도하였는지,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및 국가적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5.5. 통일부 중간점검단 독일 軍史연구소 방문 / 토의 (5. 12)

5.5.1 개 요

- 영접 : 군사연구소 부소장 Ehlert 대령의 2명
- 방문 : 통일부 정책심의관의 2명, 현지 기획요원 3명
- 진행 : 도착/영접 - 방명록 서명 - 기념촬영 - 환담/토의

5.5.2 주요 토의내용

- 통일과정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 독일의 통일은 냉전의 종식, 동구권의 몰락,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 등의 일련의 연관된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짐.
 - 따라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것은 통일과정에서 대단한 행운이었음.
 - 이후 독일의 안보환경은 과거의 敵이었으나 지금은 친구 국가들에 둘러싸인 상황으로 급변함. 따라서 방어독트린, 안보정책, 군사전략은 우선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와 對테러 체제에 동참하는 것임.
- 통일전 軍內 동독체제에 대한 불만
 - 전반적으로 동독주민의 불만은 80년대부터 시작됨. 그 이유는 서독TV 시청에 따른 경제적 격차 심화이며, 두 번째는 소련주도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동독정권이 동조하지 않는데 기인함.

- 이러한 불만의 누적으로 1989년 동독주민의 탈출러시가 있었으며, 이때는 이미 동독정권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늦었음.
- 그러나 군내의 개혁은 공산정권이 붕괴된 이후에야 가능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불만의 표출이나 개혁의 노력 등을 찾아볼 수는 없었음. 그 이유는 Stasi의 강력한 통제가 있었고, 군내에서는 서독TV 시청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임.

○ 통일과정에서 軍內 통일저항세력의 존재여부

- 구 동독인민군(NVA)에서는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음. 왜냐하면 동독은 소련이 1989년 당시 독일의 통일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 직업군인들은 동독정권 붕괴직전에 주민들의 데모가 거세지자 불안해했음. 그러나 조직적이거나 직접적인 반발은 없었음.
 - * 해군의 경우 배를 좌초시키거나 육군의 경우 일부 병력들이 전차를 끌고 나와 대응하려고 했다는 소문은 무성히 있었으나 통일후 각종 비밀서류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없었음.
-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함.

○ 통일과정에서 전역한 군인들의 사회화 조치와 이에 따른 불만

- NVA는 1989년에 175,000명이었고 통일후에는 90,000여명이 서독군에 흡수됨. 이 중 5만여명이 직업군인이었는데 최종적으로 1만여명이 군에 통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음.
- 전역군인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특히 기술직 계통) 찾아 정착하였는데 민간조종사 등 사회에 정착율이 매우 높음.

- 그러나 50세 이상된 고령자의 경우는 직업을 구하지 못한 인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舊 NVA 장군의 경우 통일후 직업을 구하지 못했거나 우체국에 우편물을 분류하는 곳이나 건물의 수위직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음.
- 이처럼 당시 특권층이었던 사람들의 통일후 처우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일반 舊동독 주민들의 경우 그들은 통일전 모든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o 통일측면에서 독일과 한국 비교시

- 동독은 동구권 국가중에서는 가장 발전된 나라였음. 이것은 동서독간에 통일전에 격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남북한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한반도에 통일이라는 상황이 나타나면 동서독 통일시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임. 그 이유는 먼저 경제적 격차의 심화때문이고 둘째는 軍 규모의 차이 (한반도, 특히 북한은 엄청난 규모의 군을 보유)이며 셋째는 독일의 경우 통일전에 상호 TV 시청 등을 통하여 이질감을 많이 해소하였으나 남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o 전역한 군인들이 선호한 직업과 군에서의 조치

- 주로 기술분야임. 특히 조립분야, 항공분야 등이었고 보험설계사, 자동차 임대업등에도 많이 진출함.
- 일반적으로 군내에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었음.
- 군내 지원조치로서 우선 동독여군들은 전부 전역시키면서 군속으로 전부 고용하였고 기타 전역군인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들을 하였음.

○ 구 NVA 병력중 연방군에 인수된 병력의 불만

- 첫째는 계급조정에 대한 불만임. 당시 50만과 동독군 17만여명등 67만여명을 37만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인원의 인수는 불가능하였음. 또한 인수병력중 舊NVA의 계급구조를 보면 장교의 비율이 높고 부사관이 할 수도 있는 보직에 장교가 보직된 경우도 많았음. 따라서 舊서독군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계급을 1~2계급 하향조정 하였음. 일부는 본인 희망에 따라 소령에서 부사관으로 변경한 경우도 있음.
- 두 번째는 보수의 차등지급임. 현재는 舊서독군에 비해 91%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구 동독지역 경제상황과 생활비 등을 고려한 통일당시의 조약에 의해 시행되는 조치임. 이는 또는 군내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문제임.
- 추가로 또 일반적인 문제를 언급하면 舊동독 젊은이들의 지역이탈임. 이는 높은 실업율과 낮은 경제수준 등의 요인에 의한 것임.
- 그 이외에는 인수병력들은 군수/보급, 가족에 대한 배려, 근무분위기 등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음.

5.6. 舊동독 민중봉기 관련 세미나 참석 (5. 22)

5.6.1. 개 요

- 주최 : 독일 연방군 군 역사 연구소(MGFA)
- 장소 : 연구소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연방의회/주의회 의원, 주요대학/기관 학자, 언론기관, 군 고위인사, 연구소 연구원, 구동독 주민 등 300여명

o 발표 / 토론자

- Torsten Diedrich 박사 (군 역사 연구소 연구위원)
- Kahl-Wilhelm Fricke 박사 (역사학자, 당시 목격자)
- Günther Glaser 박사 (舊동독군 장교, 前동독 軍史연구소 연구위원)
- Hand-Hermann Hertle 박사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 Manfred Rexin 박사 (언론인, 당시 민중봉기 취재 담당자)
- Fritz Schenk (통일전 동독탈주자, 당시 봉기참가자)
- * 사회 / 진행 : Hand Ehlert 육군대령 (박사, 군 역사연구소 과장)
- * 인사말 : Jörg Duppler 해군대령 (박사, 군 역사 연구소장)

5.6.2 주요 발표 / 토의 내용

- o 1953년 6월 17일 수십만명의 동독정권에 대한 민중봉기가 베를린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자 소련군의 전차, 동독정권의 전투경찰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함. 이 과정에서 50명이 사망하였고 수백명이 부상당함.
- o 이 저항운동은 舊동독정권 전 기간동안 발생한 처음이자 마지막 민중봉기였으며, 두번째의 봉기는 바로 동독정권 붕괴를 가져온 1989년 민주시위였음.
- o 처음 6월 16일 데모가 베를린을 중심으로 발생하자 동독정권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서베를린지역에서 동조시위가 발생 (당시 서독측의 언론보도를 통해 반대편의 상황을 인지함)하고 시위규모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심각성을 인식, 소련과 협의하기 시작함.

- 동독정권과 주요 분석가들은 소련이 동독정권을 구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소련이 무력진압을 주저하지 않은 것은 소련은 이러한 민중봉기를 허용하여 친소정권 붕괴를 좌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당시의 유럽지도 변경을 원치 않았음.
 - 이 저항운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민중봉기 이후에 전반적인 동독정권의 통제체제가 강화되고 변경되었다는데 있음. 이 사건후 동독정권은 국내적인 SED 정권의 수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보체제(Stasi, 경찰, 군)의 추가건설과 보강이었음. 이러한 강력한 내부 감시체제의 영향으로 1989년 민주화 시위발생시까지 동독에서는 더 이상의 민중봉기가 발생하지 않음.
 - 이러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게 된 이유는 당시 민중봉기에 대해서 Stasi 등 안보기구가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완전히 실패하였기 때문임. 당시 동베를린 지역에서만도 어느 정도의 보안조직 체제를 구비하고 있었음에도 정보의 부족이나 조그만 불씨에 대한 과소평가 등으로 조치에 실패함.
- ※ 연방군 역사연구소 출간서적 “국민을 향한 무력 : 1953년 6월 17일 동독(Waffen gegen das Volk : der 17. Juni 1953 in der DDR)” 내용 소개 병행

5.7. 전 舊동독 북한 주재 대사 면담 (5. 27)

○ 면담자: Hans Marezki 박사

- * 1986 ~ 90년 舊동독시절 북한주재 동독 대사 역임
(현재는 한반도 전문가로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면서 한반도 관련 각종 논문 작성 / 주요 간행물에 기고)

-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 합의에 의한 통일은 어려울 것임. 이는 독일 사례로도 증명이 가능하며 이론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독일의 통일은 동독이 지구상에서 없어짐으로써 달성된 것임. 남북연합 또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흡수통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유일한 통일의 길은 그것뿐임.

- 어떤 상황이 되어야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 김정일이 통제능력을 잃거나 주체사상이 없어졌을 때임.
 - 북한은 이미 경제, 인권, 기아 문제 등 몰락했다고 보는 편이 옳음.

- 현재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95%의 힘은 북한의 병영국가체제이며, 나머지 5%는 유교적 복종을 근간으로 하는 주체사상에 무장된 정권의 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병영국가체제의 특성과 실상은 다음의 여러가지 사실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음.
 - ① 학교의 병영화 : 어릴때부터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사고와 행동을 군사적으로 하도록 강요
 - ② 행정/산업조직의 병영화 : 주요 행정기구 및 산업시설 주변의 야산에 대피호 등을 구축해서 총, 수류탄, 대공포 등을 구비
 - ③ 일상 생활양식의 병영화 : 5~6년을 군에서 복무하고 나온 여성들도 직장에 가면서 줄을 맞추어서 가도록 강요하는 등 일상적 생활양식과 태도 등 심리적/육체적 정형화를 통해 인간을 군사화
 - ④ 통신,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군의 직접 통제

⑤ 산업생산의 군 우선/독점 : 산업생산의 약 1/3은 인민무력부에서 통제하면서 무기, 수송, 전기, 광학, 농업, 석유 생산 등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3은 군사시설용 산업생산이며, 기타 1/3만이 민간 시설로서 민수품을 생산함.

⑥ 사회전체에 차지하는 군의 역할 확대 : 군인의 1/3은 전투대기로 이를 위해 군 복무간 약 3~4년 근무를 하고 나머지 군인의 약 1/3은 훈련, 경계근무 등을 하며, 기타 1/3의 군인들은 경제분야에 투입됨. 즉, 건축, 교량건설, 주택신축, 공장 등에 투입되어서 근무함. 이는 오랜 기간의 북한의 군사력 운용 원칙이었음.

-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할 때 한마디로 북한은 거대한 '참호'속에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북한내부에서 평화적인 변혁이나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변혁을 겪더라도 과거의 동독처럼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으며 반드시 폭력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됨.

o 한반도 통일을 가정할 때 군사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 통일후의 군대의 규모는 현재의 남·북한군 총원의 180만명을 약 25만명 정도로 감축해도 충분할 것임. 이는 독일과 비교시 독일 전체인구 8천만명에 32만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시 생각할 수 있는 수치임.
- 이러한 숫자를 고려시 우선 실업자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될 것임. 도로보수, 교량 건설 등에 전역한 장병들을 우선 투입하여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겠지만 엄청난 숫자에 대한 조치는 쉽지 않을 것임.
- 또한 모든 북한장교들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시 자신들의 직업을 잃고 과거의 행적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즉, 북한군은 북한 정권과 철저히 연계되어 있어 정권이 붕괴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 직업군인들에 대한 적절한 사면대책과 일자리 제공 등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북한에서 동독대사로 근무시 북한 군부에 받은 인상은
 - 북한의 고위직 장군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은 철저히 군사력을 정치적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음.
 - 또한 전쟁이 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동독의 장군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북한 장군들은 미군만 철수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음. 이를 대변하듯이 북한군에는 방어무기보다 공격무기가 훨씬 많았음. 또한 휴전선 일대 30km에 대부분의 부대를 집중배치하고 그 뒤에는 거의 부대가 없는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음.
 - 동독에도 과거에 전쟁계획이 있었으나 이 계획의 실행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의문을 가짐. 그러나 북한 장교들은 군사적 충돌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은
 - 상호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통일전 동독군은 TV를 통해 서독을 알고 있었으나 북한은 다름.
 - 햇볕정책을 통해 긍정적인 남한의 의도를 일부 북한에 전달하였다고는 하나 북한군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함.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야 부모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이 먹는 쌀이 남한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텐데 휴가 자체를 못 나가는 상황임.
- 김정일이 비교적 북한군을 잘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정일의 개인적 능력 때문이라고 보는지
 - 김정일의 능력이라고는 절대 이야기 할 수 없음. 이는 김일성이 구축해 놓은 북한의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이 시스템은 한 사람의 교체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임.
 - 120만의 군을 포함하여 보위조직들도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임.

- 다시 말해서 김일성 사후 '군'이라는 하위체제가 자신들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명령하고 지휘할 새로운 인물을 요구했고 그 새로운 인물이 김정일이었다고 할 수 있음. 즉, 북한군은 북한체제내에서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체제에 저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단지 자기들을 지휘해줄 새로운 대체 인원이 필요했던 것임.
- 만약, 우리가 북한에서 온 통일기획요원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조만간 몰락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 물론임. 당신들은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줄 것이고 그것이 당신들의 운명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것임.

5.8. 전 동독군 출신 장교 면담 (6. 12)

- 면담자 : 독일 국방성 의전실 해군중령 Dieter Luckau
 - * 1983~통일시까지 전 동독 국방성 군수국 군수교육 담당장교
(통일전 해군중령에서 통일후 대위로 계급조정되었다가 통일후 중령까지 진급한 장교)
- 통일전 동독군의 개혁을 통한 자체감축 노력
 - 1990년 3월 민주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이 수립된 이후 군인들의 요구에 따라 군 개혁을 단행함. 이 과정에서 1989년 175,000명이었던 동독군은 90년 여름에 150,000여명까지 감축되고 통일당시에는 동독군에 인수되기를 희망하는 장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전역함에 따라 90,000여명까지 감축됨.
 - 우선 감축조치로서 정치장교들은 전역조치에 따라 약 2만여명이 전역하였고 의무복무를 18개월에서 15개월로 축소와 추가적인 징집의 일시중지로 사병들의 인원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간부들 중에도 자발적으로 전역하는 인원이 다수 있었음.

- 특히, 통일전에 상당수의 서독기업이 동독진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 등을 수소문하면서 NVA 장교들을 선호함에 따라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전역함.
- 통일전 동독군의 자체감축과정에서 전역간부에 대한 사회화 조치
- 전역장교들 위해서 동독 국방성에서 주요 학교기관 및 기타 군 시설을 이용하여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함.
 - 舊서독군에서의 지원은 없었으나 통일가시화시 동독진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서독 기업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지원이 있었음.
- 통일후 舊동독군의 감축 및 사회화 지원
- 90년 10월 3일 통일후 舊동독 장병들은 희망자에 한해 정식 편입시까지 일시적으로 편입조치가 됨.
 - 이러한 조치는 통일조약에 군 통합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통일당시에 舊동독군 장병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인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독 국방성에서 통일후 이들이 통일의 저항세력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우선 일단은 전원 희망자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한데서 기인함.
 - 하지만 「2+4 회담」 결과에 따라 94년말까지 37만명으로 감축해야 하는 독일군의 입장에서 많은 舊동독군을 전부 인수할 수는 없었음. 그래서 최대한 자발적 전역을 유도하기 위해 90년말까지 전역하는 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전역금을 5,000DM를 지급하고 사회보장제도에 편입시킴. 이러한 모든 조치는 사실 법적인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임.

- 전역한 직업군인들을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사회화 지원노력을 함. 일례로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500개 이상의 기업에 서신을 보내 舊동독 전역장병들의 적극적인 취업을 요청하기도 함. 해군의 경우 로스톡(Rostock)등지에 직업소개소 등을 운영하였는데, 민간분야에 비해서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민간분야의 경우는 거의 혼란의 수준이었음)
- 특히, 연방군은 통일후 舊동독군 출신장병들도 정당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 이는 舊동독군 장병들이 무기고, 탄약고 등을 계속 경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우 중요한 노력이었음. 또는 舊동독군 장병들도 통일직후 한시적으로 연방군에 편입되어 근무하면서 연방군의 실체(발전상, 민주군대의 위상 등)를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통합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함. 왜냐하면 통일전에 서독의 TV 등을 시청할 수는 있었지만 상당부분 조작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장병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임.
- 사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도 동독의 장교들은 다분히 애국적인 사고(思考)를 가지고 있었음. 즉, 국민이 원하면 우리 - 군대나 장교 - 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90년 10월 통일후 동년 12월까지 각종 세부적인 통합규정이나 법적인 정리 등이 미비한 가운데서 앞으로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 왜냐하면 동독 민주군대는 통일전 동독군처럼 일방적으로 전역을 '명령'할 수는 없었음.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정에 의한 전역신청,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o 통일후 현재의 생활과 통일전의 동독군에서의 생활과 비교시

- 일부 세세한 부분에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주위의 과거 舊동독군 시절의 동료들이나 상관들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불만의 원천은 통일전에 동독에서 서독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자화상하고 실제 통일후에 직접 겪은 모습과의 괴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군내에서의 사소한 불만이라면 舊동독군의 '명령형 지휘'에 대해서 '임무형 지휘'에 익숙한 舊서독 장교들의 무조건적인 비판이라든지 현실과는 일부 동떨어진 정신/정훈교육(Innere Führung)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일전에 舊동독군 장교들은 당시 동독사회에서 특권계층이었다고 대체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회자되는 것처럼 그렇게 특권을 누린 것은 아님. 보수만 가지고 논하다면 물론 특권층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당시 자본주의 국가에서 단순노무자와 전문직업을 가진 자의 보수와 비교시 특별한 것은 아니었음.
- 통일후 생활은 여행의 자유, 구매나 각종 선택의 자유 등 다변화사회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음.

o 장차 한반도에서 남한주도 통일을 가정시 북한군 처리에 대한 조언

- 통일이라는 상황이 발생시 북한군의 직업군인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됨. 우선 지금까지 항상 적(敵)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이 승리자의 입장에서 다가옴에 따라 주입식 교육에 의한 이데올로기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의 생계 등과 관련된 금전적, 재정적 불안 등이 동시에 엄습하게 됨.
- 통일후 북한군을 상대해야 할 경우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지금까지 당신들의 인생은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치부하게 되면 상호간에 접근이 매우 어려워짐.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조치임. 예를 들어 자유스런 토의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노력 등이 필요함.
-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군에 잔류한 탄약 및 무기에 대한 안전조치임. 동독의 경우는 통일당시에도 기아 등의 문제는 없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를 보면 기아 등 내재된 불만이 상당히 많음. 이는 잘못 처리될 경우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군 장교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것에는 상호방문이나 TV 시청 등의 제한으로 인한 상호 이질감의 심화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이 바탕이 되면 무기와 탄약도 동시에 안전함. 이를 위해서는 대화 등을 통해서 남한사회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물론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림. 그리고 생필품 등 경제적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러한 지원조치가 없으면 이들은 통일의 반대세력이 될 수 있음. 그리고 새로운 법의 적용시에도 무조건적인 엄격한 법 적용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왜냐하면 북한사람들은 거의 세뇌교육으로 남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의 인내는 필요함.

5.9 독일 연방군 부대 방문 (6. 19)

○ 방문부대 : 독일 연방군 작전사령부(Bundeswehreinsetzungskommando)

- 주둔지 명칭 : Henning-von-Tresckow-Kaserne

- 위치 : 베를린 서남쪽 포츠담 외곽의 Geltow 소재

○ 부대소개

- 임무 : 국외로 투사하는 모든 연방군 戰力의 편성, 운용, 지휘
(UN 차원의 평화유지활동, NATO 차원의 집단안보활동)

- 지휘관계 : 국방부장관/합참의장 직속부대로 3성장군이 지휘
(야전군단과는 협조관계)

※ 임무수령시 야전군단에서 가용부대 차출, 임무수행간 작전통제

- 주둔지의 역사적 연혁 / 특징

· 히틀러의 제3제국 당시 괴링(Göring) 지휘하의 공군사령부

· 舊동독시절에는 지상군 사령부로 사용

· 현재는 통일독일 연방군 작전사령부로 활용

☞ 공중감시로부터 은폐를 위해 주요시설이 숲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에 사용하였던 병커들이 주둔지 곳곳에 산재

- 주요시설 : 지휘통제본부, 주요지원시설, 복지시설 등

6. 조사자료 목록

Albrecht, Ulrich. *Die Abwicklung der DDR : Die "2+4 - Verhandlung". Ein Insider-Bericht.*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Weißbuch 1994. Weißbuch zu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zur Lage und Zukunft der Bundeswehr.* Bonn: BMVg, 1994.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Armee der Einheit 1990-2000.* Bonn: Bundeswehr, 2000.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Informationen zur politische Bildung : Der Weg zur Einheit.* Bonn: Tiefdruck Schwann- Bagel, 2001.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Informationsstab, Öffentlichkeitsarbeit, *Informationen zur Sicherheitspolitik : Bundewehr-Streitkräfte der Einheit, Drei Jahre Bundesweh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BMVg, 1993.

Die Welt, 1990.8.24.

Ehlert, Hans. *Armee ohne Zukunft.* Berlin: Ch. Links Verlag, 2000.

Ehlert, Wolfgang. "Bewährung und Wandel : Wehrpfli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FDT 12/90.*

Europa-archiv. Folge 19, 1990.

Frankfurter Rundschau 1990. 9. 13.

Gießmann, Hans-Joachim. *Das unliebsame Erbe : Die Auflösung der Militärstruktur der DDR.* Baden-Baden: Namos Verlagsgesellschaft, 1992.

Herspring, Dale R.. *Requiem für eine Armee :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der DDR.* Baden-Baden: Namos Verlagsgesellschaft, 2000.

- Kiessler, Richard²⁾.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Berlin: Nomos, 1993.
- Krebs, Jürgen. "Die künftige Personalstruktur der Bundeswehr." *Truppenpraxis* 5/1992.
- Krebs, Jürgen. "Eine Aufgabe wie noch nie." *Truppenpraxis* 3/1991.
- Lehmann, Hans Georg. *Deutschland-Chronik 1945 bis 2000*. Berlin: Bercker, 2002.
- 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 *Vom kalten Krieg zur deutschen Einheit*. München: Oldenburg Verlag, 1995.
- Model, Hansgeorg. "Die Übernahme der Nationale Volksarmee(NVA) - ein Meilenstein bei der Realisierung der Armee der Einheit." *MARS Jahrbuch für Wehrpolitik und Militärpolitik* 1/1995.
-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Bundeswehr. *10 Jahr vereintes Deutschland 10 Jahr Armee der Einheit*. Strausberg: SWIW, 2000
- Teltschik, Horst.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1991
- Zelikow, Philip · Rice, Condoleezza.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Mass/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Blick nach vorn." IAP-Dienst Sicherheitpolitik 18, 1990.
- "London Declaration on a Transformed North Atrantic Alliance." (London, 6 July 1990).

< 국방부 변원섭 >

1. 개 요

1.1. 일반사항

- 활동기간 : 2003. 4. 1 ~ 6. 28 (3개월)
- 연구과제명
 -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군 불순세력의 처리 사례
- 연수기관 및 일정
 - 4. 1 ~ 5. 31(9주) : 독일 연방군 역사연구소(MGFA)
 - * 4. 8 - 4. 11 : 베를린 자유대학 (한민족 포럼 참가)
 - 6. 2 ~ 6. 6(1주) : 쾰른 군 방첩대(MAD)
 - 6. 9 ~ 6. 28(3주) : 독일연방군 방문 및 연방군 역사연구소(MGFA)
- 주요 활동사항
 - 독일통일 이전 동독 정보기관의 대서독 정보활동 관련 문헌연구 (슈타지의 서독군 대상 정보활동 집중 연구)
 - 슈타지 연구 전문가 인터뷰 및 토론, 관련자료 수집
 - 슈타지 관련 세미나 참석, 슈타지 전시회 관람
 - 동독군 감축시 MAD의 편입심사 관련 자료수집
 - 동독군의 서독군 편입시 심사에 참여한 MAD직원 인터뷰 및 토론

1.2. 연수기관 소개

1.2.1. 연방군 군 역사연구소 (MGFA : 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

- o 주소: Zeppelinstraße 127/128, D-14471 Potsdam, Germany
- o 전화: 0049-331-9714-417, FAX: 0049-331-9714-507
- o E- MAIL: mgfa @t-online. de, Internet; www. mgfa. de
- o 찾아가는 길
 - 포츠담 중앙역(Potsdam Hauptbahnhof)에서 631번 버스 승차
 - Zeppelinstraße에서 하차, 길 건너편 백색 건물
- o 연혁
 - '57년 울름市에서 창설, '58년 프라이부르크市로 이전
 - '67년, 프라이부르크 소재 연방군 군 기록물 보관소 통제
 - '94년, 연방군 예하 학교 및 연구기관의 동독지역 재배치에 의거 현 위치인 포츠담으로 이전
- o 편성 및 임무
 - 연구소장은 대령 직위, 연구원은 軍·民 혼합 100여명 편성
 - 연구소는 교육, 연구, 군사박물관 관리 등의 임무 수행하고 교육부서는 역사교육, 전문교육, 전시회 담당 임무 수행
 - 연구부서는 ① 17-19세기의 독일군 역사 ② 양차 대전시기의 군 역사 ③ 통일 이전 서독의 군 역사 ④ 통일 이전 동독의 군 역사 연구
 - 드레스덴에 위치한 '군사박물관'과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군 공군 박물관' 관리 업무 수행

o 기능

- 군 역사학술기구이며 연방군 역사 연구기관
- 군 역사 / 안보정책에 관한 학술포럼 및 간행물 발간

1.2.2. 연방군 방첩대 (MAD :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 der Bundeswehr)

o 위치: 본부는 쾰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에 14개 지부 위치

o 연혁

- 1955. 9.12. 창설
- 1990.12.20. 제정된 MAD 법에 따라 활동영역, 임무,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음

o 임무

- 극우/극좌 활동 및 테러 방호 임무
- 간첩 색출 및 사보타지 방호
- 연방군/NATO 동맹국 군부대 시설물 보안상태 평가
- 군사보안 점검 활동
- 기술적 보안조치(물자 비밀보호/물자 태업방호)
- 보안사건 평가 및 필요조치 건의
- 보안예방 임무 관련 부대장에 조언

o 권한

- 공개정보 수집 및 평가
- 수집된 첩보의 비밀조사
- 군 정보기관/보안 담당 부처와 협조
- 국방분야를 초월한 정치·의회 분야에 대한 첩보수집

2. 연구활동 경과

2.1. 해외사례 연구

- 독일통일 이전 슈타지 및 동독군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서독 및 연방군 대상 정보활동에 관련된 자료 수집 / 정리
-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반법치·반인권적 불법행위의 처리에 관한 서독내의 논의와 그 실제에 대한 자료수집 / 정리
- 연방군 정보기관인 군 방첩대(MAD) 내에서 동독군 감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실감있게 확인
- 독일 통일 당시 주 북한대사와 동독군 장교 출신으로 서독군에 근무하는 장교 등 다양한 인원 대상 면담으로 통일 당시의 문제점 및 한국에의 적용 시사점 도출

2.2. 국제네트워크 형성 노력

- 독일내 슈타지 연구 전문가와 통일 이전 서독내 슈타지 활동과 통일 이후 이들의 처리에 관련하여 의견 교환 및 친분 형성
 - 직접 및 전화 인터뷰, E-mail 교환 등
- '연방군 방첩대(MAD)' 장교 및 '독일 연방군 군 역사 연구소' 장교들과 연대감 형성, 향후 지속 교류 관계 형성
 - 한국군 소개와 한국의 전통 음식 및 문화소개로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 연방군 역사연구소 초청만찬과 주독일 무관 초청 만찬 등 상호초청 행사를 통해 인식의 폭 확대

3. 개별과제 추진현황

<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불법행위 청산 논의 >

- 연구의 초점은 구 동독군의 서독군 편입심사시 슈타지 요원을 왜 전원 배제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이것이 구 동독의 불법행위 청산 논의와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음.
- 사례 연구 결과,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불법행위 청산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와 갈등 내재
 - 서독출신은 구 동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입장
 - * 서독국민들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인식
 - 반면, 구 동독출신의 반체제 인사들은 사법적 처리가 곤란하면 공개적 시민법정을 열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결국, 사법적 처리와 정치적 처리를 병행
 - 사법적으로는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 조차도 '93. 1. 재판중지 판결
 - 정치적으로는 '구 동독공산당 독재의 역사와 결과에 관한 독일에서의 진상규명' 이라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하여 조사 진행
- 또한 실상에 있어서 슈타지를 위하여 활동한 여하한 전력도 거의 예외없이 전반적인 공공부문 취업금지의 근거로 간주되고 있음.

< 동독의 서독 및 연방군 대상 정보활동 >

- 슈타지 요원의 대서독 정보활동은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병행
 -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 Die Bundesbeauftragte für die Staatssicherheitsdienst Unterlagen, 일명 가옥관청) 소속의 슈타지 전문가인 '후베르투스 크나베(Hubertus Knabe)' 박사와 '기세케(Gieseke)' 박사 저서 집중 연구

- 연방군 대상 정보활동 관련 내용은 군 방첩대(MAD)와 연방군 역사 연구소(MGFA)소속의 전문가 인터뷰 실시
 - MAD소속의 슈미트(Schmidt)중령, 볼트(Boldt)중령, 헤텔(Härtel)중령
 - MGFA 소속의 바그너(Wagner) 박사
- 연구결과, 동독의 서독 대상의 정보활동은 정치계, 경제계, 학생운동, 종교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행해졌음.
- 이를 행한 기관은 슈타지 대외정보국(HVA)와 동독군 정보사령부(MiIND)였음.
- 현재까지 253명을 간첩혐의로 처벌하였으며 이 중에는 군인도 51명 포함되어 있음.

< 슈타지 요원의 처리 >

- 슈타지 요원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슈타지 문서관리청(BStU)의 근무자와의 인터뷰와 슈타지 전시회 관람 등을 통해 확인
- 슈타지 요원의 대외정보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구 동독의 민주정부가 시민세력의 동의하에 파기
 - 대외 정보활동이 노출되는 것은 국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대외 정보활동은 실제로 동독민의 인권유린과는 상관없다는 인식
 - 따라서 슈타지 문서를 이용하여 간첩 등을 찾아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
 - 다만, 슈타지 문서를 이용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할 사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슈타지 요원이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
- 현재까지 파악된 동독군내 슈타지의 비공식 요원은 장교 1,225명, 부사관 1,516명임. 이는 서독군에 편입되지 않은 인원과 편입되었다가 해고된 인원을 망라한 수치임.

< 동독군 감축시 슈타지 관련자 등 불순세 처리 >

- 동독군 감축시 슈타지 전력과 가족배경 등은 MAD에서 확인
- 슈타지 관련자는 전원 전역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통일조약 부록 I 제29장 업무영역 B(군인법) 2조 7항에 규정
“슈타지에서 근무한 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는 전역된다”
- 1990년 1월부터 2년 복무계약을 시작하여 1991년 6월까지 2년 복무계약을 하였고 '91.10.~'93. 6.간 동독군 장교를 직접 심문하였음.
- 이때 '92. 3.~'93. 5.간 시민들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위원회'의 심사가 병행되었으며 MAD는 자료만을 제공하고 최종 편입결정은 이 위원회가 하였음.
- '적합성 검토위원회'는 29명의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서류검토와 대면면접의 방법으로 편입을 결정하였고 연방군에 편입예정인 장교의 신뢰성, 성실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 직업군인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 총 2,648명을 검토하여 2,006 명은 서류검토만으로 통과시키고 642명에 대하여 대면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607명은 편입, 35명은 미편입 결정을 내렸음.
- 신원이 불확실한 인원은 연방군에 편입하되 이에 상응하는 제한사항 부여
 - 이들 인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신원조사를 통해 연방군 편입 이후의 변화상태 재평가

4. 활동내역

기 간	내 용
4월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GFA소장 및 과장, 직원인사: 4.1 ○ 도서관 사용법, 컴퓨터 활용법 등 설명 청취 ○ 연구소 자료 검색/ 관련 자료 수집 ○ 독일 베를린 연수요원 국방무관 초청 간담회: 4.3 ○ 과제 관련 면담 희망자 계획수립 토의 / 집축 (연방군 소령 Armin Wagner 박사 협조)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세계 한민족 포럼 방청(8~11) - 주독일 대사 황원탁, 국회의원 김근태, 베를린 자유대학 총장, 훔볼트 대학 교수 등 국내의 석학 참여
	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성 인사국 실무자 면담 준비(전화 및 E-mail접촉) ○ 국방성 인사국 Burkhard Köster 박사 면담: 4.17
	2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동독전문가(연구부장) 면담: 4.22 ○ 연구소 초청 만찬: 4.30
5월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내 도서관 이용, 슈타지 관련 자료 수집 ○ 슈타지 문서관리청 주관 세미나 참석: 5. 6 - 구 동독의 안보기구
	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중간점검(12-13) - 통일부 중간 점검단 군사연구소 방문: 5.12
	1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독일무관 초청 한독군 친선 만찬: 5.21 ○ 독일군 역사연구소 주관 세미나 참석: 5.22 - 슈타지 강화의 계기가 된 1953년의 동독 민주봉기 ○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된 동독평화혁명의 발상지 드레스덴 소재 니콜라이 교회 견학(5.24-25)
	2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s Marenzki 박사 면담 : 5.27 ○ 독일연방군 방첩대(MAD) 연수 준비 및 이동
6월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연방군 방첩대(MAD) 연수 - 통일당시 동독군 편입심사에 참여했던 실무자 등과 면담 - MAD 임무 및 기능 등 소개 청취
	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성 동서독군 통합시 담당자 중령 Luckau 면담: 6.12 ○ 연수결과 정리 및 추가 질문자료 작성 ○ 질문지 Remshagen 중령을 통해 확인
	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동독군 부대방문: 6.19
	2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 준비 ○ 귀국 : 6.28. 19:45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 6.29. 13:15 한국 도착

5.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내용

5.1. 독일 연방군 군사연구소장 면담(4.1)

- 인적사항: 해군대령 Jörg Duppler 박사
- 참가자: 통일기획요원 2명(소령 강인순, 변원섭)
- 한국 통일기획요원의 연구소에서의 연수 환영함. 기획요원의 연구소 연수는 이번이 3번째로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길 기대함.
- 연구결과가 한반도의 통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독일의 군사 연구소가 한국 통일에 기여하게 되었으면 좋겠음.
- 자료안내 뿐 아니라 관련 세미나 등이 있을시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으니 배우고 토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바람.
- 한반도에서 군통합시는 독일의 군 통합과는 달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
 - 왜냐하면, 통일전에 독일의 경우는 동독군 관련 문서나 자료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통합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사전에 북한군에 대한 자료 접근이 가능할 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임.
- MAD에 관련된 자료는 많이 갖고 있지 않음. 그러나, 슈타지 관련 자료는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임.

5.2. 독일 국방성 관계자 면담 (4. 17)

- 면담자 : 국방성 인사국 중령 Burkhard Köster 박사
- 독일의 통일은 전혀 무계획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진행되고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음. 만약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계획대로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잘 안되었을 수도 있었음.
 -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쇼크는 통일이 너무빨리 진행되었다는 점과 소련이 전혀 반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임.
 - NVA(구동독인민군)의 해체/통합은 소련과 의견교환없이 진행됨.
- 구동독군 해체 및 인수와 관련
 - NVA 장교들은 현재 군 통합과 민중봉기시 군이 개입하지 않은 것을 무혈혁명이자 자신들의 공로라고 표현함
 -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정보의 제한과 폐쇄적 사고 및 행동, 군 고위층 및 소련군 지휘부의 명령부재 등으로 조직적인 반발을 할 수 없었음.
 - 심지어 동독군은 다른 부대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정도였으며 따라서 다른 부대 및 군 전체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또한 통일전에도 자체 군 개혁 노력이 전혀 없다가 90. 1.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개혁노력을 시도하였으나 너무 늦었음.
 - 구동독군 인수후 자발적 전역유도를 위해 심리적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하였음. 즉, 평가를 통해서 인수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선발누락시 특별한 혜택없이 강제전역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활용
- 구서독군 감축에는 인위적인 방법보다 제도적 장치내에서 감축 유도

- 의무복무기간을 15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50세이상의 직업군인 및 장기복무자의 자발적인 전역유도, 부사관의 추가모집 축소, 초급장교 전역기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함.
- 이러한 조치의 단점은 군내의 고급인력이 사회로 빠져나간다는데 있음.
- o 현재 군 통합은 완료되어 병력이 어느지역 출신이냐는 이제 더 이상 군내 부여된 임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
- o 남북한군 통합과 관련하여 조언을 한다면
 - 남북한 병력통합시는 북한병력의 수적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독일 병력통합시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것임.
 - 북한은 동독보다 더 정보가 통제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엉뚱한 상황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북한군을 한국군에 편입시 받아들여져 심사에 통과한 사람만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3. 독일 연방군 군사연구소 연구부장 면담(4.22)

- o 인적사항: 연방군 군사연구소 연구부장 Volkmann 박사
- o 연방군 역사연구소는 일반적인 군사(軍史)를 연구하는 곳임. 군의 작전과 관련된 전술·전략 등을 연구하는 곳은 아님.
- o MAD에서의 연구는 대부분의 문서가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쉽지 않을 것임. 대부분의 비밀자료가 30년이 지나야 비밀이 해제되는데 통일 이후 10여년이 흐른 시점이므로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MAD와의 접촉이 훌륭하게 잘 이루어져서 MAD에서의 연수가 이루어지게 되어 다행임. MAD는 독일 연방군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임.
- o 현재 연구소는 구 동독의 1950~60년대 군사(軍史)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 동독군의 역사는 통일 이후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것임.
- o 독일 통일은 서독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음.
- 그리고, 1990. 7.에서야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가 군 병력수준에 대하여 합의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음.
- 합의 이후에 급속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고 사전계획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o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소련과 상당부분 종속되어 있어서 소련의 몰락으로 통일이 가능했음.
- 그러나, 북한은 거의 독립적/자립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임.

5.4. 슈타지 문서관리청 주관 세미나(5.6)

5.4.1. 개 요

- o 주최 : 슈타지 문서 관리청(Gauck 관청)
- o 장소 : Gauck 관청 대회의실 (베를린 시내)

o 참석대상 : 주요대학/기관 학자, 언론기관, 구동독 주민 등 200여명

o 발표 / 토론자

- Thomas Lindenberger 박사 (독일 역사연구 센터)

- Armin Wager 박사 (독일연방군 역사연구소 연구원, 소령)

- Jens Gieseke 박사 (Gauck 관청 구동독 기밀분석 분석연구원)

- Siegfried Suckut 박사 (Gauck 관청 연구소장)

5.4.2 주요발표 / 토의내용

o 동독은 엄격한 감시체제를 구비한 독재국가 중의 하나였음.

o 동독의 주민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및 군사화를 점점 강화하게 된 계기는 과거에 알려진 것처럼 70년대가 아님.

- 통일후 추가로 확보된 자료 등을 기초로 연구한 결과 70년대 이전 부터라는 것이 확인되었음.

o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동독의 안보기구(Stasi, 군, 경찰)들은 재편성을 하고 단기간의 개혁을 한 후 국내정치적으로 강력한 통제 체제를 구축하였음.

o 학교와 각종 조직들의 군사화와 "폭력"과의 전투 등을 통하여 동독 공산당은 사회 곳곳의 주민생활을 통제하고 규율을 강요하였음.

o 또한 이후 안보기구들은 급격히 확장하였는데, 이는 호네커 서기장 시대의 국가사회주의체제 공고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었음.

- 70년대에 동독 안보기구들의 건설에는 어떠한 배경적 논리가 숨겨져 있는지, 공안정치의 강화를 누가 주도하였는지,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및 국가적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5.5. 통일부 중간점검단, 연방군 역사연구소 방문(5.12)

5.5.1 개 요

- 토의자: 독일측- 군사연구소 부소장 Ehlert 대령 외 2명
한국측 - 통일부 정책심의관 외 2명, 현지 기획요원 3명

5.5.2 주요 토의내용

- 한국이 통일을 사전에 연구하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봄.
-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 독일의 통일은 냉전의 종식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
 - 동독군은 자신들이 지속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소련이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최소한 다른 이름으로라도 동독군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음.
 - 따라서 직업군인들은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 해군은 배를 좌초시키려 했다거나 육군은 전차를 끌고 나오려 했다는 등의 소문은 있었으나 그와 관련된 증거는 없는 상태임.
 - 정치적 결정이 있는 후에는 군대는 그에 따랐음.

○ 동독 인민군의 사회환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 군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서 직업교육을 하였고 동독군 출신들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나갔으며 주로 진출한 분야는 기술자, 파일럿, 렌트업, 보험설계, 자영업 등임.
- 그러나 동독군내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정착에 곤란을 겪었고 그래서 통일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주민들은 그들이 구동독 시절에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동독인민군의 사회 환원과정에서 군의 지원에 대하여

- 동독군 여군을 교환수나 행정보조원 등 군무원으로 흡수한 경우 등 최대한 군무원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군 차원의 지원은 많지 않았음.

○ 서독군내 잔류한 동독군의 반발 염려에 대하여

- 보수와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동독시절보다 향상되었고 근무환경도 좋아졌으므로 대체적으로 불만이 없음.

○ 통일 이전 동독군내에서의 체제개혁 움직임은 있었는지에 대해

- TV를 통해 서독의 풍요한 생활이 알려지면서 경제적인 격차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는 있었으나 군 지도부가 고령화되어 있었고 군 내의 권력기관들이 막강하여 행동화할 수 없었음.

○ 이러한 불만들이 쌓여서 1989년 탈출 러시의 동기가 되었으며 장벽 붕괴이후에 군 개혁 문제가 대두되었음. 1989년 탈출자 중에는 군인도 상당수가 있었음.

- 북한군내의 개혁지향 또는 개혁반대 쿠데타 가능성에 대하여
 -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철저한 감시체제하에 서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함.

5.6. 독일군 역사연구소 주관 세미나(5.22)

- 슈타지 강화의 계기가 된 1953년의 동독 민중봉기

5.6.1. 개 요

- 주최 : 독일 연방군 군 역사 연구소(MGFA)
- 장소 : 연구소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연방의회/주의회 의원, 주요대학/기관 학자, 언론기관, 군 고위인사, 연구소 연구원, 구동독 주민 등 300여명
- 발표 / 토론자
 - Torsten Diedrich 박사 (군 역사 연구소 연구위원)
 - Kahl-Wilhelm Fricke 박사 (역사학자, 당시 목격자)
 - Günther Glaser 박사 (구동독군 장교, 前동독 軍史연구소 연구위원)
 - Hand-Hermann Hertle 박사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 Manfred Rexin 박사 (언론인, 당시 민중봉기 취재 담당자)
 - Fritz Schenk (통일전 동독탈주자, 당시 봉기참가자)
- * 사회 / 진행 : Hand Ehlert 육군대령 (박사, 군 역사연구소 과장)
- * 인사말 : Jörg Duppler 해군대령 (박사, 군 역사 연구소장)

5.6.2 주요 발표 / 토의 내용

- 1953년 6월 17일 수십만명의 동독정권에 대한 민중봉기가 베를린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자 소련군의 전차, 동독정권의 전투경찰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함. 이 과정에서 50명이 사망하였고 수백명이 부상당함.
- 이 저항운동은 구동독정권 전 기간동안 발생한 처음이자 마지막 민중봉기였으며, 두번째의 봉기는 바로 동독정권 붕괴를 가져온 1989년 민주시위였음.
- 처음 6월 16일 데모가 베를린을 중심으로 발생하자 동독정권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서베를린지역에서 동조시위가 발생(당시 서독측의 언론보도를 통해 반대편의 상황을 인지함)하고 시위규모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심각성을 인식, 소련과 협의하기 시작함.
- 동독정권과 주요 분석가들은 소련이 동독정권을 구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소련이 무력진압을 주저하지 않은 것은 소련은 이러한 민중봉기를 허용하여 친소정권 붕괴를 좌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당시의 유럽지도 변경을 원치 않았음.
- 이 저항운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민중봉기 이후에 전반적인 동독정권의 통제체제가 강화되고 변경되었다는데 있음.
- 이 사건후 동독정권은 국내적인 SED 정권의 수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보체제(Stasi, 경찰, 군)의 추가건설과 보장이었음. 이러한 강력한 내부 감시체제의 영향으로 1989년 민주화 시위발생시까지 동독에서는 더 이상의 민중봉기가 발생하지 않음.

- 이러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게 된 이유는 당시 민중봉기에 대해서 슈타지 등 안보기구가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완전히 실패하였기 때문임. 당시 동베를린 지역에서만도 어느정도의 보안조직 체제를 구비하고 있었음에도 정보의 부족이나 조그만 불씨에 대한 과소평가 등으로 조치에 실패함.

※ 연방군 역사연구소 출간서적 “국민을 향한 무력 : 1953년 6월 17일 동독(Waffen gegen das Volk : der 17. Juni 1953 in der DDR)”
내용 소개 병행

5.7. 전 구동독 북한 주재 대사 면담(5. 27)

○ 면담자: Hans Marezki 박사

* 1986~90간 구 동독시절 북한주재 동독 대사 역임

○ 한반도의 통일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 합의에 의한 통일은 어려울 것임. 이는 독일 사례로도 증명이 가능하며 이론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 독일의 통일은 동독이 없어진 것임. 연방제도 좋은 방법이 아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흡수통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유일한 통일의 길은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방법 그것 뿐임.

○ 어떤 상황이 되어야 통일을 이룰수 있을 것인지

- 김정일이 통제능력을 잃거나 주체사상이 없어졌을 때임.
- 북한은 이미 경제, 인권, 기아 문제 등 몰락했다고 보는 편이 옳음.

○ 북한을 지속 유지하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유교에 기반한 복종과 전 사회의 군사화 때문이라고 생각함.

- 아이들 조차도 군사적 체계에 따라 움직이고 농민, 공장노동자들도 전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근 야산에 수류탄, 대공포 등을 구비하고 있음.
- 여자들도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등 정형화된 군사화 사회임.
- 군대가 사회간접시설들 예를들어 전화, 우편, 철도 등을 관장하고 유일하게 노동당 시설만이 군사통제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임.
- 모든 나라의 힘이 군의 유지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북한은 참호속에 들어가 있는 형국임.

○ 통일을 이루었을때 상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 통일후에는 남북한군을 합친 180만의 군대는 25만이면 충분함. 이는 독일 인구가 8천만명인데 32만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 수치임.
- 따라서 우선 실업자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될 것임. 나중에는 도로 보수, 교량 건설 등에 투입 가능하지만 우선은 엄청난 숫자임.
- 또한 모든 북한 장교들이 직책을 잃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음. 북한군은 북한 정권과 철저히 연계되어 있어 정권이 붕괴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 따라서 북한 장교들에 대한 사면대책과 일자리 제공 등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북한내에서 대사로 활동할 때 북한 군부에 받은 인상은

- 북한의 차수급 인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전쟁이 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동독의 장군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 하였으나 북한 장군들은 미군만 철수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함. 북한군에는 방어무기보다 공격무기가 훨씬 많았음.

- 동독에도 전쟁계획이 있었으나 실행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았음. 그러나 북한 장교들은 군사적 충돌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은

- 상호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통일전 동독군은 TV를 통해 서독을 알고 있었으나 북한은 틀림.

- 햇볕정책을 통해 긍정적인 남한의 의도를 일부 북한에 전달하였다고는 하나 북한군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함. 병사들이 휴가를 나와야 자기들이 먹는 쌀이 남한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휴가 자체를 못 나오는 상황임.

○ 김정일이 비교적 북한군을 잘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정일의 개인적 능력 때문이라고 보는지

- 북한의 시스템은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것임. 사람의 기능과는 별개로 자동적으로 움직임.

- 군 시스템이 새로운 사람을 요구했고 그에 김정일이 부응한 것임. 북한군은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을 지휘해줄 새로운 대체 인원이 필요했다고 생각함.

○ 만약, 우리가 북한의 통일기획요원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몰락했다고 말할수 있는지

- 물론임. 당신들은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줄 것이고 그것이 당신들의 운명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것임.

5.8. 통일 당시 동독군 편입 실무자(6.3)

○ 면담자: 국방성 인력국 슈바이쩌(Schweitzer) 중령

* 1990~94간 국방성 인력국에 근무하면서 동독군 편입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 통일 당시 동독군을 편입시키면서 어려웠던 점은

- 서독군 48.9만과 동독군 15.5만명(동독 민주정부의 의무복무자 소집 금지 등의 노력에 힘입어 인수시에는 9만명)을 37만명으로 줄이는 임무와 동독군을 동화시키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으며 이때 동독군의 사기뿐 아니라 서독군의 사기도 고려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있었음.

○ 동독군의 계급을 하향 조정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 최초 통합시에는 군 복무기간(나이)이 유일한 기준이었으며 2년복무 후 선발시에는 능력도 고려 요소가 되었음. 또한 서독군의 정책에 따라서도 계급이 조정되었음.
- 예를 들어 동독군 장교라 할 지라도 서독군 부사관이 하는 일이라면 부사관으로 계급을 조정하였음. 극단적인 예로 동독에서 주유소 관리관 임무를 수행했던 중령에게 최초에는 소령계급을 부여했다가 2년 복무후 이등상사 계급을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계속 복무했음 (서독에서 주유소 관리관은 부사관 임무였음)

○ 적합성 검토위원회에 대하여

- 총 29명의 성직자, 전직 장군, 심리학자, 일반 상점원 등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었으며 편입예정인 동독군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임무를 가졌음. 이는 국민들이 연방군을 신뢰하게 하는 차원이었음. 즉, 국민앞에서 시험을 한번 더 본다는 개념이었다고 이해하면 됨.
- 이들은 92. 3.25.~93. 5.18.간 총 2,648명을 심사하여 2,613명에 대하여는 긍정평가를 35명에 대하여는 부정평가를 내렸음.
- 위원회 설치에 대한 지침은 국회에서 받았고 계획수립은 국방성에서 실시했음.

○ 동독군 편입과 관련하여 한국에 조언을 해 준다면

- 우선 동독군을 분산시켜서 세력 형성을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는 것과 공동의 군 역사에 대한 이해로 동독군을 동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 그리고 동독군의 소외감을 없애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임.
- 예를들어 서독의 장교학교를 하노버에서 동독지역인 드레스덴으로 옮기고 소련의 훈련장을 과학화 훈련장으로 만들었으며 해군을 대거 동독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동독군의 소외감을 없애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며 한국도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5.9. MAD 지부장 면담(6.4)

○ 면담자: 볼트(Boldt) 중령

- * 1990년 통일 당시 동독군 편입을 위한 MAD내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뒤셀도르프 지부장으로 근무

○ 동독군 편입심사시 어떤 지침을 받고 활동하였는지

- 당시 국방장관의 지침은 “가능한 많은 동독군을 인수해서 민주주의 정신을 가지고 직업적 자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정도 였음.

○ 통일조약에 배제대상으로 슈타지 만을 적시한 이유는

- 우선 슈타지가 동독의 국가정보기관이었기 때문이며 통일조약이 14일 만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었음.

○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관의 자질에 대하여

- 전국에서 선발하였으며 교육을 따로 시키진 못했음. 동독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전문가를 선발하였음.

- 처음에는 심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심문을 진행하면서 저녁마다 심사관끼리 정보교환을 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면서 어려움이 점점 적어졌음.

o 하루에 몇 명 정도씩 심사하였는지

- 최대 2명까지 가능했음. 개인별로는 10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명쾌하게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심문을 계속했음.
- 개인별로 4일의 시간을 주고 호출하였으며 2일은 이동시간, 2일은 심문시간으로 활용했음.

o 심사간 어려웠던 점은

- 동독에서의 처벌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었음. 동독에서의 처벌은 대부분 정치적인 처벌이었기 때문에 진짜 잘못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음
- 동독에 중앙범죄수사청이 있었으나 자료 보존이 부실하여 활용하기도 곤란하였음.

o 편입과 관련하여 한국에 조언을 해 준다면

-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간이며 중요한 것은 관련 서류임.
- 서류가 확보되면 시간을 대폭 줄일수 있음. 시간과 서류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임.
- 동독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심문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음. 따라서 북한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해 두면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5.10. 동독군의 간첩활동에 대응한 MAD활동 실무자(6.5)

○ 면담자: 헤텔(Härtel) 중령

* 통일이전 동독군의 대서독군 간첩활동을 탐지하는 부서에 근무하였으며 1989~91
간 동독군 상층부에 대한 분석업무 담당

○ 동독정보기관(슈타지)와 서독정보기관의 차이점은

- 서독의 정보기관은 민주체제로 첩포,구금 등 실행행사를 하지 않았음.
즉, 수사권을 갖지 않은 반면 동독의 슈타지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등 모든 것이 가능했음.

○ 서독을 대상으로 활동한 동독의 정보기관은

- 3개 기관임. 슈타지 대외정보국(HVA), 중앙 I 국(HA I), 동독군
정보사령부(MilND)임.

- 슈타지 대외정보국은 3,819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였으며 700 여명을
전 세계에 투입하였음.

- 슈타지 중앙1국은 동독군과 국경수비대를 대상으로 한 방첩활동과
동독군의 감시통제 역할과 아울러 국경에서 50km 이내의 군사정찰
활동을 하였음.

- 동독군 정보사령부는 군사정찰활동을 주로 진행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 각 기관의 활동분야가 구분이 되지 않았고 각 중점
분야는 틀렸으나 서로 범주를 넘나들었음.

○ 동독의 정보기관을 통일전 파악하고 있었는지

- 큰 골격은 알고 있었으나 자세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음.

○ 서독인이 동독의 정보기관과 접촉하게 된 동기는

-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 개인의 성향으로 정치적 신념, 출세욕, 명예욕, 자존심 상실, 모험 욕구, 금전욕, 두려움, 무지, 순진성, 기회주의, 사랑, 향수 등이 있으며

- 인위적 동기로는 비도덕성, 판단력 부족, 부채, 위법 행위 등임.

- o 통일 이후 슈타지 문서 등을 통해 발견해 낸 간첩에 대하여

- 1,553건의 간첩활동을 확인하여 약 3,000명의 관련자를 기소하였으며 253명이 간첩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중 51명은 2년 이상의 형을 받았음.

- MAD 도 256명을 간첩혐의로 검찰에 기소하였고 그중 5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음. 이중 23명은 현역이었고 나머지는 전역한 상태였음.

- o 동독의 정보기관의 공세에 대응한 MAD의 대응조치는

- 우선 주민신고를 활용했음. 동독의 '로미오 수법'에 대응해서는 여비서들의 새로운 연애대상자들에 관심을 기울여 관찰했으며 군인중 자주 여행하는 사람은 요주의 대상자였음.

- 또한 보고하지 않고 여행하는 자도 요주의 대상자였으며 여행경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군인의 경우 본인에게 '알리바이 증명요청'을 통해 예약, 식사장소 등을 확인했음.

5.11. 통일당시 동독군 심사를 직접 실시한 실무자(6.6)

- o 면담자: 쿤켈(Kunkel)중령, 마이어(Meyer)중령

- * 1991~93간 구 동독지역인 포츠담으로 파견되어 구동독군 심사를 직접 실시

- o 동독군 심사당시의 경험을 소개한다면

-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명확했으며 자료도 불충분 했음.
- 심사를 신청한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노력했음. 그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사자나 모두가 정복을 착용하였음.
- 정치 간부, 특히 러시아 유학생은 우선적으로 심문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환경' 특히 부모였음.
- 妻家 환경도 중요하였음. 왜냐하면 장인, 장모, 처로부터의 사상적 영향도 중요했다고 보았기 때문임.
- 동독군은 '화장실' 휴지만 빼고 다 비밀이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보안체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자기 부대외에는 잘 모르고 있었음. 따라서 심문이 진행될수록 심문관이 동독군 보다도 동독군을 더 잘 알게 되었음.
- 진급은 일반적인 것보다 빠르거나 늦을 경우 집중조사하였음
- 동서독간에 언어와 용어의 차이가 있어 초기에는 심문에 애로가 있었음. 이러한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슈타지의 공식 요원도 우선 받아들여 활용하기도 했음.
- 근무지 변경시 접촉한 정치장교와 슈타지 장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갔음.
- 답변간 얼굴색이 바뀌는지 태도가 변하는지 여부를 유심히 관찰하여 답변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했음.
- 중대선임하사는 95%정도가 슈타지의 비공식요원이었고 국방성 근무자 4명중 1명이 슈타지 비공식 요원이었을 정도로 슈타지는 군에 폭넓게 침투해 있었음.

- 비공식 요원의 경우에도 서약하지 않은 사람이 많음. 왜냐하면 동독 군내에서 슈타지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인식했기 때문임.

○ 진술의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해 나갔는지

- 심문간 논리성 여부, 일관성 여부 등으로 확인해 나갔고 나중에는 '슈타지 문서관리청'의 자료로 확인하였음.
-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음.

○ 슈타지 비공식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 슈타지 요원들은 군사적 전문성보다는 비군사적 분야에 근무했으므로 특별하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 심사장소와 심사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지

- 시간이 촉박하고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지역별로 세 곳에 모여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음
- 심사팀별로 공통의 방법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음.

5.12. 동독군 출신으로 현재 서독군에서 근무하는 장교(6. 12)

○ 면담자: 해군 중령 Dieter Luckau

- * 구 동독군에서 중령으로 근무하다가 대위 계급으로 서독군으로 편입되어 동독군 해군의 서독군 편입작업에 참여하였고 현재 다시 서독군 중령으로 진급하여 국방성에서 의전담당으로 근무

- 동독군에서 근무 당시 동독군을 감시하던 정보기관은?
 - 동독군을 감시하던 기관은 슈타지가 유일한 기관이었음.
 - 군대내의 다른 정보기관들은 대외 정보수집만 했고 군대내의 정보 수집은 슈타지가 담당했음. 슈타지가 은밀한 감시를 하였고 동독 공산당(SED)은 공개적인 감시를 하였음.

- 동독군 장교들은 전원 동독공산당(SED)소속 이었는지?
 - 그렇다고 볼 수 있음. 동독군 장교들은 모두가 공산당원이었으며 일부 기민당이나 기사당 소속도 있었으나 이는 소수였고 극히 예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슈타지가 동독군내에서 악명이 높았는지?
 - 매우 대답하기 어려움. 50년대부터 통일되기 전까지 각 년대 마다 슈타지에 대한 인상이 다름. 그러나 동독 정권 말기엔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임.

- 군내의 슈타지 요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음. 다만, 본인이 통일후 동독군의 서독군 편입 작업을 도우면서 인지한 바에 따르면 동독군 해군의 약 20%가 슈타지의 공식, 비공식 요원이었음.

- 동독군의 서독군 편입시 MAD의 심사과정을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해줄수 있는지?
 - 본인은 1990년 12월에 최초로 MAD의 심사를 받았음. 전역할 사람은 전역하고 2년 근무신청후에 면접이 이루어졌고 근무신청서에 몇가지 설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슈타지 요원이었는가? 슈타지를 위해 일한 적이 있는가? 하는 등의 내용이었음.

- 그러나 이것은 국방성에서 법적 조치를 위해 만든 설문이었고, MAD의 신상조사시에는 입대동기, 성장과정, 군 경력, 경력상의 당시 임무 등에 대하여 자세히 묻는 질문이 있었음.
 - 2~3명의 MAD요원이 심사하였으며 통상 1회 3~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직업군인과 복무연장자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신상명세서는 어느 부대에서 어떤 근무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하도록 요구되었음.
- 심사를 받을 당시의 개인적인 심정을 솔직히 표현한다면?
- 같은 언어를 사용했으나 상당히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독군에 대한 신뢰심은 있는 상태였음. 즐거운 기분은 아니었으나 별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여 심사에 응했음.
 - 일부 질문들은 대답하기 불편한 질문들도 많이 있었으나 알고 들은 대로 대답하려고 노력했음.
- MAD의 심사는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 면접이 강요된 것이 아니고 서독군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불만이 없었음.
 - 많은 질문들이 개인적인 아픔을 건드리는 내용도 있었고 서독의 관점에서 동독의 가치는 모두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한 질문들이었으나 이미 동독체제는 없어졌으므로 그러한 질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 슈타지와 협력을 문제삼아 억울하게 전역한 사례를 알고 있는지?
- 슈타지와 협조를 서면으로 약속한 증거물을 가옥관청에서 찾아낸 경우가 아니면 강제 전역시키지 않았음.
 - 다른 사람의 보고서에 내 이름이 거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시키는 억울한 사례는 알지 못함.

○ 통일조약에서 조차 슈타지에서 근무한 동독군을 편입시 배제하기로 한 이유는?

- 그 이유는 우선 1990년 동독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슈타지의 도청, 감시, 음해 등 비도덕적인 잘못이 동독민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슈타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고,
- 서독민들에게도 간첩 기욤사건 등 슈타지의 서독에 대한 위해행위 때문에 슈타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통일조약에 자연스럽게 명시되게 되었다고 생각함.

○ 남북한 통일시 북한군 처리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 통일이라는 상황이 발생시 북한군의 직업군인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우선 지금까지 항상 적(敵)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이 승리자의 입장에서 다가옴에 따라 주입식 교육에 의한 이데올로기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의 생계 등과 관련된 금전적 불안 등이 동시에 엄습하게 됨.
- 통일후 북한군을 상대해야 할 경우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지금까지 당신들의 인생은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치부하게 되면 상호간에 접근이 매우 어려워짐.
-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조치임. 예를 들어 자유스런 토의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노력 등이 필요함.
- 동독의 경우는 통일당시에도 기아 등의 문제는 없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를 보면 기아 등 내재된 불만이 상당히 많음. 이는 잘못 처리될 경우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군 장교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대화 등을 통해서 남한사회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물론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림. 그리고 생필품 등 경제적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러한 지원조치가 없으면 이들은 통일의 반대세력이 될 수 있음
- 그리고 새로운 법의 적용시에도 무조건적인 엄격한 법 적용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왜냐하면 북한사람들은 거의 세뇌교육으로 남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의 인내는 필요함.

6. 조사자료 목록

6.1 한국문헌

<단행본>

-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팔복원, 1996)
- 박장현 편역, 「독일통일, 한국의 모델인가?」 (문원출판, 1999)
- 윌리엄 v. 케네디 저, 권재상 역, 「첩보전쟁」 (자작나무, 1999)
- 대한매일신보사 편, 「북한연감 2002」(대한매일신보사, 2001)
- 김윤덕, 「국가정보학」 (박영사, 2001)

<논문>

- 유명기, “독일 군사통합 분석과 한반도 군사통합 방안”, 국방대학원, 1996.
- 고상두, “독일통일과 과거 청산의 문제”,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 정홍모, “통일독일의 동독 역사청산”, 성균관대학교, 1998.
- 최병섭, “한반도 군사통합시 고려요소에 관한 연구”, 국방참모대학, 1998.
- 양희천, “독일통일과 한반도통일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1999.
- 장동성, “한반도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2001.
- 김태경, “한반도 군사통합 연구”, 국방대학교, 2002.

6.2. 독일문헌

- o Einigungsvertrag und Wahlvertrag. München 1990.
- o "Staatssicherheit" der DDR. Der Westen im Fadenkreuz der Stasi. Bonn 1993.
- o Einsatzkommandos an der unsichtbaren Front. Terror- und Sabotagevorbereitungen des MfS geg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1999.
- o Die hauptamtlichen Mitarbeiter de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Personalstruktur und Lebenswelt 1950-1989/90, Berlin 2000.
- o Die unterwanderte Republik. Stasi im Westen. Berlin 2000.
- o Was treibt den Spion? Berlin 2001.
- o Die DDR-Staatssicherheit. Schild und Schwert der Partei. Bonn 2001.
- o Mielke-Konyern. Die Geschichte der Stasi 1945-1990, Stuttgart, München 2001
- o Der diskrete Charme der DDR. Stasi und Westmedien. Berlin 2001.
- o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2002.
- o Parteiherrschaft in der NVA. Berlin 2002.
- o Der Militärische Nachrichtendienst der Nationalen Volksarmee der DDR und seine Kontrolle durch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Die Geschichte eines deutschen Geheimdienstes. Frankfurt 2002.

6.3. 미국문헌

- o The Stasi. The East German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 London 1996

< 해양수산부 강정구 >

1. 개 요

1.1. 일반사항

○ 활동기간 : 2002. 3. 4 ~ 6. 28

- 에버트재단 단체연수 1개월, 개별연수 3개월

○ 연구과제명

- 통독과정에서 독일의 해양정책(환경중심) 사례연구

○ 연수기관 : 지질자원연구소, 연방해양조사원, 해양생태연구소 등

○ 주요 활동사항

- 동서독의 통일전 해양정책의 내용 문헌연구 및 정리

- 독일통일 과정에서 해양분야 교류협력 사례연구 및 시사점 도출

- 통일 이후 독일의 지속 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 독일의 해양정책 관련 좌담회, 세미나 참석 등

1.2. 연수기관 소개

가. 연방해양조사원

○ 주 소 : Bernhard-Nocht Str. 78, 20359 Hamburg

○ 전화번호 : 3190-4000

○ 연혁 및 기능

- 동 조사원은 연방 교통부 소속기관

- 해양조사, 해양덤펍, 항행정보 제공,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 수행

* Dr. Horst Hecht 지도

○ 연수기관 협조사항

- 연구 필요자료 검색 지원 등 협조

- 연구관련기관(국립공원, 습지, 수산 정책등) 면담 주선 및 자문

나. 연방지질자원연구소

○ 주 소 : Stillweg 2, D-30655 Hannover

○ 전화번호 : 643-2679

○ 연방지질자원연구소는 천연에너지자원(해양오일, 가스), 지질, 수질, 북극조사, 토양, 자연자원, 해양환경 등 조사연구 수행

* Dr. Gerd Schriever 지도

- 에너지자원(해양 오일, 가스), 지질(해양), 수질, 북극조사연구, 토양, 자연자원, 해양자원, 해양환경 등 조사연구

o 연수기관 협조사항

- 연구 필요자료 검색 지원 등 협조
- 연구관련 해당 전문가 수시 자문 및 면담관계자 주선

2. 연구활동 경과

2.1. 해외사례 연구

- o 해외사례 연구를 위해 관련자료 수집 정리
 - 통일전 동서독간 해양분야 교류협력 사례 분석, 정리
 - 80년대 후반 동독 민주화 운동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및 동구권 사회 변혁에 미친 역할
 - 통합 과정에서 동독측 연구인력, 산업인력 활용실태
 - 통일 이후 독일의 지속 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등
- o 통일이후 독일의 지속 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한 해양재난통제정책 관련 좌담회 참가
- o 구동독의 해양오염실태 및 수산정책 등에 관해 구동독 출신 인사 면담 등을 중심으로 연구활동 전개

2.2.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연방해양조사원, 연방지질자원연구소, 수산연구소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해양분야의 상호교류 협력 사례를 통한 신뢰구축의 중요성 인식
- 통일에 대비한 한국 해양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준비 방향, 독일 사례 평가 등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 향후 필요한 사항은 e-mail로 연락기로 함

3. 개별과제 추진현황

○ 해외사례 과제

- 연방해양조사원, 환경청, 수산연구소, 연방지질자원연구소, 연방갯벌관리청(해양국립공원관리), 해양생태연구소 등 방문 및 인터뷰와 관련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해외사례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정책과제 연구

- 해외사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 일부 수정·보완
- 특히,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간 상호신뢰를 토대로 해양분야 교류협력과 한국 해양의 특성이 독일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양자적·다자적 국제협력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관점 확인

4. 활동내역

- o 2002. 3. 4 독일 도착
- o 2002. 3. 4~31 에버트 재단에서 단체연수(본 · 베를린)
 - 3.14 연방환경부(본) Berendes 국장 면담
- o 2002. 4. 1~10
 - Dr. Schriever 면담(4.1/연방지질자원연구소), 연구소 현황 및 연구방향에 관한 의견청취
 - 개인연구과제 설명 및 필요자료 요청
- o 2002. 4. 11~20
 - 연방해양조사원 자료실에서 관련자료 검색 및 수집, 소속 연구원들의 전문 연구분야 등 조사
 - Hecht 국장 면담(4.11/연방해양조사원), 동 기관 소개 및 통독 이후 통독 재건과 해양보전을 위한 환경투자간의 어려움 등에 관해 의견청취
 - Dr. Wiedicke 면담(4.16/연방지질자원연구소), 통일과정에서 동 기관의 통독기관 통합사례 청취 및 자료 수집
- o 2002. 4. 21~30
 - 해양재난사고 관련 간담회(4.24/연방중앙해양재난통제센터)
 - 통독과정에서 해양관련 협력사례 자료수집
- o 2002. 5. 1~10
 - Prof. Hubold 면담(5.8/연방수산연구원), 독일의 지속 가능한 수산정책 청취
 - 연구실에서 관련자료 정리 · 분석 및 중간점검 준비

o 2002. 5. 11~20

- 중간점검 워크샵(5.11~13/베를린) 실시
- Hecht 국장 면담(5.19/연방해양조사원), 통일과정에서 연방해양조사원의 동독 관련기관과의 교류사례 청취
- 연방해양조사원 내 관련자료 수집

o 2002. 5. 21~31

- Dr. Schlueter 면담(5.26/연방지질자원연구소), 독일 통일 사례에 비추어 한국 통일과정에서 유의할 점 청취
- 수집자료 정리 및 분석 계속

o 2001. 6.1-10

-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한 교육 Programme 참가(6.4-6/헬골란트 해양생태연구소)
- Dr. Holzmann의견 교환(6.10/연방환경관리청), 독일의 해양정책에 관한 일반사항 질의 응답
- 수집자료 종합 정리

o 2001. 6.11-26

- 선진항만 견학(6.13-18), 네덜란드 노테르담항, 영국 하위치항
- Prof. Hubold 면담(6.19/연방수산연구원), EU의 지속가능한 수산정책 및 :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해양환경 전략
- 수집자료 종합분석 및 연구보고서 작성

5.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내용

5.1. 연방환경자연보전핵안전부(3. 14 / 본)

가. 면담자 : Dr. Berendes 국장

나. 주요내용

- 독일 통일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음. 따라서 당시 서독 정부는 동독의 해양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었음.
- 특히 해양환경에 관해서는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수행되었으며, 통일당시 동독은 사회제도, 생활환경이 완전히 와해된 상황이었음.
- 당시 동독 주민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서독으로 이주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했으며 당시 동독 주민들은 시장경제 vs 사회주의의 대결에서 시장경제 체제가 승리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동독제도를 활용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통일조약 체결시 독일헌법에 동독을 흡수 통합하면서 특히 환경관련 동독의 이상적인(법률상 서독보다 강한 규제기준 등)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음.
- 그러나 6개월 안에 계획수립, 집행이 이루어져야 했으며 의회통과, 관련부처간 협의 문제 등으로 당시 상황은 이를 수용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음. 또 연방국가의 특성 및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 등으로 자치권이 강했던 것도 동독제도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음.
- 한국이 통일을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은 독일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특히 서독이 겪었던 시행착오중 대표적인 것은 서독은 통합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동독의 좋은 제도를 연구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임.
 - 한국이 특히 준비할 것은 북한의 해양환경실태, 관련제도에 관한 사전연구를 충분히 하는 것 등임.

5.2. 연방지질자원연구소(4. 1 / 함부르크)

가. 면담자 : Dr. Schriever

나. 주요내용

o 연방지질자원연구소의 연혁 및 기능 소개

- 동 연구소는 독일 프러시아 왕조가 독일의 지질 및 자연환경을 위한 연구소로 베를린에 최초 설립(1873)한 유서 깊은 연구소로서 1934년 하노버에 분소 설치(토양연구)하였으나, 1958년 연방경제부와 로베-삭스니 주의 협의에 따라 연방토양연구소로 개편, 1975년 연방지질과학 및 자원연구소로 개편(연방경제부 소속), 1990년 동독의 지질연구소로부터 지질 및 자연자원 분야를 통합하여 현재에 이룸
- 지질 및 해양딴핑, 수질연구, 에너지자원(해양오일, 가스), 토양, 북극·해양 조사연구, 해양환경 및 자연보전
- 유럽연합 연방정부 자문, 독일경제(에너지) 자문,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 등

o 연구계획 설명

-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간 해양분야 교류협력 사례, 민간단체의 역할, 통일 이후 독일의 지속 가능한 해양개발 정책,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발틱해, 북해에서 국제 협력, 특히 구동독의 해양정책 등에 관한 자료 요청
- 연구범위에 포함되는 필요 자료 확보 및 방문기관 선정, 면담자, 일정 등을 주선하고 확정하여 연구에 도움을 주기로 함.
- 연방수산연구원, 연방환경관리청, 갯벌관리청(국립공원관리), 국제기구 관련기관 등

5.3. 연방해양조사원(4. 11. / 함부르크)

가. 면담자 : Dr. Hecht

나. 주요내용

○ 연방해양조사원 연혁 및 기능 소개

- 함부르크는 한자동맹의 자유무역도시로서 상업적 선박소유자들이 1861년 항행의 안전보장, 항로개설, 해양감시 및 영국 선박들과의 경쟁을 위해 사설 연구기관으로 설립
- 1871년 독일제국 성립 이후 영국과의 경쟁을 위해 정부기구로 재편되고 해군 소속 하에 둠(동독의 경우 통일 전까지 해양분야주요업무는 해군에서 관할).
- 2차 대전 이후에는 해군이 관여하지 않고, 연방건설교통주택부 소속으로 해양연구조사 기능을 수행하였고, 통독후 구동독 관련기관들을 흡수 통합하였으며, 현재도 구동독 시절 관련기관 통합이후 업무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에는 해양항행안전, 항로조사개발 등이 주요업무였으나 현재는 해양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보전, 해양환경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통일전 동독은 해양환경에 관심도 여력도 없었으며, 동독의 공업지대에서 발생된 산업 폐기물(중금속, 부영양화 물질 등)이 엘베강을 타고 북해로 흘러들어 엘베강의 오염이 매우 심각했음.

○ 지금은 엘베강의 수질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닐 정도로 개선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동독지역에서의 산업의 붕괴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된 것임.

○ 또한 통일 당시 구동독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식수문제였음. 환경 파괴가 지나치게 심각하여 구동독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식수문제가 심각했음.

- 그러나 환경개선 및 식수문제는 해결되었을지라도 구동독 지역의 많은 산업이 붕괴됨으로써 실업, 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
- 따라서 통독 이후 동독의 경제재건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도 지혜가 필요한 영역임.
- o 독일 통일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 여건 등이 독일 통일에 우호적이었고, 동독주민들의 체제변혁요구가 맞물려 이루어진 것임. 한국의 경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적 여건,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 제도를 충분히 준비해 나가기 바람.
- o 통일 당시 동독의 해양조사기관 책임자 면담을 주선하는 등 구동독의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음.

5.4. 연방지질자원연구소(4.16. / 하노퍼)

가. 면담자 : Dr. Wiedicke

나. 주요내용

- o 서독정부는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부터 통합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독의 해양지질 자원관련 연구기관에 서독정부 및 연구기관 인력을 파견하여 기관간 통합을 추진하여 통일당시에는 이미 기관 통합이 완료단계에 이름
- o 통합추진과정
 - 첫째, 동독 기관의 지휘부(Headquarter) 파악 접수 : 관련 법률, 의사 결정기구 등 핵심요소 파악

- 둘째, 지역별 산하기관 보조기관 파악
- 셋째, 기관내 당조직·정보기관조직, 예산, 사업내용, 인력현황, 개인별 신상(지위, 역할 등) 파악
- 넷째, 동독 기관내 통합보조인력 선별
 - * 서독 출신만으로는 피통합기관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동독 기관 소속인력중 일부를 선별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음. 또 대부분의 동독정부 연구기관에는 당조직, 슈타지조직 등이 산재되어 있어, 조직 통합 등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선별하는 데에도 동독출신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였음.
- 다섯째, 보유 자료 파악, 파기·외부유출 제한 접수 및 사업정리 흡수
 - * 동독은 대부분의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자료파악이 쉽지 않았으며 또 통일당시 특정자료 및 연구인력은 해외로 유출
 - * 동독은 러시아, 폴란드 및 쿠바와 공동으로 태평양에서 심해저 자원개발(망간, 아연, 구리 등)을 수행했던 바, 통일 당시 관련자료 및 연구인력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국부(국가적 사업성과)의 유출이므로 사전에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
- 여섯째, 기관 및 인력통합(통합 당시 동독의 인력중 10%만이 재고용) 및 조직 축소(동독기관의 사업, 연구중 많은 부분은 민영화 또는 아웃소싱)
 - * 통합 초기부터 당소속자, 슈타지 인력 등에 대한 선별조사후 인권유린행위자, 권력남용자 등은 철저히 배제

o 시사점

- 북한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사전정보 축적
 - * 서독은 베를린 장벽붕괴 직후부터 기관통합을 추진하였고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통합을 이루었으나, 통일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동독에 대한 사전정보 부재로 비효율성이 나타남.

- 북한출신 보조자의 적절한 선정·활용
- * 당조직, 정보사찰기관원 등의 배제 및 자료, 인력의 외부유출 방지 등 효과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5.5. 해양재난(선박사고, 유류오염사고등) 관련 간담회

가. 일반사항

- o 일시/장소 : 4.24/해양재난중앙통제센터 회의실(쿱스하펜)
- o 참석자 : Hans-Werner Monsees(해양재난중앙통제센터 기관장) 외 2명,
Dr. Gerd Schriever, 통일기획요원

나. 중앙해양중앙통제센터 소개

- o 소속 : 연방주택건설교통부
- o 조직구성체계
 - 연방주택건설교통부 소속이나 조직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해군, 경찰 등이 비상시 합동으로 동원되어 긴급구난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
 - 6개의 주요 섹터(중앙정보센터, 해양오염통제, 해양화재진압, 긴급인명구난 및 의료, 선박조난구조, 조정본부)로 구성
 - 30여척의 선박, 항공기, 헬기 및 36명으로 구성된 비상대기조 구성운영

다. 주요논의 사항

- o 연방해양재난중앙통제센터 업무소개
 - 독일의 해역내에서 주요 해양사고는 없었으나 연 70회 이상 비상대비 훈련 수행 및 평가(150만 EURO/년)

- 중앙정보센터는 독일 해역내에서 기상, 해류, 조수 선박의 이동상황 등에 대한 종합정보를 수집하여, 관련기관 및 운항선박 등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 사전예방
- 특히 중앙정보센터는 해상상황 및 해양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에 큰 역할 수행
- 해양재난사고에 대비한 5분 출동조, 응급 구조단을 운영
- 감시 항공기, 헬기 등은 중앙통제센터의 지휘아래 군에서 파견된 인력이 운영
- 재정, 기타 이유로 비상시를 대비한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축소 압력도 있으나, 해양사고로 인한 자연의 훼손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현행 시스템 유지

o 어려운 점

- 북해 및 발틱해의 경우 여러국가가 해역을 접하고 있어 해양사고시 인접국가간 공동 방제, 구난 체제가 갖추어져야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나, 인접국가간 긴급재난에 대한 공동대응 체제 구축은 미흡한 편임.
- 예를 들면 독일 관할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사고시 인접국인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거나, 영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인 바 국가기관이 협조에 소극적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음.

o 한국의 해양재난 통제구난 시스템 소개

- 한국은 선박사고, 해양유류오염사고 등의 총괄적 지휘통제권은 해양수산부에, 인명선박구난 등은 해양경찰 및 해군, 해양유류오염방제는 해양경찰과 국가·민간공동출연기관인 해양오염방제조합 등이 공동수행

- 한국은 동·서·남해의 13개 지역에 국가가 관리하는 긴급방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해양오염방제선, 청항선박 운영 등)
- 한국도 영해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책임을 지나, 해양사고시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긴급구난 및 방제

라. 협력네트워크 구축

- o 해양사고는 한번 발생되면 그 피해가 장기적, 지속적, 광역적으로 나타나므로 예방 및 발생시 긴급구난 체계의 효과적 운영이 매우 중요함.
- o 관련사항에 관해 정기적인 상호 정보, 자료 교환 협의

5.6. 연방수산연구원(5.8, 함부르크)

가. 면담자 : Prof. Hubold

나. 주요내용

통일독일 수산정책의 기본원칙

- o 자원관리의 생태학적 건전성과 지속성 유지
 - 어획량의 쿼터제 실시를 통한 어로자원 남획 예방 및 생태학적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어류 자원 개발
 - 수산생물자원 보전 측면에서 개발된 어획기술 활용
 - 어린고기의 어획 제한, 망목 제한 등
- o 초과어획능력의 감축
 - 어업능력과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사이의 적정한 균형 확보가 가장 중요

- 정부 지원을 통해 어선을 감축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압력이 가중되기 때문에 반대
 - 어선 감축은 자발적이고 시장의 측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개입은 억제하고 대신 쿼터량 제한, 망목제한, 어로기간 제한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친환경적인 연해자원 관리 및 수산물 양식
 - 수산자원 생산해역의 청정함 유지를 통한 건강한 수산물 생산
 - 과도한 수산물 양식의 제한을 통한 해양의 건전성 유지
 - * 수산물 양식이 독일 수산물 수요의 일정부분을 충족시키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엄격한 규제를 통해 수산물 양식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
 -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 정책
 - 유전자 조작 또는 호르몬 조작 등을 통한 수산 양식 금지
 - 수산물 양식에서 약품사용 제한 등을 통한 국민건강 확보
- EU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정책
- EU 차원에서는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선단축소(어선 감축), 어로 기간 제한(산란기 및 야간 어로 제한)
 -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은 위성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과도한 어획에 대한 EU 차원의 모니터링 실시
 - 해양에서의 행위 감시 강화
 - 해역 감시를 위해 감시 책임자를 임명하고, 어획물의 크기 종류 등에 대해 엄격히 통제
 - 어린 고기가 어획될 경우 쿼터량에 포함시킴으로써 과도한 어획 금지

□ 통일후 동독(콤비나트) 소유 어선의 사유화

○ 원양선박

- 동독은 수산물 수출이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써 통일 이전에는 원양선박이 최대 38만톤에 이르렀음.
- 통일 독일은 과도한 수산업을 규제하는 측면이 강했으며 공개경쟁을 통해 원양선박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수산회사가 인수(선적은 독일에 유지)

○ 연근해선박

- 전통적 수산업이 이루어진 발틱해 연안(구동독)의 소규모 어선은 주로 동독 출신 어업인이 인수하여 전통적인 수요 수산물(칭어, 대구 등)을 어획하는 소규모 수산업 유지
- 인수 방식 : 구동독 소유 자산의 일반적인 처리 원칙에 준하여 인수

○ 관련산업 인력 재조정

- 구동독 출신 해양 및 수산분야 인력의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은 일반적인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짐

5.7. 연방해양조사원(5.19 / 함부르크)

가. 면담자 : Dr. Hecht

나. 주요내용

- 통일과정에서 연방해양조사원과 동독의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사례 소개

- 1982년 연방해양조사원(BSH)에서 동독의 해양수로국(SHD)을 방문하여 상호 방문 및 항해·수로·기상 등 관련자료 협력 등을 제안하였으나, 정례적인 기관간 교류협력으로 정착되지는 못함.
- 통일협상 진행과정에서 로스톡의 SHD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관심사에 관해 논의한 적이 있으나, 동독의 SHD는 해군 소속으로 정치적 선전 등을 주로 함.
- o 독일 통일전후 발틱해 북해의 특성상 한국가의 해양오염행위가 타국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적 협력기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동독도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IOC(정부간 해양협력위원회), 헬싱키 컨벤션 등에도 참여한 바 있음.
- o 독일 통일 이후에는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유럽연합법률(국제법) 등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해양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 o 이는 한국의 통일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봄.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교류협력이라고 생각함. 한국은 남북간 양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함께 하는 다자간 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통일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o 개인적으로 '90년대 초반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서 북한의 대표를 만난 적이 있으며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한 바도 있으나 이후 국제회의에서 만난 적이 없음.
- o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임.
 - 이와 관련 첫째, 해양이 기후, 자원생산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자 교류의 매개체이므로 해양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 둘째, 해양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며
 - 셋째, 생태적 서식지 보호, 자원남획 억제 등이 독일 해양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5.8. 연방지질자원연구소(5.26 / 하노퍼)

가. 면담자 : Dr. Schlueter(통일 당시 동독 정부연구기관 통합 책임자)

나. 주요 내용 : 독일 통일에 비춘 한국 통일과정에서의 조언

<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 >

- 남북한 양측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
 - o 독일의 경우 분단시부터 동서독간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하였고, 동서독간 상호 TV시청을 통한 정보의 교류가 원활하였음
 - o 특히 2차대전 패전책임으로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으며 이것이 당시 주변 국제정세를 통일에 이롭게 이끌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됨.
-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상호제도에 관한 연구
 - o 독일은 동방정책이 집권정당이 변해도 큰 틀의 변화없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동독 주민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일관된 목표에 변함이 없었음.
 - o 그러나 80년대 후반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가 동독의 가장 큰 요소였으나, 독일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부족했고, 따라서 동독의 법제도에 관해 충분한 연구·준비가 부족했음. 이는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이상적인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한계로 작용함.
 - o 한국은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축적에 노력해야 하며, 북한의 법제도에 관한 사전연구를 통해 통일과정에서 제도 통합과정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램.

□ 통일 이전 정부간 협력의 강화

- 통일은 사전 교류협력과정에서 충분한 상호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봄. 이 점에서 한국이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고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 최근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의 상황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가장 최선은 주변국들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당사자간 더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 통일과정에서 유의할 점 >

□ 통일과정에서의 예정된 시간 계획에 따른 통합

- 독일은 통일이 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짧은 시간안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협상과 제도적 통합작업을 병행해야 했음.

□ 개선된 법제도와 체제변동에 대한 준비

- 동독 주민들은 통일을 사회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인식하고, 서독의 체제와 제도에 동독을 흡수시키는 것으로 인식함.
- 또 동독 주민들은 서독으로의 통합만이 동독을 조속히 재건하고 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음.
- 특히 통일 당시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유로 동독의 미래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제시했고 이것이 동독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게 됨.
- 이는 동독 재건이 빠른 시간내에 동독출신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불만의 요소가 되기도 했음.
-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지나치게 북한 주민들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치적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람.

□ 통일된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 생산성 및 국민복지에 대한 고려

-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경제로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간의 통일은 남한의 체제와 이념을 북한에 이식시켜 남한으로 흡수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봄.
 - 그러나 지금 남한의 체제와 이념이 가장 최선이고 이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미래는 국민의 자유와 복지에 관심을 갖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통합과정에서 동독의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
 - * 동독연구기관을 통합할 당시 서독인과 같은 더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서독을 일종의 점령군으로 보고 신뢰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

□ 북한사회의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재건

- 독일은 통일당시 동독의 사회 인프라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동독 재건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 예를 들면, 공장이 가동될 경우 원료, 전력, 고품질의 노동력, 생산품의 보관, 운송, 정보유통, 금융 등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으나, 독일은 통일 당시 단순히 부동산 및 공장기계 가치만을 가지고 판단했음. 이는 향후 동독의 인프라를 지나치게 고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재건비용 산출에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킴.
- 한국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인프라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평가를 내리고, 재건계획을 수립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5.9.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한 교육 Programme 참가

가. 일반사항

- 일시/장소 : 6.4-6/헬골란트(헬골란트 해양생태연구소)
- 주요일정
 - 6. 4, 15:00-18:00 해양생물 및 독일 만지역 해양생태계 소개
 - 6. 5, 09:00-12:00 독일 만지역 플랑크톤 및 모니터링 소개
13:30-19:00 헬골란트 섬 파위플랜트, 식수생산공장 등 방문, 해양 조류 관찰
 - 6.6, 09:00-12:00 섬 주변 해양저서생물 슬라이드 시청

나. 해양생물 및 독일 만지역 해양생태계 소개

- 강의자 : Dr. Eric Hagmeier
- 해양생물에 대한 일반적 소개 및 헬골란트 섬 지역 해양생태계 소개
 - 헬골란트 섬 지역 해양동식물 서식·산란지 등
- 해양생태계 및 해양 보전의 중요성 설명
- 헬골란트 섬 주변 플랑크톤 설명
 - 독일 만지역에서의 해양생물 모니터링 설명
 - 적조, 녹조 생물 및 적조 피해 등
- * 북해 및 발틱해 연안은 유해성 적조 등이 거의 매년 발생하였으나,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관리로 횡수 및 피해범위를 점차 감소하고 있음.

다. 폐기물 처리장 방문

- 헬골란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소각처리장을 운영(재활용 우선, 기타 섬 발생 쓰레기 100%처리)
- 폐기물 소각 잔재(슬러지 등)는 육상으로 반입, 콘크리트 블록화하여 육상에 보관
 - * 독일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오스파 컨벤션에 따라 육상발생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후 최종 잔재는 육상에 보관

라. 기타

- 헬골란트 섬 지역 해양조류 관찰
- 헬골란트 파워플랜트 및 식수생산공장 방문
 - 환경친화적인 풍력 발전 위주(독일은 20년 후에는 핵 발전을 완전히 포기할 계획이며, 자연동력을 이용한 발전연구 활발)

5.10. 연방환경관리청 의견 교환(6.10 / 베를린)

가. 면담자 : Dr. Holzmann

나. 주요 내용 : 독일의 해양정책에 관한 일반사항 질의 응답

Q1) 독일은 해양보전을 위해 많은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와덴해 습지 등 특정지역을 보전지구,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관습적 또는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문제 발생시 어떻게 설득, 해결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는지?

⇒ 해양 또는 수자원은 자체가 인간 생존을 위한 절대적 요소임. 따라서 하천 또는 해양에 접해있는 토지 등에 관한 사적소유권 및 관습적 권리는 이미 일정부분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공공목적에 위한 필요시 타 권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물론 소유자, 권리자들도 권리를 획득할 당시부터 사적소유권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제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Q2) 한국은 하천, 강 등의 수질유지를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대신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 사용부담금을 부과, 상류지역 환경유지를 위해 투자하고 있음. 하천수질유지를 위한 독일의 법제도, 정책은?

⇒ 한국과 독일이 자연적 여건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음. 한국은 하천이 한국내에 국한되어 흐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며, 한국이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놀라운 사실임. 독일의 경우 여러 국가를 거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유럽연합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상류와 하류를 구분하는 방식의 규제는 없고, 모두 동일하게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 받음.

Q3) 통일 이전에 서독에서 실시했던 정책중 실패한 사례, 제도 등이 있을 것임. 통일 이후 그러한 제도를 동독지역에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동독에 다른 제도를 시행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대로 시행하면 동일한 문제가 동독지역에서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 독일 통일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짧은 시간안에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동독의 제도를 연구하여 적용하거나 서독의 문제있는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는 지금도 상당히 아쉬운 점임.

Q4) 통일후 동독지역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급작스러운 통일로 문제점이나 실패 사례도 있을 것임. 한국이 통일과정에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언이 있다면?

⇒ 한국은 통일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고 또 통일준비를 위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음. 북한의 법률, 제도, 현황 등에 관한 사전연구는 통일이후 제도시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봄. 독일의 경우, 분단시부터 교류, 협력을 지속하여 동독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서독의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음. 한국도 남북정상회담 및 각종 회담, 이산가족 방문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한국은 전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더욱 쌓아야 한다고 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Q5) 해양오염의 경우 80% 정도가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UN 보고서(1994년)의 결과임. 독일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 독일 역내에서는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을 벗어나는 순간 기본적으로 EU법을 적용 받음. 특히 하천을 통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관리에 국제적인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Q6) 한국은 London Convention에 의거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면서 작년부터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해양환경개선에 투자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는 어떠한지?

⇒ 구 동독시절 많은 오염물질이 발틱해에 투기되어 문제가 되었으며, 화학무기, 핵폐기물등도 발틱해에 투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재는 북해, 또는 발틱해에 폐기물투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육상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최종잔재는 콘크리트 블록화하여 육상에서 처리함.

5.11. 북·동해(North-East Sea)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기구(OSPAR Convention) 관련 의견 청취(6.12/연방해양조사원)

가. 면담자 : Dr. Hecht

나. 주요내용

○ 배경

- 북해의 유류오염 확산 및 유류오염 예방능력 확충을 위해 북해 인접 국가간 공동노력을 합의한 본 합의(Bonn Agreement, 1969)가 기원이라 할 수 있음.
- 해양오염예방 및 해양보전을 위해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부터 해양오염물질 투기를 막기 위한 합의로 오슬로 컨벤션(1972) 및 육상으로부터 하천, 대기,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해양(북해)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예방하기 위한 인접국가간 합의로 파리 컨벤션(1974)이 이루어짐.

* 오슬로 파리 컨벤션을 실행하기 위한 각각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됨.

○ OSPAR Convention 설립

- 오슬로, 파리 컨벤션 집행위원회의 장관급 회담이 열려 북동해(North-East Atlantic)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채택함으로써 성립(파리, 1992)되어 1998년부터 오슬로 파리 컨벤션을 합하여 OSPAR Convention으로 운영.
- 관리그룹, 5개의 전략 위원회(부영양화, 생물다양성, 유해물질, 해양산업 및 핵물질 전담) 및 7개의 워킹 그룹으로 구성되어 운영

○ 주요 합의내용

- 회원국들의 준수사항, 해양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해양오염제거를 위한 공동노력 등 규정.

- 해양오염물질 유입원 분야별 규제 채택(육상기인, 해양기인, 해양산업, 해양레저활동 등)
- 조직운영, 예산분담, 지역별 실행프로그램 등 규정

o 주요 활동분야

- 유해물질의 해양유입 억제
- 핵물질의 적절한 관리 및 해양투기 금지
- 부영양화 물질(유기질 비료)의 해양유입으로 인한 적조, 녹조현상 억제
- 생태적 안정성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역할 강화
- 해양산업 및 해안가 활동의 적절한 관리

o 시사점

- 폐쇄적 특성을 갖는 해역은 일부 국가의 오염행위가 전체 해역 및 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접국가간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함.
- 우리의 경우 서해, 동해는 반폐쇄성 해역으로 인접국가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포함되는 서해 및 동해의 해양관련 국제협력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해양분야의 남북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큼.
- 북해의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1984년 북해 보호를 위한 회의시 엘베강을 통해 하수의 75%를 배출하는 동독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경제적인 문제임. 따라서 북한이 국제협력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5.12. EU의 지속가능한 수산정책

가. 일반사항

- 일시/장소 : 6.19/연방수산연구원
- 면담자 : Prof. Hubold

나.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해양환경 전략

○ 목 적

- 해양환경·생태계 보전과 상업적 수산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술과 방법 개발 및 우선 순위의 조정

○ 관련 법령

- 해양자연환경과 수산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결정

○ 내 용

- EU위원회(98. 6, 카디프)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지역사회의 수산정책을 고려하고 해양환경을 위해 협력해야 함.
- 어로기술과 장비의 현대화 따른 어획능력의 고도화는 생물학적 수산자원 재생산 능력을 초과함으로써 남획 및 해양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특정자원(대구, 청어, 가자미류 등)의 남획은 동 해역에서 다른 자원의 이상 번식을 초래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정자원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남획을 방지하여야 함.
- 어로행위나 수산물 양식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동식물의 산란·서식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해서는 해양의 자원생산 능력을 고려하여 어로 및 자원양식이 이루어져야 함.

EU의 수산정책은 해양생물자원과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국제협력 및 합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원칙, 해양오염의 사전예방원칙 등에 기초한 국제협약의 규제를 수용할 것임.

해양생태계의 생물학적 다양성, 생산력, 구조 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개발하고,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고려하며, 해양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소를 유지할 것임.

이를 위해 과도한 어획능력 및 어로압력을 축소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오염행위의 사전예방 및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국회사무처 송수환 >

1. 개 요

- 활동기간 : 2003. 4. 1 ~ 6. 30 (3개월)
- 연구과제명
 -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에 대한 의회의 의석 배분에 관한 연구
- 연구과제 추진방향
 -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서독의 새로운 연방주로 편입되면서, 구 동독지역인 신연방주에 대하여 연방의회(Bundestag)의 의석을 배분한 현황과 그 기준을 연구
 -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신연방주에 대하여 지역대표형 연방상원(Bundesrat)의 의석을 배분한 현황 및 그 기준을 연구
 - 아울러 수도인 베를린 시의 통합과정에서 구 동베를린지역에 대한 베를린 시의회의 의석을 배분한 현황과 그 기준을 연구
 - 참고로, 독일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몫까지 고려하여 유럽의회 차원에서 있었던 독일국가 의석의 변화 내용 및 유럽의회에서의 국가별 의석배분 기준 등에 관해 연구
- 연수기관 : 독일연방의회(Bundestag) 사무처

2. 연구활동 경과

o 연수 기관 출입증 및 사무실 확보

- 연구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지정된 연방의회 사무처 의회법령과 직원을 만나, 제국의회(Reichstag) 건물 1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배정 받고 열쇠를 수령하였으며, 도서관, 식당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
- 연방의회 출입증 및 의회도서관 이용자카드 발급 등 행정적 사항을 도와 주었고, 슈라이너 국장(Mr. Schreiner) 및 뮐러 과장(Mr. Mueller)을 만나는 약속에 대하여도 협의함.

o 의회도서관 자료 검색 협조

- 연방의회 사무처직원으로부터 의회 도서관 직원을 소개 받아 도서관에 관한 일반 현황 및 도서관의 자료 검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 들었음.

o 연방의회 사무실내 인터넷 사용의 협조

- 연방의회 사무처직원을 통해 의회내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개받아 인터넷상에서 한글로 쓰고 읽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이후 한글로 인터넷 검색 및 이메일의 사용이 가능해졌음.

o 기관 방문 및 연구 자료 수집

-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및 연방의회 사무처
- 독일 연방상원(Bundesrat) 및 연방상원 사무처
- 베를린 시의회(Abgeordnetenhaus) 및 시의회 사무처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 연방의회 도서관, 베를린 시의회 도서관 등

○ 주요 인사 면담

- 연방의회 관계자 : 2인
- 연방상원 관계자 : 1인
- 베를린 주의회 관계자 : 2인
- 유럽의회 관계자 : 1인
- 기타 : 1인 등

3. 개별과제 연구방법

- 연방의회도서관, 베를린 시의회도서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료 검색을 하여 분석·정리하고 관련 기관의 직원과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독일어 자료에 대한 번역 등을 토대로 해외 사례 연구과제 작성

4. 활동내역

기 간		주요 활동내역
4월	1~4	연방의회 출입증 발급, 사무실 배정 및 인터넷 사용 협조 의회도서관 사용자 등록 및 자료 검색 방법 숙지 Wolfgang Mueller 의회사무처 PDIG 과장 면담(4.3)
	7~11	연방의회도서관 자료 검색 연방의회 본회의장 견학(4.8) 세계한민족포럼 참석(4.9-11, 베를린)
	14~18	개별연구과제 수행계획 조정·수립 연방의회도서관 자료 수집 및 분석
	21~25	연방의회도서관 자료 수집 및 분석 연방상원 방문 및 협조 요청
	4.28~5.2	연방의회도서관 자료 수집 계속 해외사례 수정 계획 작성
5월	5~9	Mr. Schreiner 연방의회(Bundestag)사무처 PD국장 1차 면담(5.6) 연방상원(Bundesrat) 방문 및 Mr. Hoeltkemeier 면담(5.8) 중간점검 대비 면담 주선 및 워크샵 자료 준비
	12~16	중간점검 워크샵 (5.12, 대사관) Mr. Schreiner 의회사무처 PD국장 2차 면담(5.12) Dr. Maretzki 교수 면담(5.15)
	19~23	베를린 시립 도서관 자료 검색·수집 베를린 시의회 방문 및 면담 협조 요청
	26~30	유럽의회 방문 및 협조 요청 Dr. Schoof 의회사무처 유럽연합업무과장 면담(5.28)
6월	2~6	유럽의회 방문 및 본회의장 견학(6.5) 해외사례 내용 보완·작성
	9~13	해외사례 자료 정리 및 정책과제 보완
	16~20	베를린 시의회 방문 및 견학 베를린 시의회 의원 Dr. Zotl 면담(6.18)
	23~27	베를린 시의회 Mr. Roegner-Franke 면담(6.25) 연방의회 사무실 연수 종료 (6.25), 귀국 (6.27)

5.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 주요내용

□ Wolfgang Mueller(독일연방의회 사무처 의회법령과장)

1. 일시 : 2003년 4월 3일 10:30 ~ 12:00

2. 면담 내용

○ 한국과 독일의 의회 구성 차이에 관한 의견 교환

- 독일의 경우, 현재 연방의회 전체 의원 600여명의 절반인 300명 정도는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되는 반면, 나머지 절반인 300명 정도는 주 단위의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입각하여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별 지지율에 따라 배분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 273명의 의원중 46명 정도의 비례대표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남.
- 또한 초과의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실제의원의 수는 의원정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한국의 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임.

○ 한국과 독일의 의회 운영상 차이에 관한 의견 교환

- 독일연방의회의 운영은 주로 정당에 의하여 주도되며 의원 개인의 역량에 의해 정책의 향방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법안의 성립과정에서도 정당 차원의 워킹그룹이 활동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각종 재단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토론하는 등 활발한 입법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입법 과정에 있어서 3독회 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어 있어서 입법의 신중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 의회와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상원을 통한 논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

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논의사항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정부의 경우 연방상원에 대표를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인 베를린에 일종의 대사관 같은 대표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통일관련 연구 주제에 관한 의견 교환

- 통일 과정에서 신연방주에 대한 의회의 의석 배분 현황 및 그 기준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라서 관련 정보를 확보하거나 인터뷰 또는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약간의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독일 통일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동서독의 제도적 통일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되었고, 구 동독·구 서독으로 구분하는 것의 실익이 상당히 적어진 상태라고 생각됨. 다만, 아직도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이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연구활동에의 협조 약속

- 자료 검색, 주요인사 소개 등 의회사무처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기로 약속

○ 의회법령과(PD1G) 직원들과의 모임 주선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반경 정기적으로 열리는 의회법령과 직원회의가 열리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그 회의에 참가하여 사람들과 인사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음 (4월 둘째주에 있었던 회의에 참가하여 직원들과 인사하고 나중에 5월 말경 직원 단합대회에 동참하기도 함).

□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본회의장 견학

1. 일시 : 2003년 4월 8일 15:00 - 17:00

2. 견학 내용

○ 본회의장의 건물 및 구조에 관하여

- 통일 이후 새로 단장한 제국의회 건물의 중앙에 위치한 본회의장은 유리로 된 돔 아래에 위치하여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공개된 깨끗한 회의장이라는 느낌을 주었음.
- 본회의장 뒷편 위쪽에 극장의 좌석과 비슷한 견학 방문객용 테라스가 쪽 펼쳐져 있으며, 보통 2시간 정도의 견학을 통해 본회의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회의장의 배치에 관하여

- 정면 중앙에 의장이 위치하고 바로 좌우에는 의원 중에서 정당별 배분을 고려하여 선발된 Secretary가 배석하게 되며, 의장을 바라보고 왼쪽에는 연방정부의 각료들이 위치하고 왼쪽에는 연방상원의 대표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가 되어 있음. 회의장내에서의 정당별 위치는 의장을 바라보고 왼쪽에 야당인 CDU/CSU가 자리잡고 있고, 오른쪽에 집권여당인 SPD와 Grunn/Bundis90이 자리잡고 있다고 함.
- 본회의 전담부서인 의회사무처 의회법령과 직원의 경우 의장석 바로 뒤에 위치하면서 의장단을 보좌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의장단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한편 직원들의 경우도 자신에게 배정된 순번에 따라 2시간 정도씩 교대로 본회의장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체계였음.

○ 회의 진행에 관하여

- 연방의회의 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의장과 그 옆에서 의장을 보좌하면서 회의의 진행을 담당하는 Secretary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특이한 상황임. 의장(5명의 부의장에 의하여 교대됨)과 좌우에 위치한 Secretary들이 항상 3명이 팀을 이루어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며, 의사진행이나 발언의 순서, 표결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함.
- 독일의 경우 이러한 Secretary의 존재와 함께 연방의회 의사규칙에 입각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실무진이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받는 업무부담은 한국 국회의사무처 의사국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됨.

□ Hermann Josef Schreiner(독일연방의회 사무처 의회법령국장)

1. 일시 : 2003년 5월 6일 10:30 ~ 12:00 <1차>
2003년 5월 12일 13:30 ~ 14:30 <2차>

2. 면담 내용

[1차면담]

- 독일통일을 이해하는 기본적 관점에 대한 설명
(논의의 시작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슈라이너 국장이 먼저 이야기한 것임)

- 독일 통일은 구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동독의 5개 지역이 서독의 새로운 연방주로 편입(Accession,독어로는 Beitritt)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

- 따라서,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동일함을 유지하면서 다만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할 것임.

- 그리고 실제로 서독의 법체계를 동독 지역에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변화들은 적응(Adaptation)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참고> 독일통일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서독 기본법 제23조를 근거로 동독이 서독의 연방주로 편입되는 방법'과 '서독 기본법 제146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헌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통합국가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방법'간에 논란이 있었으며, 특히 동독의 시민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신헌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그러나, 신속한 통일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열망과 함께 신헌법 제정을 위한 시간적 제약 등을 이유로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통일방안이 추진·채택되었음.

-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 대한 연방의회(Bundestag)의 의석 배분 방법과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 동독 지역에 대한 연방의회 의석 배분에 대하여는 1990. 12. 20로 만료하는 연방의회 제11대 잔여 임기의 단계와 그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제12대 임기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함.

(1) 제11대 연방의회 단계(1990.10.3 - 1990.12.20)

- 1990. 10. 3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후 통일된 독일의 연방의회에서 동독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 연방의회 의원을 어떻게 선발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음. 통일 이후 서독의 법체계가 그대로 동독 지역에 적용될 것인데, 동독 지역에는 그 체계하에서 선출된 연방의회 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공백상태라고 해야 할 것임.
- 당시 서독의 제11대 연방의회 임기가 2달 반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① 동독 지역에서만 서독 법체계하의 직접 선거를 실시하여 연방의회 의원을 선발하는 방법과 ② 1990. 3. 18 동독 지역에서 실시된 자유 선거를 통해 선출된 400명의 동독 인민회의(Volkskammer, 영어로는 peoples' chamber라고 번역)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으나, 서독의 제11대 연방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후자에 의한 동독 인민회의에 의한 간접적 선거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11대 연방의회 잔여 임기에 동독 지역 대표로 참가하도록 배분된 의원의 수는, 통일조약 체결 당시의 동서독 인구비례에 상응하여(당시 서독 인구 6,200만명, 동독 인구 1,600만명 정도) 서독 지역 연방의회 의원 519명에 대비한 144명으로 인정하였음(통일조약 제 42조).
- 그리고, 동독 인민회의 의원 400명 중 독일 연방의회로 파견되는 144명을 선발하는 방법은, 1990. 3. 18 동독 인민회의 총선 결과 각 정당이 차지하고 있던 의석 비율에 비례하여 144명을 각 정당별로 배분한 다음 각 정당에서는 할당된 인원내 대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취합한 결과를 동독 인민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형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졌음.

- 한편, 이렇게 “해당지역 의회에 의한 간접 선거를 통해 인구수에 상응하여 그 주의 의원을 독일 연방의회로 편입하는 방식”은 ①이미 1950년대에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프랑스의 영토에서 독일의 영토가 된 Saarland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 바 있었던 방법이며, ② 통일 이전 서베를린 시의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오던 방법이었음.

(2) 제12대 연방의회 이후의 단계(1990.12.21 이후)

- 1990. 12. 21 이후에 시작되는 제12대 연방의회는 통일조약에 부속되는 조약으로서 선거조약에 따라 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구동독 지역까지 총망라한 독일 전체 총선거가 동일한 선거법을 근거로 하여 1990.12.2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제11대 잔여 임기 동안 존재하였던 동독지역 의원의 정당성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것임.
- 제12대 연방의회 선거(1990년) 이후로는 연방의회의 전체 의석수가 총 656석이었는데, 그 중 구 동독 지역이었던 5개의 신연방주 지역에 대하여 배분된 의석의 수는 134석 정도라고 할 수 있음(베를린시에 통합된 동베를린 지역의 몫까지 포함하는 경우 대략적 144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됨).
-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근거가 되는 선거법에서 연방주에 대한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해당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o 동독 인민회의 의원 400명중 독일 연방의회로 파견되는 144명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지
 - 동독이라는 국가의 존재가 없어졌으므로 그 국가의 대표기관인 동독 인민회의도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144명의 의원이 살아남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o 1990년 통일이 이루어지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독일 연방의회 의원정수 및 연방주별 의석배분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 2002년 제15대 연방의회부터는 의원정수가 기존의 656명 선에서 8.8% 정도 줄어든 598명 수준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의회의 규모가 너무 크고 비용이 많이 들며, 행정부 견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반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그런데, 의원정수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적정 국민의 수, 외국의회와의 상대적 비교, 그 나라의 정치적·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o 통일협상 과정에서 1990년 4월에 구성되어 활동한 '의회통합위원회'의 활동 내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관련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 의회통합위원회는 1990년 4월에 서독과 동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의회통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는데, 1990.10.3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15차례 정도의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기억함.
 -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관한 자료는 관련 회의록을 찾아보면 될 것이고 간단한 활동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개는 독일어로만 되어 있음. 의회통합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던 직원이 Mrs. Lieser 국장인데 지금은 퇴직해서 쾰른 쪽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o 1990. 8. 3. 에 체결된 선거조약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일단 당시 선거조약은 통일조약에 대한 부속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본인은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차후에 별도의 자료 확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향후에 선거조약 8개 조문에 대한 독일어 자료를 받아서 번역하였음).
- o 독일 양원제 의회제도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연방상원으로서의 Bundesrat의 역할과 권한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독일의 의회제도는 연방상원에 해당하는 Bundesrat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Elected)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 의하여 지명(Appointed)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양원제 의회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함.

특히, 독일의 Bundesrat(영어로 Federal Council이라고 번역)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와 전통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를 다른 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임. 나라마다 그 나름대로의 전통에 따라 독특한 의회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2차면담] 통일부 중간점검과 병행

○ 독일 통일에 있어 의회분야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통일 과정에서의 법체계 정비에 관하여 의견을 주신다면

- 독일통일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은 그것이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임. 즉, 동독과 서독의 양 국가가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이루어낸 것이라기 보다는 동독이 서독의 신연방주로 편입되었다는 점임.

- 따라서 통일 전후에 헌법이나 법률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서독의 체제를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보아야하며 국회 부문의 변화에 대해서도 동독의 의원들이 연방의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추가되어 의회의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그 이후의 재반 문제들은 적응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함.

- 적응의 과정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세대에 해당하는 30-4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 동서독의 경우 법률 체계와 사회제도는 양쪽 지역에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생활수준까지 동일해진 것은 아님. 통일당시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생활수준 및 문화를 동일하게 향유하기를 기대했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함.

○ 통일 과정에서의 의회 분야 통합에 있어서는 어떤 준비들이 있었는지

- 독일통일의 기본적인 틀은 연방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체결된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정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며, 통일협상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의회부문에서도 동독과 서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회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선거 및 정치분야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1990년 10월 3일 통일 직후에는 동독 지역을 대표하기 위한 의원 144명이 구 동독 인민회의로부터 선발되어 파견됨으로써 2달 반 정도의 기간동안 연방의회의 확대가 있었으며, 1990년 12월 이후에는

신연방주를 포함한 전체 독일을 상대로 하나의 법적 기반 하에 연방의 회가 구성되었음. 다만 통일 당시 첫 번째 선거에 한하여 동독 지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5% 봉쇄조항의 범위를 동독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등 선거법상 일부 예외가 인정되기는 했음.

※ 5% 봉쇄 조항의 의미

-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경우 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5%를 넘지 않는 경우 정당득표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군소정당의 난립에 의한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임.
- 1990년 3월 18일 동독의 최초 자유선거가 있기 전의 동독의 의회정치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동독 최초 자유선거는 어떠한 주체와 방식에 의하여 채택된 선거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 구 동독 인민회의의 경우 사회주의통일당(SED)이라는 독재정당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거의 99% 정도가 여당에 찬성하는 형태로 독재정당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수기 역할 밖에 수행하지 못했음.
 - 그런데, 1989년 동독내부의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동서분단의 장벽이 붕괴되고, 동독의 민주세력들을 총망라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용하면서 1990년 마침내 최초의 자유 선거에 의한 의회구성을 위한 선거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그에 입각한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음.
- 서독의 경우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독의 편입에 의한 통일을 이루어냄으로써 신속하고 간단하게 통일을 달성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동독 최초의 자유 선거에 의해 동독내 민주적 정부가 이루어진 것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반도 통일과 북한에서의 자유선거에 관하여 독일과 비교한 의견을 준다면
 -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는 TV나 교류를 통하여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들이 이후에 서독의 제도에 신속하게 편입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북한 주민의 경우 정보의 부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부재로 인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 것이고 그렇게 통일을 맞이할 경우 독일과 비교하여 많은 혼란과 더 많은 적응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함.

□ 연방상원 방문 및 Mr. Ralph Hoeltkemeier (대외관계과) 면담

1. 일시 : 2003년 5월 8일 10:30~12:00

2. 연방상원(Bundesrat) 본회의장 견학

o 본회의장의 건물과 구조

- 포츠다머 플라츠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옛날 프러시아 시절 궁전의 내부를 개조해서 만든 건물임.
- 본회의장에는 정면 중앙에는 의장단이 위치하고 의장을 바라보고 왼쪽에는 연방정부의 대표들의 좌석이 있고, 오른쪽에는 연방상원 각 위원회 스태프의 자리가 배치되어 있음.
- 각 연방주를 대표하는 좌석은 일단 6개씩(한줄에 2명씩 3줄) 구분되어진 16개의 균등한 공간이 배분되어 있고, 다만 인구 구간에 따라 헌법에서 정해지는 연방주별 의결권의 수에 따라 좌석의 맨앞에 3~6의 숫자가 적혀 있고 각 연방주는 정하여진 의결권의 숫자만큼의 대표를 본회의장에 참석시킴.

o 연방상원의 구성

- 연방상원의 대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방주의 주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별도의 임기도 없음.
- 헌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별 인구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결정되는 연방상원의 의원정수는 현재 16개 연방주에 69명임.
- 2003. 5월현재 상원 의석의 연방주별 배분은 인구 2백만명 이하는 3명(함부르크, 브레멘, 잘란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이상 4개주), 인구 2백만에서 6백만까지는 4명(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라인란트-팔츠,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스타인, 튀링엔 이상 7개주), 인

구 6백만에서 7백만까지는 5명(헤센 1개주), 인구 7백만 이상은 6명(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바이에른, 니더작센, 바덴-뷔템브르크 이상 4개주)으로 되어 있음.

- 각 연방주의 대표는 보통 주정부의 지사나 각료 등이 겸임하는 경우도 많아 주정부 구성원에 의한 대리출석이 널리 허용되며, 따라서 연방상원에 있어서는 의원 정수라는 표현보다는 연방주별 의결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당함(독일 기본법에서도 의석을 의미하는 Seats가 아니라 의결권을 의미하는 Votes로 표현하고 있음).

o 연방상원 회의의 운영

- 대략 4주 단위로 한번씩 열리는 연방상원 본회의에서는 많은 수의 예정된 안건이 신속하게 의결되는데, 주정부의 임명에 의해 구성되는 연방상원의 성격상 주별 의사결정은 사전에 위원회 활동이나 주정부 간 협의에 의하여 사실상 결정되어 본회의의 경우 확인 차원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음.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1,000여건의 안건이 처리되기도 함.
-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연방주별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의 연방주에 주어진 의결권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며, 또 투표에 있어서의 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임.
- 통상 각 연방주의 좌석에서 맨앞에 앉은 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해 그 주의 의사가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함.
- 참고로, 현재 일반적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은 35석이며, 2/3의 찬성이 요구되는 헌법개정의 의결을 위한 의석은 46석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표는 24석임.

3. 면담 내용

- o 독일 통일 이후 독일 연방상원에서 주별 의석 배분 변화의 내용과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 통일조약(제4조)에 의하면 연방상원의 의결권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는 기본법 제51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연방상원의 의결권은 통일 이전 서독 11개 연방주에 대하여 45석이던 것이 통일 이후 신연방주 5개를 포함한 16개 연방주에 대하여 69석으로 증원되었음(24석 증가)
- 독일 기본법에서 연방주별로 최소한 3석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주별 인구규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여진 구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의결권을 배분하는 것임.

o 의결권 24석 증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면

① 5개 신연방주에 대한 의결권 19석의 신규 배분

- 새로 연방주로 편입된 신연방주의 인구수에 따라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이상 4개주에 대하여는 4석씩, 그리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 대하여는 3석을 신규로 배분함

② 통합된 베를린에 대한 동베를린 몫 의결권 1석 추가 배분

- 구 서베를린에 대하여 인정되던 3석에 동베를린의 몫에 해당하는 1석이 추가되어 통합 베를린의 경우 4석의 의결권이 배분됨.

③ 규모가 큰 4개 주(빅4)에 대한 의결권 1석씩 4석 추가 배분

- 기존의 구연방주 중 경제력과 인구 규모가 큰 4개의 연방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이에른, 니더작센, 바덴-뷔템부르크 이상 4개주)의 경우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상원 의결권의 신규배분에 따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여 의결권 배분기준을 수정하여 인구 7백만 이상의 연방주는 이전보다 1석씩 증가한 6석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이들 빅4만으로도 24석이라는 헌법개정 저지를 위한 최소표를 확보하게 되었음.

o 통일전후 연방상원의 변화와 관련한 3가지 사항 제시
(Mr. Hoeltkemeier가 나름대로 정리하여 설명한 것임)

- 첫째, 통일과정에서 연방상원의 의결권 변화 등 동서독 통일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은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결정된 것임.
- 둘째,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대표들이 새로운 정치체제에 정치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의 적응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 셋째, 현재 16개 연방주에 대한 조정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와 베를린의 통합 문제, 브레멘의 인근 니더작센으로의 통합문제 등이 그 예임.

○ 통일 이전 서베를린 지역에 대한 특수한 상황 설명

- 통일 이전 서베를린시의 경우 그 지리적 특성상 구 서독 연방상원에서 3석의 의석을 배분받았지만, 이들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실제 표결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음.
- 따라서 구 서독 연방상원에서는 전체 의결권 정수가 45석이었지만 표결시에는 42석이 정원이 되고, 그중 과반수는 22석만 확보하면 되었음. 이는 빅4의 20석과 다른 1개 연방주의 연합만 있었으면 모든 표결에서의 승리가 가능했었다는 이야기임.

□ Mr. Dr. Marezki 교수 면담

1. 일시 : 2003년 5월 15일 15:00~16:00

2. 면담 내용

o 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회의에 대한 최초 자유선거에 있어서 당시의 투표방식 및 정당명부의 작성단위는

- 후보자 개인에 대하여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었음

- 정당별 후보자 명부는 전국단위의 명부 하나만이 존재했었던 것 같음. 다만, 전국단위 정당별 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에서 각 지역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함.

o 1990년 3월 18일 선거를 위한 선거법은 누구에 의해서 채택된 것인지

- 당시 원탁회의에 의해 그 내용이 주도되었을지는 모르나 그 내용에 대한 의결은 형식적으로 동독인민회의의 의결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됨

□ Mr. Dr. Erhard Schoof 면담(연방의회사무처 유럽연합업무과장)

1. 일시 : 2003년 5월 28일 15:00~17:00

2. 면담 내용

○ 현재 유럽의회의 구성 및 국가별 의석 배분에 대하여 설명

- 지금 현재 유럽의회 의원은 임기 5년으로 하여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15개국 626명의 유럽의회 의원이 있음
- 유럽의회 의석의 국가별 배분은 기본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최대 99석(독일, 인구 8,200만)부터 최소 6석(룩셈부르크, 인구 40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짐(구체적인 인구현황과 의석배분현황은 별도의 표로 작성된 자료를 받았음).
- 유럽의회의 국가별 의석배분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니스조약 등 각종 조약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결정되고 이를 근거로 함.

○ 독일 통일 이후의 유럽의회의 국가별 의석 배분 변화 내용 및 기준

- 독일 통일 이후 5년 단위의 유럽의회의 새 임기가 시작되는 1994년도 시작한 제4대 임기에는 유럽의회의 의석이 과거 512석에서 108명이 늘어난 626석으로 변화되었음.
- 증가한 108석은 ①인구통계학적 변화(demographic change)에 따라 조정된 기존 회원국의 의석배분 증원 49석과 ②1995년도부터 새로 가입한 3국(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에 대한 신규 의석배분 59석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통일이후 신연방주의 편입으로 1,600만의 인구가 증가하여 총 8,200만이라는 유럽내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었고, 이에 따라 18석의 의석을 증원하였음(81석→99석)
 - 이때 독일과 함께 빅4에 해당하던 국가로서 5,700만~5,9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 영국, 이태리의 경우에도 각각 6석씩 증원하였음(81석→87석).
 - 아울러, 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스페인 4석(60석→64석), 네덜란드 6석(25석→31석), 벨기에 1석(24석→25석), 그리스 1석(24석→25석), 포르투갈 1석(24석→25석)
 - 한편,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한 스웨덴은 22석, 오스트리아는21석, 핀란드는 16석이 배정되었음.
- 2004년 이후 폴란드, 체코 등 동구권 국가가 유럽연합 신규회원국으로 참여함에 따른 의석배분의 변화 전망
- 2000년 니스 조약 이후 향후 13개 신규 회원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당장 2004년도 제6대 유럽의회 임기부터는 폴란드, 체코 등 10개 국가가 신규회원국으로 참가하여 회원국의 수가 현재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증가하게 되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우 2007년부터 신규회원국이 되어 이를 포함할 경우 27개 회원국이 됨.(터키의 경우 회원국 가입 일정 미확정)
 - 2000년 니스 조약에서는 이미 신규회원국의 가입에 따른 유럽의회의 의석배분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두고 있는데, 기존 15개 회원국의 현재 의석 626석이 전체적으로 535석으로 줄어들고, 신규 12개 회원국의 의석이 197석이 되어 총 732석이 됨(국가별 의석 배분 내역에 관한 표를 별도로 받았음).

- 신규회원국의 가입에 따라 대부분의 기존회원국의 유럽의회 의석이 감소하게 되지만, 인구 최대국인 독일은 현재의 99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구 최소국인 룩셈부르크도 현재의 6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됨.
- o 유럽의회에 있어 국가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유럽의회 의석배분에 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로서 조약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유럽의회 의석배분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임.

첫째, 국가별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임.

둘째, 대국(Major)과 소국(Minor)간에 국가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의석 격차를 완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임(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도 최소한 6석이 배정되어 있음). 이 경우 대국은 그 격차를 완화하면서도 소국들이 전체적으로 연합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가 될 수는 없도록 하는 구성을 만들려는 측면이 있음(예를 들어, 현재의 유럽의회 15개 회원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빅4가 차지하는 의석은 360석으로 전체 626석의 절반인 313석을 상회하며, 향후 유럽의회가 27개 회원국으로 되었을 때도 기존의 빅4에 스페인, 폴란드 등 50석 이상을 가지는 6개 국가가 차지하는 의석은 415석으로 전체 732석의 절반인 366석을 상회함)

셋째, 기존 회원국과 신규회원국간에는 일정기간 어느 정도의 의석 격차를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임(예를 들어 체코와 헝가리의 경우 유사한 인구를 가진 벨기에나 포르투갈보다 2석 정도 적게 배정되어 있음).

- 통일 이후 독일에 대한 유럽의회 의석배분의 증원 및 유지와 관련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 독일에 대해서는 인구비례만을 그대로 따라서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럽议회의 의석 배분을 결정하는 각종 정치적 기준을 고려하여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생각함.
 - 독일 통일 이후 유럽议회의 의석이 증가된 것과 최근 신규 회원국 가입에 따른 유럽의회 의석조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동일한 의석으로 유지하게 된 것은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유로화로의 화폐통합에 있어 독일이 경쟁력이 있는 마르크화를 포기한다는 것 등과 패키지로 한 종합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유럽연합 내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에 있어 가장 핵심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 일명 각료회의)의 의결권 배분에 대하여도 설명
 - 각료회의의 경우 실질적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결권의 국가별 배분에 있어서도 인구수에 비례한 배분보다는 이상에서 언급한 기준에 보다 더 정치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고려된다고 할 것임 (현행 및 향후의 각료회의 의결권 배분에 관한 자료 받았음).
 - 즉, 대국과 소국간의 의결권 배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유사한 인구범위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구 차이가 나더라도 의결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식의 배분을 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현재 15개 회원국 87개 의결권 배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인구가 가장 많지만 각료회의에서는 다른 빅4 국가들과 동일한 의결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겨우 380만 정도의 인구이지만 5백만 인구를 가진 덴마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이 배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간 격차를 다소 적게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음.

o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각료회의)의 의석 배분 기준에 있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우선, 유럽의회의 경우 각 국가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중심으로 모임과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지역의 인구에 비례하도록 국가별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이사회(각료회의)의 경우 각 회원국의 대표로서 참가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그 권한의 차이를 완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정치적 노력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두 기구가 가지는 권한에 있어서도 유럽의회는 그 입법부로서의 권한과 위상이 각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아직은 다소 의원총회와 비슷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국들의 양보가 더 쉬웠을 것이지만,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행정권과 입법권에서 상당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의결권의 격차에 대해 최소한 적게 인정하려는 노력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됨.

□ 유럽의회 본회의장 방문(스트라스부르, 프랑스)

1. 일시 : 2003년 6월 5일 16:00~17:00

2. 견학 내용

○ 본회의장의 건물과 구조

- 프랑스 알사스 지방의 도시인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는 신축건물로서 둥근 건물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 본회의장이 위치해 있음.
- 본회의장 중앙에 의장과 의장단이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고, 의회사무처의 직원의 경우 의장단 뒤쪽에서 회의진행을 보좌하는 것으로 같았음.
- 본회의장의 의장단 단상 앞쪽으로 의장석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는 유럽의회이사회(각료회의)의 구성원이 자리하고, 왼쪽에는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 자리하고 있음.
- 유럽의회 의석의 배치는 각국 의회에서와 같이 국가별이 아닌 정파별로 구분하여 지정된 구역에 따라 이루어져 있음.

○ 본회의의 운영과 진행

- 유럽의회 의원은 자기가 구사하는 언어로 좌석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의원들을 각 좌석에 마련된 통역기를 통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음(방청석에도 통역기가 배치되어 있었음)
- 스트라스부르에서는 한달에 2번 정도의 회의기간만 본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위원회 활동은 주로 브뤼셀에서 이루어지며, 한편 유럽의회 사무처의 경우 룩셈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음
- 업무를 위한 공간이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룩셈부르크에 흩어져 있고, 15개 회원국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소간의 한계로 작용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진지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음.

□ 베를린 시의회 방문 및 베를린 시의회 의원 Mr. Dr. Peter Rudolf Zotl (PDS소속) 면담

1. 일시 : 2003년 6월 18일 13:00~15:30

2. 견학 내용

○ 베를린 시의회 건물의 역사 설명

- 과거 프로이센 시절에 주 하원의회(Landtag) 건물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이었음.

○ 베를린의 역사에 관한 비디오 시청

- 독일 현대사의 진행에 있어서 베를린 시가 그 중심으로서 가졌던 역할 및 독일통일 및 유럽통합 이후 새롭게 태어나는 베를린에 대한 홍보용 비디오임

○ 베를린 주 의회 본회의장 견학 및 설명

- 베를린 시의회는 현재 130명의 법정 정원을 바탕으로 60%는 후보자에 대한 제1투표를 통해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되고, 40%는 정당에 대한 제2투표를 통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됨.
- 그런데, 어떤 정당에 대하여 제2투표에 따른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의석수보다 제1투표에 따라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된 인원이 더 많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직은 유지시키면서, 시의회의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확히 배분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다른 정당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전체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임.
- 최근 선거의 경우, 이전의 동베를린 지역에서는 민사당(PDS)이 직접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석을 전부 차지함으로써 전체적인 정당득표율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함으로 인하여, 시민당 등 다른 정

당에 배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 현재의 전체 의원 수는 141명임.

- 베를린 의회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이 5%이하인 경우에는 정당득표에 의한 의석배분을 하지 않는 5% 봉쇄조항이 존재함.
- 베를린 시의회 선거의 경우에도 연방의회 선거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23개 지역별로 지역구 배분이 이루어져 있음.
- 2001년에 베를린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이전의 23개 구역을 통폐합하여 현재는 주민수 30만명 내외의 비슷한 12개 구역으로 정비되었고, 선거구의 개편도 이에 맞추어 12개 구역을 단위로 변경되어 이루어졌음.
- 한편, 베를린 본회의장은 회의가 없는 경우에 각종 행사 등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회의장이라는 느낌을 받았음.

3. Dr. Zotl 시의원 (PDS 소속) 면담 내용

o 베를린 시의 통합에 관한 사전 설명

(Zotl 의원이 동·서베를린 통합과 관련하여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서 정리하여 이야기한 내용임)

-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베를린시의 경우도 동독 전체 차원의 내부적 변화 틀 속에서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
- 동독의 기존 의회제도로는 동독인민회의(Volkskammer)와 동베를린 의회(Stadtverordnetenversammlung)가 존재하고 있었음.
- 1989년과 1990년 변혁기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구성되어 의논한 내용 중 제일 큰 관심을 끌어 모은 것은 민주적으로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음.

1990년에는 구 동독지역에서 총 4개의 선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회의 선거, 둘째가 1990년 5월 6일에 실시된 동독 내부의 지방 선거, 셋째가 통일후 서독방식으로 1990년 10월 14일에 실시된 연방주 선거, 넷째가 1990년 12월 2일에 실시된 통합 연방의회 선거가 그것임.

동베를린 시의회의 경우, 1990년 5월 6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의회를 구성하였고, 이것을 10월 14일 연방주 선거시 베를린의 경우에는 이것으로 그대로 대체하였고 별도의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음. 그리고, 1990년 12월 2일 전체 독일 연방의회 선거일에 베를린 시의회 선거를 병행하여 실시하면서 비로소 동서베를린이 공식적으로 통합되었음.

통일을 전후하여 동베를린 의회는 서베를린 의회와 통합 노력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위한 기구로서 '통일위원회'가 활동하였음.

동서베를린 통합에 있어서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의 시점인 1990년 10월 3일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에 별도로 2개의 행정부, 의회, 기본법이 존재하는 과도기가 있었다는 것임. 이는 동서베를린이 합의하에 다음 공동선거가 있을 때까지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기인함.

1990년 12월 2일 통합 베를린 시의회 선거는 서독의 기본법과 선거법에 기반하여 실시되었는데, 그 협상과정에서는 동서베를린의 구체적 상황에 합당하도록 각종 사항을 수정한다는 전제가 있었음.

1990년 12월 2일에 통합 독일 연방의회선거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 것은 상징적 의미와 함께,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요인도 있었음.

당시 서베를린의 의석은 138석 정도 되었는데, 통일 이후 240석 정도까지 늘어났음. 이는 동베를린의 몫까지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다소 늘어난 것으로 생각됨.

- 통합베를린 의회의 첫 번째 본회의는 1991년 1월 11일에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졌음(참고로 회의 직전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보고 회의를 시작하는 등 상징적인 의식이 있었음)
 - 동·서베를린의 통합 과정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동베를린의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과도기적인 동·서베를린이 일정기간 공존하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됨.
- 과거 동베를린시의 경우, 시의회가 별도로 존재했었는지?
존재했었다면 그 인원 및 구성 방식은 어떠하였는지?
- 동베를린 시의회(Stadtverordnetenversammlung)가 14개 행정구역(Bezirk)의 하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음. 인원은 120명 내지 1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음. 선거방식은 과거 집권당인 SED가 이끄는 국가전선(National Front)의 주도하에 당시에 지역구 별로 주어진 명부에 대하여 선거하는 방식이었는데, 대부분 별다른 반대 없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음.
- 통일 당시 통합베를린 시의회의 의석 배분에 관하여,
서베를린 지역과 동베를린 지역에 대한 의석배분 내용은?
동베를린 지역에 대한 의석 배분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 통일 이전 서베를린 의회는 13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통일 이후 통합베를린의 시의회 의원 수는 241명이었음.
 - 동베를린 지역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약 35-45% 정도의 의석을 배분하였는데, 당시 동베를린에 대한 의석배분은 양쪽에 동일한 기준 하에서 거주하는 주민 수에 따라 배분되었음.
 - 한편, 과거 서베를린 시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200명 정도의 의원정수를 정하여 상징적으로 동베를린의 몫을 비워두고 있었음.

-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의회) 통합과정에 관하여,
 구 서독의 제도를 동독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임.
 이때, 통합과정에서 동베를린쪽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었는지?
 - 주로 서베를린의 입장에 의하여 주도되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단순한 서베를린의 연장·확대 차원이 아니라 동서베를린의 통합수준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특히, 통일 전 후에 동서베를린이 별도의 기본법 하에 행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병존하면서 서로의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는 과도기를 가졌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동서베를린이 통합을 위해 접촉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서로의 제도를 비교해 가면서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자는 주장을 했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활발한 토론 과정을 거쳐 우수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실현되지 못하였음. 동독의 우수한 제도가 반영되지 못한 예를 들자면, 동베를린의 교육체계에 있어 유치원이나 저학년 선생과 같은 분야에서는 우수한 교육인력 체계가 존재했었다는 점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종합병원의 우수한 외래진료시스템 등을 들 수 있겠음.
- 과거 사회주의 정권 하에 생활하였던 동베를린 주민들의 경우,
 통일 이후에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의 체제에 적응함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본인의 경우 베를린의 북동쪽인 리히텐베르크(Lichtenberg)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1995년 이후 지지율 53-55%를 항상 유지하면서 선거에서 이기고 있음. 그 지역은 구 동독 체제 지지자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과거 동독 비밀단원들이 많이 살던 지역임.
 - 통일 이후 민주적 정치 체제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는 찬성하고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임. 그런데, 대부분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없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노점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동베를린이라고 생각됨.

- 그리고, 중년층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노후문제 등을 이전에서 국가에서 해결해주었는데, 이제는 자기 책임 하에 많은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어려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음.
 -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실업률이 높다는 것 자체보다는 동베를린에서 향후에도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됨. 동독의 경쟁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서독의 경쟁업체에 의해 다 매각되어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동독의 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생각됨.
 - 1995년 동베를린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본인이 1/3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당시 SPD 출신의 시장 당선자는 본인보다 4% 정도만을 앞서는 수준이었는데, 이는 동베를린 지역의 정서를 잘 반영하는 한 예라고 생각됨.
- 동서베를린 (의회) 통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조언해 주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통일 전후에 일정한 공존기간을 가지고 접촉을 진행했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남과 북 양쪽이 상당기간 공존하면서 가까이서 서로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특히 권위적 체제하에서 억눌려 있던 정치세력이 충분히 알려지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베를린 시의회 Mr. Rene Roegner-Franke(대외홍보과) 면담

1. 일시 : 2003년 6월 25일 14:00~16:00
2. 면담 내용

o 베를린 시의회 의석배분 현황 설명

(Mr. Roegner-Franke가 연구주제를 사전에 전해 듣고 설명하여 준 내용임)

- 현재 제15대 베를린 시의회의 의석은 법령상 130명을 예정하고 있으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조정·배분하는 선거방식의 특성상 현재 전체의석은 초과되는 의석분을 포함하여 141명임.
- 베를린 시의회 의석의 구성은 예정된 정원 130명의 60%인 78명을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하고, 40%는 정당별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선출됨.
-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직접 던지고, 제2투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하여 투표를 함(참고로 베를린 시의회 선거시에는 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베를린 시내 12개 지역에 대한 지역 의회(borough assembly)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
- 베를린 시의회의 의석은 기본적으로 제2투표에 의한 정당득표율에 의하여 의석이 배분됨. 이 경우 정당별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지역구에서 확보한 정당이 발생하는 경우 정당별 득표율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시의회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정당에 대하여 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조정을 하게 됨. 이에 따라 베를린 시의회의 전체 의원수가 예정된 정원을 초과하는 결과가 일반적인 현상임.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 정수는 사실상 최소 인원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지역 선거구의 수만이 확정적인 것임. 따라서 시의회 의원 정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
- 통일 이후 베를린 시의회 의석은 통합선거 당시인 제12대에 241명, 제13대에 206명, 제14대에 169명, 제15대에 141명으로 꾸준히 감소되어 온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1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시의회 의석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시의회 의장의 발표가 있었음.

○ 동·서베를린의 의회 통합시 의석 배분의 변화 및 동베를린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한 내용에 대한 설명

- 통일 이전 서베를린 의회는 법령상 정원을 200명 정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속에는 상징적으로 동베를린의 지역에 해당하는 의석이 포함되어 있었음. 즉, 전체 200명중 서베를린에 해당하는 의석을 120명 정도로 하여 선거를 하였고 나머지는 동베를린 몫이었다고 생각하면 됨. 그런데, 초과의석 및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조정 배분에 의하여 실제 서베를린 의회의 의석은 이보다 많은 130-140석 내외 정도였음.

- 동서베를린 통합 시의회 선거 당시 200명을 규정상 정원으로 하는 서베를린 시의회의 의석 배분방식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으나, 선거 결과 초과의석 및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조정 배분에 따라 정원보다 41석이나 많은 총 241석의 실제 시의회 의석이 배분되었음.

- 1990년 베를린 시의회 통합선거 당시에는 23개 지역에 총 120개의 지역 선거구가 존재했는데, 서베를린 지역에는 12개 지역에 71개 선거구, 동베를린 지역에는 11개 지역에 49개 선거구가 배분되었음.

○ 베를린 시의회 의석을 지역구별로 배분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 지역구 배분에 있어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라고 할 것임. 이 경우 그 기준이 유권자 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주민 수에는 독일 국민만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베를린 시내의 12개 지역 의회 차원에서는 외국인 중 EU회원국의 국민은 그 투표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베를린 시를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

- 통일 이전 서베를린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선거법 및 법체계가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한 지역이었음. 서베를린을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선거구에서 직접 선출함이 없이 22명의 의원을 시의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하여 독일 연방의회에 대표로 보냈음.
- 이들은 사실상 서베를린의 인물들이지만 상징적으로는 특수지역인 베를린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음. 그런데, 이들은 연방의회에서 의회 규칙 제정이나 연방의회내 각종 의사결정에만 참여하였을 뿐 법률안 의결 등 외부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음.
- 1990년 통일 이후 베를린시도 전체로서 정식으로 독일 연방공화국의 한 연방주가 되었고, 연방의회 의원도 전체 연방선거법에 근거한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었음. 베를린 전체에 13개의 지역구 의석이 배분되었는데, 이 중 5석은 동베를린에 8석은 서베를린에 배분되었음.
- 과거 서베를린 주민의 경우 통일 이전에는 시의회 선거와 지역의회 선거만을 하였는데, 통일 이후 베를린시가 하나의 정식 연방주로 인정되면서 새로이 연방의회 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를 하게 된 것이 이전 서독 지역의 다른 연방주 주민들과 다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연수기관 교섭과 독일 정착과정

1. 연수기관 교섭

- 2002년 12월 국회사무처로부터 통일부 정책기획요원으로 선발되었다는 최종 연락을 받음.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의회 분야에서의 변화 내용이나 그 역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일단 연수기관을 '독일연방의회(Bundestag)'로 신청함.
- 이에 따라 2003년 1월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사무처의 슈라이너(Schreiner) 의회법령국장에게 연수기간 중 의회 사무실 제공 및 도서관 이용, 그리고 전화·인터넷 사용 등에 관한 요청 서신을 팩스와 이메일로 보냈음. 2003년 2월 요청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도와주겠다는 답신을 전화와 팩스를 통해 확인 받음.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도움을 위하여 의회법령과 직원인 로베(Robbe)를 지정·연결하여 줌.

2. 본(Bonn) 정착과정

- 17시 30분경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후, 대한항공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여 본에 도착함(2시간 소요). 에버트재단 직원과 본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버스정류장으로 마중을 나왔는데, 연수단의 짐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택시를 한 대 불러서 본대학 게스트하우스(Steinweg 44)로 이동하였음.
- 본대학 기숙사에는 약 10일 정도 머물렀는데, 총 8명이 2인 1실 3개와 1인실 2개를 사용하였는데, 비교적 시설이 깨끗한 편이었고, 2인 1실의 경우에도 2명이 화장실과 부엌을 같이 쓸 뿐 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각방에서의 인터넷 사용도 기숙사내 한국인의 도움과 기숙사관리인(독일에서는 Haus Meister라고 부름)을 통해 가능하였음(비용은 1인당 10일정도에 269유로 부담).

- 한편, 4개월 동안 체류하기 위한 '독일 비자'는 에버트 재단을 통하여 단체로 신청하여 쉽게 받을 수 있었으며, 경찰관서에 가서 하는 거주지 신고(Polizei Anmeldung)는 별도로 하지 않았음.

3. 베를린(Berlin) 정착과정

- 본에서 베를린으로의 이동에 관한 사항
 - 승용차를 3대 렌트하여 짐과 사람을 배분한 후 아침에 본을 출발하였고, 저녁 6시경에 단체연수기간 중의 베를린 주거지인 아파트(Neue Kant Str. 21번지)에 도착함(약 8시간 소요)
- 단체연구기간중의 숙소에 관한 사항
 - 단체연수기간 중에 거주한 베를린 아파트의 경우 1층에 있는 집 3개를 빌려 2인, 3인, 3인씩 나누어 지냈는데, 아파트가 오래 된데다 시설, 공간 및 조명 등이 많이 열악한 편이었음. 다만 교통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음. 2주 동안의 임대료는 1인당 290유로씩이었음.
- 개별연수기간중의 숙소에 관한 사항
 - 독일 현지에 가서 현지의 한국인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베를린 Steglitz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에 월임대료 690유로에 잠시 머물렀음 (독일은 임대차계약시 한달분 임대료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 것에 유의)
 - 그런데, 4월 중순경 숙소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기숙사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설재단인 Burgermeier-Reuter Stiftung에 문의하여 Wedding 지역 중 Sparrstrasse 9번지에 위치한 방 2개짜리 기숙사를 월 436유로에 계약하고 6월말까지 머무르게 되었음(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www.brst.de이고 전임자로부터 그에 관한 정보를 들은 바 있었음).

o 개별 연구기관에서의 근무에 관한 사항

- 개별연수를 위하여 4월 1일 오전 연방의회로 첫 출근하여 영어를 잘 구사하는 연방의회 직원(Mrs. Patrizia Robbe)의 도움으로 배정 받은 사무실(연방의회 건물중 본회의가 열리는 제국의회건물 내 ES 044실)을 둘러보고, 연방의회 출입증 및 도서관 이용자 열람증을 발급 받음.
- 의회도서관 자료검색과 관련하여서는 4월 3일 오전에 Mrs. Patrizia Robbe의 도움으로 영어를 잘 구사하는 도서관 직원(Mrs. Monika Hein)을 소개 받아, 도서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검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 인터넷상에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는 4월 4일 오전 Mrs. Patrizia Robbe의 도움으로 의회사무처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Mr. Spielmann)을 소개 받아, 의회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Netscape외에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를 내가 배정받은 컴퓨터에 설치하고 한글사용을 위한 Global IME 5.02를 다운받아 설치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의 한글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이메일 활용 및 한글로의 자료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음(다만, 개인이 가져간 컴퓨터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 연결을 해주지 않았음).
- 업무 또는 개인적 용무에 따른 우편물의 수령에 관하여는, 일단 연방의회 사무처 의회법령과(PD1G)로 보내면 내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음.

Ⅱ. 일본지역 연수결과

◆ 일 시 : 2003. 3. 3 ~ 6. 30

◆ 연 수 자

행정자치부 : 사 무 관 이 계 주

< 행정자치부 이계주 >

1. 개 요

1.1. 일반사항

- 활동기간 : 2003. 3. 3 ~ 6. 28
- 연구과제명
 - 미군정시기 일본공무원인사제도 운영사례
- 연수기관 : 일본 一橋大學 (히도쓰바시 대학)
- 주요 활동사항
 - 지도 교수(야마다 히로시) 면담
 - * 야마다 히로시 교수는 히도쓰바시 대학 출신으로 현재 대학원 법학연구과에서 공공관계법 담당
 - 미군정통치 행정분야 관련자료 수집 및 연구
 - 한반도관련 강연회 참석
 - 총무성관계자 인터뷰

1.2. 연수기관 소개

- 히도쓰바시 대학은 1947년 동경상과대학에서 국립종합대학으로 됨
- 대학은 상학과, 법률학과, 사회학과 등 5개학과가 있으며, 대학원은 상학연구과, 법학연구과, 사회학연구과 등 6개 학과가 있음
 - * 주소 : 우편번호 186-8601 東京都 國立(구니타치)市中 2-1
 - * 전화번호 : 81-042-580-8842(대학원 법학연구과 사무실)

2. 연구활동 경과

- 해외사례 연구를 위해 관련자료 수집·정리
 - 미군정통치의 성격
 - 행정분야 미군정 통치기구
 - GHQ(연합국최고사령관 총사령부)와 민정국의 조직과 임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
 - 점령관리의 기본원칙과 절차
 - 행정분야에 대한 점령초기의 활동상황
 - 미군정 통치전의 공무원 관련사항
 - 미군정 통치시 일본공무원 인사제도

3. 활동내역

- 2003. 3. 3, 일본 도착
- 2003. 3. 5, 주일한국대사관 통일주재관에게 도착 및 업무협조 통화
- 2003. 3. 6, 지도교수인 山田 洋(야마다 히로시)교수 1차 면담
 - 야마다교수와 동행하여 대학원 법학연구과장 인사
 - 도서관출입증 발급신청 협조요청
 - 회의나 세미나가 없는 경우 법학연구과 실무센터 사무실 사용 가능토록 협조요청 등

- 2003. 3. 10~3. 31, 대학도서관 및 동경시내 대형서점 등에서 관련자료 수집 및 연구
- 2003. 3. 20, 주일한국대사관 외교통상부 김상훈사무관을 만나 자료수집 등 업무협조 요청
- 2003. 4. 4 국제화재단 동경사무소 강병훈 사무관을 만나 자료수집 등 업무협조 요청
- 2003. 4. 9, 지도교수인 山田 洋(야마다 히로시)교수 2차 면담
- 2003. 4. 17 지도교수인 山田 洋(야마다 히로시)교수가 한국의 공무원제도 중 주요정책사항을 정리하여 5월 하순에 대학원 행정법 세미나 시간에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수락
- 2003. 4. 28 국제화재단 동경사무소 이관수 사무관에게 6월중에 일본 총무성 관계자 면담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 2003. 4. 30, 5월 29일 게이오대학에서 개최예정인 한반도문제 전문가 오코노기 교수의 강연 “한반도정세와 일본의 교” 참석 신청
- 2003. 5. 7, 지도교수인 山田 洋(야마다 히로시)교수 3차 면담
- 2003. 5. 23, 한국의 공무원인사제도 중 주요정책사항인 “개방형직위제도” 를 지도교수인 山田 洋(야마다 히로시)교수와 대학원 법학연구과 학생들에게 행정법세미나 시간에 발표
 -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 도입배경, 추진경위
 - 개방형직위제도의 제도운영, 평가와 전망, 질의응답 등
- 2003. 5. 27, 주일한국대사관 통일주재관 김남중 서기관 면담
 - 연구과제의 추진사항, 일본생활의 애로사항 등

- 2003. 5. 29, 게이오대학에서 개최한 한반도문제 전문가 오코노기 교수의 강연회 “한반도정세와 일본외교” 참석
- 2003. 5. 30, 국제화재단 동경사무소를 방문하여 이관수 사무관에게 6월중순 일본총무성 관계자 면담을 위한 질의 내용 제출 및 업무협조 요청
- 2003. 6. 19, 일본 총무성 관계자 면담
- 2003. 6. 24, 지도교수인 山田 洋(야마다 히로시)교수 4차 면담

4. 강연회 참석내용

4.1. 개 요

- 일 시 : 2003. 5. 29(목), 18:30 ~ 20:30
- 장 소 : 게이오대학 미타 캠퍼스 519강의실
- 강 사 :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 주 제 : 「한반도정세와 일본외교」

4.2. 주요 내용

가. 북한문제의 출발점

- 북한문제는 한국의 독립문제에서 출발하여 아시아의 조그만 지역적인 문제에 불과하였으나 냉전이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한반도가 한국과 북한으로 분단, 한국이 미국의 통치를 받고 북한이 소련의 세력하에 편제되면서 한반도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냉전체제가 종결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는 다시 지역문제로 돌아가는 듯이 보였으나, 1993년 북한의 핵문제가 거론되면서 세계적인 문제로 재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남북은 6. 25전쟁이후 줄곧 군사력, 경제력에서 대결구도를 유지해왔으나 90년대에 들어서 남북의 경제력 격차는 현저해져 북한의 경제력은 한국의 10분의 1 규모수준으로 떨어지자, 북한은 이러한 격차를 매꾸기 위해 북한은 핵개발과 특수부대 창설에 힘을 쏟아왔는데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국가로서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됨.
- 특히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은 그것의 도달범위가 일본, 미국까지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 이러한 핵개발의 움직임은 제네바합의(북한의 핵시설 폐기, 경수로건설, 매년 5만톤의 석유공급, 핵사찰)이라는 북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듯 하였음.
- 그러나 북미의 합의내용은 그 자체가 무리가 있고 현재 경수로건설은 30% 진행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북미간에는 연락사무소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에 북한 핵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북한문제는 다시 세계무대에 등장하였음.

나. 북한의 체제

- 북한의 체제는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사회주의가 개량, 변질,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북한은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전체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을 하나의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김정일은 뇌, 노동당은 중추, 노동자는 세포에 해당됨.

다. 911 테러와 북한문제의 관계

-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정권이 교체되려는 시기에 북한문제에 대한 재검토의 움직임이 일어나 여론은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동시다발테러가 발생하였고, 이 테러는 아프간에 대한 보복전쟁으로 이어졌고 이후 이라크전쟁으로 확산되었음.
- 미국을 전쟁으로 이끌어간 논리구성으로는 테러와의 전쟁, 특히 테러리스트를 보호하는 이란, 이라크, 북한과 같은 나라가 문제가 되며, 이들이 생화학무기, 핵무기를 개발해 이를 테러조직에게 건네줄 경우에는 911 테러보다도 훨씬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는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사고에서 비롯되었음.
- 특히 북한이 악의 축으로 거론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해석은 종전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게 되었고, 북한의 이후의 동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
- 북한은 이후 테러반대조약을 조인, 일본에도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이라크나 아프간과는 다른 나라임을 증명하려는 행위로 해석됨.

라. 북한이 일본에 접촉해온 이유

- 북한은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한 직후 일본에 접촉을 시도해왔으며 국교정상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과 국교정상화중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세계정세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후 북한이 적극적으로 북일 관계 정상화를 꾀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으며, 절박해진 북한은 일본을 우방국으로 맞아들임으로서 북미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려고 했던 것임.

마. 일본이 북한과의 교섭에 응했던 이유

- 일본이 왜 북한과의 교섭에 응했는가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는 전후처리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태평양전쟁이 후 전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접촉을 빌어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외무성의 생각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둘째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히는 북한문제를 해결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의 2대 위험요소인 타이완과 중국의 대치,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대치라는 관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은 북한의 김정일이 먼저 일본인 납치사건과 북한의 공작선 사건 등을 사과한 것에서 시작되고, 이를 성의있는 태도로 해석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긍정적으로 보고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하였음.
- 물론 고이즈미 수상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자신의 일본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음.

바. 일본의 우려

- 미국내의 여론이 핵시설을 공격하는 쪽으로 흘러갔을 경우인데,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에는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공격으로 한국의 파괴를 시도할 것이고 이 경우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위험이 있음.

- 한반도의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시나리오는 일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음.

사. 현재의 상황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

- 현재 북한문제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발사실험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문제를 유엔에서 의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경제제재는 남북간에 맺어진 휴전협정의 위반사항으로 이는 협정의 파기로 이어져 남북은 전쟁체제하에 놓이게되며, 무력행사로 연결될 위험성이 아주 높은 방법이므로 일본이 취하기 어려운 수단임.
-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외화획득수단을 차단하는 것임.
- 북한의 외화획득원인 일본내 각성제, 마약판매, 북의 공작선 활동을 일본 국내에서 철저히 단속하며, 미사일의 부품이 될 수 있는 전자제품판매의 제한 그리고 조총련계열 기업의 대북송금을 차단하게 되면 적잖은 제재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외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등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 압력을 가해 북한의 무기수출길이 막힐 것이며, 한국이 금강산사업과 대북지원을 중지하게 되면 북한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임.

아. 미국내의 대북 여론

- 미국 국내문제는 세계의 문제로 세계정치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워싱턴의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문제도 워싱턴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됨.

- 이라크전쟁은 미국에 있어서 특별한 전쟁으로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라크전의 공격여론을 형성한 것이 제네콘(general contractor, 종합공사업자), 이스라엘의 종교파의원, 공화당의 우파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문제에 대해 이러한 이익단체들이 이라크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인가를 유추하면 판단에 이를 수 있음.
- 제네콘은 전쟁을 찬성할지 모르나 종교파의원의 경우 북한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관한 문제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며, 공화당의 우파는 전통적으로 전쟁반대의 성향이 짙고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중시해 합부로 전쟁형성 여론에 뛰어들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고 북한문제는 외교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됨.
- 그리고 북한은 이라크처럼 석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주둔 수천명의 미군이 죽고, 이라크전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한반도가 초토화되면 전후복구 비용의 부담은 미국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 또한 전쟁은 재선이 걸린 부시의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등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자. 결 론

- 북한문제는 다국간협의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함.
- 북한, 미국, 중국의 베이징회담이 끝나면 다국간협약(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을 일본에서 개최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자세를 유지해가는 한편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명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리고 일본인 납치문제도 동시진행형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특히 납치문제는 일본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성의표현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 베트남전쟁후 베트남전 당시 포로로 잡혔던 미군들의 수색을 미국의 조사단이 베트남 국내에서 벌였던 것처럼 북한도 일본의 조사단을 받아들여 일본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서 문제의 해결을 보아야 할 것임.

5. 면담내용

5.1. 개 요

- 일 시 : 2003. 6. 19(목), 14:00 ~ 16:00
- 장 소 : 일본총무성 소회의실
- 면담자
 - 총무성 공무원과 제1계장 마츠다(松田 滿)
 - 총무성 대신관방비서관 인사전문직 이노우에(井上 淳詞)
- 주 제 : 『일본공무원 파견제도』

5.2. 주요내용

가. 파견법의 제정

- 1970년 12월 파견법이 제정되고, 1971년 1월 16일에 시행됨.

- 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직원을 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등에 파견하기 위한 제도는 없었고, 장기출장이나 휴직 또는 일단 퇴직하는 형식으로 파견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직원의 처우상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면이 있었음.
- 따라서 직원이 안심하고 국제기구 등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단독법을 제정하고, 파견직원의 신분관계, 급여 재해보상, 수당, 복귀시의 처우 등을 정하게 되었음.

나. 파견의 개념

파견법에 근거한 파견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수행하여야 할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직원의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 연수 등은 포함되지 않음.

다. 파견의 개요

(1) 파견권자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각 대신, 인사원총재 등 임명권자를 말하며, 위임된 임명권자는 포함되지 않음.

(2) 파견기관

-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 UN, IMF, IBRD, FAO, WHO, OECD 등
- 외국정부기관
 - 외국의 州 또는 자치단체기관
 - 외국의 학교, 연구소, 병원

(3) 파견직원의 동의

- 임명권자가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음.
- 이것은 본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직에 들어온 자에게 본래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더구나 직원의 동의는 그 의사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동의서를 청구하도록 하였음.

(4) 파견직원의 신분 및 결원보충

-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장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당해 관직을 다른 직원으로 보충할 수 있음.

라. 파견기간

파견법에는 파견기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당초 파견기간보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사원의 협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마. 파견직원의 급여

- 파견기간중 봉급, 부양수당, 주거수당, 기말수당, 특별수당 등에 대하여 각각 70%를 지급함.
- 다만, 급여가 낮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원의 승인을 얻어 관련수당의 10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관련자료

- 公務員制度의 改革, 岡田彰, 日本圖書센터, 1996
- GHQ의 組織과 人事, 福島鑄郎, 巖南堂書店, 1984
- GHQ 日本占領史序說, 竹田榮治·今泉眞理, 日本圖書센터, 1996
- 占領管理의 體制, 高野和基, 日本圖書센터, 1996
- 政府機關의 再編, 平野孝, 日本圖書센터, 1996
- 公職追放, 増田弘, 日本圖書센터, 1996
- 國家公務員法·地方公務員法, 栗田久喜·柳克樹, 靑林書院, 1997
- 國家公務員制度, 佐藤達夫, 學陽書房, 1999
- 日本占領의 研究, 判本義和, 東京大學出版會, 1987
- 占領戰後史, 竹前榮治, 岩波現代文庫, 2002
- 『GHQ 民政局資料·國家公務員法』, 岡田彰, 丸善, 1997
- 現代日本官僚制의 成立, 岡田彰, 法政大學出版局, 1994
- 占領과 改革, 中村政則·天川晃, 岩波書店, 1995

Ⅲ. 중국지역 연수결과

◆ 일 시 : 2003. 3. 3 ~ 6. 30

◆ 연 수 자

통 일 부 : 사 무 관 서 두 현

국가정보원 : 사 무 관 신 강 회

법 무 부 : 검 사 송 삼 현

대 법 원 : 판 사 강 신 중

< 통일부 서두현 >

1. 개 요

- 활동기간 : 2003. 3. 3 ~ 6. 28 (4개월)
- 연구과제명
 - 「통일과정에서의 재외동포정책」
- 연구과제 추진방향
 - 중국 양안의 화교정책 추진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일과정에서의 적실성 있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시사점 발굴
 - 한반도 급변사태시 재중동포 등의 한반도 대량유입 방지와 해외 북한 국적자 및 친북단체 문제에 대한 대책 연구
- 연수기관 :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2. 연구활동 경과

- 기관방문 및 자료수집
 - 북경대학 도서관 및 국제관계학원 자료실
 - 중국국무원 화교판공실
 - 중국귀국화교연합회 자료실
 - 중국국가도서관 문헌검색실 등

o 주요 인사 면담

- 학계인사 : 12인
- 공무원 화교판공실관계자 : 1인
- 귀국화교연합회 자료실 관계자 : 1인
- 국가도서관 문헌검색실 관계자 : 1인
- 북경거주 한국인학자 : 3인 등

3. 개별과제 연구방법

- o 파견기간 전반기(3·4월)에는 북경대학 도서관·국제관계학원 자료실, 공무원 화교판공실, 귀국화교연합회 자료실, 국가도서관 문헌검색실 및 전문서점 등을 통해 1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해외사례 작성
- o 하반기(5·6월)에는 해외사례 작성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도있는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정책연구과제 작성

4. 활동내역

o 3월

- 2003. 3. 3. 북경도착 후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梁守德교수 면담
- 2003. 3. 4. 萬聖書店에서 화교사 관련 자료 구입
- 2003. 3. 7. 주중대사관 통일주재관 면담
- 2003. 3. 10. - 3. 15. 북경대 도서관 및 국제관계학원 자료실에서 기초 자료 수집 및 내용 파악

- 2003. 3. 11. 萬聖書店에서 자료구입 및 내용과약
- 2003. 3. 12. 海澱教育書店에서 자료구입 및 내용과약
- 2003. 3. 17. 華僑出版社 방문, 화교관련 발간자료 현황 파악, 자료구입 및 내용과약
- 2003. 3. 18. 新華書店 방문, 자료구입 및 내용과약
- 2003. 3. 19.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주최 만찬간담 참석
- 2003. 3. 24. - 3. 30. 북경언어문화대학 도서관에서 자료수집 및 내용과약
- 2003. 3. 25. 風入松서점에서 자료수집 및 내용 파악
- 2003. 3. 30.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梁守德교수로부터 연구방향 자문

o 4월

- 2003. 4. 2. 國務院 華僑辦公室 방문, 자료수집 및 내용과약
- 2003. 4. 4. 歸國華僑聯合會 자료실 방문, 면담·자료구입 및 대출 (1차)
- 2003. 4. 9. 中國社會科學院 세계역사연구소 李敦球박사, 문헌정보센터 鄭成宏 교수 면담
- 2003. 4. 9. 귀국화교연합회 자료실 방문, 자료구입 및 대출(2차)
- 2003. 4. 14. 해외사례 1차 정리 및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梁守德교수에게 연구결과 중간 보고

- 2003. 4. 16. 中國人民大學 전자자료센터 방문 자료수집
- 2003. 4. 17. 귀국화교연합회 자료실 방문, 자료 대출(3차) 및 三聯書店 방문, 홍콩에서 발행된 자료 검색 및 구입
- 2003. 4. 18. 중국국가도서관 방문 자료수집 및 문헌검색실에 주요 법령·문건 검색 협조요청
- ※ 2003.4.21 중국정부가 SARS 확산방지를 위해 북경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관계기관 및 전문가 방문·면담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상황 전개)
- 2003. 4. 21. - 4. 26. 歸僑僑眷權益保護法 및 시행령 등 중국의 교포관련 법규내용 분석
- 2003. 4. 28. - 5. 3. 화교사회 현황에 대한 연구(이주역사, 정체성, 화교기업, 화교경제네트워크 등)

o 5월

- 2003. 5. 2. 북경대 화교화인연구중심 周南京, 梁英明교수 초청 오찬
- 2003. 5. 5. - 5. 10. 중국·대만의 해외교포에 대한 인식과 교포정책의 중점에 대해 연구
- 2003. 5. 12. - 5. 17. 중국·대만의 교포정책 추진체계·조직 연구 및 인터넷 활용 홍보현황 파악
- 2003. 5. 19. - 5. 24. 중국·대만의 교포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 2003. 5. 26. - 5. 31.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해외사례(초안) 작성

o 6월

- 2003. 6. 2. - 6. 7. 정책과제 기본방향 구상
- 2003. 6. 9. - 6. 14. 정책과제의 상황별 대책 연구
- 2003. 6. 16. - 6. 21. 정책과제 초안 작성
- 2003. 6. 23. - 6. 27. 신화서점에서 자료 구입 및 중국 국가도서관 방문
자료검색 및 복사
- 2003. 6. 24. 해외사례 연구내용의 보완을 위해 북경 거주 한국인 학자
의견 청취
- 2003. 6. 28. 귀국

5.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 주요내용

5.1. 梁守德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 o 일시 : 2003. 3. 4. 16:00~17:00(1차), 3. 30. 12:00~14:00(2차),
4. 14. 11:00~12:00(3차)

* 3.30 면담시 王聯, 金景日, 張海斌 교수 합석

<1차면담>

o 연구주제 관련 견해

- 화교정책 비교연구는 비교적 민감한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안간의 공개된 과거 정책자료를 위주로 자료를 수집·분석함이 바람직
- 중국의 화교정책은 국내 정치적 상황의 변동 및 화교사회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몇차례 대전환이 있었는데,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정책목표의 일관성을 유지

o 자료수집 방법 문제

- 역사자료는 도서관을 위주로 수집하고 최근 정책자료는 주요 국가지도자의 연설, 성명, 담화 등 1차자료를 통해 도출하는 방법을 권유
- 관련자료는 국무원 화교판공실, 귀국화교연합회 자료실 및 화교출판사 등을 방문, 수집할 것을 안내

<2차면담>

o 연구방향과 관련

- 정책 사례분석으로 60년대 동남아지역 일부국가의 화교배척 사태에 대한 배경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책 연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협조를 요청

* 북경대 화교화인연구센터의 周南京교수 등 동 분야의 전문가를 적절한 시기에 소개 약속

- 양안간의 화교정책 관련 주요 법제를 비교하고 대륙의 경우는 귀국화교에 대한 정책도 별도로 연구가 필요할 것임을 설명

<3차면담>

○ 연구결과의 중간보고 관련

- 중국의 화교정책 중 화교자본의 국내유치와 관련된 경제분야 정책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을 권유

5.2. 趙薇 國務院 華僑辦公室 자료실 주임

○ 일시 : 2003. 4. 2. 10:00~11:00

- 국무원 화교판공실은 화교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정부의 전담기관인 바, 문화혁명 전에는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나 개혁개방이후 업무가 회복되면서 국무원직속 판공실형태로 조정
- 화교판공실에서는 발간하는 자료는 '僑情'(내부문건으로 각 성·직할시·자치구의 화교사무관련 실장급 이상에게만 배포), '僑務工作研究'(해외판매 불가), '華僑與華人'(화교자녀를 위한 교양지) 등 크게 3종
- 그 외에 화교정책과제 연구논문집(내부 연구 참고자료)을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바, 2000-2001년도에는 '중국의 WTO 가입후 화교공작방향' 등 총 24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5.3. 文霞 歸國華僑聯合會 자료실 주임

○ 일시 : 2003. 4. 4(1차), 4. 9(2차), 4. 16(3차)

○ 제 1차방문시 면담내용

- 귀국화교연합회(약칭 : 全國僑聯)는 당의 영도하에 중국내 3천여 만명에 달하는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으로 구성 된 사회단체

- 문혁시기를 제외하고 매 5년마다 전국대표 대회를 개최하는 바, 현재 주석 1인(林兆樞) 과 부주석 16인, 전국대표 900여명으로 구성
- 전국 각성·직할시·자치구 별로 지방 僑聯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지방의 조직은 대체로 인사부·문화선전부·연락부·경제부·구락부·법률사무소 등으로 구성
- 全國僑聯 산하 기관단체는 23개이며 일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
 - * 주요기관단체 : 中國華僑華人歷史研究所(‘華僑與華人歷史研究’ 발간), 中國華僑國際文化交流促進會, 中國華僑文學藝術家協會, 中國華僑出版社, ‘海內與海外’잡지사, 中國華僑經濟技術諮問센터, 北京華僑빌딩 등
- 1997년 발행된 내부자료 ‘僑聯工作資料手冊’을 학술연구에 참고만 한다는 설득·약속하에 대출
 - * 중국의 특성상 공무원 신분을 노출시킬 경우 오히려 자료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북경대 방문학자의 신분으로 대출
- o 제 2차 방문시 대출받은 자료 반납, 필요한 자료 구입(世界華商經濟年鑑 2000-2001) 및 ‘中國僑聯40年’史 대출
- o 제 3차 방문시 대출받은 자료 반납 및 ‘廖承志傳’ 대출
 - * 廖承志는 신중국 수립이후부터 70년대 초까지 화교사무위원회 주임 등을 담임

5.4. 李敦球, 鄭成宏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 o 일시 및 장소 : 2003. 4. 9. 12:00~14:00, 東湖俱樂部
- * 주한 중국대사관 서동훈 통일관 동석

○ 면담내용

- 과거 중국에서는 화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역사적인 측면에 중점을 주고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화교의 정체성 문제, 법적권의 문제 등 현실문제에 중점을 두는 추세라고 설명
- 중국의 화교정책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부단한 조정과 변화를 보여 왔으나, 아직도 과거 문화혁명시기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 상존
 - * 문혁당시 화교의 가옥, 토지 및 기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법적 처리 미완결
- 중국의 화교정책 법제화는 비교적 조기에 시작되었는 바, 1950년대 중반에 화교의 국유 황무지 사용 조례, 國營華僑投資公司 우대 법규, 학교건립 투자법규 등 3건을 제정
- 90년대 이후 귀국화교의 권익보호를 위한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이 제정되었고, 해외화교를 대상으로 한 법은 국적법, 민법, 혼인법, 경제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내용이 분산
- 화교정책관련 자료는 대부분 機秘(Ⅱ급), 保秘(Ⅲ급) 및 내부분건(대외비)으로 분류되어 있어 비공개된 자료의 수집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
 - * 중국의 국가문서 및 보고의 보안 등급은 決秘(Ⅰ급), 機秘(Ⅱ급), 保秘(Ⅲ급) 및 내부분건(대외비)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부분건은 다시 국가급 내부분건과 산하기관급 내부분건으로 구분

5.5. 북경대 화교화인연구중심 전문가

- 일시 및 장소 : 2003. 5. 2. 11:00~13:00
- 면담자 : 周南京, 梁英明교수

○ 면담내용

- 현행 화교정책은 1999년 개최된 '전국교무공작회의'에서 결정되었는 바, 회의에서는 △1989년 강택민 체제 이후의 화교정책 추진 성과 결산, △ 개혁개방 20년간의 화교사회와 화교관련 업무의 변화추이 분석, △3,800만 귀국화교 및 국내거주 화교가족들의 사회주의 현대화 및 국가통일에서의 역할과 특징 분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발전에 유리한 화교의 권익보호, 지지 획득, 역량강화를 향후 정책 방향으로 확정
-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은 기본적으로 홍콩·마카오·대만인에 대한 우대 조치의 연장으로 해석
 - * 화교화인에 대한 우대제도는 출입국 관리법, 영구귀국 화교에 대한 거주지 및 주택 알선, 자녀들의 대학진학시 가산점 부여 등
- 개혁개방 후 유입 된 외자의 종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외국인 기업의 합작 및 단독투자(화교자본 포함)인 바 이 중 화교자본은 3분의 2 정도를 차지
-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 동안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한 투자 환경을 갖추는 데 주력하였고 동시에 혈연과 지연을 활용하여 화교단체를 결성하여 화교화인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네트워크 조직에도 중점
- 화교자본의 중국투자 지역은 초기에는 대다수 화교화인의 연고지인 북건성과 광둥성에 국한되었으나 90년대에 진입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

5.6. 북경거주 한국인 학자 면담

- 일시 및 장소 : 2003. 6. 24. 18:00~20:00, 聚順源餐廳
- 면담자 : 북경대학 韓祥熙·申宗浩·尹永德 박사

○ 먼담내용

- 우리나라는 600만 명에 이르는 해외동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이해 부족, 남북분단으로 인한 교민사회의 갈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한민족 네트워크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세계화와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여 화교 사회의 경제 네트워크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해외동포사회를 경제·문화측면에서 조속히 네트워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 중국 정부는 일찍부터 화교의 중요성을 인식, 화교와 모국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는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
- 재외동포사회의 네트워크는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 하에 먼저 전문가 그룹별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이어서 지역별 네트워크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재외동포정책 전담 추진조직의 설치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

< 국가정보원 신강회 >

1. 개 요

1.1. 일반사항

- 활동기간 : 2003. 3. 3 ~ 6. 28

- 연구과제명
 -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탈북자 처리실태

- 연수기관 : 중국 중앙민족대 부설 민족이론 및 민족정책연구소

- 주요 활동사항
 -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연구 및 정리

 -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문헌연구 및 정리

 - 중국의 난민정책 연구 및 사례 수집

 - 중국의 탈북자 정책 관련 자료수집·탈북자 처리실태 조사 및 주요 탈북루트 파악

 - 대량 탈북사태 발생시 탈북자 보호 대책 수립과 관련한 전문가 면담 실시

1.2. 연수기관 소개

○ 주 소 : 北京市 海澱區 白石橋路 27號

○ 전화번호 : 010-6893-2693

○ 연혁 및 기능

- 同 연구소는 중국 정부원 「培養소수민족간부시행방안」, 「籌辦중앙 민족학원시행방안」(1950년)에 의거 「중앙민족학원 민족이론 및 민족정책敎研組」로 설립(1952년)

- 1987년 「민족이론 및 민족정책연구소」로 개칭

- 중국 소수민족 이론, 정책을 비롯 민족법학, 민족사회학, 민족인구학 및 남북한 문제 전문가로 구성

* 金炳鎬(소장), 熊坤新, 靑覺, 何潤 교수 등 지도

- 맑스주의 민족이론, 중국 민족문제와 민족관계, 중국공산당 민족정책과 민족업무, 세계민족문제와 민족정책 등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이론적 배경 중점 연구

○ 연수기관 협조사항

- 컴퓨터, 전화, 복사기, FAX 등 관련시설 사용

- 동 대학 도서관 및 연구소 자료실 이용 및 필요 자료 지원 등 협조

- 연구관련 해당 전문가 수시 자문 주선

2. 연구활동 경과

2.1. 해외사례 연구

- 해외사례 연구를 위한 관련자료 수집 정리
 - 중국 新지도부의 외교정책, 對한반도 정책 변화 여부 추적
 - 중국의 난민 처리 사례 조사
 - 중국의 탈북자 정책 향방 및 처리사례 수집
 - 조선족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 및 在中 탈북자 실태 조사
- 중국 사회과학원·연변대학 등 한반도문제 전문가 및 연변조선족 자치주 관료 면담 등 관련자 인터뷰 및 문헌연구 중심의 활동 전개

2.2. 국제네트워크 형성 노력

- 탈북자 문제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 계기로 관련 학자들과 수시 접촉 및 전화 인터뷰 실시
- 연수기관 및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이론 및 인류학 연구소」와의 지속적인 협조관계 구축

3. 개별과제 추진현황

- 탈북자의 중국정책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면담 실시
 - 중국은 1960년대 북한이 유입된 화교들을 포용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어 탈북자에 대해 묵인하는 정책을 견지

- 그러나 최근 한국 언론보도 및 국제 NGO들의 기획망명 시도 등 국제여론화로 인한 북한의 항의 때문에 단속·송환은 불가피한 조치
- 또한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 등 공식화를 부정하는 것은 탈북자 문제가 중국의 인권문제와 소수민족의 동요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내포
- 그러면서도 중국 농촌인력의 도시유입 및 해외취업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써 탈북자들의 중국내 정착은 유용하다는 견해를 피력
- 탈북자들의 중국정착을 위해서는 한국 및 국제 단체가 공개적인 문제제기 보다는 조용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조선족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 및 지원

- 농촌의 노총각 문제해결을 위한 탈북 여성의 역할과 부족한 인력보충 가능성 등으로 긍정 인식
- 그러나 중국내 생활에 적응하면 출산여성도 무단가출하는 등 탈북자들이 생활여건이 좋은 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불신이 증대
- 이에 따라 현재는 1주일 정도의 단기간 은신처 제공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
- 한편 중국의 탈북자 지원자 처벌 및 신고자 포상 등도 탈북자의 중국내 정착, 특히 조선족 거주지 체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탈북자 처리실태 파악

- 2002.11 후진타오 체제 출범후 대대적인 北·中 국경지역 단속을 실시하여 수천명의 탈북자를 체포, 북한으로 송환

o 주로 중국의 삼협과 도문지역은 두만강 폭이 좁고 수심도 1m 정도에 불과하여 언제든 월경이 가능

* 동절기에는 강물의 결빙으로 도보로 도강이 가능하여 북한군 경비병이 섬(섬은 모두 북한 영토)까지 진출

- 특히 정착촌 건설 문제는 중국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바 평시에 비 공개적으로라도 중국정부의 협력체제 구축 필요

4. 활동내역

o 2003. 3. 3 중국 북경 도착

- 중앙민족대 민족이론 및 민족정책 연구소 방문

o 2003. 3. 4 ~ 3.24 연수기관 등록 및 관련자료 수집

- 3. 8 鄭信哲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학 및 인류학연구소 연구원 면담, 탈북자 현황에 대한 의견 청취

- 3. 9 金炳鎬 중앙민족대 민족이론 및 민족정책연구소장 면담, 연수 주제·방법론에 대해 의견교환

- 3. 15 金炳鎬·鄭信哲 교수 면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 및 조선족의 인식관련 의견 청취

o 2003. 3. 25 ~ 4. 9 연변지역에서의 자료수집 등

- 3. 29 鄭信哲 연구원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출발

- 3. 30 연길도착 및 金成鎬 연변대학 교수 면담, 중국의 탈북자 단속 실태 및 탈북자 대책 의견 청취

- 3. 31 崔文植·許明哲 연변대학 교수 면담, 탈북자의 중국정착 문제 및 탈북자의 對韓인식 관련 의견 교환
- 4. 1 주철관 연변자치주 黨개발부 주임·윤영일 용정市黨 부서기 등 연변지역 黨간부 면담, 중국의 탈북자 정책관련 내용 및 탈북자 범죄실태 청취
- 4. 2 ~ 4. 8 용정시, 도문시, 장춘, 통화시 등 방문, 탈북 실태 및 조 선족 면담실시
- 4. 9 북경 귀환
- o 2003. 4. 10 ~ 4. 19 연수기관 연구실 방문 및 北·中 국경지역 방문 결과 정리
 - 4. 16 金炳鎬 중앙민족대 교수 면담, 北·中 국경지역 방문결과 관련 의견 교환
 - 4. 19 金炳鎬 중앙민족대 교수 면담, SARS로 인한 휴교(4.19부) 조치 로 잠정기간 연구소 사용 중지를 요청
- o 2003. 4. 20 ~ 5. 22 SARS로 연수기관 방문 등 중국내 활동 중단코 숙소에서 관련자료 정리
- o 2003. 5. 23 ~ 6. 27 전문가 면담 및 중국 연수내용 종합 및 연구보고서 작성
 - 5. 23 鄭信哲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면담, 同 교수의 연변지역내 탈 북자 실태조사(4.7~26) 결과를 청취
 - 6. 24 金炳鎬 교수 및 鄭信哲 연구원 면담, 4개월간의 연수 협조에 대한 사의를 전달
- o 2003. 6. 28 서울 도착

5.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내용

5.1. 脫北者 및 朝鮮族 문제 전문가 면담요지(3.8)

* 면담 대상자 : 鄭信哲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학 및 인류학 연구소 연구원

- 조선족 등 중국인과 결혼한 여성 탈북자는 체포되면 임신 4개월 이내는 즉시 송환, 4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출산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단독 또는 유아 동반 송환
 - 조선족 사회에서는 또 다른 이산가족을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며 대책 수립 필요성을 피력
- 조선족의 중국내 분산과 관련 중국사회로의 조선족 확산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포지하고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동북 3성 조선족 사회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
- 주요 조선족 거주지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투자를 통한 조선족의 생활향상 대책 마련을 요청
 - 이러한 조치가 탈북자 고용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중국내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는 의견 개진
- 한편 동북 3성의 부족한 농촌인력 보충을 위한 탈북자 활용 유용성을 언급

5.2.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관련 전문가 면담요지(3.9)

* 면담 대상자 : 金炳鎬 중앙민족대 교수(연수 지도교수)

- 조선족의 중국내 진출 현황 및 북경 거주 조선족 실태 파악

○ 탈북자들의 중국내 행태

- 농촌의 부족한 결혼연령의 여성을 보충하는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은 자식을 출산한 후에도 무단가출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
- 조선족들은 탈북자에 대해 1주일 정도는 보호하나 朝僑들의 고발 등 위험성으로 인해 그 후에는 내보내는 현상 발생

○ 탈북자 대책

- 이농현상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한국정부가 탈북자를 적극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

*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도 별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지시켜 중국에 정착하도록 유도

- 중국정부가 국제적 인권문제 부각으로 인해 부정적 자세를 갖도록 하기보다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방임적 태도를 취하게 하여 부족한 농촌인력을 보충하게 한다면 적극적 방어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탈북자의 중국내 현지정착을 위해서는 조선족의 경제생활 향상이 중요하므로 한국의 동북 3성에 대한 투자가 중요

- 북한의 항의가 없으면 묵인하고 단속도 金正日 訪中 등 北·中 행사 시 등 대체로 일정한 시점에 하므로 그러한 시기를 피하면 한국기업들이 동북3성에 진출하여 탈북자들을 고용하면 현지정착 가능성 상존

- 다만 韓·中, 北·中 외교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것은 곤란

○ 중국내 한민족의 기틀을 굳건히 한다는 측면에서 조선족의 한국수용보다 중국내 기반 구축이 절실

5.3. 金炳鎬 · 鄭信哲 제2차 면담요지(3.15)

- 2002년도 중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조선족 자치구 실태 청취
 - * 중국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소수민족에 대한 자세한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
- 鄭信哲 연구원은 탈북자 실태조사를 위해 3월말경 北·中 국경지역 출장 예정이라고 하여 결과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
- 조선족 식자들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인권문제에 예민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 이들의 중국내 거주를 묵인할 것인 바 탈북자들의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北·中 국경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투자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
- 주로 조선족 거주지가 중국 내륙에 있어 물류비용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가 적음을 지적하면서 첨단산업 위주의 투자로 해결할 수 있음을 언급

5.4. 金成鎬 연변대 교수 면담요지(3.30)

- 한국 및 국제 NGO의 기획망명 기도 이후 중국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
- 현재 중국 공안당국은 국경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등 교통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검문을 통해 탈북자 발견시 모두 체포
 - * 중국 국경수비대에는 수천명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조만간 송환될 것이라고 부언
- 탈북자에 밀고시 200위엔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밀고자 대부분이 조선족으로 오히려 한족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탈북자에 대해 보호해주고 있는 실정
- 중국은 60년대 중국민의 북한유입시 보호해준 북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중국 유입 탈북자에 대해 묵인하는 정책을 취해왔으

나 한국 및 국제 NGO의 탈북자 망명기도시 북한의 항의를 피할 수 없어 단속하는 실정

- 또한 국제문제화되는 탈북자 문제 묵인시 다른 소수민족의 소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단속은 불가피한 상황
- 더구나 탈북자의 중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중국당국이 탈북자 문제를 묵인하도록 국제문제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

5.5. 崔文植 · 許明哲 연변대 교수 면담요지(3.31)

- 중국은 이농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소도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인력을 일정 지역으로 이주·통합시키고 있는 바 중국당국의 허용·묵인시 유입 탈북자를 농촌인력으로 대체 가능
 - 현재 재한탈북자들은 한국정부의 대책소홀과 한국민들의 멸시·차별 등으로 한국정착에 대해 후회
-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은 묵인하면서 살인·강도·절도 등 치안문제 발생시 관련자만 송환해왔으나 기획망명과 관련 최근 단속을 강화
- 문제가 걸으로 드러났을 때 묵인하면 티벳·신장 등 28개 過境민족들과의 복잡한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차단정책을 지속 추진할 전망
- NGO들의 국제 이슈화보다는 조용한 처리가 탈북자의 중국내 정착이나 한국으로의 귀순에 효과적

5.6. 연변지역 黨간부 및 연변대학 교수 면담요지(4.1)

- * 면담 대상자 : 주철관(연변조선족자치주 黨위원회 개발부 주임), 김성철(연변조선족자치주 黨위원회 개발부 부주임), 윤영일(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黨위원회 부서기), 박금혜(연변대학 역사학과 교수 겸 민족연구원 소장)

- 金正日이 얼마전 訪中(일시 미상)하여 北·中은 탈북자의 중국유입을 비공식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 金正日이 귀환한 후 탈북자들의 중국 경유 한국 및 제3국으로의 망명을 허용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자 중국이 거부
 - 거부 이유는 탈북자의 제3국 망명을 허용할 경우 중국내 소수 민족의 소요를 예상했기 때문
 - 이는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
- 탈북자들의 중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탈북자 지원정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언급
- 중국이 탈북자 정착촌 건설을 허용한다면 조선족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건설하여 조선족이 강력해 지는 것을 방지하고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내몽고·신장 지구 등에 건설할 것으로 예상
 - * 한편 지난 3.28 용정시에서 탈북자 부부(남 38세, 여 33세)가 조선족의 집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은 후 돈을 요구하다 불응하자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 발생

5.7. 金寬雄 연변대 교수 면담요지(4.4)

- 가정파괴, 조선어 수업폐지론, 연변지역 경제실태 등 조선족 사회의 현실태 언급
- 조선족 발전을 위한 한국정부의 투자, 문학계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

5.8. 조선족 문제 전문가 면담요지(4.5)

* 면담 대상자 : 朱在憲 길림성 민족연구소 소장 및 都永浩 흑룡강성 민족연구소
부소장

- 한국이 조선족 자치 지역에 투자를 하려면 이곳 현실에 맞는 기술수준으로 투자해야 실업난 타개 등 조선족 사회발전에 기여
- 한반도 문제와 관련 조선족 사회에는 평화적 통일, 통일불원, 북한지지 등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으나 다수가 한반도가 통일되면 조선족이 남쪽으로 이주해갈 것이라고 생각
-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라는 금전적 관계로 인식
 - 20여만명이 한국에 진출하고 연변대 교수의 60%가 한국에서 학위를 받는 등 열풍이 유지
- 북한에 대해서는 부시의 「惡의 軸」 발언처럼 믿을 수 없는 나라, 북한 현실에 대한 동정, 북한발전에 대한 의구심을 보유
- 그러나 조선족은 남북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고 있음

5.9. 탈북자 문제 전문가 면담요지(5.23)

* 면담 대상자 : 鄭信哲 사회과학원 연구원, 張和 중앙민족대 교수

- 지난 4월 7 ~ 26간 鄭信哲 연구원·張和 교수의 연변자치주 北·中國경지역의 탈북자 실태조사 결과 득문

- 최근 탈북자들의 살인·강도 등 치안문제 다수 발생으로 중국 공안당국이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탈북자의 수가 격감
 - 더구나 사건을 야기시킨 탈북자들은 대부분 장기간 중국에 거주하거나 자주 월경하면서 신세를 진 중국인(조선족 포함)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들에 대한 지원이 격감하고 있는 상황
 - 수천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 및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北으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 조선족들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1. 개 요

1.1. 일반사항

- 활동기간 : 2003. 3. 3. ~ 6. 28 (4개월)
- 연구과제명
 - 중국 행정·경제특구의 법제
- 연수기관 및 일정
 - 3. 3. ~ 6.28. :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 주요 활동사항
 - 중국의 특별행정구의 현황 및 법제 연구
 - 중국의 경제특구의 현황 및 법제 연구
 - 중국의 행정·경제특구 법제관련 자료수집 분석
 - 중국의 행정·경제특구 관련 인사들과 면담

1.2. 연수기관(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소개

- 주소: 중국 北京 東城區 沙灘北街 15號
- 전화: 001-86-10-6403-5493, FAX: 001-86-10-6401-4045
- E- MAIL: fxsky@law.cass.net.cn
- 연혁
 - 1958. 10. 설립, 중국과학원 철학사회과학부에 예속
 - 1979년 중국 사회과학원에 소속
- 기능
 - 국가급 법학연구기구
 - 주요 사명
 - ① 직업학술연구 : 공법, 사법과 사회법을 커버하는 광활한 영역, 국내 법과 국제법을 함께 중시하고, 법철학과 법제사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부분법학과 법률실무를 연구
 - ② 고급법학교육 : 국무원과 교육부의 수권에 따라 법학 박사과 석사 연구생을 모집하고, 국내외의 연수생과 전문가를 받아들이고, 국가공무원과 법관, 검찰관 및 율사(변호사)에게 고급 법학연수 제공
 - ③ 국가입법, 사법과 행정중대정책결정에 참여

2. 연구활동 경과

2.1. 해외사례 연구

- 홍콩, 마카오 등 중국의 특별행정구의 법제 연구
-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기타 법제에 관한 자료 수집 분석
- 深圳, 珠海, 汕頭, 廈門, 海南島 등 중국의 5대 경제특구의 법제 연구
- 경제특구의 법제에 관한 각종 자료 수집 분석
- 행정·경제특구법제 연구분야와 유관한 대학, 연구기관의 관계자와 면담 등으로 특구에 대한 이해 증진

2.2. 국제네트워크 형성 노력

- 대만, 홍콩, 마카오 연구중심 및 법학자들과 면담 등으로 행정·경제특구에 대한 이해 증진
- 동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이해 증진
 - 한국 법제의 소개와 한국의 전통 및 문화 소개로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중국의 실정에 따라 중국 측 인사들에게 한국의 법치주의 정착상황을 설명하는 등으로 이해 증진 도모

3. 개별과제 추진현황

< 특별행정구 법제>

- 일국양제와 고도자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장차 홍콩,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와 중앙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
- 인권을 중시하는 홍콩 등 특별행정구와 국가통일의 관점에서 분리 이탈을 방지하려는 중앙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미묘한 갈등 기류가 감지됨.
- 특히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홍콩 특별행정구 終審法院의 판결에 대하여 중앙,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과 이러한 상황에 대한 홍콩 내의 비판적 여론 감지됨.

< 경제특구의 법제>

- 심천, 주해, 산둥, 하문, 해남도 등 중국의 5대 경제특구가 어떻게 개혁 개방의 과업을 수행하였는지 및 이를 가능케 한 법제는 어떠한지 연구
- 경제특구의 법제를 보면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였던 문제로 인하여 새로이 수립하여야 하는 각종 제도, 즉 주식회사 등 현대기업제도, 변호사 제도 등 각종 사회중개서비스 제도, 금융 및 외환관리제도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주의체제 속에 시장 경제질서가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
- 경제특구의 설립을 위하여 위치를 지정하고, 투자인프라를 구축하며, 외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증대하며, 하이테크 신기술의 육성, 투자방향 유도를 위한 법적인 조치 등은 정책과제 연구를 위하여 많은 참고를 제공

4. 활동내역

기 간		내 용
3월	3 -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 및 직원 인사 : 3.11. ○ 도서관 사용법, 컴퓨터 활용법 등 설명 청취 ○ 도서관 자료 검색/ 관련 자료 수집
	1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도서관에서 자료검색 및 수집 ○ 시내 각 대형 서점에서 자료수집 및 연구 ○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초청 간담회 : 3.28. ○ 북경 공상대학 법학원 교수 초청 간담회 : 3. 29.
4월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내 도서관 이용, 관련 자료 수집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대만, 홍콩, 마카오 연구중심 연구원 면담 : 4. 10. ○ 관련자료수집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서점, 관련기관 상대로 관련자료 구입 ○ 관련자료 번역 및 연구분석
5월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도서관, 관련기관 등 상대로 자료구입 ○ 북경공상대학 법학원 교수 등 면담 ○ 관련자료 연구분석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료 검색 및 구입 ○ 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 초청 간담회 : 5.23. ○ 관련자료 연구분석
6월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료 구입 및 연구분석 ○ 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 면담 ○ 귀국 준비 ○ 귀국 : 6.28. 11: 30 중국 북경 출발 14:30 한국 도착

5.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내용

5.1.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 (3.28.)

- 인적사항: 연구원, 교수 陳甦(진소)
- 본 연구소에서의 연수활동을 환영하고,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길 기대함.
- 자료안내 및 관련 인사들의 소개 등 각종 편의 제공하겠음.
- 핵문제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박한 바, 문제가 원활히 해결 되어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램.

5.2. 북경 공상대학 법학원 교수 면담 (3. 29)

- 면담자 : 공상대학 법학원 교수, 법학박사, 율사(변호사) 金秋
- 중국 특별행정구는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일국양제 정책의 시행결과
- 일국양제 정책은 원래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 하였으나 홍콩 문제의 해결에서 먼저 결실을 봄.
 - 경제특구는 중국 경제 개혁개방 및 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한 것으로 경제특구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던 많은 제도가 중국대륙 전체로 전 파되어 시행되고 있음.
 - 경제특구의 설립 및 운용에 있어 법제건설의 중요성이 매우 컸고, 중국 대륙의 각종 현대기업제도 등은 경제특구의 법제를 기초로 발전 및 보완된 것임.

5.3.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대만, 홍콩, 마카오 연구중심 주임 면담(4.10)

- 인적사항: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대만, 홍콩, 마카오 연구중심 주임,
연구원 吳建璠
- 원래는 홍콩, 마카오, 대만연구중심이였으나 최근 대만, 홍콩, 마카오
연구중심으로 개명하였는데 이는 중국통일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
- 본인의 원래 전공은 중국 법제사이나 홍콩 문제 등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 현재 홍콩 문제에 있어 홍콩특별행정구와 중앙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
 - 일국양제와 고도자치를 기본으로 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홍콩의
헌법과 같은 것으로 중앙은 외교와 방위에 대하여만 간여하고 그 밖
의 부분은 홍콩특별행정구 스스로 처리토록 고도자치권을 부여하였음.
- 경제특구에 대하여는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나 오늘날 중국의 시장경
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5.4. 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 초청 간담회(5.23.)

- 인적사항 :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 법학원 부교수 吳日煥
- 경제특구는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고, 여러 가지 현대 국가가 갖
추어야할 기업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험실시한 후 대륙에 전파하는 역할
을 하였음.
- 경제특구의 성과는 법제의 확립에 기인한 바가 크고, 비록 현재는 중국
사회 전체가 개혁 개방화되어 경제특구와 비특구 사이에 차이가 존재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경제특구는 앞으로도 그 자체의 우세
를 새로이 창출하고 계속 발전할 것임.

- 경제특구의 법제 중 특이한 것이 授權立法인데 이는 중앙의 수권에 따라 경제특구가 소속된 지방행정단위인 市나 省이 헌법의 규정, 법률과 행정법규의 기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제특구의 법제확립에 큰 공헌을 한 제도임.
- 그밖에 경제특구 및 대륙의 금융제도, 투자유치, 민상법과 경제법 등의 동향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6. 조사자료 목록

6.1 국내문헌

- 오용석, 「중국 경제특구 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 윤희문 외 공저, 「현대중국경제」(교보문고, 2001)
- 정운영, 「중국경제산책」{(주)생각의 나무, 2001}
- 류동원, 「중국의 통일과 일국양제」(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 심의섭, 이광훈,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김익수,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과 한반도」(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6.2. 중국문헌

- 焦宏昌, 周大綱, 「홍콩, 마카오, 대만 법제개론」 (중국정법대학 출판사, 1999)
- 李正義, 俞木傳, 「경제법개론」 (동북재경대학출판사, 2002)
- 楊磊, 韓靈麗, 「법학개론」 (절강대학출판사, 2002)
- 鄒聲華 「중국정부체제」 (天津사회과학원출판사, 2002)
- 黎學玲 외, 「특별경제구법」 (법률출판사, 1997)
- 王振民,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관계」 (칭화대학교 출판사, 2002)
- 肖蔚雲, 「홍콩기본법을 논함」 (북경대학교 출판사, 2003)
- 林炎, 「국제법의 시각에서 본中英의 홍콩문제에 관한 연합성명」, 「법학연구」, 제1기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90)
- 王叔文, 「기본법은 “일국양제”를 구현하는 方針的 全國性 법률이다」, 「법학연구」, 제2기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90)
- 李步雲, 「“일국양제” 3제」, 「법학연구」, 제19권 제4기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97)
- 吳建璠 외, 「“일국양제”와 홍콩기본법」, 「법학연구」, 제19권 제6기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97)

< 대법원 강신증 >

1. 개 요

1.1. 일반사항

- 활동기간 : 2003. 3. 2. ~ 6. 28
- 연구과제명
 -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가족법상의 제문제 해결사례
- 연수기관 :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 주요 활동사항
 - 중국과 대만의 혼인법 및 상속법 관련 문헌연구 및 정리
 -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보고회 중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양안과제와 약간의 법률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보고회에 참가
 - 중국혼인법, 상속법관련 전문가 및 兩岸관계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 실시

1.2. 연수기관 소개

- 주 소 : 中國 北京 東城區 沙灘北街 15号(우편번호 100720)
- 전화번호 : 0086-10-64035493

○ 연수기관 규모 :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는 국가급 법학연구소

- 현재 11개 연구실(법리학연구실, 헌법·행정법학연구실, 민법학연구실, 상법학연구실, 경제법학연구실, 지적재산권법학연구실, 국제법학연구실, 형법학연구실, 소송법학연구실, 법제사연구실, 정보법학연구실)
- 11개 연구센터(인권연구중심, 지적재산권연구중심, 대만·홍콩·마카오법연구중심, 공법연구중심, 사법연구중심, 性別과법률연구중심, 법률자문과지원중심, 아시아법연구중심, 유럽연합법연구중심)가 있음
- 또한 사회과학원대학원 법학과와 도서관 및 '법학연구'라는 잡지의 출판편집부를 직속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현재 연구원 36명, 부연구원 34명, 助理연구원 28명 등 총 114명이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 연수기관 연혁

- 1958년 10월 중국과학원 철학사회과학부 예하 연구기관으로 설립
- 1979년 중국사회과학원 예하 연구기관으로 개편

○ 연수기관 기능

-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을 포함한 광범한 분야에 걸친 법학을 연구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을 병행하여 연구하며 법철학과 법제사 및 법률이론과 실무를 연구
- 국무원과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을 교육하고,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를 받아들이며 국가공무원, 법관, 검찰관, 변호사를 위한 법률연수
- 국가 입법과 사법 및 행정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참여

2. 연구활동 경과

2.1. 해외사례 연구

- 해외사례 연구를 위해 관련자료 수집 정리
 - 중국의 혼인법과 상속법, 대만의 민법 중 친족상속법,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 대한 정책과 관련한 1차 자료 수집, 정리
- 연구과제와 관련된 세미나 참가 및 대만 문제 전문가 면담 등을 중심으로 연구활동 전개

2.2. 국제네트워크 형성 노력

- 양안관계 및 중국혼인법과 상속법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계기로 E-mail 교환 및 추가적인 전화 인터뷰를 실시
-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보고회 참가를 통해 신진 및 전문가 그룹과의 교류를 가짐.

3. 개별과제 추진현황

- 중국과 대만의 민간교류 증진에 따른 쌍방의 정책변화 및 법률제도의 정비과정에 초점을 맞춰 연구 활동 전개
 - 중국과 대만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책변화 및 관련 법령에 관한 문헌 연구
 - 중국과 대만의 가족법 및 교류관련 법령을 비교·분석

4. 활동내역

- 2003. 3. 11.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 陳甦 교수 면담
- 2003. 3. 18. 중국혼인법 전문가 薛寧蘭 교수 면담
- 2003. 3. 26. 중국최고인민법원 의사처 부처장 외 2명 면담
- 2003. 4. 17.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대만·홍콩·마카오연구센터 주임(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 위원 겸임) 吳建璠 교수 면담
 - * SARS의 영향으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북경의 연구기관 및 공공단체들이 휴무에 들어가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려하여 연구기관 방문이나 전문가 인터뷰가 사실상 불가능
- 2003. 4. 26. - 2003. 5. 3. 중국과 대만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책변화 및 관련 법령에 관한 문헌연구 및 정리
- 2003. 5. 4. - 2003. 5. 10. 중국과 대만의 혼인법 자료 연구 및 정리
- 2003. 5. 11. - 2003. 5. 17. 중국과 대만의 상속법 자료 연구 및 정리
- 2003. 5. 18. - 2003. 5. 24. 대만관련 혼인, 상속에 관한 중국측의 정책 연구 및 정리
- 2003. 5. 25. - 2003. 5. 31. 중국관련 혼인, 상속에 관한 대만측의 정책 연구 및 정리
- 2003. 6. 8.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 陳甦 교수 2차 면담
- 2003. 6. 20. 중국혼인법 전문가 薛寧蘭 교수 2차 면담

5.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내용

5.1.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 陳甦 교수와(3. 11)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대만 자본이 대륙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만당국이 대만 주민의 대륙방문 문호를 개방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대륙주민과 대만주민 사이에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러한 경우의 혼인등기방법을 마련하게 됨.
- 남북한 주민의 교류·왕래가 개방되면 가족관계에 관하여 중국과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족법과 관련한 제도적인 방안을 사전에 연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추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및 대만연구소의 유관 학자와의 면담 주선 및 자료 수집을 지원하기로 함.

5.2.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혼인법 전문가 薛寧蘭 교수(3.18)

- 중국 대륙은 기존의 혼인법을 개정하여 2001. 4. 29.부터 시행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도 민법 중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여 2001. 6. 26.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고, 학자들 간의 교류와 자료교환을 통해 상호 연구를 하고 있음.
- 대만의 민법 중 개정된 친족법 부분에 관한(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대만에서 출판된 자료를 제공받았고, 향후 중국과 대만의 가족법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협력하고 교류하기로 함.

5.3. 중국최고인민법원 의사처 부처장 등(3. 26.)

- 중국 사법제도의 특색 및 중국과 대만의 사법공조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

5.4.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대만·홍콩·마카오연구센터 주임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 위원 겸임) 吳建璠 교수(4. 17.)

- 중국과 대만의 법률체계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
- 대만 법원의 판결은 대륙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정치현실이나 민사소송법의 외국판결의 승인에 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5.5.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 陳甦 교수(2차, 6.8)

- 양안주민 가족관계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기본정책에 관한 의견교환
- 중국 대륙은 대만의 주민에 대하여 一國兩制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되 대만관련 혼인문제의 처리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분단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혼인상태 및 가족관계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음.

5.6.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혼인법 전문가 薛寧蘭 교수(2차, 6.20)

- 중국과 대만의 분단현실에서 나타난 중혼문제와 상속관계에 대한 중국의 운용실태와 대만의 '양안관계조례'에 관한 의견교환.

6. 조사자료 목록

6.1 국내문헌

- 김현우, 「중국·대만간 교류의 법률충돌문제와 “양안관계법”」(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6호, 1994)
- 김근식, 「중국대륙과 대만의 결혼, 이혼 및 상속에 관한 비교고찰」(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2호, 1998)
-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협력법제』(법무부, 1995)
- 법제자료 제162집, 『중국과 대만의 교류법제』(법제처, 1992)

6.2 중국문헌

1. 國務院台灣事務辦公室新聞局 編, 『台灣事務法律政策選編』(九州出版社, 2001. 4.)
2. 楊大文 主編, 『新婚姻法釋義』(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 5.)
3. 余先子 主編, 『台灣民商法與沖突法』(東南大學出版社, 2001. 3.)
4. 王洪 著, 『婚姻家庭法』(法律出版社, 2003. 1.)
5. 馬原 主編, 『新婚姻法案例評析』(人民法院出版社, 2002. 2.)
6. 林秀雄 著, 『婚姻家庭法之研究』(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1. 11.)
7. 馬原 主編, 『婚姻法繼承法分解適用集成』(人民法院出版社, 2001. 6.)
8. 唐磊, 李平 主編, 『海峽兩岸法律制度比較研究』(四川大學出版社, 2001. 3.)
9. 章尙錦 主編, 『國際私法』(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0. 3.)
10. 最高人民法院民事審判第一庭 編, 『婚姻法解釋及相關法律規範』(人民法院出版社, 2002. 1.)
11. 李湘如 著, 「港台婚姻成立與終止的比較」(中國社會科學出版社, 法學研究 1990. 第6期)
12. 余鑫如 著, 「關於海峽兩岸繼承法的比較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法學研究 1990. 第2期)
13. 陳安 主編, 『海峽兩岸交往中的法律問題研究』(北京大學出版社, 1997. 6.)
14. 庄金鋒 主編, 『海峽兩岸民間交流政策與法律』(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1. 3.)

6.2. 대만문헌

1. 楊芳婉 著, 『親密夫妻明算帳-新夫妻財產制』(永然文化, 2001)
2. 黃宗樂 著, 『關於海峽兩岸婚姻·收養及繼承法律問題之研討』(台大法學論叢 第21卷 第2期, 1997)
3. 趙春山 編著, 『大陸政策与兩岸關係法』(財團法人民主文教基金會, 1990. 11.)
4. 行政院大陸委員會 編, 『大陸工作法規匯編』(行政院大陸委員會, 1991. 6.)
5. 戴炎輝·戴東雄 合著, 『中國繼承法』(國立台灣大學法學院福利社 1990. 3.)

IV. 러시아지역 연수결과

◆ 일 시 : 2003. 3. 3 ~ 6. 30

◆ 연 수 자

재정경제부 : 사 무 관 나 상 식

< 재정경제부 나상식 >

1. 개 요

1.1. 일반사항

- 연수기간 : 2003.4.1 ~ 6.28
- 연수기관 : 러시아 극동연구소
 - 주소 : Russia, Moscow 117218 Naximov st.32
 - 전화 : (7-095)-124-01-29/ Fax : (7-095)-718-96-56
- 연구과제명
 - 체제전환과정에서의 러시아 국영기업 사유화 추진사례
- 주요 활동사항
 - 러시아의 사유화 추진과정
 - 바우처 사유화의 장단점 분석
 - 러시아 전문가 인터뷰 실시

1.2. 연수기관 소개

- 러시아 극동연구소(소장 : 티타렌코 미하일 레온찌에비취)는 1966. 9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에 동북아 관계연구, 복합적인 한·중·일 문제 연구 및 소비에트와의 관계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
 - 연구소 및 산하 한국연구센터를 포함하여 5개연구센터 산하에 연구원이 총 200여명으로 경제·역사·철학·언어 등 연구

2. 연구활동 경과

- 연구소에서 연구실은 임대하여 객원연구원으로 등록, 동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시작
 - 연구활동은 주로 연구실에서 인터넷 관련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하고, 한국연구센터 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
- IMEMO(세계 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산하 한·러 FORUM 자료 활용

3. 개별과제 추진현황

3.1. 주요내용

- 시장경제의 경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구체제의 질서와 인적 구성이 유지된 채 국가권력의 약화현상 속에서 시도된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은 생산고의 급격한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다수의 실업자와 절대빈곤층을 양산

-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추진된 사유화프로젝트는 그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는 기록적인 성과를 시현
 - 그러나 사유화 시행 전후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다양한 세력들 사이의 각축으로 인해 효율성의 제고, 사회적 정의의 실현 및 자본시장의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원래의 목표에 미치지 못함
- 따라서 러시아의 국영기업 사유화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해외추진사례 및 정책과제에 반영

4. 주요 활동내역

- 연구소 방문 및 연구소 부소장(Dr. Rustam M. Aslanv)면담(4.1)
 - Dr. Vadim Tkachenko(한국연구센터 소장), Ph.D. Alexander Zhebin(한국연구센터 선임연구원), Roald Saveliv(한국연구센터 부소장) 면담(4.15)
- 자료수집 및 번역, Dr. Evgency P. Bazhanov(러시아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Dr. Vadim Tkachenko(한국연구센터 소장), Ph.D. Alexander Zhebin(한국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면담(4월)
- 권구훈 박사(IMF 러시아 사무소 부소장)(5월)
- Knyazkin(이행기 경제연구소 교수), S.S. Suslina(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수석연구원, 경제학 박사) 등 면담(6월)
- 해외자료보고서 초안 작성 및 자료수집·정리(6월)

5. 관계자 면담내용

5.1. Dr. Evgency P. Bazhanov(러시아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 러시아의 사유화 전개과정
 - 제1단계 : 정부가 무상배분한 사유화 증서(voucher)를 지불수단으로 사유화 대상기업의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매각하는 대중사유화 추진('92.6~'94.6),
 - 제2단계 : 기업구조조정 비용과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대형기업을 현금매각('95.1~'96.12)
 - 제3단계에서는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대형 국가독점기업(석유,가스,통신 등)에 대한 현금매각이 '97년부터 진행중('97~)
 - * 소규모기업 '92년 사유화 완료(매각), 중대형 '93~'94년 약 50%(대중사유화), '99년 현재 사기업이 러시아 전체 기업의 74%를 차지
- 단기간에 많은 기업들에대한 사유화를 완료하여 시장경제체제의 틀을 조기에 마련하는 성과를 시현
 -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하여 산업구조조정 실패, 부의 소유집중 심화, 재정수입 미확충 등 당초의 사유화 목적과는 괴리

5.2. Dr. Vadim Tkachenko(한국연구센터 소장), Dr. Alexander Zhebin (한국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면담

-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초반의 정치상황이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치 엘리트의 변화는 전혀 없었음. 그들 중 축출된 사람들이 거의 없고, 공장 등 사유화된 기업들에는 어디에나 노멘클라투라들이 주인으로 남아 있음.

○ 바우처 사유화의 문제점은? 시행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가?

- 상류층(과거 정치엘리트 등)의 의도대로 진행된 전략이었음. 국민들에게 1만루블 짜리 바우처 몇 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유화 이후 소주주(25%미만의 지분 소유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음. 몇 사람에게 바우처가 집중되도록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으로 규정한 것임. 권력층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바우처를 매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임.

○ 바우처에 의한 사유화는 결국 내부자(기업내 노동자그룹 및 매니저 등)에게 지나친 특혜가 주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왔다고 보는가?

-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음. 자기 자신들이 기득권층이기 때문임.
아직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압력을 그다지 받고 있지 않지만, 금년말 총선 홍보용으로 일련의 조그만 변화는 예상됨. 그러나 혁신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며 공산당(야당)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음. 이들의 관심은 사유화된 재산을 국가재산으로 환수하여 노멘클라투라 소유재산으로 만드는 것임.

○ 북한 기득권층과 관련 남북통일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 대내적으로는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이 기득권층의 보호를 약속하여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의 권력 상층부 및 그 주위 기득권층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 합의하는 것임.
- 1993년 김일성의 통일 10대 원칙에서처럼 남북한 기업 및 개인재산 등을 그대로 인정해야 함. 북한인사들에 재산권 등 이권을 서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북한 기득권층들은 절대로 통일을 원치 않을 것임. 예를 들면 김용순에게는 금강산 프로젝트를 제공해 주고 군부에는 군수공장 관련 사업에 대한 이권과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 등임.

5.3. 권구훈 박사(IMF 러시아 사무소 부소장) 면담

- 바우처 사유화에 대해 어떠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또한 동 사유화 방식에 대해 평가를 해주기 바람.
 - 바우처 사유화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만일 바우처 사유화로 조속히 사유화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유화에 실패하였을 것으로 봄. 조속히 사유화에 성공함으로써 공산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여 엘친의 지지기반을 확보하였다고 봄.
 - 바우처 사유화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유화에 성공했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했다고 봄. 당시에는 사회주의의 구법들이 유효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용자를 해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복지비용 등 예산소요가 엄청나 국제기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판단하여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이 법을 폐지할 경우 국민의 저항이 거세어 폐지를 고려할 수가 없었음. 러시아의 바우처 사유화가 내부자 사유화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사회주의 당시의 노동영웅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고,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일 뿐임. 이러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름.
- FIGs의 형성과정과 앞으로의 전개 전망은?
 - 한국의 재벌은 정부가 키워주었지만, 러시아의 과두재벌은 경영능력보다는 사유화 과정에서 민첩하게 국가재산을 편취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재벌그룹들임. 그러나 이들은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한국의 재벌들 처럼 국가경제를 위한 경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봄.
 - 푸틴정권은 2003년 총선 및 2004년 대선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어 정부주도로 당장 경제개혁을 시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있음.
- '98년 당시 외환위기의 원인은?
 - 안정적 보수세력인 체르노미르딘 총리의 뒤를 이은 키리엔코가 과두재벌을 성급히 처벌하려고 시도한 것이 시발이었음. 당시 외채는 많지 않았으나 세금징수 실적이 GDP의 10%도 되지 못해 이자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그 원인은 복합적임.

① 아시아 외환위기

-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 대한 매력의 급속히 상실되어,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러시아로부터 이탈한 투기성 외국자본이 100억달러 이상

② 세계 에너지 시장가격의 하락

- 러시아 외환획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러시아 경상수지 악화에 결정적인 타격

③ 재정상태의 악화

- 외자도입과 국채발행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충당
- '95~'97년의 재정적자가 각각 GDP의 3.3%, 4.2%, 4.4%를 기록
- * 보편화된 탈세와 주요 대기업들에 의한 조세 체납액의 증가로 인해 월 65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채납이 주원인

④ 금융부문 부실

- 금융부문은 소규모 부실 은행의 난립, 은행 업무의 비효율성, 금융감독의 부실과 비리 등이 심각
- 당시 러시아 은행중 약 37%만이 건전한 상태
 - Tokobank(20위 이내)의 법정관리(독자적 외자도입액 : 1억2천5백만 달러), SBS-Agro bank(3위) 디폴트 등

⑤ 정치-사회 불안

-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광부들의 파업이 확대되어 철도 마비
 - 98.6.1 현재 체불임금 628억 루블
- 끼리엔코 총리인준을 둘러싼 정부와 의회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 경제개혁 법안의 의회 승인 거부 등

⑥ 외환보유고의 저하

- '97년 11월에 아시아 금융위기로 220억 달러, 12월에 180억 달러, 98년 8월에 13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외환보유고의 지속적 감소

⑦ 기타 주식시장의 침체, 석유회사 로스네프즈의 매각 실패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 등

5.4. Knyazkin 교수(이행기 경제연구소) 면담

o 러시아의 빅뱅식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권력의 최정상에 오른 급진개혁파의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이들이 추종하는 정치적, 이념적 목표에서 선택

- 대중으로부터 권력을 장악한 엘친의 통치권력의 기초는 매우 취약했으므로 과감하고 광범위한 체제개혁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단으로써 급진개혁을 추진

- 러시아 급진파들은 대부분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시 출신들로 '80년대말 구소련의 개방과정에서 서방의 경제학자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지적 기반을 공유한 35~49세의 소장그룹

- IMF나 World Bank 등이 차관공여 대가로 러시아정부에게 부과한 요구조건, 그리고 다양한 국제조직에서 파견한 경제전문가 집단들에 의해 실행된 기술 및 정책자문은 러시아 신자유주의자들이 추진하는 급진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러시아 개혁정부가 채택한 충격요법은 신고전파, 그중에서도 국가주도의 급진주의를 표방한 Cambridge-Washington 그룹의 영향을 받음

이들의 정책조언 및 지원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부패와 범죄와 연계

* 1992~1994년간 집중적으로 행해진 사유화 과정에서 서방에서 총 5,800백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 자금의 대부분은 제프리 삭스가 주도하는 H.I.I.D를 통해 분배되었음. 이 기구는 아나톨리 추바이스가 '러시아 사유화 위원회'에 정책분석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사설단체인 '러시아 사유화센터'에 자금을 지원해 왔고, 그 대가로 H.I.I.D.에 소속되어 러시아 사유화 과정에 개입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러시아 기업사유화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입수하여 미국기업들에게 넘겨주고 또 개인적으로 공적자금을 유용하여 증권투자를 하기도 했음.

V. 영국지역 연수결과

◆ 일 시 : 2003. 3. 3 ~ 6. 30

◆ 연 수 자

경 찰 청 : 경 감 남 제 현

< 경찰청 남제현 >

1. 개 요

1.1. 일반사항

- 활동기간 : 2003. 4. 1 ~ 6. 28
- 연구과제명
 - 영국 예비경찰의 자율방법 및 다중범죄 대응활동
- 연수기관 : 영국 포츠머드대학 형사사법정책원
 -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Studies(ICJS) -
- 주요 활동사항
 - 해외사례 보고서 작성 및 영국 예비경찰제도에 관한 학술 자료 등 문헌 수집·정리
 - Bramshill 경찰참모대학, Portsmouth 중앙 경찰서 등 경찰기관 방문, 견학
 - 형사사법정책원의 연구책임관인 경찰학 박사, Les Johnston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
 - ICJS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원 및 해외 유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 및 국제적 인식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류
 - 영국 예비경찰과 함께 실제 근무에 참여하여 예비경찰의 실제 활동상황 체험 및 견학

1.2. 연수기관 소개

- 소재지 : Ravelin House, Museum Road, Portsmouth,
Hampshire, United Kingdom, PO1 2QQ
전화 : +44 (0)23 - 9284 6157
- 기관성격 : 1992년 설립된 영국의 대표적인 형사정책 관련 연구기관으로
포츠머드대학(University of Portsmouth)의 소속 기관
- 규모 : 30여명의 교수진과 학생 수 900여명으로 3개 캠퍼스운영
- 연구 분야
 - 형사정책, 경찰조직관리, 국제경찰학, 피해자학, 행형학, 범죄심리학 등
학위과정 및 비학위 과정 운영
 - 영국 내 경찰관 교육 및 외국 경찰의 제도·교육 관련 연구 및 자문역할
수행
- 기획요원 연수 협조
 - 객원 연구원(visiting scholar)의 자격으로 대우하여 연구실을 제공하고
연구소 내부 이메일 주소 및 인트라넷 사용권한 부여
 - 교수 전용 시설(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식당) 및 도서관 등 대학내 시설
사용권 부여
 - 전담 지도교수 및 행정업무 보조 직원 지정
 - 지도교수 : Research Director, Les Johnston (경찰학 박사)
 - 행정업무 보조 : Eva Sanchez

2. 개별과제 추진 내용

2.1. 문헌 연구 및 관계자 면담

- 해외사례 연구에 필요한 관련자료 수집·정리
 - 영국의 예비경찰에 대한 학술 자료를 관련 분야 교수들로부터 수집
 - 경찰 실무자들을 통해 예비경찰 운용을 위한 영국 경찰 내부 문건 수집 및 관련 웹사이트 검색
- 예비경찰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
 - ICJS의 교수진 중 예비경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던 교수들을 선정하여 릴레이식 인터뷰 실시
 - 전·현직 경찰관 및 예비경찰관들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예비경찰 운영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정책 아이디어 수집
- ICJS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 및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적 상황 및 국제적 인식에 대하여 토론

2.2. 경찰기관 견학 및 현장체험

- 영국 내 각급 경찰기관에 대한 방문과 견학을 통하여 영국 경찰제도와 문화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이고 연구활동의 내실화 기여
- Portsmouth 지역 예비경찰과 함께 실제 예비경찰업무에 참여하여 활동 내용을 현장 체험

3. 주요 활동내역

- 2003. 4. 1, 형사사법정책원 방문(개별연수 시작), 연구소장 Steve Savage 교수와 인사 및 연구 일정에 관해 면담
- 2003. 4. 2, ICJS의 연구 책임관이며 경찰학 박사인 Les Johnston 교수와 연구 주제 및 방향에 관해 면담
- 2003. 4. 3, 포츠머드 중앙 경찰서 (Portsmouth Central Police Station)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2003. 4. 8, Northumberland 경찰청 차장을 역임하였던 ICJS의 경찰학 교수 Tom Williams 교수 면담
- 2003. 4. 11, ICJS 등 Portsmouth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각 국 유학생들과의 간담회 실시
- 2003. 4. 24, 영국 경찰의 간부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Bramshill Police Staff College 견학
- 2003. 4. 25, Thames valley 경찰청 지역운동본부 방문, 집회시위 대비를 위한 영국 경찰의 훈련 장소와 훈련 내용, 진압장비 견학 및 실무자 면담
- 2003. 4. 30, 런던경찰청 간부 및 경호교관으로 근무했던 ICJS의 Robin Fletcher 교수 면담
- 2003. 5. 2, Portsmouth의 예비경찰로 근무중인 Derrick Grainger 면담
- 2003. 5. 6, Southsea경찰서의 예비경찰 업무담당(Deputy Liaison Manager) Graham Pike 경사 면담

- o 2003. 5. 9, 중간점검 워크샵
- o 2003. 5. 23, 예비경찰의 실제 근무현장 참여하여 현장 체험
- o 2003. 5. 29, 런던 수도 경찰청 예비경찰의 총 책임자인 Chief Officer, John Barnel과 인터뷰 -
- o 2003. 6. 10, 북아일랜드 경찰청(NIPS)의 Chief Constable, Heigh Orde 와 이메일 인터뷰

4. 기관방문 및 관계자 면담내용 요지

4.1. 형사사법정책원 연구소장 및 지도교수 면담(4.1~2)

- o 연구소장, 범죄학 박사 Steve Savage교수 면담(2003. 4. 1)
 - 상호 인사 및 연구소 소개와 기획요원 연수 프로그램 일정 조정
 - 지도교수와 전담 행정보조 직원을 지정해 주고 방문하고 싶은 기관 과 면담이 필요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동 연구소 경찰학 관련 교수들이 모두 주선을 해주도록 배려
 - 영국의 예비경찰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절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통일 후 한국경찰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o 연구책임관, 경찰학박사 Les Johnston교수 면담(2003. 4. 2)
 - 아시아경찰학회 활동을 통하여 한국 경찰에 대하여 많은 점을 알고 있고 지도교수를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연구 진행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인 토론과 지도를 약속

- 영국의 예비경찰은 1673년경 사회혼란으로 인한 공공질서 파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통법에 기인하여 시민들을 강제로 징집한 후 폭동 진압 등에 동원한 것에서 그 역사적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예비경찰은 경찰법의 확립과 함께 계속 변천을 해왔으며 오늘날에는 자원봉사 방법 활동 위주의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 경찰과 주민의 파트너십을 높이고 경찰의 치안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비경찰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관의 2/3정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불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의자를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는 경찰보조인력으로 Community support officer 제도도 시험 실시 중에 있음
- 자원봉사에 기초를 둔 주민의 지역치안활동 참여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과 같이 비민주적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봉사 활동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률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임

4.2. Portsmouth 중앙경찰서 방문 및 관계자 면담(4. 3)

o Portsmouth Central Police Station 견학

- Portsmouth는 Hampshire경찰청의 12개 구역(Police Division)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4개의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경찰서가 Central station임

* Portsmouth의 관할인구는 약 20만명, 면적은 4,027 헥타르

- Central station은 다른 3개 경찰서를 통괄하여 관리하는 중심경찰서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CID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관 수는 150여명 가량됨
- 포츠머드의 다른 세군데 경찰서는 CID도 없고 23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모두 퇴근하며 그 이후의 치안업무는 중앙경찰서에서 책임지게 됨
- 유치장 및 경찰장비(전기 충격기, 호송 차량, 음주측정기) 등 견학

o 관계자 면담 : Chief Inspector, John Happel(특별 상황 담당)

- 많은 수의 예비경찰을 운영함으로써 경찰관이 4교대 내지 5교대의 여유로운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가 있음
- 예비경찰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 경찰의 통제하에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엄격한 관리 감독을 행하는 것은 아님
- 자원봉사 시민들로 구성된 예비경찰이 정규 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며 예비경찰의 권한에 대하여 주민들이 모두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 예비경찰과 정규경찰을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들도 별로 없음
- 정규 경찰관들도 예비경찰을 동등한 업무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근무 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음

4.3. 전 Northumberland경찰청 차장 Tom Williams 면담(4. 8)

- o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예비경찰은 북아일랜드의 예비경찰과는 성격이 많이 다름

-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종교분쟁과 I.R.A 등 분리독립주의자들의 폭동과 테러에 대항하기 위하여 군대식으로 예비경찰을 운영하였으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방법 순찰 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북아일랜드의 예비경찰 명칭은 Constabulary Reserve로 잉글랜드의 Special Constabulary와 다른데 북아일랜드의 역사적 배경과 업무의 중점이 다르기 때문임

4.4. 유학생 간담회(4. 11)

- 리투아니아의 변호사이면서 정부 지원으로 ICJS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Juste Millevicuite 등 영국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과 간담회
- Juste Millevicuite (리투아니아, 변호사, 석사과정)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반감을 알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에도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국민감정이 좋지 않음. 인구 300만의 작은 나라인 리투아니아에서도 러시아 군대가 지역 균형이나 전쟁 억지를 위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국에서의 전쟁 발생 가능성을 따로 떼어놓고 볼 필요도 있음
- Kristina Reiss (독일, 박사과정)
독일 통일 이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모든 독일 국민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바이에른지방 등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경제침체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여짐. 북한의 경제를 고려해보면 독일 통일이 남북통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모델이 되기는 부적절함
- Siamak Goudarzi (이란, 판사, 박사과정)
이라크 전쟁은 이란에 새로운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북한도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임. 북한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남한정부가 미국과 얼마만큼의 우대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음

o Richard Watuulo (우간다, 박사과정)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영국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음. 이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비민주적 사회의 북한 주민이 통일 후 민주적 정부를 경험하게되면 더욱 빨리 일체감을 갖게 될 것임

4.5. Bramshill 경찰참모대학 견학(4. 24, Bramshill)

o Bramshill 경찰참모대학은 1947년 창설된 영국의 경찰 간부 교육기관으로 영국 전역의 현재와 미래의 경찰 리더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재지 : Bramshill, Hook, Hampshire RG27 0JW

o 현재 영국 전역뿐 아니라 미국 FBI 등 세계 100여개국의 경찰 간부 수천 명을 교육, 배출함

o 대학의 교육훈련 분과는 4개로 구성되어 있음

- 지휘간부과정 분과(Command Team Programme)

- 전국운영분과(National Operations Faculty)

- 전국범죄수사분과(National Crime Faculty)

- 리더십 및 관리분과(Leadership and Management Faculty)

o 다중범죄와 관련된 교육은 전국운영분과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포위공격관리(seige management), 시위경비기획(planning for protest), 재난 및 대민응급상황관리(management of disaster and civil emergency), 중대사건지휘(critical incident command)의 교육과정이 있음

o 관계자 면담 : Barry Loveday(ICJS 경찰학 교수, Bramshill 출강)

- Bramshill의 교육철학은 개인적인 자기발전과 함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기 혁신임
- 피교육생들 각자에 따라 그 사람의 경험과 앞으로 맡게 될 업무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구
- 항상 실무와 연계된 실질적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시위경비기 획교육과정의 경우 집회시위의 현대적 경향과 그러한 시위에 대처하는 전략들을 최근의 사례와 각 경찰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교육시키고 있음
- 각 지방경찰의 자체적인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자문역할도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예비경찰에 대한 각 지방경찰의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도 수행하고 있음
- 남북한의 경찰이 통일이후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경찰(특히 고위 간부)의 사상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교육이 필요할 것임. 최근의 자체 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인 교육보다는 집중식 단기교육(2~3주)을 반복하는 것이 경찰관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더 효과적이었음

4.6. Thamsevalley 경찰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4. 25)

- o TVP(Thamse Valley Police)의 지역운동본부(Territorial H. Q) 방문 및 훈련장 견학
- TVP는 Berkshire, Buckinghamshire, Oxfordshire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으로 10개 경찰구역을 가지고 있음

- Territorial H.Q는 평시 10개 경찰구역 내의 경찰관을 소집하여 집회, 시위 등 다중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범죄나 대규모 행사가 발생하였을 때 경찰관을 소집, 동원하여 상황을 막는 역할을 수행
- 공군기지의 격납고로 사용되던 시설을 실내 훈련장으로 개조하여 실내에서 각종 다중범죄 진압훈련을 실시

o 관계자 면담 : Mrs. Julie Spencele (지역운용담당 국장)

- 영국의 경찰서는 규모가 아주 작은 소규모의 경찰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 시위 상황에 대하여 1개 경찰서가 단독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움이 많음
- 각 경찰서 별로 시위경비에 동원되는 경찰관들을 지정하여 평시에 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집회시위 발생시 동원하여 시위 상황에 대처하고 있음
- 집회시위 상황에서 시위자 개개인의 인권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도 경찰의 임무이기는 하겠지만 법을 여기면서 집회시위를 행하는 경우는 범법자에 해당하고 범법행위는 단호하게 진압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국 경찰과 정부의 방침임

4.7 전직 런던경찰청 간부 Robin Fletcher 교수 면담(4. 30)

o 예비경찰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세가지 부류로 나뉘어 짐

- 장래 경찰관이 되기 위해 미리 경험을 쌓고자 하는 경우
- 경찰업무에 매력을 느껴 경찰관이 되고 싶었으나 체력 조건이나 다른 기준이 맞지 않아 경찰관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경찰업무에 참여해 보고 싶어서 지원하는 경우
- 경찰업무에 매력을 느끼는 자들이 오로지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오랜 기간 동안 예비경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순수한 자원봉사 목적에서 시작한 사람들이며, 예비경찰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규경찰로 쉽게 임용되거나 하지는 않음. 예비경찰의 정규경찰로의 편입은 오히려 일반인이 경찰에 신규 채용되는 비율보다는 낮음
- 예비경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적절한 교육훈련으로 정규경찰과 동일한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하나 각자 다른 직장이 있다보니 장기적, 집중적 훈련을 시키는데 제한이 많음
- 예비경찰은 런던과 같이 사건 사고가 많고 복잡한 대도시보다도 지방의 경우에 더욱 활성화되어 있음

4.8. Special Constable, Derrick Grainger 면담(5. 2)

○ 면담자 : Derrick Grainger

- 퇴역한 해군 출신으로 29년째 Portsmouth Police Division의 예비경찰로 봉사해 오고 있음
- 현재 맡은 업무는 Section Officer로 예비경찰의 복지, 교육훈련, 관리 운영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Section Officer는 1개 경찰서에 한명씩 있으며 그 경찰서 소속의 예비경찰을 총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

○ 주요 면담 내용

- 예비경찰은 폭동이나 대규모 시위에도 동원되고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경찰봉 사용요령, 호신술, 최루가스 사용법 등 진압훈련을 평소에 계속 실시하고 있음

- 최근에 예비경찰이 동원된 가장 큰 상황은 인근 Southampton에서 있었던 프로축구 경기에서 훌리건의 난동을 막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것이나 1984년 대처수상의 폐광정책에 따른 광부들의 폭동이 있었을 때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예비경찰이 수시로 동원되었으며 이곳 저곳 지원을 나가기도 했음
- 예비경찰이 지역의 자원봉사자이기도 하나 같은 경찰청 내의 인근 지역에 폭동이나 대규모 시위가 있으면 지원을 나가기도 하며 보통 데모 진압에 동원되었을 때에는 정규 경찰의 뒤에서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지만 상황이 심각할 때는 정규경찰과 똑같이 무장하고 경찰봉과 최루가스로 시위대를 직접 해산함
- 예비경찰은 대규모 집회 시위 등의 상황에만 동원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재해, 전쟁 등의 상황에도 동원되고 살인사건 등 관내에 중요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동원됨. 2000년 겨울에 홍수가 났을 때에도 예비경찰이 동원되었으며 며칠 전 포츠머드 대학 기숙사 앞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예비경찰이 동원되었음
- 예비경찰을 동원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장이 Section Officer에게 요구를 하고 Section Officer는 예비경찰들을 소집하게 되지만 예비경찰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원을 할 때에는 예비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도 통보를 해주어 양해를 구하여야 하며, 고용주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동원할 수는 없음

4.9. DLM, Graham Pike 경사 면담(5. 6)

o 면담자 : Licencing Officer, Sergeant. Graham Pike

- Portsmouth Police Division내의 한 경찰서인 Southsea경찰서에서 예비경찰과의 연락담당 업무를 수행

- 예비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를 가져야 하고 체력이 좋아야 하지만 신장,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따로 정하지는 않음. 신체조건을 따로 정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차별이기 때문에 정규경찰을 선발할 때에도 신체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음
- 예비경찰을 지원하는 사람은 우선 건강검진과 체력 테스트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6주(1주일에 토, 일 이틀만 해당)동안 훈련을 받게되는데 교육이 끝난 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됨
- 신입교육 외에도 예비경찰은 매년 14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상급 예비경찰은 리더쉽이나 지휘와 관련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함
- 예비경찰은 1년 동안 정규 경찰의 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게 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독자적으로도 업무에 투입됨. 독자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1년에 2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급 예비경찰이나 정규 경찰의 추천을 받아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Section Officer로 승진할 수 있음
- 예비경찰이 많이 필요한 때는 음주사고나 폭행사건 등이 많은 금요일 저녁과 같은 때인데 예비경찰들은 경찰업무를 보다 활동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한 날 더 많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함

4.10. 중간 점검(5. 9)

- 실시 장소 : 주 벨기에 대사관내 회의실
- 점검관 : 통일부 정책심의관 박찬봉 외 2명
- 주요 점검 내용
 - 연수활동 내용 및 해외사례 진척 상황
 - 해외사례 연구에 필요한 조언 및 관심사항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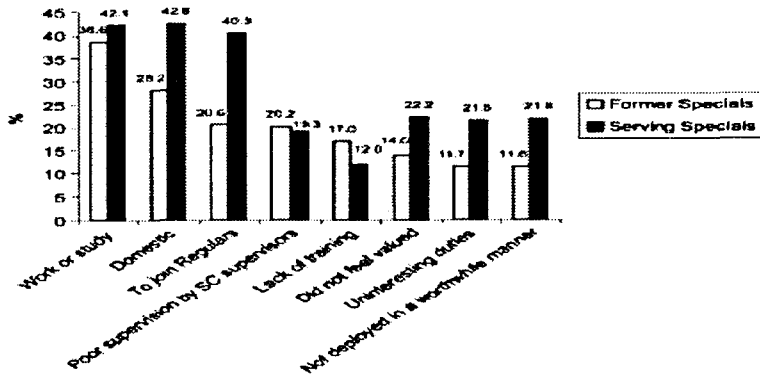
4.11. 예비경찰근무 현장 체험(5. 23)

- o Portsmouth내 Southsea Police station의 예비경찰과 함께 실제 근무에 참여하여 현장 견학
- o 합동 근무자
 - Section Officer, Derrick Grainger
 - Special Constable, Dean Chapman
- o 합동 근무시간 : 19:00 ~ 23:00
- o 주요 내용
 - 예비경찰과 함께 관내 도보 순찰 및 정규경찰과 차량 순찰
 - 관내 디스코 클럽인 'Time Club' 내 폭행사건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과정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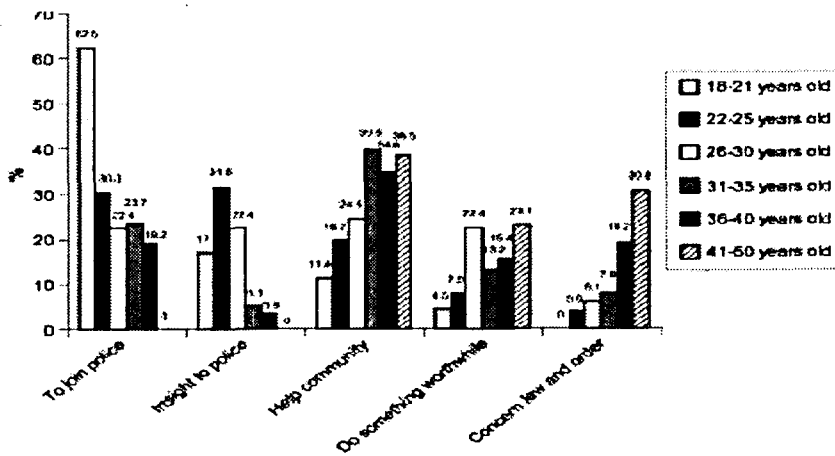
4.12. 런던 수도 경찰청의 예비경찰 책임자와 인터뷰(5. 29)

- o 면담자 : John Barnel
 - 런던 수도 경찰청 예비경찰의 Chief Officer
- o 주요 면담 내용
 - 예비경찰에 대한 기초 교육과정이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신입교육과정 중 탈락하는 자가 많이 생김
 - 최근 예비경찰에게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 예비경찰을 그만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업이나 직장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도 가사문제, 정규 경찰에의 참여 등의 이유가 있음.
- 예비경찰 자체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불만의 주요 이유는 상급 예비경찰에 대한 불만, 훈련량의 과다, 흥미없는 일의 반복, 봉사가치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기도 함



- o 예비경찰에 대한 참여이유는 연령대별로 다양하나 주로 20대는 정규경찰이 되기 위한 사전단계로 예비경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30대 이후에는 사회봉사를 위한 목적이 주된 참여 이유임



4.12. 북아일랜드 경찰청장과 이메일 인터뷰(6. 10)

o 면담자 : Heigh Orde

- 북아일랜드 경찰청(NIPS)의 Chief Constable

o 주요 면담 내용

- 북아일랜드 경찰은 지나치게 군사화된 과도한 경찰력과 92%의 신교도로 구성된 종교적 괴리감 등으로 인하여 주민 친화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성공적이지 못함
- 북아일랜드 경찰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중인 개혁작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경찰 내 구교도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북아일랜드 경찰 개혁안의 주요 내용〉

- 명칭 변경 (RUC에서 NIPS로 변경)
- 경찰인력을 8,000명 이하로 감축
- 카톨릭 신자 구성비율 확대 등 구조조정
- 아일랜드 공화국 경찰인 Garda와의 연계 강화
- 경찰위원회 구성에 정치인 비율을 1/2 가량으로 축소
- 국제적 인물에 의한 개혁 감시

- 북아일랜드의 Full-time예비경찰은 주민들의 반감이 심하고 자원봉사활동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해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2005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최근 결정함
- 북아일랜드 예비경찰의 활동은 다중범죄 진압과 테러대응활동에서 주민친화적인 방법활동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5. 참고 자료

5.1 국내 자료

1. 소선영,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2. 김인,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치안연구소, 1997)
3. 김보환, 「테러대응방안으로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청 대테러연구, 2002)
4. 최경규, 「미국, 캐나다의 민간인 경찰 ; Auxiliary Police」 (치안정책연구, 2002)
5. 임준태, 「범죄예방론」 (도서출판 좋은세상, 2001)
6. 정윤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대논문집, 1993)

5.2 해외 자료

1. 「A Special Relationship; Police Force, The Special Constabulary and Neighbourhood Watch」 (HMIC Report, 1997)
2. 「A Special Constable, Aldershot」 (Gill, M. and Mawby, R., 1990)
3. 「A Study of the Special Constabulary」 (Leon, C, 1991)
4. 「Effective organis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sector volunteer workers; Police Special Constables」(Kevin Gaston and Jackie A. Alexander, 2001)
5. 「Special Constabulary Training Foundation Course Notes」 (Hampshire Constabulary, 1995)

6. 『The GDR State Security; Shield and Sword of the Party』 (Jens Gieseke, 2002)
7. 『Facts About Germany』 (German Federal Press and Information Bureau, 2000)
8. 『The German Police; Issues in the unification process』 (John P. Harlan)
9. 『The Parish Special Constables Scheme』 (Home Office Research Study 143, 1995)
10. 『2000/2001 Inspection; Royal Ulster Constabulary』 (HMIC Report)

VI. 벨기에지역 연수결과

◆ 일 시 : 2003. 3. 3 ~ 6. 30

◆ 연 수 자

농 립 부 : 사 무 관 백 철 우

1. 개 요

1.1. 일반사항

- 활동기간 : 2003. 3. 29 ~ 6. 28
- 연구과제명
 - 동구권국가들의 EU공동농업정책 적응을 위한 SAPARD 정책연구
- 연수기관 : EU농업총국(벨기에)
- 주요 활동사항
 - SAPARD 정책담당과장 및 담당자의 지도
 - * 담당과장(Alan Wilkinson), 담당자(Jorgy Casquilho)
 - EU의 정책관련자료 수집 및 연구
 - 동구권국가 관계자 면담(EU농민단체 등)
 - EU농업총국 관계자 인터뷰

1.2. 연수기관 소개

- EU농업총국은 EU농정집행기관으로 10개 회원국에 대하여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동구권국가들의 특별예비접근 농촌개발프로그램, 즉 SAPARD 사업은 EU집행위원회 농업총국 SAPARD 담당과에서 추진

2. 연구활동 경과

- 해외사례 연구를 위해 관련자료 수집·정리
 - 동구권국가들의 일반농업현황
 - SAPARD정책 추진 배경
 - SAPARD정책 추진행정체계
 - SAPARD정책의 주요내용
 -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 홍보활동 및 정책적 시사점

3. 활동내역

<1단계 : 3. 29 - 4. 11>

- '03. 3. 29(토) 벨기에 도착
- '03. 3. 31(월)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 방문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에게 인사)
- '03. 4. 7(월) EU 농업총국 방문, 연구활동시작
 - 폴란드의 농정목표와 SAPARD 프로그램의 일치성 연구
(Objectives, strategy and priority areas for sapard programme in Poland)
- '03. 4. 8(화) EU 농업총국
 - SAPARD 정책추진에 있어서 NGO의 역할에 대한 조사
(The list of main social partners in relions and its roles)

- '03. 4. 9(수) - 4. 11(목) EU 농업총국 도서관
 - SAPARD 정책추진에 있어서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
(Administ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APARD program)
- '03. 4. 11(금)
 - SAPARD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정책연구
(Improvement in Processing and Marketing of Food and Fishery Products)
 - SAPARD 프로그램의 평가와 모니터링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SAPARD program)

<2단계 : 4. 14 - 25>

- 4. 14 - 17 (EU농업총국)
 - SAPARD 정책추진 과정
 - 정책우선순위, 집행측면에서의 SAPARD
(Priority and implementation)
- 4. 18 - 22 (EU농업총국)
 - 집행위원회의 법적조치
(Regulatory initiatives taken by the Commission)
 - 재정분배 법령연구
(Commission decision No 1999/595/EC)
- 4. 23 - 25 (EU농업총국 도서관)
 - 프로그램관리 법령
(Commission Regulation No 2356/2000)

- 개정된 프로그램관리 법령
(Commission Regulation No 2356/2000)
- 재정관련 법령
(Communication to the Commission about Financial Rules)
- 재정규율에 관한 집행위원회법령 제2222/2000
(Commission Regulation No 2222/2000 on financial rules)
- 다년간재정협약 (MAFA)
(The Multi-annual Financing Agreement)

<3단계 : 4. 28 - 5. 7>

- 4. 28 - 29 (EU농업총국)
 - MAFA 및 AFA의 체결과정
 - SAPARD 실행을 위한 기술지원과 훈련
(Technical assistance & training)
- 4. 30 - 5. 1 (EU농업총국)
 - 프로그램의 준비와 채택
(Preparation & adoption)
 - SAPARD 일반론
(General description of the SAPARD)
- 5. 6 - 7
 - 동유럽국가의 일반농업현황
(General description of the CEECs rural area status)

○ 폴란드 농업현황
(Description of polish rural areas and agri-food sector)

○ EU농업정책과 폴란드에서의 SAPARD
(EU agricultural policy & the SAPARD in Poland)

* '03. 5. 2(15:00- 16:00) : SAPARD 관계자 면담

<4단계 : 5. 12 - 23>

□ '03. 5. 12(월) EU집행위원회 면담준비 및 과제연구

○ 경제활동 및 고용창출 여건의 개선
(Priority Axis II: improvement of conditions for economic activity and job creation)

□ '03. 5. 13(화) EU집행위 관계자 면담(Mr Jorge Casquilho)

(면담일시 및 장소 : EU집행위 농업총국, 면담자 : Alan Wilkinson 담당
과장 및 Principal administrator : Mr Jorge Casquilho, 면담시간 : 16:00
- 19:00)

□ '03. 5. 14(수) - 4. 15(목)

○ 후보국의 농촌인프라 개선 및 개발 개관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rural infrastructure)

□ '03. 5. 16(금)

○ 폴란드의 농촌인프라 개발사업 (조치 3)

□ '03. 5. 19(월)

○ 하수도 정화 및 처리사업(scheme 3.2)
(waste water purification and disposal)

- '03. 5. 20(화)
 - 고체 오염물질 관리사업 (scheme 3.3)
(solid waste management)

- '03. 5. 21(수)
 - 자치단체 농촌지역의 도로사업 (scheme 3.4)
(Gmina and POWIAT roads in rural areas)

- '03. 5. 22(목)
 - 농촌 에너지 공급사업 (scheme 3.5)
(Energy supply)

- '03. 5. 23(금)
 - 농촌 정보화사업 (scheme 3.6)
(Rural telecommunication)
 - 지형, 시간표, 실행 등과 관련된 '농촌인프라 사업'
(other things in relation to Measure3)

<5단계 : 5. 24 - 6. 28>

-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작성 및 보완(EU농업총국)

4. SAPARD관계자 1차 면담결과 요약

4.1 일시 · 장소 : 2003. 5. 2(금) 15:00~16:00

EU집행위원회 농업총국

4.2 면담자 : Mr. Jorge Casquilho
(the CEECs SAPARD 담당자)

4.3 주요 내용

1. SAPARD와 PHARE instrument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요청

- '90년에 시작된 폴란드와 헝가리의 농촌개발지원 프로그램
 - PHARE 프로그램은 1990년도에 시작되었음. 그리고 지금까지 EU가 동구권국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주요한 창구가 되고 있음
 - 2000년부터 2006년 동안에 매년 15억 EURO를 지원할 예정임. 지원사업은 크게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나는 제도형성인데 예산의 30%가 이 부문에 사용될 것이며 또 다른 영역은 투자지원으로 예산의 70%가 사용될 것임
- 농업부문의 수 없이 많은 기존의 유럽 회원국 제도들은 만약 동구권 국가들이 바로 회원국이 된다고 했을 때, 적절한 행정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제도형성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업을 하나 예를 들면, 기존 회원국의 공무원과 동구권 국가들의 공무원이 서로 교류하는 '자매프로그램'이 있음
- 이러한 방법으로 동구권 국가 공무원들은 행정경험을 익히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기존의 PHARE 정책은 또한 SAPARD 업무수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음
- PHARE는 또한 1996년 1월에 설치된 '기술지원 및 정보교환 사무소'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2. ISPA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

- o ISPA는 구조정책 수단으로서, 각료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임.
- 이 사업의 목적은 주로 교통과 환경분야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주요 사업 대상국가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임.
- 2000년부터 2006년 사업기간동안 매년 10.4억 EURO를 투자함. ISPA는 환경인프라 사업의 경우 비용의 85%까지를 지원함(주로 상수도 사업, 하수도 처리, 환경오염관련 사업이 많음)
- o ISPA는 또한, 교통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있음. 이것은 EU 회원국이 되었을 경우 확대된 시장이 원만히 기능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임.

3. 2000년 정기보고서에는 'Differentiated appropriation'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

- o 이것은 집행위원회에서 자금에 대한 위임행위가 이뤄진 후 그 다음해 까지 후보 국가들이 유럽공동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하지만 2000년의 경우에는 3년까지 사용가능토록 했음
- o 이것은 후보국가들에 대한 자금의 지출을 오직 개별 후보국가들에 대한 공공자금 지출규모가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토록 함으로써 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즉, 세출예산이 EU 집행위에서 의결되었을 때 자금의 지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개별 후보국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액이 확정돼야만 실제 지출이 이뤄진다는 의미임.

5. SAPARD관계자 2차 면담결과 요약

가. 일시 · 장소 : 2003. 5. 13(화) 16:00~19:00

나. 면담자 : Mr. Jorge Casquilho(Principal administrator)
Mr. Alan Wilkinson(Head of units)

다. 주요 내용

1. NPAA(National Programme for the Adaptation of the Aquis)

- o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원국가들에 의하여 채택됨
- o 사업의 시간표, 가능한 비용 등이 포함된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기위한 상세한 outline임
- o 가입 전 지원 (pre-accession assistance)
 - PHARE → 16.2억 EURO/년
 - SAPARD → 5.4억 EURO/년
 - ISPA → 10.8억 EURO/년

2. SAPARD의 2가지 목표

- ① 공동농업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유럽제도의 실행에 기여
- ② 지원국가들의 농업부문과 농촌지역이 지속가능한 적응을 하도록 하기 위한 특정한 문제들과 정책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3. SAPARD의 정책우선순위

- ① 시장효율성을 개선
- ② 품질의 개선
- ③ 위생관련 표준들을 개선(to improve health standards)
- ④ 농촌지역에 신규고용의 창출(to create new employment in rural areas)
- ⑤ 환경과 관련된 규범의 준수(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4. SAPARD의 주요조치

- ① 우선순위 1 : 농업구조적응(adapta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s)
- ② 우선순위 2 : 식품산업, 위생, 시장진입
- ③ 우선순위 3 : 농촌지역 개발 (development of rural areas)

5. 농업구조 적응사업(adapta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s)

- ① 농가에 대한 투자(investments in agricultural holdings)
- ② 환경보호를 기반으로 한 농업생산방법(agricultural production methods design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 ③ 농가경영구조 설정(setting up farm management structures)
- ④ 농지개선 및 재구성
- ⑤ 농지등록제의 확립(establishment of land registers)

- ⑥ 직업훈련의 개선(improvement of vocational training)
- ⑦ 수자원 관리 (water resources management)
- ⑧ 혼림농업(afforestation) 및 사유림에 대한 투자(investment in private owned forest holdings)

6. 식품산업, 품질(Quality)과 위생(Health), 시장진입

- ① 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유통
- ② 품질과 동식물 위생통제구조 확립
- ③ 생산자단체의 설정

7. 농촌지역 개발 (development of rural areas)

- ①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대체 소득원의 개발
- ② 마을의 현대화 및 농촌지역 유산의 보존
- ③ 농업기반의 개선

8. 법적장치(legal framework)

기본적인 법적장치

- ① the co-ordination regulation council regulation 1266/99

→ 예비접근전략이라는 기본 틀에서, 후보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 법률(ISPA, PHARE, SAPARD 간 조정)

② the SAPARD regulation council regulation 1268/99

→ 예비접근기간동안에 유럽공동체가 중·동구유럽국가들의 농업 및 농촌 지원 법률

③ SAPARD implementing regulation council regulation 2759/99

→ 1268/99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률

④ SAPARD financial regulation council regulation 2222/2000

→ 1268/99를 적용하기 위한 재정법률

MAFA

① 프로그램 관리권 위임을 위한 총체적인 재정 및 행정관련 규정

② 후보국과 집행위원회가 합의

③ SAPARD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적용됨

SAPARD programme

① 7년을 기간으로 하는 사업(a seven year programme)

② SAPARD 지원전략을 구체적으로 설정

③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공

④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함

AFA

- ① 1년단위 재정위임 액을 설정
- ② MAFA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MAFA를 개정하기도 함
- ③ 집행위원회와 개별 후보국이 조인

accreditation of the SAPARD Agency

- ① 후보국가는 업무수행기관을 승인한 후 승인법률을 집행위원회에 제출
- ② 집행위원회가 직접 현장 확인
- ③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SAPARD 업무수행기관이 승인됨

9. 재정적 위임 사항(financial commitments)

- ① AFA 2000 ⇒ 후보국가가 2004년까지 집행하면 됨
- ② AFA 2001 ⇒ 2005년까지 집행가능
- ③ AFA 2002 and 2003 ⇒ 2006년까지 집행가능
- ④ AFAs 2004/5/6 ⇒ n+2 years

